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212-01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구총서 2018-13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Methods of Measuring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s and Courts

연구책임자: 한 성 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2014. 1. 1.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8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구원의 내부 검토 및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용 목차

국문 요약 ····· xviii

Abstract ····· xix

제1장 서론 ····· 1

제2장 연구에 대한 개관 ····· 5

제1절 연구 목적 ····· 7

제2절 선행연구와 차별성과 연구 범위 ····· 8

Ⅰ. 선행연구 개관 ····· 8

Ⅱ. 선행연구와 차별성 ····· 9

Ⅲ. 연구 범위와 내용 ····· 10

제3절 연구 방법 ····· 12

제3장 사법신뢰도의 측정 ····· 13

제1절 신뢰 일반론 ····· 15

Ⅰ. 신뢰 논의의 배경 ····· 15

Ⅱ. 신뢰의 개념 ····· 16

1. 개념의 다양성, 모호성 ····· 16

가. 자연적 본성으로서의 신뢰 ····· 17

나. 경험에 의해 양성되는 신뢰 ····· 17

2. 개념의 공통 요인 ····· 18

가. 상호의존성 ····· 19

나. 위험성 ····· 19

다. 취약성 ····· 19

라. 명예에 대한 존중 ····· 19

3. 유사 개념 ····· 20

가. 협력 또는 협동(cooperation) ····· 20

나. 신빙성(credibility) ····· 20

다. 신용 또는 확신(confidence) ····· 21

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 21
Ⅲ. 신뢰의 다차원 구조 ····· 21
1. 논의의 배경 ····· 21
2. 신뢰주체 측면(신뢰의 구성차원) ····· 22
가. 인지적 차원 ····· 22
나. 감정적 차원 ····· 22
다. 행위적(행태적) 차원 ····· 23
라. 구성차원간의 상호관계 ····· 23
3. 신뢰대상 측면(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대상 특성 또는 신뢰의 구성요인) ··· 24
가. 능력(ability or competence) ····· 25
나. 호의(benevolence)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 ····· 25
다. 성실성(integrity), 일관성(consistency) ····· 26
라. 개방성(openness) ····· 26
마. 집단적 동일체 의식과 가치 · 이념적 동질성 ····· 26
Ⅳ. 신뢰의 유형과 형태 ····· 27
1. 신뢰생성의 경로와 조건에 따른 유형화 ····· 27
가. 신뢰생성 경로를 기준으로 한 분류 ····· 27
나. 신뢰생성 조건과 방안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8
다. 각 유형의 비교 ····· 29
라. 유형 사이의 관계 ····· 30
2. 신뢰의 대상에 따른 유형화 ····· 31
가.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 또는 개인적 신뢰(personal trust) ··· 31
나. 제도신뢰(institutional trust), 원칙 또는 질서신뢰 ····· 32
다.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관계 ····· 33
Ⅴ. 신뢰와 불신의 관계 ····· 35
1. 논의 배경 ····· 35
2. 기존 연구와 새로운 견해의 등장 ····· 35
3. 공존 가능성 ····· 36
4. 통합가능성과 개념적 독립성 ····· 37
가. 공존하는 신뢰와 불신의 통합가능성 ····· 37
나. 개념적 독립성 ····· 38
5. 신뢰와 불신의 기능과 동태적 관계 ····· 38
가. 순기능과 역기능의 공존 ····· 38
나. 신뢰와 불신의 동태적 관계 ····· 40
Ⅵ. 신뢰측정과 증진정책에 대한 시사점 ····· 41

제2절 사법신뢰의 의미와 측정방법 개관 ····· 43
Ⅰ. 사법신뢰의 의미 ····· 43
1. 사법신뢰의 개념 ····· 43
2. 사법신뢰의 체계상 지위 ····· 44
3.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의 특성과 평가 지표 ····· 45
가. 사법신뢰 형성의 구성요인 ····· 45
나. 구성요인의 구체적인 평가 지표 ····· 46
Ⅱ. 사법신뢰의 측정방법 ····· 49
1. 측정방법 개관 ····· 49
가. 연구방법의 유형과 접근법 ····· 51
나. 자료수집방법 ····· 53
다. 측정대상의 개념화와 조작화 ····· 56
라. 측정의 의미와 한계 ····· 58
마. 측정척도 ····· 59
2. 사법신뢰도 측정지수 개관 ····· 64
가. 의의 ····· 64
나. 개별 국가의 사법신뢰도 지수와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 ····· 64
다. 대표적인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의 유형 ····· 65
라. 일반적 측정방법론 ····· 66
마. 특성과 한계 ····· 67
3. 분석대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 지수 ····· 68

제4장 사법신뢰도 측정지수 ····· 69

제1절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 71
Ⅰ. 개관 ····· 71
1. 소개 ····· 71
2. 목적과 특징 ····· 71
가. 목적 ····· 71
나. 특징 ····· 72
Ⅱ. 사법제도 또는 법원 관련 지수 ····· 72
1. 법치주의(rule of law) 지수 ····· 72
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4가지 법치주의 보편원칙 ····· 73
나. 「한눈에 보는 정부(2013)」의 '법치주의' 4가지 핵심요소 지표 ····· 74
다. 구체적인 조사 · 측정방법 ····· 81

2. 대시민서비스(serving citizens) 지수 ····· 82
가. 사법부문의 효율성 지표 ····· 82
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비용충당능력) 지표 ····· 84
다. 사법서비스의 대응성(적시성) 지표 ····· 85
라. 사법제도와 법률정보 접근성(access to judicial systems and legal information) 지표 ····· 87
마.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요구 대응성(responsiveness of judicial systems to citizens needs) 지표 ····· 92
바.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effectiveness and fairness of judicial systems) 지표 ····· 96
사. 구체적인 조사 · 측정방법 ····· 101
3.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 in judicial system) 지수 ····· 101
가. 신뢰도 조사의 목적 ····· 101
나. 신뢰도 현황 ····· 102
다. 구체적인 조사 · 측정방법 ····· 104
라. 사법제도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여러 국제조사 비교 ····· 105
마. 갤럽 세계여론조사(gallop world poll, GWP) ····· 107
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지수의 한계와 유용성 ····· 111
사. 신뢰도 측정 방법의 개선점 ····· 113
Ⅲ. OECD의 신뢰 측정 가이드라인 ····· 114
1. 목적 ····· 114
2. 측정대상인 신뢰의 의미 ····· 114
3. 도입 배경 ····· 115
4. 주요 내용 ····· 115
가. 개념과 타당성(제2장) ····· 115
나. 신뢰 측정에서 방법론적 고려사항(제3장) ····· 117
다. 신뢰의 측정(제4장) ····· 123
라. 신뢰 자료의 결과와 분석(제5장) ····· 129
마. 부록(annexes) ····· 132
5. 향후 과제 ····· 132
제2절 세계가치관조사의 wave 시리즈 ····· 133
Ⅰ. 세계가치관조사의 설립 목적 ····· 133
Ⅱ. wave 시리즈의 탄생과 연혁 ····· 134
Ⅲ. wave 시리즈의 특징 ····· 135
1. 개관 ····· 135

2. 구체적인 조사방법 ····· 135
가. 설문 개발과 번역 ····· 135
나. 설문 항목의 구성 ····· 136
다. 현장조사와 표본수집 절차 ····· 137
3. 자료의 제공 ····· 139
가. 다양한 차원의 온라인 자료 제공 ····· 139
나. 각 wave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 140
4. 한계 ····· 140
Ⅳ. 사법신뢰도 조사 ····· 141
1.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신뢰도 조사 ····· 141
2. 사법신뢰도 조사결과 ····· 143
가. wave 1(1981-1984, 8개국) ····· 143
나. wave 2(1990-1994, 8개국) ····· 144
다. wave 3(1995-1998, 17개국) ····· 146
라. wave 5(2005-2009, 21개국) ····· 147
마. wave 6(2010-2014, 15개국) ····· 149
3. 우리나라 사법 신뢰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150
가. 개관 ····· 150
나. 통계적 특성 ····· 151
다. 설문의 문구(wording) ····· 152
라. 조사결과 ····· 152
제3절 OECD와 세계가치관조사의 사법신뢰도 지수 비교 ····· 154
Ⅰ. 신뢰도 지수 또는 측정치 산출절차의 주체 ····· 155
Ⅱ. 조사 목적 ····· 156
Ⅲ. 발표 주기 ····· 156
Ⅳ. 조사대상인 국가 범위 ····· 157
1. 세계가치관조사(WVS) wave 시리즈 ····· 157
2.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 ····· 158
Ⅴ. 설문조사 방법과 규모 ····· 158
1.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시리즈 ····· 158
2.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 ····· 158
Ⅵ. 설문의 구성과 내용 ····· 159
1. 관련 신뢰 조사대상의 특정 ····· 159
2. 설문의 문구 ····· 160
3. 응답척도 ····· 161

가. 제시된 응답척도 ····· 161
나. 기타 응답의 처리 ····· 162

제5장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 ····· 165

제1절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지수 ····· 167
I.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 167
1. 설립 ····· 167
2. 활동 ····· 167
3. 목표 ····· 167
Ⅱ. 법치주의 지수 ····· 168
1. 소개 ····· 168
가. 개념 ····· 168
나.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 ····· 168
2. 세부 평가분야 ····· 169
가. 8가지 분야(factors) ····· 169
나. 우리나라 세부 평가분야별 순위 ····· 173
3. 설문사항 ····· 174
가. 일반대중 여론조사(general population poll, GPP) ····· 175
나. 관련전문가 설문(qualified respondents' questionnaires, QRQ) ··· 176
4. 구체적인 법치주의 지수 산출과정 ····· 178
가. 산출단계 ····· 178
나. 방법론상의 장점과 한계 ····· 181
5. 법치주의 지수의 특성 ····· 182
제2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와 국정관리지수 ····· 183
I. 기업환경평가 ····· 183
1. 개관 ····· 183
2.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 184
Ⅱ. 국정관리지수 ····· 184
1. 개관 ····· 184
2. 특징 ····· 185
3.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 186
제3절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지수 ····· 187
I.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수 ····· 187
1. 개관 ····· 187

2. 측정대상과 방법 ····· 188
3.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와의 차이점 ····· 188
4.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 189
Ⅱ.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지수 ····· 190
1. 개관 ····· 190
2. 측정대상과 방법 ····· 190
3.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 191
제4절 대륙별·지역별 사법제도 관련 지수 ····· 191
Ⅰ. 종류 ····· 191
Ⅱ. 특징과 한계 ····· 192
제5절 각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수의 비교 ····· 193
Ⅰ. 조사목적 ····· 193
1.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 193
2.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 193
3.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와 국정관리지수(WGI) ····· 194
4.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GCI) ····· 194
5.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연감(WCY) ····· 195
6. 검토 ····· 195
Ⅱ. 발표주기 ····· 195
Ⅲ. 조사대상 국가 범위와 규모 ····· 196
1. OECD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 ····· 196
2.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 196
3. 세계은행 ····· 197
4. 세계경제포럼(WEF) ····· 197
5.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 197
Ⅳ. 조사항목 ····· 197
Ⅴ. 조사방법과 자료수집방법 ····· 199

제6장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수준과 시사점 ····· 203

제1절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수준 ····· 205
I. 각종 지수에 나타난 사법신뢰 수준 ····· 205
1. 사법신뢰도 지수 ····· 205
가. 현황 ····· 205
나. 검토 ····· 206

2.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 ····· 208
가. 현황 ····· 208
나. 검토 ····· 210
Ⅱ. 사법신뢰 형성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 211
1.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관한 연도별 분석 ····· 211
가. 2013년 보고서 ····· 211
나. 2015년 보고서 ····· 213
다. 2017년 보고서 ····· 213
라. 시계열 정리 ····· 214
마. 종합검토 ····· 216
2.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변화와 사법신뢰도 지수와의 관계 ····· 218
가. 우리나라 사법제도 관련 자료에 의한 추론 ····· 218
나. 대안적 분석: 시계열 자료 비교를 통한 추세 또는 경향성의 파악 ···· 221
다. 시계열 자료의 비교 ····· 223
제2절 시사점 ····· 235
Ⅰ. 사법신뢰도 지수의 해석과 활용상 유의사항 ····· 235
1. 측정대상과 범위의 확인 ····· 235
2. 통계적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 237
3. 조사방법론상 특성의 고려 ····· 238
Ⅱ. 사법신뢰 증진정책에 대한 시사점 ····· 238
1. 신뢰의 다차원적 구조로부터의 시사점 ····· 238
가. 신뢰대상 측면의 다차원성 ····· 238
나. 신뢰주체 측면의 다차원성 ····· 240
2. 신뢰의 유형으로부터의 시사점 ····· 244
3. 신뢰와 불신의 순기능·역기능과 병존 가능성 문제 ····· 246
4. 사법제도 외부요인으로 인한 한계 ····· 246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247

제7장 결론 ····· 251

참 고 문 헌 ····· 255

표 목차

[표1] 신뢰의 생성 경로와 조건에 따른 유형 비교 ····· 29
[표2] TCPS 5개 분야와 22개 세부기준 ····· 47
[표3] 사법신뢰 구성요인별 TCPS 세부기준의 분류 ····· 49
[표4]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국제조사(2013년 기준) ····· 106
[표5] 1981-1984 사이 사법신뢰도(WVS, wave 1) ····· 143
[표6] 1990-1994 사이 사법신뢰도(WVS, wave 2) ····· 144
[표7] 1995-1998 사이 사법신뢰도(WVS, wave 3) ····· 146
[표8] 2005-2009 사이 사법신뢰도(WVS, wave 5) ····· 147
[표9] 2010-2014 사이 사법신뢰도(WVS, wave 6) ····· 149
[표10]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WVS wave 시리즈의 통계적 특성(1981-2014) ····· 151
[표11] 1981-2014 우리나라 사법신뢰도(WVS, wave1-wave6) ····· 153
[표12] 사법 관련 신뢰 조사대상의 표시(WVS, wave1-wave6) ····· 159
[표13] 신뢰수준 설문에 대한 응답척도(WVS, wave1-wave6) ····· 161
[표14] 우리나라의 연도별 WJP 법치주의 지수 점수 및 순위 ····· 169
[표15] 2016-2017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지수 분야별 점수 및 순위변동 ····· 173
[표16] 2010-2017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지수 분야별 점수 ····· 173
[표17] 2010-2017 민사사법정의 점수 및 순위 ····· 174
[표18] 2010-2017 형사사법정의 점수 및 순위 ····· 174
[표19] 2015년도 한국의 법원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중요도 ····· 177
[표20] 2015년도 한국의 민사·상사법원의 문제에 대한 요인별 심각성 ····· 177
[표21] 2015년도 한국의 형사법원의 문제에 대한 요인별 심각성 ····· 178
[표22] 2014-2017 WGI 법치주의 지수 추이 ····· 186
[표23]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의 조사항목 비교 ····· 198
[표24]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의 조사방법·자료수집방법 비교 ····· 200
[표25] 우리나라에 대한 WVS 사법신뢰도와 OECD 사법신뢰도의 비교 ····· 205
[표26] OECD와 WJP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와 순위 비교 ····· 208
[표27] 2007-2016 OECD 사법신뢰도 최대 상승 3개국과 최대 하락 3개국 ····· 221
[표28] 2011-2017 뉴질랜드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 223
[표29] 2011-2017 체코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 224
[표30] 2011-2017 독일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 225

[표31] 2010-2017 미국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 227
[표32] 2011-2017 이탈리아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 228
[표33] 2010-2017 터키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세 ····· 229
[표34] 2010-2017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 231
[표35] 2010-2017 일본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 232

그림 목차

[그림1] 정부권력의 제한(2012-13) ····· 75
[그림2] 정부권력의 제한(2015) ····· 75
[그림3] 정부권력의 제한(2016) ····· 75
[그림4] 기본권(2012-13) ····· 77
[그림5] 기본권(2015) ····· 77
[그림6] 기본권(2016) ····· 77
[그림7] 정부권력 제한과 기본권(2016) ····· 78
[그림8] 규제집행(2012-13) ····· 79
[그림9] 민사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성(2012-13) ····· 80
[그림10] 제1심 재판기간과 소송비용(소송목적 값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서)(2012) ····· 83
[그림11] 법적 지원이 이루어진 사건 비율(2010) ····· 85
[그림12] 제1심 민사사건 소송기간(2012) ····· 86
[그림13] 유럽 내 OECD 14개국의 법률지원이 제공된 1심 재판 비율(2012) ····· 88
[그림14] 유럽 내 22개 OECD 회원국의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2013) ····· 89
[그림15] 12개월간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법적 지원을 받은 비율(2016) ····· 91
[그림16] 분쟁해결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2016) ····· 91
[그림17] 분쟁해결과정에서 법적 지원을 받지 않은 3대 주요 원인(2016) ····· 92
[그림18] 유럽 내 22개 OECD 회원국의 민사 및 상사 제1심 사건의 재판기간(DT) (2012) ····· 93
[그림19] 제1심 민사, 상사, 행정사건의 예상 재판기간(2010-2014) ····· 94
[그림20] 제1심 민사, 상사소송 사건의 예상 재판기간(2010-2014) ····· 94
[그림21] 제1심 행정사건의 예상 재판기간(2010-2014) ····· 95
[그림22]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과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2015) ····· 97

[그림23]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과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2016) ····· 97
[그림24] 형사 사법제도의 효과성/적시성과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2015) ····· 99
[그림25] 형사 사법제도의 효과성/적시성과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2016) ····· 99
[그림26]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2015) ····· 100
[그림27]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2016) ····· 100
[그림28] 정부신뢰와 사법신뢰의 상관관계(2013) ····· 103
[그림29] 사법제도(judicial system)에 대한 신뢰도(2007년과 2014년) ····· 104
[그림30]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 추이(1981-2014) ····· 154
[그림31] OECD 지수 추세(지수 값 기준) ····· 215
[그림32] WJP 지수 추세(지수 값 기준) ····· 215
[그림33] OECD 지수 추세(상위 백분위 순위 기준) ····· 215
[그림34] WJP 지수 추세(고임금 국가 / 상위 백분위 순위 기준) ····· 216
[그림35] WJP 지수 추세(전 세계 / 상위 백분위 순위 기준) ····· 216
[그림36] 2011-2017 뉴질랜드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 223
[그림37] 2011-2017 체코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 224
[그림38] 2011-2017 독일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 225
[그림39] 2010-2017 미국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 227
[그림40] 2011-2017 이탈리아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 228
[그림41] 2010-2017 터키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 229
[그림42] 2010-2017 우리나라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 231
[그림43] 2010-2017 일본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 232



국문 요약

사법신뢰 증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신뢰 수준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파악과 평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수행영역에 관한 다양한 측정지수 사이에는 일부 사소한 차이를 넘어 현저한 수준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수행영역에 대한 평가, 특히 사법신뢰도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전제로서, 여러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지수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특성과 한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각종 측정지수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차이점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한다. 그 과정에서 각종 측정지수에는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과, 사법제도의 여러 수행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후자는 사법제도의 능력, 호의, 성실성, 일관성, 개방성 등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에 관한 지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측정지수는 조사목적, 조사범위와 규모, 조사항목과 방법 등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고, 이런 특성이 우리나라 사법신뢰에 관한 각 측정지수 사이의 수준 차이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측정지수에 나타난 우리나라 현황을 종합하면, 전통적으로 특히 사법제도의 능력 영역에서 좋은 성과와 평가를 이루어냈으나, 나머지 사법신뢰 구성요인인 호의나 성실성, 일관성과 개방성 영역에서 만족할만한 성과와 평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낮은 사법신뢰도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사법신뢰 증진정책은 각종 측정지수의 실질적 의미와 특성, 사법신뢰의 구성요인과 그 구체적 현황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주제어 : 사법신뢰, 신뢰의 측정, 사법신뢰의 구성요인, OECD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사법신뢰도 지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의 법치주의 지수.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Methods of Measuring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s and Courts

Han, Seongsoo
Senior Researcher, JPRI

In order to deal with the problem of enhancing the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and court,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an objective and accurate way. However, in some cases,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among various internationally published measurement indices concerning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This study discusses the methodologies of measuring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including specific production procedures, survey or research methods, and characteristics along with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ly published measurement indices, as a premise to better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judicial system in Korea, in particular the level of trust in the judiciary. Furthermore,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what causes the differences among various measurement indices and what implications can be found from such differences. In the process, it is found that some measurement indices directly measure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itself, while others measure the various performance areas of the judicial systems instead. This study argues that the latter practically estimates the judicial system's ability or competence, benevolence, integrity, consistency, and openness which are factors of trustworthiness in the judiciary and consequently determines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it all together. It is also found that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various measurement indices, in terms of purpose, scope and size of the surveys, survey items or methods, which are regarded as one of the causes of such differences among various measurement indices on public trust in the Korean judicial system and courts.

Taken together the various measurement indices for the Korean judicial system, the Korean judiciary has traditionally achieved better performance and evaluation especially in

competence-focused aspect. However, it turns out not to have shown satisfactory results, nor received favorable evaluation in the aspects of benevolence, integrity, consistency and openness, which are the rest of the factors that constitute the trustworthiness of the judiciar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is seems to have been one of the causes of the low level of public trust in the Korean judicial system, and that policies to promote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and courts should be designed more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ubstantiv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easurement index and various factors of trustworthiness in the judiciary.

Key words: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s, measurement of trust, factors of trustworthiness in the judiciary, OECD & World Value Survey's Confidence in Judicial system, World Justice Project's Rule of Law index.

제 1 장

서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 사법신뢰 증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신뢰 수준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파악과 평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신뢰의 절대수준에 대한 확인과 평가 등도 중요하겠지만, 한 국가의 사법신뢰 수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법제도를 둘러싼 수많은 요인의 현재 수준은 물론, 이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게 결정될 수 없고 나아가 이것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1] 이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 그것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갖는 해외 각국의 사법신뢰 수준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는 사법신뢰도의 상대적 수준 확인을 위해 문헌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여러 국제기구와 국제적 연구단체에서 다양한 사법제도 또는 법원 관련 지수를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사소한 차이를 넘어 어느 특정 사법제도 등 관련 지수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성과는 나머지 다른 지수에 나타난 것과 현저한 수준 차이

---

1) 정부신뢰의 경우 신뢰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그 국가와 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는 견해로는 박희봉·이희창·조연상,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2003. 9.), 47 참조.
한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체제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수준은 개념의 추상성이나 범위의 모호성 때문에 측정 등 경험적 연구가 쉽지 않다. 다만 그 체제나 제도를 구현하고 있거나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수준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경험적 연구로는 이숙종, "한국인과 일본인의 기관신뢰와 민주주의 인식", 일본공간 22권,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이 있다. 이숙종은 대개의 국가에서 특정 공공기관만이 두드러지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반면 다른 공공기관이 신뢰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 국민들은 특정 기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이기보다는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등의 기준을 가지고 신뢰성을 판단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위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와 양(+)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행정부이고, 이후 대통령, 의회, 언론, 정당, NGO에 대한 신뢰 순서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종, 위의 논문, 114-115 참조].

2) 법감정과 법문화를 포함한 법에 대한 가치판단으로서의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원인에 대해서는 조규창, "법과 신뢰", (김인영 편집),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거시적 접근, 소화 (2002), 87-109 참조. 한편, 곽한영에 따르면 법의식에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이 있는데, 인지적 차원은 법지식과 법에 대한 인식, 정서적 차원은 법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 행동적 차원은 법적 효능감과 사용의사로 측정된다고 한다[곽한영,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법의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법교육학회 (2011), 13-14]. 이중 '법에 대한 친근감, 법적 효능감 및 사용의사'는 아래 제3장 제2절 Ⅰ.의 제3항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사법신뢰를 구성요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사법신뢰는 법의식조사의 주요 연구대상 중 하나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주의와 정치의 문제에 관해서는 김지희,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 (김우택·김지희 편집),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소화 (2002), 239-274 참조.

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사법신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등 관련 지수 수준이 과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지수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각 지수의 특성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각종 측정지수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런 차이점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사법신뢰도 증진을 위한 시사점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사법신뢰는 신뢰의 여러 유형 중 제도신뢰의 한 형태로서 신뢰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기초로 한다. 사법신뢰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이를 기초로 한 신뢰도 증진정책 마련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과연 사법신뢰, 더 나아가 그 원형인 신뢰의 정확한 개념과 유형,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 각 구성요인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검토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 2 장

연구에 대한 개관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연구 목적

이 연구보고서는 각종 국제기구가 측정, 발표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또는 법원에 관련한 각종 지수, 특히 사법신뢰도에 관한 측정지수에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 단순한 조사절차나 방법의 차이 또는 지수의 특성이나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측정대상이나 측면,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인지 등 원인을 분석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위 각 지수를 산출하는 조사방법 자체의 특성이나 한계 이외에 조사의 목적, 측정대상인 항목이나 구성요인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각 지수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사법신뢰도를 직접적인 측정항목으로 삼고 있는 지수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원인의 일부나마 파악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신뢰 유형이나 구성요인에 대한 일반론을 사법신뢰와 그 측정 문제에 확장할 필요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것 역시 이 연구보고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각종 지수 등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법신뢰 수준을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거시적 · 체계적 시각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각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사법신뢰의 개별적 구성요인에 대한 측정치를 요인별로 분류, 비교 · 검토한 뒤, 사법신뢰 수준 증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구성요인과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구성요인을 밝혀내는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상의 연구를 기초로 사법신뢰 증진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나 정책대상 또는 영역을 특정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선행연구와 차별성과 연구 범위

I. 선행연구 개관

신뢰의 개념과 구성요인, 유형과 형태, 신뢰와 불신의 기능과 관계 등 신뢰에 관한 일반이론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연구, 신뢰의 측정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3] 또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원인, 신뢰증진을 위한 방안이나 사법적 환경조건 등 사법신뢰 자체에 대한 연구 역시 법률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4]

한편 정부나 행정조직에 관한 신뢰수준 측정 또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론적 논의이거나 경험적 연구를 불문하고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5] 사법신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법의식조사와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대한 측정지수 중 하나인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이하 'WJP'라고 약칭한다)의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를 비교, 분석한 연구[6]를 제외하고는 선행연구를 거의 발견할

3) 참고자료 중 'Ⅰ. 문헌'의 '다. 신뢰 일반, 사회적 자본' 부분 참조.
4) 참고자료 중 'Ⅰ. 문헌'의 '가. 사법신뢰' 부분 참조.
5) 참고자료 중 'Ⅰ. 문헌'의 '나. 정부신뢰, 제도신뢰' 부분 참조.
특히,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경험적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김우철, "우리나라 정부신뢰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2017. 4.).
- 김현구·이승종·최도림, "정부신뢰의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분석", 행정논총 제47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 박종민·배정현,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제17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 이지호·이현우, "정부신뢰의 한국적 의미와 측정: 반응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5. 10.).
- 황창호·김태형·문명재, "정책홍보 · 정책수단 · 정책산출 그리고 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3권 제1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한편,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단일문항적, 개념요소적, 다차원적 척도방법의 차이 등 측정방법 자체에 대한 연구로는 오경민·박흥식,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3호 (2002)이 있다.
6) 정소영, "한국의 법의식 조사와 미국의 rule of law index의 비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3.).

수 없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사법신뢰도 측정방법 자체를 다룬 연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국외의 경우 해당 대륙이나 권역, 자국의 사법신뢰도 측정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7] 그러나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어서 해당 대륙이나 권역, 국가 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비교 가능한 자료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를 수집, 발표하는 각종 국제기구의 사법신뢰도 지수나 그 측정방법 자체에 관해 참고할만한 비교연구는 국외의 경우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II. 선행연구와 차별성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 국제적인 사법신뢰도의 측정방법에 관한 비교,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선행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개별 사법신뢰도 지수의 경우에도 이를 주어진 조건이나 전제사실로 받아들이고 신뢰도 지수 또는 신뢰수준을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이 있고, 사법신뢰도 지수 자체의 분석이나 비교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다만 해당 지수를 발표하는 각종 국제기구에서 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통계처리방법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한 방법론은 발간 보고서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기본적 의의나 선행연구와 차별성은 사법신뢰 수준을 측정, 발표하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여러 지수 측정방법을 소개하여 각 지수 간 비교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각 지수의 특성과 한계, 실질적 의미를 나름대로 밝히려 시도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신뢰의 개념과 다차원 구조 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소개한 뒤 이를 사법신뢰의 경우로 확장, 변용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특히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법원센터 등이 마련한 사실심법원 업무기준을 이용하였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7) 제5장 제5절에서 설명하는 Euro Barometer(유럽), Latino Barómetro(남미), Afro-Barometer(아프리카) 등이 대표적인 대륙별 사법신뢰도 측정지수들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법원과 그 유관단체,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자국의 사법신뢰 수준 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법신뢰도를 측정, 발표하고 있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를 비교분석하는 등 각종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를 비교분석하는 하나의 틀 또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또 다른 차별성이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지수를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지수와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구성요인에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는 지수로 구분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각각의 지수 특성을 조사목적과 조사방법론, 자료수집방법 등의 여러 측면에서 상세히 비교하여 지수 사이에 수준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여러 지수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고, 시계열적인 경험적 자료를 통해 사법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분류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이 연구는 이상의 성과를 기초로 사법신뢰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사법신뢰도 지수 측면과 신뢰증진정책의 측면으로 나누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보고자 노력하였다.

III. 연구 범위와 내용

먼저 지수 측정에 관한 단순한 기술적 방법론의 나열,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신뢰도 증진방안 마련을 위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제3장은 신뢰 일반, 사법신뢰의 의미와 측정방법에 관한 개략적 소개로 논의를 시작한다. 신뢰 일반 이론 부분에서는 신뢰 개념의 다양성과 공통적인 개념요소의 추출, 신뢰의 주체와 대상 측면에서의 다차원적 구조, 신뢰의 여러 유형과 형태, 신뢰와 불신의 기능과 관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사법신뢰의 의미와 측정방법 부분에서는 사법신뢰는 제도신뢰의 한 형태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의 특성과 평가지표를 살펴본 뒤, 사법신뢰의 측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의 내용을 자료수집방법, 측정대상의 개념화와 조작화, 측정의 의미와 한계, 측정척도의 측면에서 개관하고, 사법신뢰도 측정지수의 의의, 종류 또는 유형, 일반적 측정방법론 등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각종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하는 대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지수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OECD가 2013년에 발간한「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 이후 시리즈를 통해 격년마다 발표하는 사법신뢰도 지수(citizen's confidence with judicial system)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로 약칭한다)가 1981년 이후 wave 시리즈를 통해 대략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사법신뢰도 지수를 중심으로, 각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느 것을 구성요소 혹은 평가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산출방법과 조사결과는 어떠한지를 상세히 살펴보고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한다.

제5장에서는 사법신뢰도 자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하위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표에 관한 여러 가지 측정지수를 살핀다. 여기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법제도 관련 지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서 발표하는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고,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포함된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지수와 국정관리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에 포함된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에 포함된 사법독립성 지수,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world competitiveness ranking)에 포함된 법치주의 지수와 공평한 정의구현 지수,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로 바로미터(Euro Barometer)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법신뢰 수준에 관한 지수 등 여러 대륙별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해당 대륙 소속 국가의 사법신뢰도 지수 등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범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뒤, 각 지수의 특성과 한계를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국가의 범위와 규모, 조사방법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각종 국제기구 등이 평가하는 우리나라 사법신뢰도 현황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정리하고, 사법신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분류한 뒤, 이런 구성요인의 변화가 사법신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추세 또는 대체적 경향성을 현저한 사법신뢰도의 증가와 감소를 경험한 몇몇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한 시사점을 사법신뢰도 지수의 해석과 활용 측면과 사법신뢰 증진정책의 측면에서 정리해보고,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제3절 연구 방법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신뢰 일반, 사법신뢰와 그 측정과 관련하여 발간된 각종 단행본과 논문, 연구보고서 등은 물론이고,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각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이 연구과정에서 생성한 검토안과 강의안, 회의록 등도 수집이 가능한 범위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상당수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발간 논문과 연구결과 보고서, 각종 조사결과와 통계분석자료, 조사방법론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사법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관련한 조사방법론 일반과 설문조사결과의 통계처리 등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내의 조사방법론, 통계전문가에게 전자 우편과 전화를 통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간과하거나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에 관한 귀중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이 연구보고서의 필요 부분에 적절히 반영하였다.

제 3 장

사법신뢰도의 측정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신뢰 일반론

I. 신뢰 논의의 배경

18세기 무렵 태동하기 시작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은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8] 사회적 자본 중 신뢰는 정치적 집단 간의 상호 협약에 기반을 둔 다원민주주의 정치의 확립과 공정한 거래 및 경쟁 논리에 입각한 경제사회적 진보의 필수조건으로 파악되고 있다.[9]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식민지배, 해방 후 미군정과 일체 친일세력의 공존, 6·25전쟁, 거듭되는 군사정변과 권위주의정권의 수립 등 일련의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을 거치면서 종래의 전통적인 공동체와 국민들 사이의 유대와 결속, 협동, 신뢰가 파괴되었고,[10] 이후에도 물질적 경제성장 수준 상승과 급격한 도시화, 치열한 경쟁사회의 도래 등에 따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형성될 기반이 좀처럼 형성되기 어려웠다. 이런 현상은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제도와 질서(원칙)에 대한 신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였는데, 1997년 말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통해 밝혀진 정부의 정책대응 실패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으로 정부(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불신은 극에

---

8) 프랑스 사회학자인 부르디외(Bourdieu, Pierre)는 사회적 자본을 "친근감이나 상호인지적 관계가 어느 정도 제도화됨에 따라 형성되는 지속적인 연결망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 또는 사실상 얻게 되는 자원의 총합(Social capital is the sum of the resources, actual or virtual, that accrue to an individual or a group by virtue of possessing a durable network of more or less institutionalized relationships of mutual acquaintance and recogni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ierre Bourdieu and Loic J. D. Wacquant,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119.]. 한편, 미국 사회학자인 콜먼(Coleman, James S.)은 사회적 자본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물질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대비하여, "관찰 가능한 물질적 형태로 체화되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도구, 기계, 생산설비 등을 물질적 자본으로, 개인 안에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 등을 인적 자본으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한 것"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James S. Coleman,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304 참조, 이재열,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 통권 제37호 (1998. 여름호), 67-68에서 재인용].

9) 김우택·김지희, "신뢰의 개념과 신뢰 연구의 맥락" (김우택·김지희 편집),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소화 (2002), 11-12 참조.

10) 김인영, "한국사회와 신뢰: 후쿠야마와 퍼트남 논의의 재검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4.), 21-24 참조.

달하였다.[11] 신뢰의 붕괴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지역주의와 같은 폐단을 초래하기도 하고, 이런 폐단은 다시 신뢰의 붕괴를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낳기도 하였다.

신뢰의 회복은 더 이상 학문적 관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의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정부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행정력과 통치력 약화를 초래하고, 공적 신뢰 회복의 근간이 되는 사회 규범과 계약을 강제할 공정하고 강력한 권위체의 부재와 사회적 신뢰 구축과 회복의 기제 상실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II. 신뢰의 개념[12]

1. 개념의 다양성, 모호성

신뢰의 개념 또는 정의는 이를 논의하는 학자의 수만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13] 모호하고도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더욱이 신뢰의 형태와 형성 경로 등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적 · 경험적 연구가 심리학과 철학은 물론이고 사회학과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개념적 다양성과 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nature)으로서 존재하는 신뢰와 경험을 통해 양성되는(nurture) 신뢰의 두 가지 맥락에서 신뢰개념을 정리, 소개한다.[14]

---

11) 김인영, "정부부문의 신뢰와 불신", (김인영 편집),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거시적 접근, 소화 (2002), 127-128.

12) 이 부분은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과 원숙연, "신뢰의 개념적·경험적 다차원성: 신뢰연구에 갖는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3호 (2001), 박통희, "신뢰와 불신의 역학: 불신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5.), 같은 저자의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2호 (1999. 여름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거나 정리, 요약한 것이다.
이하 신뢰 일반이론에 관한 논의는 주로 사회 구성원 상호 간에 문제되는 대인신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일부 관련성이 없거나 성질상 적용이 곤란한 내용을 적절히 배제한다면 기타 유형의 신뢰, 즉, 제도신뢰나 원칙신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설명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제도신뢰를 제도를 담당하는 당국 또는 권위나 역할의 현직자인 공무원에 대한 신뢰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제도신뢰 역시 비록 담당하는 권위와 역할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개인인 공무원에 대한 신뢰로 환원될 수 있고, 이 경우 대인신뢰에 관한 논의의 유추적용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후술하는 (주 44) 내용 참조].

13) 박찬웅,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사회학대회 발표요약집 1998권 2호, 한국사회학회 (1998), 201 참조.

14)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 14-19 참조.

가. 자연적 본성으로서의 신뢰

신뢰란 인간이 지닌 자연적 본성으로서, 그 자체로 바람직하고 윤리적인 것이며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이자 본원적인 태도정향으로 파악된다. 인간이 누구나 큰 위험에 빠졌을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인 것도 이런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인간관계도 성립될 수 없고 상호작용도 불가능하게 된다.

나. 경험에 의해 양성되는 신뢰

많은 신뢰 연구자들은 신뢰를 인간의 상호작용과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파생된 경험에 의해 점진적으로 양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입장은 다시 개인의 심리적 역동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적 입장, 효용계측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적 입장, 그리고 사회적 실체로서 신뢰를 간주하는 사회학적 입장으로 크게 구별되고 있다.

(1) 심리학적 관점: 개인의 기대

신뢰에 관한 개부분의 초기 연구 입장으로 신뢰를 '사건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낙관적인 기대'로 정의한다. '기대이익보다 기대손실이 큰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개인의 비합리적 선택'으로 신뢰를 규정하는 견해도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란 자신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타인을 신뢰하는 것으로, 신뢰주체가 갖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강조하여 신뢰주체가 손실을 입기 쉬운 취약한 상황에서 갖게 되는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신뢰라고 파악하는 입장이다.

(2) 경제학적 관점: 합리적 효용계측

신뢰를 합리적 효용계측의 결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인 다른 행위자와 협력할 것인가 혹은 거부할 것인가의 판단은 비용-효용의 손익계산을 거친 후 이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① 신뢰주체는 신뢰대상인 상대방이 배반하였을 때 자신이 입게 되는 손실이 기대한 바대로 행동했을 때 발생하는 효용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계측하거나, 또는 반대로 ② 신뢰대상의 입장에서 볼 때 신뢰주체를 배반하였을 때 얻는 효용

이 신뢰주체의 기대에 따라 행위 했을 때 초래되는 비용보다 적다고 예측된다면, 신뢰대상이 신뢰주체의 기대에 따라 행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게 된다고 본다.

(3) 사회학적 관점: 사회적 실체

신뢰를 고립적 ·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상호관계에 기초하는 집합적 속성'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나 손익계산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 · 비공식적 사회관계의 역동과정에서 표출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관계 속에 본연적으로 내재된 규범과 의무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여 사회 전체의 제도적 기제와 관련된 사회적 실체로서 신뢰를 파악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2. 개념의 공통 요인

위에서 본 것처럼 신뢰 개념은 학문적 입장과 이론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으나, 개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인자가 있고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15]

공통인자를 파악하는 것은 이를 통해 신뢰가 문제되는 상황이나 신뢰발생의 조건을 특정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통인자 중 어느 것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가 발생하지 않거나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

15) 원숙연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는 신뢰 개념을 관통하는 공통의 구성요소에 위험의 감수(risk-taking), 낙관적 기대(optimistic expectation)과 자발성(willingness)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원숙연(주 12), 위의 논문, 65]. 그런데 내용상 자발성은 취약성에 포섭되는 요소이고, 위험의 감수는 위험성과 취약성이 결합된 요소이며, 낙관적 기대는 명예에 대한 존중에 포섭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용어 차이에 불구하고 위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찬웅은 위험, 정보의 불확실성과 감시의 불완전성, 자발성, 계산성(calculativeness), 협조, 사회적 관계성을 신뢰 개념의 공통적 구성요소로 들고 있고[박찬웅(주 13), 위의 논문, 201-202], 권혁상 등은 신뢰 개념의 공통적 구성요소로 정보의 불확실성과 감시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한 위험, 자발성과 상호협력을 들고 있는데[권혁상·주효진·도운섭, "사회자본과 신뢰의 개념 및 유형화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3권 1호 (2003), 45-47], 이 중 사회적 관계성은 상호의존성에 포섭되는 요소이고, 협조 또는 상호협력은 신뢰와 구별되는 유사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 22-27; 원숙연(주 12), 위의 논문, 65; 박통희(주 12, 1999. 여름호), 위의 논문, 3 각 참조].
James S. Colman은 계산성을 신뢰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뢰와 계산성을 하나의 용어에 포섭하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서 위험(risk)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비판(Oliver E. Williamson)이 있다고 한다(권혁상·주효진·도운섭, 위의 논문, 46 참조).

가. 상호의존성

신뢰의 모든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통인자이다. 신뢰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신뢰주체와 신뢰대상 사이 상호의존성이 반드시 요구된다는데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신뢰주체가 아무리 신뢰대상을 '스스로' 신뢰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신뢰대상이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나. 위험성

대부분의 신뢰 개념은 신뢰대상이 신뢰주체의 기대에 맞추어 행위 하지 않아 붕괴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이런 위험성은 신뢰주체의 손실과 이익이 신뢰대상의 행위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의 불확실성과 감시의 불완전성에 의해서도 이런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견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의 행위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어 신뢰대상의 행위가 예측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뢰대상의 행위를 적절히 감시, 통제할 수 있다면 신뢰가 붕괴될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 신뢰 자체가 존재할 이유도 없게 된다.

다. 취약성

위험성에서 야기되는 신뢰주체의 취약성 역시 신뢰의 주요한 공통인자로 거론된다.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 신뢰대상을 수용하여 자신을 상대방에 대한 취약한 상태에 두려는 신뢰주체의 자발적인 의지가 바로 신뢰의 기본요소라는 것이다.

신뢰대상인 상대방에게 취약한 상태에 놓일 위험성이 상존하는데도 신뢰대상이 이러한 취약성을 악용하지 않으리라는 기대에 입각하여 신뢰가 생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신뢰는 신뢰주체로 하여금 또 다른 위험성을 다시 감수하게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신뢰 개념에 함축된 공통된 견해이다.

라. 명예에 대한 존중

신뢰 개념에 관한 많은 견해는 신뢰주체가 자발적으로 위험에 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시키는 동기는 바로 상대의 명예에 대한 존중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친

족그룹을 벗어나는 타인과 관계에서 명예는 바로 신뢰대상인 상대방이 신뢰행위를 할 것이라는 믿음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다.

신뢰를 계약이나 약속으로 보장되지 않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명예롭게 행동하리라는 기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견해도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명예를 존중하는 마음이 곧 신뢰라고 보는 것이다.

3. 유사 개념

신뢰 개념은 명확한 이론적, 경험적 구획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사회학, 사회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 관련 연구에서 신뢰와 유사한 개념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사용상 혼란 내지는 개념 확장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유사개념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신뢰의 유사개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협력 또는 협동(cooperation)[16)]

신뢰의 결과로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협력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드시 내포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신뢰와 협력은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자신이 협력하지 않아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신빙성(credibility)

신뢰와 신빙성은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신뢰를 신뢰대상 중심으로 보아 '믿을 만한 약속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신뢰는 계약이나 약속으로 보장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명예롭게 행동하리라는 기대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신빙성은 약속은 믿을 만하나(credible) 예측하지 못해 미리 논의되지 않은, 즉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약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명예롭게 행동하리라는 보장을 내포하지 않는다. 신뢰할 만한(trustworthy) 상대의 집합은 신빙성 있는(credible) 상대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16) 앞의 (주 15)에서 본 것처럼 이 개념을 신뢰 개념의 공통적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 신용 또는 확신(confidence)

신뢰와 확신은 둘 다 어떤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독일 사회학자인 Niklas Luhmann에 의하면 "확신은 대안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반면, 신뢰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 실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다른 대안보다는 그 행위를 선택하는 태도"라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

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과거 행위가 일관성을 보인다면 미래 행위 역시 그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이와 같이 신뢰대상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가 신뢰주체의 기대에 따라 행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뢰와 예측 가능성은 모두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신뢰는 예측가능성에 더하여 '그 이상의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예측가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스스로 취약한 상태에 있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II. 신뢰의 다차원 구조

1. 논의의 배경

앞의 신뢰 개념에 관한 논의는 이 글의 연구대상 특정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개념적 정의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다루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신뢰의 구조에 관한 논의이다. 신뢰가 단일 차원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신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측정,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실천적인 신뢰 증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신뢰의 다차원성은 연구자별로 다양한 기준과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고[17]

17) 예컨대, 문형구·최병권·내은영, "국내 신뢰 연구의 동향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 경영학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경영학회 (2011. 2.), 144, 147-148 참조.

각각의 유용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신뢰의 다차원적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신뢰주체 측면과 신뢰대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2. 신뢰주체 측면(신뢰의 구성차원)[18]

가. 인지적 차원

신뢰는 신뢰대상이 '자신에게 유익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는가에 대한 신뢰주체의 인지로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신뢰주체가 상대방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관한 믿을 만한 충분한 정보, 혹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대방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평판이나, 졸업장, 각종 증명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증,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에 의해 획득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신뢰는 무의미하게 된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로서의 신뢰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경우 신뢰의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감정적 차원

신뢰는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에게 갖는 '좋고 싫음'의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다. 신뢰대상의 의도에 대한 신뢰주체의 긍정적인 기대는 상대의 능력이나 의도 등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개인 간의 정

18) 신뢰가 단순한 개인의 인성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의 논의이다. 이와 달리 신뢰를 개인의 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 성향으로 보는 인성이론(개인의 발달경험, 성격형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신뢰 주체의 타고난 성향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은 암묵적으로 신뢰의 단일 차원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원숙연(주 12), 위의 논문, 67 참조].
한편 원숙연은 조직 내 상사의 직속부하에 대한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로 범위를 한정한 실증분석을 통해 신뢰의 다차원성(dimensionality)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일종의 태도로서의 신뢰를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신뢰의 '내용적' 다차원성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 '3. 신뢰대상 측면(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대상 특성 또는 신뢰의 구성요인)' 부분에서 설명하는 신뢰의 '대상적' 다차원성과 대비하고 있다[원숙연(주 12), 위의 논문, 67 참조].
한편, 박통희는 신뢰를 미래 상호작용의 잠재적 비용과 혜택을 주관적 확률에 의해 계산하여 이득에 되기 때문에 손실의 개연성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계산적 차원을 인지적 차원과 유사한 것으로, 신뢰를 상대방에 대한 연대감 또는 동일체 의식에 따라 파악하는 관계적 차원을 감정적 차원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통희(주 12, 1999. 여름호), 위의 논문, 6-8 참조].

서적 결속에도 기반을 함께 두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빈번하고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상호간에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와 같은 감정적인 유대가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신뢰는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다. 행위적(행태적) 차원

신뢰는 신뢰대상의 유능함과 의도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신뢰대상과의 감정적 유대에 따라 형성되는 긍정적 평가에 기반을 둔 행위 차원 역시 포함한다. 신뢰란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이 자신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 입을 수 있는 손해(즉 배신의 위험)를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신뢰를 부여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라. 구성차원간의 상호관계

이런 세 가지 구성차원은 일정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관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신뢰주체와 신뢰대상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또는 관계의 특성에 따라 인지, 감정, 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이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뢰대상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태도같이 비교적 객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신뢰하더라도 감정적인 유대를 통한 신뢰는 형성되지 않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은 믿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신뢰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의 의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19]

같은 맥락에서 인지적 또는 계산적 차원과 감정적 또는 관계적 차원은 신뢰 분석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어느 구성차원이 신뢰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문제되는 사회적 관계, 사회체제 그리고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감정적 또는 관계적 차원은 1차 집단(gemeinschaft)에서, 인지적 또는 계산적 차원은 2차 집단(gesellschaft)에서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편 이 견해는 정보가 부족한 사회일수록 인지적 또는 계산적 차원의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감정적 또는 관계적 차원이 중요시된다고 본다. 그런데 1차 집단에서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심층적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반면에 2차 집단에서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피상적이고 부족한 것이 보편적이므

19) 원숙연(주 12), 위의 논문, 69-70 참조.

로, 1차 집단에 비하여 2차 집단에서 정보 획득을 통한 신뢰 생성이 훨씬 어려울 것으로 본다. 결국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질서로부터 법 · 제도와 같은 제도적 안전판의 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는 체제적 신뢰(system trust)에 의거한 사회로 변화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20]

세 가지 차원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신뢰의 행태적 차원은 불리함을 감수하는 행동을 실제에 옮기는 것을 포함하는데, 신뢰에 입각한 행동은 그 자체로서 감정적 연대감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인지적 도약(cognitive leap)[21]의 기지로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고, 동시에 그 결과는 인지(계산)적 차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인지적 차원, 감정(관계)적 차원, 그리고 행태적 차원은 동태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사회적 실체로서 신뢰는 이러한 세 차원에서 동태적으로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창출된다는 것이다.[22]

3. 신뢰대상 측면(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대상 특성 또는 신뢰의 구성요인)[23]

신뢰주체는 신뢰대상을 신뢰할 때 그가 지닌 어떠한 특성을 신뢰하는가? 혹은 신뢰대상의 어떠한 특성이 신뢰주체의 주관적 기대에 영향을 주는가? 신뢰를 유발하는 신뢰대상의 특성에 관해서는 수많은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대상의 특성으로 열거하는 대표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4]

---

20) 박통희(주 12, 1999. 여름호), 위의 논문, 6-8 참조.

21) 인지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 사안의 복잡성과 동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합리적 계산에 의한 효용 극대화 수준이 아닌 만족수준에서 결정하는 신뢰 대상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불확실성과 이에 수반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의 수용을 의미하는 신뢰를 그 대상에게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상태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박통희(주 12, 1999. 5.), 9 참조]. 개인이 합리적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효용 극대화 수준이 아닌 만족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하여는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만족이론(satisficing theory)을 주장한 미국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Herbert A. Simon의 다음 저술을 참조. Herbert A.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4th ed.), New York: Free Press (1997. 3.).

22) 박통희(주 12, 1999. 여름호), 위의 논문, 6-8 참조.

23) 이 부분은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과 박통희(주 12, 1999. 5.), 위의 논문, 5-8을 각 참조하였다.

24) Roger C. Mayer, James H. Davis, and F. David Schoorman,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vol. 20, no. 3,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95), 716-724에서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대상의 특성을 능력(ability), 호의(benevolence)와 성실성(integrity)의 세 가지로 주장하면서 신뢰를 결정하는 신뢰대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상세히 정리, 비교하고 있다.

가. 능력(ability or competence)

능력은 "[교환이나 거래 등] 주어진 특정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재능 및 특성들의 집합"[25]을 지칭하고, 문제해결, 정보처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여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의 영역은 대단히 구체적이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영역에서는 유능한 반면 그 밖의 영역에서는 그다지 유능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한 영역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신뢰를 획득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영역에서는 신뢰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신뢰대상의 능력에 기초를 둔 신뢰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법신뢰 측면에서, 사법제도가 갖는 '능력'에 관한 요소로는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소송절차에 대한 접근성, 사법서비스의 대응성(적시성)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컨대 소송제도가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사건에 대한 상소율이 증가하여 종국적 분쟁해결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신속성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사법신뢰 수준은 높지만 종국적 분쟁해결능력과 관련된 효율성 영역에서의 사법신뢰 수준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호의(benevolence)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

"신뢰 대상이 자신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고 신뢰 주체를 위한 선의의 행동을 하기 원한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지칭한다. 이것은 다시 소극적 차원의 호의와 적극적 차원의 호의로 구분된다. 소극적 차원의 호의는 이해관계 측면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적인 차원은 이에 더하여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고려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호의는 신뢰대상이 신뢰주체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긍정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호의는 신뢰대상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신뢰대상의 인식을 상정할 수 없는 사법신뢰와 같은 제도신뢰에서는 이를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직접 고려할 수는 없다. 다만, 사법제도와 같이 존재 목적과 이유가 오로지 공익에 있는 제도의 경

25) Roger C. Mayer, James H. Davis, and F. David Schoorman, 위의 논문, 717.

우, 제도 설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제도에 부여된 공익을 제도 이용자인 신뢰주체에 대한 '호의'로 유추할 수 있다.

다. 성실성(integrity), 일관성(consistency)

성실성은 신뢰주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원칙들을 신뢰대상이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느냐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이다. 신뢰대상이 표출하는 태도의 공정성, 언행일치 정도, 약속 이행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일관성은 성실성에 포함되는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신뢰대상의 태도나 행위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신뢰대상의 행위가 일관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대상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법신뢰 측면에서 성실성과 일관성은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 또는 형평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개방성(openness)

새로운 혹은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고 숨김없이 제공하고, 더 나아가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칭한다. 개방성은 정직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개방성은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상대로 하여금 감정적 유대와 동일체 의식을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뢰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신뢰 측면에서 개방성은 사법정보의 공개, 사법절차의 투명한 운영과 절차참여권 보장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집단적 동일체 의식과 가치 · 이념적 동질성[26)]

신뢰대상의 속성이자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에 대해 갖는 사회관계적 속성으로서, 국가와 정권, 정치체제, 행정체제 등에 대한 신뢰에는 신뢰주체와 신뢰대상 사이의 이런 사회관계적 속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26) 박통희는 능력, 호의, 일관성(성실성), 개방성 이외에 집단적 동일체 의식 또는 가치 · 이념적 동일성을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신뢰대상 특성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박통희(주 12, 1999. 여름호), 위의 논문, 6 참조].

지역주의가 중요한 사회관계적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에 정권에 대한 신뢰에 집단적 동질성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런 집단적 동일체 의식이나 가치 · 이념적 동질성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회관계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역주의나 동일체 의식, 이념적 동질성 등과는 성질상 융합할 수 없는 사법 영역에서의 신뢰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Ⅳ. 신뢰의 유형과 형태

1. 신뢰생성의 경로와 조건에 따른 유형화[27]

가. 신뢰생성 경로를 기준으로 한 분류[28]

(1) 과정 기반 신뢰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환관계의 경험에 따라 신뢰대상이 신뢰주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평판(reputation)에 근거한 신뢰를 의미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반복적으로 획득한 고유한 평판에 기초하기 때문에, 여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신뢰로 전이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형성되는 신뢰와 달리 불신은 단 한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29]

(2) 귀속성 기반 신뢰

한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특성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신뢰이다. 가족적 배경, 인종, 성별, 출신학교 등에서 나타나는 신뢰주체와 신뢰대상 사이의 유사성이 신뢰의

---

27) 이 부분은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 박찬웅(주 13), 위의 논문, 202-204, 권혁상·주효진·도운섭(주 15), 위의 논문, 47-50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요약한 것이다.

28) 미국 사회학자인 Zucker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Lynne G. Zucker, "Produn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vol. 8,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986), 53-111 참조,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 28-33에서 재인용].

29) 최상진 외 공저,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11권 특집호 (2005. 2.), 5; Gareth R. Jones & Jennifer M. Geroge,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vol. 23, no. 3,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98), 537-539 각 참조.

기반으로 작용하여, 동일한 귀속적 특성을 공유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신뢰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신뢰수준은 신뢰주체가 자신과 귀속적 특성이 동일한 신뢰대상에 대해 자신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방식으로 사물과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리라는 기대, 즉 '배경적 기대(background expectation)'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3) 제도 기반 신뢰

공식적인 제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신뢰이다. 즉, 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신뢰가 귀속적 특성이나 평판보다는 공식적인 제도나 사회구조를 통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형의 신뢰형성이 가능한 이유는 공식적 사회조직이나 제도가 신뢰대상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신뢰주체가 신뢰의 제공원이 되는 제도나 공식적 사회조직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나. 신뢰생성 조건과 방안을 기준으로 한 분류[30]

(1) 제재 기반 신뢰

신뢰대상이 신뢰주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응분의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신뢰를 의미한다. 신뢰주체는 신뢰대상이 배신에 따른 차별이나 제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신뢰대상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게 된다고 본다.

(2) 지식 기반 신뢰

신뢰대상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기반을 둔 신뢰 유형이다. 즉, 신뢰대상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관한 예측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신뢰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신뢰대상의 행위가 예측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대상이 신뢰주체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신

30) Shapiro, Sheppard & Cheraskin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Debra L. Shapiro, Blair H. Sheppard, and Lisa Cheraskin, "In Theory: Business on a Handshake", vol. 8, Negotiation Journal (1992), 365-377 참조,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 28-33에서 재인용].

뢰대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삼는다. 또한 이와 같은 신뢰는 신뢰대상이 신뢰를 충실히 지켜왔다는 과거 경험에 의해서도 축적 가능하다. 즉, 반복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평판이 신뢰대상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고 신뢰를 형성한다.

(3) 일체감 기반 신뢰

가장 이상적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를 형성하는 유형으로 신뢰주체와 신뢰대상 사이의 일체감(identity)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일체감은 신뢰주체와 신뢰대상이 동일한 목표, 동일한 가치와 규범을 지닌 가운데 지리적, 사회적으로 인접하여 살아가면서 더욱 손쉽게 형성될 수 있다.

다. 각 유형의 비교[31)]

[표1] 신뢰의 생성 경로와 조건에 따른 유형 비교

학자	기준	유형	근거	근거의 예	신뢰 구축방안	특성
Zucker (1986)	신뢰 생성 경로	과정 기반	반복되는 교환관계	• 평판 • 브랜드(brands) • 호혜제공 (gift-giving)	• 신뢰에 대한 투자	• 다른 주체와 대상 사이 신뢰로 이전 불가
		귀속성 기반	개인이나 집단의 귀속적 특성	• 동일한 가족배경 (가문,혈족) • 인종적, 성적 동질성	• 본연적 · 본성적으로 부여	• 투자나 의도적인 신뢰 생성, 이전이 불가 • 지역주의나 인종차별 등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위험성 내재
		제도 기반	공식적인 사회제도	•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혹은 사회 일반적으로 신뢰를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제도와 조직(전문가 집단, 학교) • 기업 · 은행 · 정부 등	• 신뢰에 대한 투자, 구매	• 제도에 의한 신뢰 제공, 보증과 신뢰 주체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모두 필요
Shapiro, Sheppard &	신뢰 생성 조건	제재 기반	제재	• 법적 · 경제적 처벌 • 사회 · 심리적 처벌	• 반복적 상호작용	• 신뢰 대상의 제재에 대한 인식과 신뢰

31) 출처: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 33과 권혁상 · 주효진 · 도운섭(주 15), 위의 논문, 50.

						대상의 인식에 대한 신뢰 주체의 인식이 모두 필요 • 감시, 제재비용 소요
Cheraskin (1992)	/방안	지식 기반	신뢰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	• 행위의 일관성	• 규칙적인 의사소통 • 다양한 정보수집	• 정보수집비용 소요
		일체감 기반	신뢰주체와 신뢰대상 간의 일체감	• 소속감 • 집단의식	• 공통의 목표설정 • 공동명칭의 부여 • 지리 · 사회적 인접성 확보 • 공통의 가치 · 규범 형성	• 감시, 제재, 정보 수집 비용의 최소화 가능 •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

라. 유형 사이의 관계

제재 기반 신뢰는 반복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정 기반 신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32] 지식 기반 신뢰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평판이 있는 경우 신뢰 대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과정 기반 신뢰와 긴밀히 연결될 뿐만 아니라,[33] 제재 기반 신뢰와 상호보완적이다.[34] 귀속성 기반 신뢰는 과정 기반신뢰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35]

이처럼 위 각 신뢰 유형은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거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신뢰 유형화의 실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즉, 신뢰 유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매우 근소하거나 또는 질적 차이를 갖는 분절적 차이를 가지 않는 연속체적 수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36]

그러나 위와 같은 유형화를 통해 신뢰의 다양한 유형을 망라하거나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생성되는 다양한 경로 또는 과정, 조건 또는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신뢰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각 유형에 맞는 신뢰 증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유용성이 있다.

32)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 30 참조.
33)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 32-33 참조.
34) 권혁상 · 주효진 · 도운섭(주 15), 위의 논문, 48 참조.
35)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 31 참조.
36) 권혁상 · 주효진 · 도운섭(주 15), 위의 논문, 50 참조.

2. 신뢰의 대상에 따른 유형화[37]

신뢰대상은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제도나 체제, 사회 모두가 될 수 있다. 신뢰는 대인간, 조직간, 개인과 조직간, 개인과 사회제도 간에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가.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 또는 개인적 신뢰(personal trust)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불특정 다수, 즉, 구체적 정보가 없는 상대에 대한, 즉 인간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로 정의되는 '일반신뢰(general/generalized trust)'와 특정의 상대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의존하는 '정보의존적 신뢰(information-based trust)',[38] '구체적 신뢰',[39] '사적신뢰'[40] 또는 특수신뢰로 구분된다.[41]

낯선 사람들과 접촉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호의존적 사회에서는 일반신뢰가 강조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덕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한다.[42]

---

37) 원숙연은 이와 같은 분류를 신뢰의 '대상적' 다차원성 측면으로 다루고 있으나,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원숙연(주 12), 위의 논문, 66 참조].
한편, 배일섭에 의하면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Stephen M. R. Covey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신뢰 유형(차원) 이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다른 사람의 신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기신뢰'를 모든 신뢰의 근본으로 제시하여, 신뢰를 '자기신뢰' 이외에 '대인(관계)신뢰', 기업,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교육기관, 팀, 소조직 등 모든 종류의 조직이 만들어 내는 신뢰로서 '조직신뢰', 조직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믿음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시장신뢰', 사회 전체적 신뢰를 의미하는 '사회신뢰'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배일섭,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비합리적 결정을 중심으로", 2010 한국정책학회 하계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2010), 24-25 참조].

38) '일반신뢰'와 '정보의존적 신뢰'는 山岸俊男의 분류와 정의에 따른 것이다[山岸俊男(김의철·박영신·이상미 번역),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교육과학사 (2001) (信頼の構造: こ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1998) 참조].

39) 조기숙 · 박혜윤, "신뢰의 측정: 실험과 설문조사의 차이", 한국정치학회보 38권 2호 (2004. 6.), 98-100 참조.

40) 박희봉 외 공저,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 요인 –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제3호 (2003), 207 참조.

41) 특수신뢰는 특정의 가까운 친족과 동료 등에 대한 신뢰로서 연고집단에 대한 신뢰가 하나의 예이다. 연고집단에 한정된 협소한 범위의 신뢰는 신뢰의 사회전반으로의 확대와 일반화를 저해하는 일종의 '내집단의 족쇄(fetters of in-groups)'로 작용하여 사회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강내원,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에 관한 개념적·방법론적 고찰",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2권 제1호,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상반기), 4-5 참조.

42) 강내원(주 41), 위의 논문, 5 참조.

나. 제도신뢰(institutional trust), 원칙 또는 질서신뢰[43]

제도신뢰는 구체화된 제도로서 국가기관이나 시장조직 등 특정한 제도나 체제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44] 원칙 또는 질서신뢰는 사회전체의 원칙이나 질서에 대해 개인이 갖는 신뢰를 각각 의미한다.

제도신뢰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제도의 중요 특성, 즉, 핵심적 구성요인은 신뢰대상인 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능력이나 효과성, 효율성이 특히 강조되는 제도가 있는 반면, 그보다는 성실성과 일관성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보다 강조되는 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리적 선택에 의한 이윤극대화를 위한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자유경쟁 시장제도는 능력이나 효과성 또는 효율성이 성실성이나 형평성 등에 비해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복지제도에서는 효율성이나 성과보다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관념이 지도적 가치일 가능성이 높다.[45]

이 연구보고서가 다루고자 하는 사법신뢰는 제도신뢰의 일종으로서 사법제도 고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특성에 따라 다른 제도나 조직과 차별화되는 구성요인이 그에 대한 신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신뢰의 의미와 측정방법에 관한 개관을 설명하는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

43) 제도신뢰는 Stephen M. R. Covey가 신뢰의 5가지 차원 중 하나로 주장하는 '조직신뢰'와 '시장신뢰'를 결합한 개념에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원칙 또는 질서신뢰는 '사회신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주 37) 참조].

44) 제도신뢰란 결국 제도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당국에 대한 신뢰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를 들어 사법신뢰는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권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도균, "집합행동, 신뢰, 법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2013. 9.), 585 참조].
한편, 제도신뢰의 일종인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신뢰대상인 정부의 의미 또는 범위를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 정권(regime)과 공직자(authorities) 등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는데[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1965) 참조, 박종민 · 배정현(주 5), 위의 논문, 119에서 재인용], 이런 견해를 제도신뢰 전체로 확장하면, 제도신뢰는 특정 제도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범주와 한계로서의 '제도공동체', 제도의 '권위 또는 역할구조와 정당화원리', 제도를 담당하는 '당국 또는 권위나 역할의 현직자'에 대한 신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제도신뢰는 이를 접하는 개인에 따라 신뢰의 대상이나 범위, 구체적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특성은 제도신뢰를 일반화하여 논의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45) 이처럼 제도가 가치체계에 따라 다른 규범을 갖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Valerie Braithwaite, "Communal and exchange trust norms: Their value base and relevance to institutional trust", in Trust and governance (edited by Valerie Braithwaite and Margaret Levi),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8), 46–74 참조, 이숙종(주 1), 위의 논문, 99에서 재인용. Valerie Braithwaite에 의하면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 등의 안전가치를 중시하면 교환규범에 따라서,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존중하는 조화가치를 중시하면 공동체규범에 따라 신뢰를 갖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나 연방준비은행(FRB)에 대한 신뢰는 예측성, 일관성과 같은 교환규범에 따라, 가정법원이나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는 공동체규범에 따라 신뢰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다.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관계[46]

신뢰대상에 따른 여러 유형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사이의 관계설정이다. 현재까지의 학계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복잡성의 증가로 대인신뢰를 담보했던 친숙함이나 동질성이 약화되는 상황적 변화로 권위, 각종 제도, 화폐, 법률체제 등 제도적 안전장치에 기반을 둔 제도신뢰가 대인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 또는 여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한다.[47]

그러나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관계는 제도신뢰 증진을 위한 대인신뢰의 역할 측면에서 오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치 · 제도적 성과가 대인신뢰 수준을 결정한다는 제도론자들(Marc J. Hetherington, James S. Coleman; Partha Dasgupta 등)[48]과 달리 문화론자들은 대인신뢰가 제도신뢰와 정부신뢰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Ronald Inglehart, Francis Fukuyama, Robert D. Putnam 등).

두 가지 신뢰 사이 관계에 관한 제도론자와 문화론자의 논의는 많은 후속연구로 이어졌는데, 유럽 9개국 대상 의식조사인 유로 바로미터(Euro Barometer)[49] 자료를 이용하여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사이에 긍정적 상관성을 밝힌 연구,[50]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토대로 대인신뢰가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51]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미국 정치학자인 Ronald

---

46) 박희봉 · 이희창,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4호 (2009. 12.), 109-112의 논의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47) 원숙연(주 12), 위의 논문, 66-67 참조.

48) 제도론자는 신뢰를 정치제도의 내생변수로 가정한다. 신뢰를 원인이 아니라 제도성과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성과가 좋은 제도는 대인신뢰를 발산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제도는 사람들에게 회의와 불신을 가져온다고 본다[박희봉 · 이희창(주 46), 위의 논문, 109 참조].

49) 후술하는 제5장 제4절에 개략적 소개가 있다.

50) Max Kaase, "Interpersonal Trust, Political Trust and Non-institutionalis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22(3), West European Politics (1999), 1-21 참조, 박희봉 · 이희창(주 46), 위의 논문, 110에서 재인용.

51) John Brehem & Wendy Rahn,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41(3),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97), 999-1023 참조, 박희봉 · 이희창(주 46), 위의 논문, 110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대인신뢰가 제도신뢰, 특히 정부기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으로는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6 자료 중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 유시용,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와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설문항목을 기본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한 박희봉 · 이희창(주 46), 위의 논문 등 다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위 각 연구는 대인신뢰 중 일반신뢰 이외에 사적신뢰 역시 제도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세계가치관조사(WVS) wave 6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외에 미국,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대인신뢰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류태건, "한국 · 일본 · 미국 · 독일의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수준과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3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10.)이

Inglehart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뢰와 같은 개인과 사회적 가치가 경제성장이나 안정된 민주정부 등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신뢰가 인관관계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정치인과 관료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결국 정부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의 것이다.

그러나 높은 대인신뢰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52] 중국의 경우 1990년과 1997년의 조사에서 높은 대인신뢰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민주주의 변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고, 신뢰는 민주주의 변혁을 설명하는 변수라기보다 민주주의 공고화의 성공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인신뢰 중 사적신뢰는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신뢰는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53]

비록 아직 통계적 검증이 마쳐져 확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관계에 관한 이와 같은 논의는 제한적이나마 제도신뢰의 일종인 사법신뢰의 증진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문화론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경험적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인신뢰, 특히 일반신뢰의 증진은 사법제도에 대한 관심과 절차참여를 증가시키고, 이는 사법제도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실성을 제고하여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대상의 특성 중 하나인 사법제도의 '능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개선하여 이것이 사법에 대한 신뢰수준 증진 또는 적어도 일정 수준의 유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있다. 이 경험적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역시 일반신뢰는 물론이고,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이웃과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신뢰(기타특수신뢰)는 정부신뢰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Ronald Inglehart,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Ronald Ingleha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박희봉 · 이희창(주 46), 위의 논문, 110-111에서 재인용.

53) 박희봉 · 김동현, "스칸디나비아 3개국 및 동아시아 3개국의 정부신뢰 영향요인 비교", 한국행정연구 제23권 제2호 (2014), 22-24 참조.
한편,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사이에 일반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으나, 정치적 이행기 또는 정치변동을 겪는 국가의 경우에는 대인신뢰 수준의 변화와 제도신뢰의 변화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는 경험적 연구로는 장수찬, "사회자본과 행정: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 -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8권 1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2002) 참조.

V. 신뢰와 불신의 관계[54)]

1. 논의 배경

신뢰가 없는 상태가 불신이고 불신이 없는 상태가 신뢰인가(신뢰와 불신의 단일 차원성 또는 대칭성), 아니면 신뢰와 불신은 별도의 개념요소와 결정요인을 갖는 독립적 개념인가의 문제가 있다.

신뢰와 불신을 대칭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불신의 감소가 곧 신뢰의 증진을 의미하므로 신뢰 증진이 목표인 경우 불신의 감소를 위한 노력만으로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신뢰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만일 두 개념이 결정요인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독립적 개념이라면 불신의 제거가 곧바로 신뢰의 증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불신의 감소와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신뢰가 높은 상태가 곧 불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높은 신뢰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다.

신뢰와 불신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효과적인 신뢰 증진을 이루기 위한 정책방향과 수단을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2. 기존 연구와 새로운 견해의 등장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신뢰와 불신을 대칭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불신을 '상대방이 나에게 이로운 행위보다는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혹은 '특정 개인의 능력 혹은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 '상대방이 가진 의도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취약성을 수용하지 않는 심리상태'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55)] 이 견해는 신뢰가 낮다는 것은 불신이 높은 것을, 반대로 신뢰가 높다는 것은 불신이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본다. 이 견해는 신뢰와 불신의 근거가 같은 것으로 보는 점에서 신뢰의 근거와 구별될 수 있는 불신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

54) 박통희(주 12, 1999. 여름호), 위의 논문, 10-12 부분과 박통희(주 12, 1995. 5.), 위의 논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55)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 43-48 참조.

이와 대비하여 신뢰와 불신을 별개의 독립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 중에는 신뢰를 감정, 말, 행동과 결정 등을 포함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 기대(confident positive expectations)로, 불신을 상대방 행위에 대한 부정적 기대(confident negative expectations)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56] 이런 견해는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서로 별개 현상으로서 동시에 존재하는 경향을 지닌 것이 밝혀지고, 특정 대상에 대한 사랑과 증오의 공존, 합리적 효용계산에서 이익과 손해에 대한 기대의 공존성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논리적 기초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뢰는 희망(hope), 믿음(faith), 확신(confidence), 보장(assurance), 자발성(initiative)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높은 신뢰는 이런 요인들이 높은 경향을, 신뢰가 낮다는 것은 이런 경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신은 두려움(fear), 회의(skepticism), 냉소(cynicism), 주의(watchfulness), 경계(vigilance) 등과 같은 감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고 있고, 불신이 높다는 것은 이런 감정들이 지배적인 것을, 불신이 낮다는 것은 이런 경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57]

3. 공존 가능성

신뢰와 불신이 독립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위에서 살펴 본 상반된 감정 또는 태도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58]의 유추와 함께, 신뢰가 복합적 또는 다중적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관계의 다중성은 신뢰 개념의 다차원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예컨대 능

---

56) Roy J. Lewicki, Daniel J. McAllister & Robert J. Bies, "Trust and Distrust: New Relationships and Realities", vol. 23, no. 3,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98), 439 참조.

57) 다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인신뢰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서, 신뢰와 불신의 형성기반에는 비대칭적인 요인(즉, 신뢰와 불신을 결정하는 요인이 서로 다른 경우)과 대칭적인 요인(위 요인이 같은 형성기반의 양 극단인 경우)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론(試論)적 연구로는 최상진 외 공저(주 29), 위의 논문, 8-11, 16 각 참조.
또한 우리나라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서, 복수의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개별 국민의 가중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 결정요인이 개별 국민에게 신뢰요소로 작용하고 불신요소로 작용하는 정도가 달라, 결국 신뢰의 원인요소와 불신의 원인요소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로는 이종수,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집 제32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73-78 참조. 이런 결과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신뢰와 불신의 공존가능성을 시사하는 견해로 연결된다(이종수, 위의 논문, 78 참조).

58) 즉,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서로 별개 현상으로서 동시에 존재하는 경향에 관한 연구, 특정 대상에 대한 사랑과 증오의 공존 연구, 합리적 효용계산에서 이익과 손해에 대한 기대의 공존성에 대한 연구 등.

력은 신뢰하지만 개방성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과 같다.

신뢰와 불신의 독립적 개념을 긍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양자의 공존 방식은 고신뢰-고불신, 고신뢰-저불신, 저신뢰-고불신, 저신뢰-저불신의 네 가지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양자가 모두 높은 상태에서는 관계가 고도로 분화되면서 제한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포착된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양자가 모두 낮은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접촉위주로 제한된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낮은 신뢰와 높은 불신의 상태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신뢰가 높고 불신이 낮은 상태에서는 상호의존관계가 증진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할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59]

4. 통합가능성과 개념적 독립성

가. 공존하는 신뢰와 불신의 통합가능성

신뢰와 불신의 공존은 내적인 비일관성과 인지적 불화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인지불화와 이로 인한 긴장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단일차원으로 통합되고 균형점을 찾게 된다고 볼 수 있다.[60] 항상성 유지를 위한 인지불화의 해소과정에서 신뢰와 불신이 단일차원으로 통합되고 균형점에 이르게 되고,[61] 이 균형점에서 특정한 신뢰 또는 불신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신뢰와 불신은 하나의 균형점으로 수렴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공존은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접촉하는 타인과 사이처럼 가변적인 사회관계에서는 통합보다 분리(partitioning)가 훨씬 용이하고 경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리 방향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이런 가변적 사회관계에서는 잠재적 손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통해 대응할 개연성이 더욱 크다. 사안이 중요할수록 균형에 의한 항상성 유지의 역학보다는 불균형을 유지한 채로 분리에 의해

59) Roy J. Lewicki, Daniel J. McAllister & Robert J. Bies(주 56), 위의 논문, 444-447과 김우택 · 김지희(주 9), 위의 논문, 46-48 각 참조.

60) 박통희(주 12, 1999. 여름호), 11 참조.

61) 이런 균형은 인지 주체가 인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의 발생 원인을 자신에게 귀인 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체로 발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을 정보부족으로 다른 사람보다 비싼 값에 사고는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색상이 더 곱다고 생각하여 인지불화를 해소하는 경우처럼 다른 해소방법이 없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는 가족처럼 가변성이 없는 자연적 관계에는 인지불화 해소가 통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박통희(주 12, 1999. 여름호), 11-12 참조].

인지불화를 관리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영역별로 분화되어 신뢰와 불신이 공존하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나. 개념적 독립성

신뢰와 불신의 공존 가능성에 더하여, 신뢰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희망, 성실, 자신감, 보장과 같은 긍정적 감정 또는 태도를 동반하는 반면, 불신은 두려움, 회의, 냉소, 경계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 또는 태도를 동반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현상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뢰와 불신은 독립적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신뢰가 크다는 것은 감정과 태도의 긍정적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하지만, 신뢰가 적다는 것이 곧바로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동반하는 긍정적 성향이 약하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신이 크다는 것은 감정과 태도의 부정적 성향이 강한 것이지만, 불신이 적다고 하여 곧바로 신뢰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신이 동반하는 부정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나타낼 뿐이라는 것이다.[62]

5. 신뢰와 불신의 기능과 동태적 관계[63]

가. 순기능과 역기능의 공존

(1) 신뢰의 역기능 문제

흔히 신뢰는 긍정적이고 장려되어야 할 것, 그리고 불신은 부정적이고 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신뢰의 긍정적 기능은 미국 정치학자이자 역사철학자인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나 역시 미국 정치학자인 퍼트남(Robert D. Putnam)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으나,[64]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사회적 관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감소 측면

62) 박통희(주 12, 1999. 여름호), 12 참조.
63) 박통희(주 12, 1999. 5.), 13-16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64) 일반신뢰와 국가기관신뢰가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요소이고, 일반신뢰가 소득은 높이고 부패는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경험적 연구로는 박희봉 외 공저, "신뢰 유형별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정부학회 (2012. 3.) 참조.

에서 합리적 예측에 의한 문제해결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신뢰가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관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합리적 예측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신뢰가 존재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계속 이루어지지만 신뢰가 없는 경우에 사회는 원활히 돌아가기 어렵다. 즉, 신뢰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신뢰와 불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제로, 신뢰는 불신의 증가와 무관하게 증가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신뢰의 증가는 일정한 정도의 불신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신뢰만의 증가나 불신만의 증가는 이롭기보다는 해롭다는 견해가 있다(Niklas Luhmann). 의식적으로 불신이 억압된 사회적 관계에서는 신뢰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게 되어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의심스러운 행동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기, 횡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도(Mark Granovetter, Susan P. Shapiro) 신뢰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는 견해이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신뢰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악용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신뢰는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데 위험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신뢰에도 역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불신의 순기능 가능성

불신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과도한 정보수집비용과 감시, 제재비용을 수반하여 거래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키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신뢰할만한 증거를 무시하는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타적이거나 너그러운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것을 위선이나 계산된 사술이라고 생각하고 신뢰의 경험적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신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거래비용 상의 여러 가지 장점이 상당 부분 소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불신을 신뢰와 분리가능 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신뢰에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순기능 이외에 역기능이 존재하는 것처럼 불신에도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역기능 이외에 순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불신도 신뢰와 마찬가지로, 비록 그 방향이나 방법은 다르더라도 사회적 관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불신은 의혹, 감독 그리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 개재된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

다고 한다. 또한 불신은 추가로 수집된 정보나 지식,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협동 또는 협력[65]을 통해 신뢰를 새롭게 생성시키거나 소실되었던 신뢰를 회복시키는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66]

나. 신뢰와 불신의 동태적 관계

앞에서 본 것처럼 신뢰는 불리한 결과에 대한 취약성 또는 책임과 관련이 있다. 독일 사회학자인 Niklas Luhmann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일수록 위험이 크다면, 더 복잡한 체계는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한 반면에 위험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높여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불신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67] 복잡한 사회체제에서는 불신의 증가가 더 큰 신뢰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Herbert A. Simon은 조직의 기능과 관련하여, 환경과 문제의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 등과 인간의 인지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비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와 체계가 제도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한계를 초월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직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개인의 기술 · 지식 · 정보와 기억력 · 계산력 등의 한계와 조직과 개인 간의 목표의 불일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조직의 합리성은 구성원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불신과 의도 또는 목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조직행동에 제한을 가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 비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은 상당 부분 불신의 동태적 변화를 관리하는데 투여되는 것이고, 이것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관리의 중점이 신뢰를 증진시키는 측면보다 불신을 관리하는 측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68]

---

65) 앞에서 본 것처럼 협동이나 협력은 신뢰 자체 또는 그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유사개념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주 15), (주 16) 내용 각 참조], 신뢰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

66) 다만, 사람들은 일단 상대를 불신하게 되면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Diego Gambetta, "Can we trust?" (Diego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Basil Blackwell (1988), 213-237].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불신이 생긴 후에는 신뢰 회복을 위한 기회조차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로는 나은영·민경환,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1998) 참조.

67) Niklas Luhmann, Trust and Power,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Inc. (1979); Niklas Luhmann,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Diego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Basil Blackwell (1988), 94-107 각 참조, 각 박통희(주 12, 1995. 5.), 위의 논문, 14에서 재인용.

불신 관리를 통한 조직의 합리성과 효과성 제고에 관한 논의를 불신의 제도화, 법제화, 공식화 또는 표준화를 통한 신뢰 확산 방안에 유추 적용하는 견해가 있다.[69] 신뢰와 불신 사이에 동태적 관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불신의 제도화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래의 공정성 보장을 강화해주어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나아가 제도화된 절차적 과정에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습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당사자 사이 관계적 신뢰가 증진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불신의 제도화는 객관성, 절차적 정의, 사회적 정당성을 제고시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VI. 신뢰측정과 증진정책에 대한 시사점

원숙연은 비록 조직 내 상사의 직속부하에 대한 대인신뢰에 한정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신뢰에 인지, 감정과 행동이라는 여러 구성차원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이론적, 개념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신뢰에는 주체 측면에서 이와 같은 다차원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뢰의 각 구성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신뢰대상의 특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70]

신뢰가 여러 구성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다면,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각 구성차원별 신뢰의 측정이 필요하고 각 구성차원

---

68) Herbert A. Simon(주 21), 위의 책 참조, 박통희(주 12, 1995. 5.), 위의 논문, 14-15에서 재인용.

69) 불신을 전제로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신의 존재를 사회적 실체로 인정하고 신뢰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관계적 제재(societal sanctions)를 제도화, 법제화하여 불신에 대응하고자 하는 입장이다[박통희(주 12, 1995. 5.), 위의 논문, 16-18 참조].

70) 원숙연은 대인신뢰에 관한 논의를 정부신뢰 등 제도신뢰로 확장시키는 문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조직 내 대인신뢰를 대상으로 한 이상의 논의의 기본적인 접근방식과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의 시사점은 정부신뢰 등 제도신뢰에도 대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원숙연(주 12), 위의 논문, 79 참조].
한편 박통희는 이해관계적 인지의 차원(인지적 차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대상의 특성은 능력, 일관성, 개방성, 배려(호의), 집단적 동질성, 가치 · 이념적 동질성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반면, 사회관계적 감정의 차원(감정적 차원)의 신뢰의 경우에는 그 역순으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고 있는데[박통희(주 12, 1999. 여름호), 위의 논문, 8-10 참조], 이와 별도로 이루어진 원숙연의 실증분석 결과는 비록 조직 내 대인신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원숙연(주 12), 위의 논문, 75 〈표3〉 '신뢰의 차원별 회귀분석결과' 참조].

에 가장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영향요인을 통제, 관리하려는 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신뢰를 단순한 하나의 차원으로 취급하여 이를 전제로 측정도구를 구성할 경우 현상의 일부분만을 설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뢰의 구성차원의 다층성과 영향요인의 차별성에 관한 논의는 전체적인 신뢰의 정도(수준)만이 아닌 신뢰의 개별 종류나 차원에 대한 세부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신뢰의 영향요인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신뢰 증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어느 방향으로 기울일 것인가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71]

더욱이 신뢰와 불신 사이의 공존가능성과 개념적 독립성 문제, 신뢰의 역기능과 불신의 순기능의 존재 가능성은 어느 대상에 대한 일의적 신뢰수준을 측정한다거나 파악한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신뢰수준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관계의 다중성과 이에 따른 신뢰의 다차원성은 물론이고, 신뢰와 불신 사이의 공존가능성, 역기능의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뢰를 높이고 불신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인 경우, 신뢰와 불신을 같은 차원의 반대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면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는 곧 불신을 감소시키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불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 다만, 고불신은 저신뢰로, 저불신은 고신뢰로 보기 때문에 불신의 역기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증진하여야 한다. 불신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불신의 억압(즉, 신뢰의 증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즉, 신뢰의 역기능)을 막으면서 불신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은 신뢰와 불신의 최적 조합을 찾는 노력에 모아진다.

한편 신뢰와 불신이 상이한 독립적 개념으로 공존이 가능하다면 신뢰가 증진되면서도 동시에 불신이 높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불신, 더욱 정확히는 불신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 신뢰의 역기능을 줄이면서 불신의 순기능을 살리는 신뢰와 불신의 기능적 공존을 위한 대안의 폭은 신뢰와 불신을 같은 차원의 반대개념으로 보는 경우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신뢰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통제가 필연적으로 불신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 요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뢰

71) 원숙연(주 12), 위의 논문, 78-81 참조.

와 불신이 서로 다른 독립적 개념으로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의 다중성과 신뢰의 다차원성에 비추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동태적인 관계 역시 신뢰 수준의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뢰와 불신 사이의 개념적 독립성과 공존가능성, 신뢰와 불신 사이의 동태적 관계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확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보다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2절 사법신뢰의 의미와 측정방법 개관

I. 사법신뢰의 의미

1. 사법신뢰의 개념

앞에서 다양한 신뢰개념을 살펴보았으나 신뢰는 결국 신뢰대상인 개인 또는 조직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72] 국가기관,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올바르고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그런 일을 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견해도[73] 이런 관점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엇이 올바르고 공정하며 무엇이 불공정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해석과 국민들이 인식한 정부의 실제적 기능수행 사이의 일치 여부에 의존한다는 견해 역시 비슷한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74] 국가기관의 하나인 법원, 더

72) Karen Jones, "Trust as an Affective Attitude", vol. 107, no. 1 Ethics (1996), 5-8 참조.

73)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1965) 참조,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2013), 21와 김우철(주 5), 위의 논문, 2에서 각 재인용.

74) Geert Bouckaert and Steven Van de Walle, "Comparing measures of citizen trust and user satisfaction as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difficulties in linking trust and satisfaction indicators", vol. 69, no. 3,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2003), 336-339 참조.
위 논문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측정이 정부의 실제 governance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즉, 만족도는 측정 자체가 어려운 항목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부서비스를 전제로 하여 그 내용에 의존하는 것이고, 신뢰는 측정하기는 비교적 쉽지만 좋은 governance와의 관련

크게는 여러 제도 중 하나인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사법제도가 신뢰주체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고유한 기능을 성실히 잘 수행하리라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대'를 사법에 대한 신뢰라고 이해하기로 한다.[75]

2. 사법신뢰의 체계상 지위

사법신뢰는 신뢰의 대상에 따른 유형화 중 제도(체제)신뢰의 한 형태에 속한다. 따라서 앞서 신뢰일반에 관한 논의 중 제도나 체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은 사법신뢰에 관한 논의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뢰 형성의 근거로 작용하는 신뢰대상의 특성 중 '호의(benevolence)'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 요소는 앞에서 본 것처럼 신뢰대상의 '인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제도신뢰의 일종인 사법신뢰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사법제도는 신뢰주체인 일반 국민의 개별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등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처럼 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부여된 공익적 목적을 제도 이용자인 신뢰주체에 대한 '호의'로 유추할 수 있다.[76]

또한 신뢰 생성의 과정과 조건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 개인과 집단의 귀속적 특성을 전제로 하는 귀속성 기반 신뢰나 신뢰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일체감을 근거로 하는 일체감 기반 신뢰는 성질상 사법신뢰와 같은 제도신뢰에서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법제도 자체가 신뢰 대상인 사법신뢰에서 제도 기반 신뢰는 신뢰의 근거와 대상이 전

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뢰는 좋은 governance를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governance를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지표 중 하나로서, 사회계층(hierarchies), 네트워크와 시장의 원활한 가능과 경제, 정치, 문화, 국제적 요인 등 외부요인의 존재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75) 이상원,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2012), 310-311 참조.
다만, 제도신뢰의 일종으로서 사법신뢰 개념이 포괄할 수 있는 대상 또는 범위의 다양성이나 모호성에 대해서는 (주 44)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은데, 이에 관한 보다 심층적 논의와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76) 이상원은 국가기관이 가지는 의사(intention)의 정직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제도의 경우 '법원이 공정성(impartiality)을 기초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을 한다는 믿음'으로 구체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이상원, 위의 논문, 311-312), 이 역시 사법제도가 신뢰는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추된 또는 의제(擬制)된 호의(benevolence)가 요구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제도신뢰를 제도를 시행하는 당국 또는 현직자인 공무원에 대한 신뢰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주 44) 참조], 여기서의 호의는 사법제도의 권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상대방인 국민에 대해 가지는 '호의'로 이해할 수 있다.

적으로(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근거는 전적으로 사법제도 자체로부터 부여, 제공될 뿐이며 다른 공식적인 제도나 조직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고 보는 경우) 혹은 적어도 상당 부분이 중첩되어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3.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의 특성과 평가 지표

가. 사법신뢰 형성의 구성요인

일반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대상의 특성에는 능력(성과) 이외에 호의, 성실성과 일관성, 개방성 등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제3장 제1절 Ⅲ.항).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사법제도의 능력(competence)과 윤리성(ethics) 또는 헌신(commitment)을 강조하는 견해[77]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기관인 사법부에 부여된 권한은 국민의 정치적 위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위임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게 행동하리라는 기대,[78] 즉, 사법제도의 윤리성과 헌신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제도가 고유한 기능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79] 즉, 사법제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80]

한편, 미국에서의 경험적 연구를 기초로, 국민이 법원 등 사법제도 관련 국가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즉, 법원 등의 결정이 이전의 경험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는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유와, 결정을 내리는 법원 등의 '목적이나 동기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규범적 또는 비도구적 관점에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81] 이

77) 이상원(주 75), 위의 논문, 311-314 참조. 여기서의 '윤리성'과 '헌신성'은 내용상 일반적인 신뢰 구성요인 중 '호의, 성실성, 일관성과 개방성'의 변용(變容)이라고 볼 수 있다.

78) 이상원(주 75), 위의 논문, 312 참조. 이는 구체적으로 '공정성(impartiality)에 기초한 재판'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다고 한다.

79) 이런 기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재판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다양성(impartiality)을 반영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다고 한다[이상원(주 75), 위의 논문, 312 참조].

80) 제도신뢰를 제도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의도에 대한 기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능력에 대한 기대'는 제도가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기대를, '의도에 대한 기대'는 맡겨진 책무와 책임을 수행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보다 타자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김상돈·전계영, "한국인의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 분석", 한국사회 제8집 2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07), 174-175 참조]. 제도신뢰에 대한 이런 견해 역시 앞서 본 견해들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1) Tom R. Tyler, "Trust and Law Abidingness: A Proactive Model of Social Regulation", 81 Boston

런 견해 역시 법원이 합리적 계산과 예측에 따라 신뢰주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리라는 능력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그런 결정에 이른 목적과 동기가 공정하고 성실하리라는 기대가 있을 때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82]

나. 구성요인의 구체적인 평가 지표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요인을 대표하는 지표를 측정하여 '신뢰'라는 추상적 가치의 수준을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하고자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사법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들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어서 측정 기준이 되는 지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에 미국의 국립 주법원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와 법무부 사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의 주관 하에 사실심법원 업무기준 위원회(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가 작성한 사실심법원 업무기준(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TCPS)[83]을 사법신뢰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84] 즉, 위원회는 5개 분야에서 사실심법원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22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5개 분야와 각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85]

University Law Review (2001), 365 참조, 김도균(주 44), 위의 논문, 588-590에서 재인용.
이 견해에 의하면, 국민들은 법원 등 사법제도 관련 국가기관이 국민의 필요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신경 쓰며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배려하고 고려한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공정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 등의 결정에 대해 신뢰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며 따른다고 한다. 특히 동기에 대한 신뢰는 그 결정이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와는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결정에 대한 국민의 존중과 복종에, 그리고 결정에 따라야겠다는 의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더 강한 안정성을 갖게 된다고 한다. 즉, 법원 등 사법제도 관련 국가기관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정하려고 노력했다고 국민들이 믿거나, 법원 등이 당사자들의 필요에 관심을 쏟고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당사자들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을 때, 설령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원 등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고 한다.

82) 이런 측면에서 이 견해는 (주 80)의 견해와 같은 맥락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83) TCPS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측정방법 개요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에 연결된 BJA가 작성한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With Commentary' 참조(이하 'Commentary'라 한다).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Court Performance Standards with Commentary",
https://www.ncjrs.gov/pdffiles1/161570.pdf (2018. 12. 2. 확인)
다만, 사실심법원의 성과를 실제로 평가하기 위해 TCPS의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상세한 지침에 대해서는 NCSC가 제공하는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and Measurement System Implementation Manual' 참조.

84) 이 부분 논의는 이상원(주 75), 위의 논문, 313-314 부분을 인용 또는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2] TCPS 5개 분야와 22개 세부기준

수행 영역 (performance area)	세부기준(performance standard)
① 법원에 대한 접근성 (Access to Justice)	①-1. 절차 공개(public proceedings)
	①-2. 시설의 안전성, 접근가능성과 편의성(safety,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①-3. 효과적 절차 참여권 보장(effective participation)
	①-4. 친절, 응답성과 존경(courtesy, responsiveness and respect)
	①-5. 감당할 수 있는 접근비용(affordable costs of access)
② 신속성과 적시성 (Expedition and Timeliness)	②-1. 적시의 적정한 사건 처리(case processing)
	②-2. 정보와 사법서비스 제공, 필요비용 지출의 적시성과 신속성, 계획성 (compliance with schedule)
	②-3.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과 절차운영(prompt implementation of law and procedure)
③ 평등, 공정, 정합성 (Equality, Fairness and Integrity)[86]	③-1. 공정하고 믿을만한 사법절차(fair and reliable judicial process)
	③-2. 대표성 있는 배심원(juries)
	③-3. 비합리적 차별이 없고, 사건의 성질과 특성에 상응하는 법원 결정과 행동(court decisions and actions)
	③-4. 명료성과 일관성(clarity)
	③-5. 법원 결정의 집행에 대한 책임성(responsibility for enforcement)
	③-6. 법원 결정 등의 정확한 기록과 보존(production and preservation of records)
④ 독립성과 책임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④-1.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예양(禮讓)의 조화(independence and comity)
	④-2. 공공 자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for public resources)
	④-3. 합리적 인력 운용과 정책(personnel practices and decisions)
	④-4. 공중에 대한 교육 제공(public education)
	④-5.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response to change)
⑤ 국민의 신뢰 (Public Trust and Confidence)	⑤-1. 접근가능성에 대한 인식(accessibility)
	⑤-2. 신속, 공정, 정합성에 대한 인식(expeditious, fair and reliable court function)
	⑤-3. 법원의 독립성과 책임에 대한 인식(judicial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위 견해에 따르면 ⑤-1.은 ①을, ⑤-2.는 ②, ③을, ⑤-3.은 ④를 각 대상으

85) Commentary, 4-5.는 ②, ③은 사실심법원의 기본적인 분쟁해결기능(fundamental dispute resolution functions)을 강조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 분야는 사실심법원의 기관 내지 조직으로서의 기능(functions as organizations)과 다른 기관 내지 조직 및 일반 대중과의 관계(relations)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6) 법원의 절차와 결정이 법규와 윤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원의 결정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규·윤리 → 법원의 재판(절차·결정) →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가 모두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합성이 있는 법원은 믿을 수 있는 법원(reliable court)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상원(주 75), 위의 논문, 313-314 참조].

로 하는 인식이므로, 국민의 사법신뢰의 기준은 ①~④에 대한 국민의 인식(perception)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결국 사법신뢰 수준은 ①~④에 관한 (객관적) 평가지표를 기초로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perception)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중요한 것은 사법제도의 객관적 평가지표 자체가 아닌 이에 대한 인식이므로 이와 같은 인식을 유발하는 결정요인들이 파악되어야 한다.[87] 같은 맥락의 다른 한편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결국 사법에 대한 신뢰는 주로 인식조사(perception survey)에 의해 측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문화적 요소와 언어·맥락 요소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사실이다.[88] 따라서 특정시기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된 신뢰의 절대 수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신뢰수준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TCPS 세부기준을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과의 주된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법신뢰의 구성요인에 대한 측정 · 평가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TCPS 세부기준에 대한 측정 ·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89]

---

87) 국민들이 객관적 평가지표에 관한 정보를 쉽고,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런 정보가 믿을만하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Commentary, 20-21.에서는 법원의 성과가 좋고 의사소통이 효과적인 경우 국민의 신뢰는 증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국민의 인식이 왜곡되고 (법원의 성과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과 보다 효과적인 공보(public information)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88) 김영기, "한국어의 몇 가지 언어문화적 특성과 그 교육", 새국어생활 제7권 제1호, 국립국어원 (1997), 179-193; 김장이, "한국인의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 6.), 106-109; 이부영, "현대 한국인의 성격", 정신문화연구 15, 한국학중앙연구회 (1982), 75-86.

89) 다만, TCPS는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실심법원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제도와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에는 적절한 수정·변경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컨대, 배심제를 전제로 한 세부기준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표3] 사법신뢰 구성요인별 TCPS 세부기준의 분류

사법신뢰 구성요인		TCPS 세부기준
능력		②–1. 적시의 적정한 사건 처리
		②–2. 정보와 사법서비스 제공, 필요비용 지출의 적시성과 신속성, 계획성
		②–3.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과 절차운영
		④–3. 합리적 인력 운영과 정책
		④–5.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윤리성 · 헌신	호의[90]	①–4. 친절, 응답성과 존경
	성실성	③–1. 공정하고 믿을만한 사법절차
		③–3. 비합리적 차별이 없고, 사건 성질과 특성에 상응하는 법원 결정과 행동
		③–5. 법원 결정의 집행에 대한 책임성
		③–6. 법원 결정 등의 정확한 기록과 보존
		④–1.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예양의 조화
		④–2. 공공 자원에 대한 책임성
	일관성	③–4. 명료성과 일관성
	개방성	①–1. 절차 공개
		①–2. 시설의 안전성, 접근가능성과 편의성
		①–3. 효과적 절차 참여권 보장
		①–5. 감당할 수 있는 접근비용
		③–2. 대표성 있는 배심원
		④–4. 공중에 대한 교육 제공

II. 사법신뢰의 측정방법

1. 측정방법 개관[91]

신뢰를 개인의 단순한 심리적 기대나 효용계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90) (주 7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유추된 또는 의제된 호의를 의미한다.

91) 이 부분 논의는 김구,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비앤엠북스 (2006)의 해당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상호관계에 기초하는 집합적 속성으로 파악하는 경우,[92] 신뢰의 저하 또는 낮은 수준의 신뢰가 중요한 사회문제(social problem) 중 하나라는 사실이 보다 잘 드러난다.[93] 이 관점에서는 신뢰의 저하나 낮은 수준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결핍으로 해석하거나,[94] 또는 합리적 예측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의 징표로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95]

제도신뢰 중 하나로서의 사법신뢰는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제도 중 하나인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집합적 신뢰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그 수준이 낮거나 저하되는 현상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문제일 수밖에 없다. 사회과학 연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지식탐구 활동과 절차를 의미하므로,[96] 사법신뢰의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에는 다양한 유형과 접근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사법신뢰와 같은 추상적 가치에 대한 측정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인 추상적 개념을 직접 관찰, 측정이 가능한 경험적 지표로 전환하는 개념화와 조작화, 측정의 의미와 한계, 측정척도의 의의와 구성방법 또는 종류, 지수 및 지표와 관계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사법신뢰 측정에 사용되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에 대해 후술하는 논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각 항목별로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사법신뢰 측정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연구방법과 자료수집방법,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가 무엇인지도 개관한다.

---

92) 신뢰 개념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실체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제1절 Ⅱ. 1.의 나. (3)항 참조

93) 사회문제(social problem)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바람직한 상태에서 미달되거나 불만족스런 상태에 놓여 있는 현상이나 사건 또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김구(주 91), 위의 책, 15-17 참조].

94)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연혁과 개념에 대해서는 (주 8)의 내용 참조.

95) 제3장 제1절 Ⅴ. 5.의 가. (1)항 참조.

96) 김구(주 91), 위의 책, 12.

가. 연구방법의 유형과 접근법

(1) 연구목적에 따른 분류

(가)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

후속 연구를 위해 연구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려 할 때 사용하는 연구로서 형성적 연구(formulative research)라고도 부르며 주로 질적 자료(qualitative data)를 사용한다.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수준이 가장 낮은 형태이고 유용한 지식이 한정되어 있는 미개척분야에서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 이용된다.

구체적인 연구수행은 관련문헌 조사, 전문가나 경험자를 대상으로 의견이나 조언 청취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나) 기술적(記述的) 연구(descriptive research)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description)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형태로서, 현상을 계량적으로 기술하여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집된 증거의 신뢰성(reliability)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할 때 이용된다.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분석 연구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연구는 사회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기술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찰해야 할 변수가 무엇인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엇인지가 확정되어야 하고, 수집대상인 자료가 어떤 것인지 사전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획득을 위한 정교한 조사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후술하는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가 적합하다. 현상에 대한 모집단의 주요변수의 크기와 분포, 변수들 사이 관계와 정도, 방향 등 계량적 자료가 주된 조사대상이 된다.

(다) 설명적 연구(explanatory research)

탐색적 또는 기술적 연구결과의 축적을 토대로 어떤 사실 또는 사건(event)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과관계(causal relation)를 규명하거나, 이런 규명결과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즉, 어떤 사실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설명적 연구는 탐색적 연구를 통해 시작된 기술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심 변

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종국적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시점에 따른 분류

(가) 횡단면적 연구(cross-sectional research)

특정 시점에서 여러 연구대상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상이한 집단, 즉,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 상이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표본 사이의 특성 차이를 비교·분석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이 연구는 대부분 위에서 설명한 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짧은 시간에 쉬운 방법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종단면적 연구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비슷한 목적을 가진 조사결과끼리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 시점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나) 종단면적 연구(longitudinal research)

같은 현상을 여러 시점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각 기간 동안 시간 흐름에 따라 일어난 변화의 측정이 주된 과제가 된다.

특정 현상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횡단면적 연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를 하게 되어 비용이 많이 들고, 응답자들이 최초 조사에서는 비교적 객관적 응답을 하지만 이후부터는 연구문제를 알고 있는 관계로 선입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 자료를 얻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3) 수집되는 자료 특성과 분석기법에 따른 분류와 접근법

(가) 양적 연구(quantitative study)와 연역적(deductive) 접근

양적 연구는 연구대상의 속성에 숫자를 부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는데 기술통계와 추리통계라는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이다. 자료수집 수단으로 설문지 또는 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하여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한다. 설문조사(survey)를 이용하는 설문지기법이 대표적이다.

양적 연구는 주로 연역적 접근을 통해 수행된다. 즉, 이론을 형성하고,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연구 질문을 형성한 뒤,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과 변수를 측정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와 귀납적(inductive) 접근

질적 연구는 자료를 숫자가 아닌 단어(words) 형태로 수집하고, 주제와 범주(categories)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현장조사, 심층면접, 참여관찰 등과 같은 자료수집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질적 연구는 주로 귀납적 접근을 통해 수행된다. 즉,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로부터 연구 질문을 형성한 뒤, 이론적 패턴을 찾는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4) 사법신뢰 측정에 사용되는 일반적 연구방법

사법신뢰 측정을 위한 연구에서는 양적(quantitative) 연구 중 기술적(descriptive) 연구, 특히 설문조사(survey) 기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97]

사법신뢰 수준의 단순한 측정이 연구목적인 경우에는 귀납적 접근법으로 충분할 것이지만, 사법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신뢰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이론을 기초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의 연역적 접근법이 사용되게 된다.

한편, 국가 간 사법신뢰도 수준 차이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횡단면적 연구가 사용되고, 특정 국가의 시간 흐름에 따른 사법신뢰도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면적(시계열)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나. 자료수집방법[98]

1차 자료의 수집방법은 시간·비용을 고려하여 조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내용,

97) OECD의 사법신뢰도 지수의 경우 제4장 제1절 Ⅱ. 3.의 다.항, 세계가치관조사(WVS) 사법신뢰도 지수의 경우 제4장 제2절 Ⅲ.의 2.항 부분 각 참조.

98) 김구(주 91), 위의 책, 383-390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편 이 부분 논의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작성하는 1차 자료(primary data 또는 original data)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2차 자료(secondary data)는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을 위해 이미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재정리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료수집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논의할만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질문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구목적과 연구 상황, 분석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본다.

(1) **대인면접**(face-to-face interview)

면접자가 응답자를 1대 1로 직접 만나 질문서에 따라 질문을 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조사내용을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상세히 조사할 수 있고, 면접자가 직접 응답자를 만나 실시하므로 응답률이 높고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질문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연구에 필요한 기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응답자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어 응답자를 잘 이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훈련된 면접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면접원에 따른 면접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접원이 응답자의 의도와 다르게 응답을 기록하는 등 면접원의 주관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2) **전화면접**(telephone interview)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거나 질문내용이 짧을 때 전화를 이용하여 질문하고 면접원이 기록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질문을 한다. 전화면접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우편조사의 추적조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조사가 신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면접조사가 어려운 지역이나 사람에게 접근하기 용이하고,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무작위 표본추출이 가능하며, 면접자에 대한 응답자의 선입견에 의한 응답 오류를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긴 시간의 조사가 어려워 시간적 제약이 있고, 상세한 정보획득이 곤란하고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할 경우 정확한 내용을 얻을 수 없으며, 많은 내용의 자료를 얻기 곤란하고, 피조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응답자가 선정된 표본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우편조사**(mailed questionnaire)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을 기록하게 한 뒤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담아 조사자에게 반환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인면접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비용이 절감되며, 현지조사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고, 면접자의 편견이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없으며, 응답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솔직하게 응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문지의 회수율이 대체로 낮고, 응답내용이 모호한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응답자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역시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 인터넷조사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웹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응답하는 일련의 방법을 의미한다. 우편조사의 특수한 형태로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편조사를 대체할 조사방법으로 점차 널리 이용되고 있다.

비용이 저렴하고, 소요기간 단축, 표본 추출 용이, 조사자와 면접자 사이에 상호의사소통의 원활, 전문가와 특정집단에 대한 설문 가능, 설문 응답의 빠른 회수와 코딩, 설문시간과 시기의 제한이 없는 점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무응답 처리, 편의(偏倚)표집 문제, 익명성과 중복응답의 문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중복·과잉응답의 우려, 사이버 정크(junk)와 스팸(spam) 등 윤리적 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사법신뢰 측정에서 사용되는 자료수집방법

OECD의 사법신뢰도 지수는 갤럽 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원용하는데, 갤럽 세계여론조사는 전화보급률이 80%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방법으로 관례적으로 전화면접을 사용하여 온 국가에서는[99] 전화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라틴 아메리카, 구 소련연방국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무작위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대인면접을 실시하고 있다.[100] 다만, 최근에 OECD가 발표한 신뢰도 측정 가이드라인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편향(bias)을 배제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대인면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봉인된 봉투(sealed envelope)를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조사방법을 시도할 것을 제안

99) 주로 미국, 캐나다, 서유럽, 일본과 호주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100) 제4장 제1절 Ⅱ. 3.의 마.항 부분 참조.

하고 있다.[101]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원칙적인 자료수집방법으로 응답자 집이나 거주지에서의 대인면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응답자의 답변은 종이로 된 설문지에 기록될 수도 있고(전통적 방식), 인터넷 기반의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Interviewing)[102]에 의해 기록될 수도 있다. 대인면접이 아닌 다른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계가치관조사(WVS) 협회 소속 과학자문위원회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103]

다. 측정대상의 개념화와 조작화

(1) 측정대상의 개념 파악

과학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할 작업은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다.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여러 개념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고, 앞으로 연구를 통해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이 글에서 사법신뢰의 측정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신뢰와 사법신뢰의 개념과 구성요인, 다양한 차원과 유형 등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한 것은 이런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2) 측정대상이 되는 개념의 조건

연구 또는 측정대상이 되는 개념은 한정적이고 명백해야 한다. 개념의 명료성 요구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개념은 통일성을 지녀야 한다. 일정한 현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은 누구에게나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의미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개념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적절한 범위의 것이어야 한다. 하나의 개념이 의미하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실제 사실이나 현상에서 멀어져 이에 대한 측정이 곤란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념은 체계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개념이 이론과 명제에서 분리되어 취급된다면, 과학적 연구는 방향을 잡지 못하게

101) 제4장 제1절 Ⅲ. 4.의 나.항 부분 참조.

102) 컴퓨터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의 일종이다. 조사자가 응답자를 대면하여 조사를 할 때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일련의 자료수집 과정(응답자 심사와 선정, 응답자에 적절한 설문사항을 선정하여 조사자에게 전달하기, 비연관적인 질문을 생략하거나 응답이 선행 질문에 대한 것과 일관성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해주기, 조사자가 각 질문에 대한 적합한 응답코드를 입력하는지 확인해주기, 컴퓨터 데이터 파일에 응답을 기록하기 등)을 이용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03) 제4장 제2절 Ⅲ.의 2.의 다.항 부분 참조.

되고, 결과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연구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3) 개념화(conceptualization)

사회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개념은 '연구대상이 되는 경험세계에 관한 대표적인 현상의 속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된다.[104] 그런데 신뢰 또는 사법신뢰와 같이 추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의미의 모호성이나 해석의 다양성이 불가피한 개념을 연구문제로 특정하고 이를 측정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추상적 개념을 경험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개념화'라고 한다.

(4) 개념의 조작화(operationalization)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개념은 측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일반적으로 추상화의 정도가 높아 직접적인 관찰이나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신뢰나 사법신뢰의 개념 역시 그러하다. 이런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가능한 지표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는 추상적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상호 주관적 합의가 있어 별도로 그 뜻을 정할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사전적(辭典的) 정의라고도 한다.

개념이 표상하는 어느 현상이나 사건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때는 개념이 갖는 경험적 속성(empirical property)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사용되는 것이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이다. '조작적 정의'란 해당 개념을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측정대상인 그 개념이 갖는 특성을 빠짐없이 대표할 수 있는 경험적 지표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개념을 측정 가능한 상태로 표현해 놓은 것으로, 설문조사(survey) 기법에서 실제 사용되는 측정문항은 이를 기초로 작성된다.

앞에서 설명한 '개념화'가 추상적 개념을 경험적 실체로서의 '개념적 정의'로 제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개념을 현실세계에서 측정하기 위한 경험적 지표인 '조작적 정의'로 분석하는 과정을 '개념의 조작화'라고 한다.

104) 김구(주 91), 위의 책, 181 참조.

(5) 개념화와 조작화의 유의사항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일치하는가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려는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 즉 설문지의 구체적인 측정문항이 '신뢰'가 아닌 '조심성(caution)'이나 '의심'을 묻고 있는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105]

조작적 정의의 속성이 현상의 일부만을 설명하는데 전체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신뢰 수준을 측정하는데 이를 구성하는 여러 하위요인들[106] 중 예컨대 '능력'에 관한 속성만을 사법신뢰의 조작적 정의에 포섭하여 측정문항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신뢰수준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6) 사법신뢰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앞에서 '사법신뢰'를 '사법제도가 신뢰주체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고유한 기능을 성실히 잘 수행하리라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대'라고 정의한 것은 사법신뢰의 개념적 또는 사전적(辭典的) 정의에 해당한다.[107]

이를 기초로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의 특성으로 능력, 호의, 성실성과 일관성, 개방성 등을 들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로서 TCPS의 22개 세부기준을 제시한 것은 사법신뢰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08]

라. 측정의 의미와 한계

측정(measurement)은 개념 또는 변수를 현실세계에서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료와 연결시켜 주는 과정이자, 질적 속성을 양적 속성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인 사회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밀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첫째, 많은 사회문제는 가치중립적인 사실보다는 가치지향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을 양적인 속성으로 변환하여 이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치지향적 개념은 그 속성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105) 우리나라의 대인간 신뢰 중 일반신뢰 수준이 낮다는 경험적 연구에 대해 '신뢰'와 '조심성'을 혼동한 연구방법론상 오류의 결과라는 연구에 대해서는 조기숙·박혜윤(주 39), 위의 논문 참조.
106) 제3장 제2절 Ⅰ.의 3항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의 특성과 평가 지표' 부분 중 특히 '[표3] 사법신뢰 구성요인별 TCPS 세부기준의 분류' 참조.
107) 제3장 제2절 Ⅰ.의 1항 부분 참조.
108) 제3장 제2절 Ⅰ.의 3항 부분 참조.

측정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둘째, 측정대상인 개념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측정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속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은 복잡·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개념을 명확히 범주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하고 측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109]

마. 측정척도

(1) 의의

척도(scale)란 논리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문항 또는 지표로 이루어진 복합적 측정도구를 의미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경험적 조사연구에서는 측정대상인 개념이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므로 단일문항(지표)으로 구성된 간단한 측정도구로는 신뢰도(reliability)[110]와 타당도(measurement validity)[111]를 확보하기 어렵다.[112]

여러 문항을 통해 척도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13]

첫째, 하나의 문장이나 지표로는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복합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여러 개의 지표(문항)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내어 자료의 복합성과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척도의 단일 차원성, 즉,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이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

109) 사법신뢰의 기초가 되는 '신뢰' 개념의 경우, 제3장 제1절 Ⅱ.의 2항과 3항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공통적 개념요소와 유사개념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110) 동일한 측정대상(변수)에 대해 같거나 유사한 측정도구(설문지)를 사용하여 매번 반복해서 측정할 경우 같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김구(주 91), 위의 책, 259 참조].

111) 측정도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측정하고 있는가, 즉,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특성이나 속성을 빠짐없이 측정하여 정확히 이를 반영하느냐의 정도를 의미한다[김구(주 91), 위의 책, 264 참조].

112) 후술하는 대표적인 국제적 사법신뢰도 측정지수들인 OECD의 사법신뢰도 지수는 물론이고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사법신뢰도 지수는 모두 단일문항으로 사법신뢰를 측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즉, OECD 사법신뢰도 지수의 경우 "당신은 당신 국가에서 다음 항목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사법제도와 법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라는 문항이고,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사법신뢰도 지수의 경우에는 "다음 신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 법원"라는 단일문항만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고 있다(제4장 제3절 Ⅵ.의 2항 참조).

113) 홍두승, 사회조사분석(제3판), 다산출판사 (2000), 131-132 참조, 김구(주 91), 위의 책, 207에서 재인용.

넷째, 복수 지표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면 단일문항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측정오류를 줄일 수 있고,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2) 종류

측정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측정목적이나 상황, 측정대상의 속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정척도와 리커트 척도의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114]

(가) 평정척도(rating scale)

측정대상 또는 피조사자의 어떤 속성을 단일연속선상에 배열하고, 평가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대상의 속성에 일정한 수치를 부여하거나, 또는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구분점에 일정한 수치를 부여하는 척도이다. 학생 성적을 A, B, C, D나 수, 우, 미, 양, 가 등으로 평가하는 등급척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평정척도는 척도를 만들기 쉽고, 사용이 간편하며, 비용·시간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적용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평가자의 성격과 태도 및 심리적 편향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다.

(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여러 문항으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치를 합산하여 평가대상자의 태도 점수를 얻어내는 척도로서 총합평정척도(summated rating scale)라고도 한다. 총합평정법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Rensis Likert가 1930년 초 제안한 척도로서, 어떤 심리적 특성이나 제도를 나타내는 변수의 연속성을 가정하여, 이런 연속선상에서 변수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진술문이나 문항이 있는 경우, 심리적 연속선상에서 진술문을 나열하고 응답결과를 통합하여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응답자의 태도 점수를 결정하는 척도법이다.

리커트 척도는 평정척도를 변형한 것으로 일정한 태도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문항은 척도에 포함된 태도변수를 바르게 표시하고, 이것이 타당한 문항이라면 척도 내의 다른 문항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 각 개별문항은 전제 문항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문항을

114) 그 밖의 측정척도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김구(주 91), 위의 책, 212-218 참조.

이용하는 척도이므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높아야 한다.

리커트는 5점 척도[115]를 사용하면서, 5점 척도상의 응답유형이 대체로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체계와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서로 다른 진술문을 합쳐서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5점 척도 이외에 찬성과 반대, 또는 동의와 부동의를 각 3단계로 세분화한 7점 척도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진술문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116]

총합평정척도는 평가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아 척도 구성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평가자의 주관개입을 배제할 수 있고, 항목에 대한 응답범위에 따라 측정의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17] 그러나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 태도의 강도가 정확히 일치되기 힘들어 엄격한 의미의 등간척도(interval scale)[118]가 되기 어렵고, 척도의 수치 합계가 의미하는 바가 개념적으로 분명하지 못하며,[119] 문항분석 결과 기술적으로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론적 타당성까지 담보해주지는 못한다는 단점 또는 한계가 있다.

(3) 지수, 지표와 관계

일반적으로 지수(index)와 척도(scale)는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념상 다소간의 혼란이 있다. 척도와 지수는 모두 특정 변수에 대한 종합적 측정도구로서, 두 개 이상 지표항목들에 근거하고 있는 측정도구이다.

그런데 지수는 개별적 속성에 배정되어 있는 점수들을 단순히 누적하여 구축되는 것이고, 척도는 속성들의 속성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강도구조를 이용하여 그 패턴에 점수들을 배정하여 구축되는 것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120] 척도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지수를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서열측정(ordinal measurement)[121]의 수준을 갖는 반면, 지수는 특정 변수의 속성을 하나

115) 5점은 가장 찬성, 4점은 찬성, 3점은 보통, 2점은 반대, 1점은 적극 반대를 나타낸다.
116) 박도순, 척도법, 교육과학사 (2006), 42 참조, 김구(주 91), 위의 책, 210에서 재인용.
117) 문항에 대한 응답치를 5개에서 7개, 9개, 11개 등으로 늘리면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118) 측정대상을 속성에 따라 구분, 서열화할 때 서열 간 간격이 동일하게(equal interval) 수치를 부여하는 등간측정(interval measurement)을 수행하는 측정도구를 의미한다[김구(주 91), 위의 책, 204 참조].
119)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경우 각 항목이 표현하는 응답자 태도 강도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120) 소영일, 연구조사방법론, 박영사 (2001), 197 참조, 김구(주 91), 위의 책, 218-219에서 재인용.
121) 측정대상을 속성에 따라 서열이나 순위(rank, order)를 매길 수 있도록 수치를 부여하는 측정을 의미한다. 이런 측정 수준에서 수치 자체는 어떤 절대적 수나 양,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김구(주 91), 위의 책, 203-204 참조.

의 점수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등간[122] 또는 비율측정(ratio measurement)[123]의 수준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124]

한편 척도 또는 지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표(indicator)가 있다. 지표는 연구하는 개념이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 또는 변수 속성의 표상이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학적 지수(socioeconomic status, SES)를 측정할 때 흔히 사용되는 학력, 직업, 소득 등이 그에 대한 대표적 지표라는 것이다.[125] 지표와 지수는 용어도 비슷하고 개념도 유사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견해는, 지표는 하나의 변수에서 추출한 하나의 숫자를 의미하고, 지수는 2개 이상 여러 개의 지표로부터 얻은 숫자를 가공하여 얻은 숫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지표와 지수의 기본적 차이점은 한 개의 변수에서 나온 값이냐, 아니면 2개 이상 변수에서 나온 값이냐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126]

(4) 측정척도 선택 시 고려사항[127]

연구자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용할 분석기법, 자료의 획득가능성과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수준과 척도를 판단, 결정하게 된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척도점의 수와 척도점의 기준점 문제이다.

척도점의 수가 너무 적으면 분석 시 응답자의 태도 정도(수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워 분석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반면, 척도점 수가 너무 많으면 조사자가 각 척도에 적합한 설명을 붙이기 어렵고 이를 이용하여 응답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의 기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분석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척도 기준점과 관련해서는 중립점을 두는 경우와 이를 두지 않는 경우의 선택

122) (주 118) 내용 참조.
123) 측정대상의 속성에 절대적 또는 자연적인 영(zero)의 값을 가진 척도를 이용하여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열, 등간측정의 특징을 모두 가지면서 반드시 또는 언제나 0이 존재하는 측정으로서 수치의 사칙연산도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김구(주 91), 위의 책, 205 참조. 가장 높은 수준의 이상적 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
124) 김구(주 91), 위의 책, 219 〈표7-11〉 참조.
125) 김경동 · 이온죽,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1998), 337 참조, 김구(주 91), 위의 책, 219에서 재인용.
126) Wayne R. Ott, Environmental Indices: Theory and Practice, Ann Arbor, MI.: Ann Arbor Science (1978) 참조, 김구(주 91), 위의 책, 219에서 재인용.
127) 김구(주 91), 위의 책, 222-223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 중립점을 두게 되면 응답자가 별다른 생각 없이 중립점에 응답을 표시하는 중립화경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중립점을 두지 않으면 실제로 중립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도 강제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중립점에 관한 문제는 질문항목의 특성에 따라 조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 선택할 수밖에 없다.

(5) 사법신뢰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척도

아래 제4장에서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적 사법신뢰도 측정지수들인 OECD의 사법신뢰도 지수와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사법신뢰도 지수는 모두 단일문항으로 사법신뢰를 측정한다는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응답척도에서 OECD 사법신뢰도 지수는 "당신은 당신 국가에서 다음 항목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사법제도와 법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아니오'의 2단계 응답만을 허용하고 있고,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사법신뢰도 지수의 경우에는 "다음 신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 법원"라는 질문에 대해 wave마다 표현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완전히/약간/별로/전혀'의 4단계 응답을 허용하고 있다(제4장 제3절 Ⅵ.의 2항과 3항).[128] 다만, 두 지수는 모두 응답척도의 기준점으로 중립점, 즉, '중립적' 또는 '보통'이라는 응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129]

결국 위 각 지수는 비록 사법신뢰 측정을 위해 단일문항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평가자의 주관개입이 배제된 응답자의 응답에 나타난 결과를 측정하여 태도 점수를 얻어낸다는 점에서, 척도 기준점으로 중립점을 두지 않는 리커트 척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응답의 척도점 측면에서 OECD 사법신뢰도 지수는 2점 척도를, WVS 사법신뢰도 지수는 4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128) 따라서 위에서 살핀 척도점의 관점에서는 OECD 지수보다는 세계가치관조사(WVS) 지수가 사법신뢰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29) 이 경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 등 예정되지 않은 기타 유형의 답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OECD와 세계가치관조사(WVS)의 각 사법신뢰도 지수의 취급상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제4장 제3절 Ⅵ. 3.의 나.항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2. 사법신뢰도 측정지수 개관

가. 의의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사법신뢰도 측정지수를 정의한다면, '사법제도, 사법부 또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사법신뢰를 측정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초로, 양적(quantitative) 연구의 일종으로서 대인면접과 전화면접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survey) 기법을 통해 수집된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일정한 척도로 측정하여 하나의 점수 또는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질문문항은 보통 '사법제도 등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응답은 크게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되, 연구에 따라 측정척도의 척도점을 3점, 4점, 5점 등으로 세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결과 얻어진 지수의 값은 일반적으로 전체 응답자 중 사법제도 등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로 제시된다.

한편, 사법신뢰도 지수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다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연구방법의 특성상, 다른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지수와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도 함께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신뢰의 측정만을 다루는 설문조사라 하더라도, 사법제도만이 아니라 정부, 의회, 언론, 교육, 의료 등 기타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대인신뢰와 원칙이나 질서 등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수준까지 함께 조사,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130]

나. 개별 국가의 사법신뢰도 지수와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

사법신뢰도 지수는 개별 국가가 자국 국민과 사법제도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발표되는 경우가 있는데,[131] 이런 지수는 각국의 특수한 정치적,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질문문항을 구성하고 이

130) 예컨대, 제4장 제2절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가치관, 규범에 대한 인식, 신념, 동기, 신뢰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제4장 제2절 Ⅲ. 2. 의 나.항 참조), 신뢰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법제도나 법원만이 아닌 종교단체, 군대, 언론, 노동조합, 경찰, 중앙정부, 정당, 의회, 공무원, 대학, 대기업, 은행,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제4장 제2절 Ⅳ.의 1.항 참조).

131)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식조사' 또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수준 측정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신뢰수준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국의 측정방법이나 절차, 측정척도의 상이 등으로 인해 지수의 국가 간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여러 국제기구와 국제적 연구단체 등에서는 각국 사법신뢰도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수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측정방법과 절차, 측정척도를 이용하여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사법신뢰 수준을 측정한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 대표적인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의 유형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는 해당 지수가 명시적으로 '사법제도 등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측정하여 산출된 것과, 명시적으로는 사법신뢰 자체에 대한 의견을 묻지는 않지만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관련된 지표에 관한 질문문항을 통해 얻은 응답결과를 기초로 지수를 산정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지수

OECD는 2013년 이후 발간되는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서 사법제도 또는 법원과 관련한 지수 중 하나로서 직접 사법제도 등에 관한 신뢰 여부를 질문문항으로 포함하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얻은 응답결과를 기초로 지수를 측정, 발표하고 있다.[132]

또한 세계가치관조사(WVS)는 1981년부터 연구보고서인 wave 시리즈를 통해 사회적 자본, 신뢰에 관한 지수 중 하나로서 역시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한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133]

(2)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는 지수

한편,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는 사법신뢰도 자체 이외에 법치주의 정도, 사법제도나 법원의 효율성, 접근성, 대응성, 개방성과 투명성, 신속성, 효과성과 공정성 등에 관련한 여러 지수를 함께 측정, 발표하고 있다.[134]

---

132) 제4장 제1절 Ⅱ.의 3.항 부분 참조.
133) 제4장 제2절 Ⅳ.항 부분 참조.

또한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등에서도 사법제도 등에 대한 신뢰 여부와 정도 등을 직접 질문문항에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법치주의 정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절차 여부, 사법제도 또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에 관련된 지표들을 개별적으로 측정한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135]

이런 지수들은 사법신뢰 자체를 측정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엄밀한 의미의 사법신뢰도 지수로 보기는 어렵지만, 위 지수들이 측정하는 항목들은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차원 또는 하위요인(특히, 신뢰대상 측면에서의 다차원성)에 관련된 것들로 볼 수 있다.[136] 즉, 사법제도나 법원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신속성, 대응성 등은 사법제도와 법원의 '능력'에 관계된 것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은 '성실성이나 일관성'에 관계된 것으로, 투명성이나 접근성 등은 '개방성'에 관계된 것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대상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 지수들이 사법신뢰도 자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에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는 지수로 볼 수 있는 이상, 사법신뢰와 관련된 지표로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고도 필요하다.[137]

라. 일반적 측정방법론

OECD와 세계가치관조사(WVS) 등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지수의 일반적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 Ⅱ.의 1.항에서 설명하였다.

한편,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지수를 제외하고 OECD가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시리즈에서 발표하는 나머지 사법제도 관련 지수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세계은행 등의 나머지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관한 지수들의 방법론

134) 제4장 제1절 Ⅱ.의 1.항과 2.항 부분 참조.
135) 제5장 부분 참조.
136) 제3장 제2절 Ⅰ.의 3.항 부분 참조.
137) 사법신뢰 자체를 직접적인 측정대상으로 삼는 지수는 전체적인 신뢰수준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지만, 신뢰수준을 증진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런 시사점은 오히려 추상적 개념인 사법신뢰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 즉,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표에 관한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낮은 지수를 나타낸 영역을 만족스런 지수를 보인 영역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영역에 특화되고 집중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양적(quantitative) 연구 중 기술적(descriptive)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 OECD의 법과 법적 절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 지수와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독립성 지수 등 특정 대상이나 상황, 사실 등에 대한 인식 조사가 기반이 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survey) 기법을, 소송비용, 재판기간,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 범죄 발생률 등 객관적 지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종 국제기구나 국가통계기관이 발표하는 정량(통계)자료를 인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각 해당 항목에서 설명한다.

마. 특성과 한계

우리나라에서 법의식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여부 등의 조사와 그 결과 얻어진 사법신뢰도 지수는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각기 다른 조사기관에서 서로 조사방법으로 측정,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일관되고 종단면적(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 중 OECD 지수와 세계가치관조사(WVS) 지수와 같이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지수들은 아래 해당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조사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가 범위, 조사주체, 조사방법 상 차이로 지수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해당 지수 자체로는 조사주체와 방법론상 일관성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어 종단면적(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고, 횡단면적으로는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와 세계은행의 지수 등 사법신뢰도 자체가 아닌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하위요인과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는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들 역시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국가의 범위, 조사주체,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지수 간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거나 별다른 의미가 없다. 단지 해당 지수 자체는 역시 조사방법론상 일관성과 체계성 덕분에 시계열적 비교와 국가 간 횡단면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각종 사법신뢰도 지수의 보다 세부적인 특성이나 한계는 아래 해당 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3. 분석대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 지수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의 상대적 수준 파악과 비교를 위해 사법신뢰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과 지수 중 각종 국제기구나 국제적 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국제적 사법신뢰도 측정방법과 지수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는 사법신뢰도 자체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지수 이외에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과 그에 따라 생성된 측정지수도 포함한다.

제 4 장

사법신뢰도 측정지수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I. 개관

1. 소개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는 OECD가 2009년부터 격년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 시리즈이다. 정부의 미래 정책결정과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무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OECD 회원국 등[138]의 정부 수입, 지출, 고용, 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정치체제 및 제도, 정부정책과 실행, 전자정부, 규제 등에 관한 30여 가지 성과지표를 측정, 비교하여 발표하고 있다.

2. 목적과 특징[139]

가. 목적

「한눈에 보는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각국 정부 활동의 평가, 계획과 측정에 도움을 주고, 과거의 성과지표로부터 얻은 시계열(time series) 자료와 정보를 통해 각국 정부의 활동들을 종합적인 성과로 연결 지을 뿐만 아니라 개혁 의제(reform agenda)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며, 공공 행정을 성공적으

138)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가 최초 발간된 2009년에는 OECD 정식 회원국이 30개국이었다. 2011년판부터 2015년판 발간 당시 OECD 정식 회원국 수는 각 34개이었고, 2017년판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발간 당시 정식 회원국 수는 35개였다. 최근에는 2018. 5. 30. 리투아니아와 콜롬비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18. 6. 1. 현재 OECD 정식 회원국은 37개국이다.
OECD, "List of OECD Member countries -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OECD", http://www.oecd.org/about/membersandpartners/list-oecd-member-countries.htm (2018. 12. 2. 확인). OECD, "Signing ceremony of the OECD Accession Agreement with Colombia and Lithuania", http://www.oecd.org/about/secretary-general/signing-ceremony-of-oecd-accession-agreement-with-colombia-and-lithuania-france-30-may-2018.htm (2018. 12. 2. 확인).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2009년판은 당시 정식 회원국이던 30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1년판부터는 OECD 정식 회원국 이외에 회원국 가입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참관 지위(observer status)에 있는 국가 등에 대한 일부 자료들도 자료수집 가능성과 분석필요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139)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09 (2009), 10,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789264075061-en.pdf?expires=1543733010&id=id&accname=guest&checksum=C15510E2F7E11BFF0464D3142C81D167 (2018. 12. 2. 확인).

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결정요소와 공공분야에서 정부 활동의 영향력 확장에 관한 논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각국으로 하여금 정부의 활동 현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 수준을 가늠하게 하며, 국제적 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의 성과를 비교응용(benchmarking)할 수 있게 하고,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특징

「한눈에 보는 정부」는 공공 행정의 핵심적 측면과 보고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지표들을 OECD 회원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선정하였고, 자료와 질적 정보를 회원국의 정부 관료들로부터 제공받아 OECD와 그 동료 국가들에 의해 검증받았으며, 정부의 성과지표를 하나의 통합된 지표로 나타내거나 각국의 전체적인 순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II. 사법제도 또는 법원 관련 지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사법제도 등과 관련한 지수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판부터이다.[140]

1. 법치주의(rule of law) 지수[141]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는 2013년판부터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4가지 보편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가 법치주의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세부 평가항목으로 설

140) 이 항목에서 설명하는 여러 지표 중 '3.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지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앞서 분류한 방식에 따른 사법신뢰 자체의 측정지표가 아니므로 체계상으로는 이를 분리하여 후술하는 제5장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에서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위 각 지표는 모두 OECD가 「한눈에 보는 정부」라는 하나의 보고서에서 측정, 발표하고 있는 지표들이므로 편의상 이 부분에서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이 글의 주된 분석대상인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지표'를 나머지 다른 지표에 관한 설명에 뒤이어 소개하는 것은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의 성격이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각 보고서의 일반적인 편재 순서를 참고한 것임을 밝혀둔다.

141)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3 (2013), 44-47 참조,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gov_glance-2013-en.pdf?expires=1543733200&id=id&accname=guest&checksum=7C2971ABE9EEDDF42841858B8638D9F0 (2018. 12. 2. 확인).

정한 8개 세부 평가항목[142] 중 정부권력의 제한, 기본권, 규제집행, 민사사법정의 등 일부 핵심요소를 법치주의와 관련한 지표로서 발표하였다.[143]

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4가지 법치주의 보편원칙[144]

첫째, 공무원과 정부기관들이 법률에 의해 책임을 진다.

둘째, 법은 명확하고 공개되어 있으며 안정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또한 법은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개인 및 사유재산의 안전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셋째, 법의 제정, 관리와 집행 과정은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하고 공평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넷째, 재판은 충분한 수로 구성되고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을 반영하는 자격을 갖춘 윤리적이고 독립적인 대표들과 중립적인 인사들에 의해 시의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

142)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고려하는 세부 평가항목은 모두 9개이나 이중 법치주의 지수 산출에 사용되는 항목은 '비공식적 사법정의(informal Justice)'를 제외한 8개 항목이다.

143) 2013년판에서는 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법치주의'의 핵심요소로 파악하였으나, 2015년판과 2017년판에서는 그 중 정부권력의 제한과 기본권의 두 개 요소만을 법치주의의 핵심요소로서 평가하였고, 규제집행 항목과 민사사법정의 항목은 각각 규제 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와 대시민서비스(serving citizens)의 세부항목으로 편입하였다. 이런 변화는 2013년판에서 '법치주의'의 핵심요소 4가지 중 하나로 파악하였던 '민사사법정의' 지표가 실제로는 같은 2013년판에서 또 다른 사법제도 관련 항목으로서 '공공부문 효율성(public sector efficiency)'의 하위항목으로 설명된 사법부문의 효율성 지표, '대시민서비스(serving citizens)'의 하위항목으로서 설명된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비용충당능력) 지표, 사법서비스의 대응성(적시성) 지표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판에서 '공공부문 효율성(public sector efficiency)'의 하위항목에 사법부문의 효율성 지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신 '대시민서비스'의 하위항목 중 하나로 새로 도입된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 지표가 이를 포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를 거쳐 2015년판의 '대시민서비스' 하위항목 중 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은 사법제도와 법령정보 접근성,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욕구 대응성,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44) OECD「한눈에 보는 정부」2013년 보고서가 인용하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4가지 법치주의 보편원칙은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2-2013 (2012), 3,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Index_Report_2012.pdf (2018. 12. 2. 확인)와
OECD(주 141), Government at a Glance 2013, 44,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gov_glance-2013-en.pdf?expires=1544718802&id=id&accname=guest&checksum=DB9AE35F30613BF628FDC65C031323D0 (2018. 12. 2. 확인) 각 참조.

나. 「한눈에 보는 정부(2013)」의 '법치주의' 4가지 핵심요소 지표

(1) 정부권력의 제한 지표

정부권력이 기본법(헌법)에 의해 규정되는지, 정부 권력이 입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한되는지, 정부권력이 사법부에 의해 제한되는지, 정부권력이 독립적인 감사 및 재검토에 의해 제한되는지, 정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처벌되는지, 정부권력이 비정부기구의 감시를 받고 권력의 이전이 법에 의하는지와 같은 7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이 지표는 정부권력에 대한 각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145]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OECD 회원국들의 정부권력의 제한 정도는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으나 이에 대한 지표의 평균은 0.77로서 높은 수준이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0.9 이상의 높은 지표를 나타낸 반면, 터키,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는 0.5 미만의 낮은 지표를 나타냈다. 한국의 지표는 0.66으로 조사대상 35개국 중 24위를 기록하였다.[146]

2015년의 OECD 회원국의 지표 평균도 0.76으로 큰 차이는 없다. 여전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즉,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가 가장 균형 있는 권한의 분배를 보이고 있고, 멕시코와 터키의 경우 정부권력의 제한 정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0.79로 조사대상 35개국 중 공동 12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이다.[147]

2016년의 OECD 회원국의 지표 평균은 0.75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즉,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가 지속적으로 가장 균형 있는 권한의 분배를 보이고 있고, 멕시코, 헝가리와 터키의 경우 정부권력의 제한 정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표는 0.68로 조사대상 37개국 중 공동 24위로 조사되었다.[148]

---

145) 지표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 1에 가까울수록 법치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판과 2015년판에서는 34개 OECD 회원국 중 해당 자료가 없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와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헝가리를 제외한 27개국과 8개 파트너 참가국(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집트, 우크라이나), 2017년판에서는 35개 OECD 회원국 중 해당 자료가 없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와 라트비아를 제외한 28개국과 9개 파트너 참가국(위 8개 파트너 참가국에 코스타리카 추가)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146) 2013년판 보고서에 발표된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1]은 다음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2940987 (2018. 12. 2. 확인).

147) 2015년판 보고서에 발표된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2]는 다음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249272 (2018. 12. 2. 확인).

148) 2017년판 보고서에 발표된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3]은 다음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533682 (2018. 12. 2. 확인).

[그림1] 정부권력의 제한(20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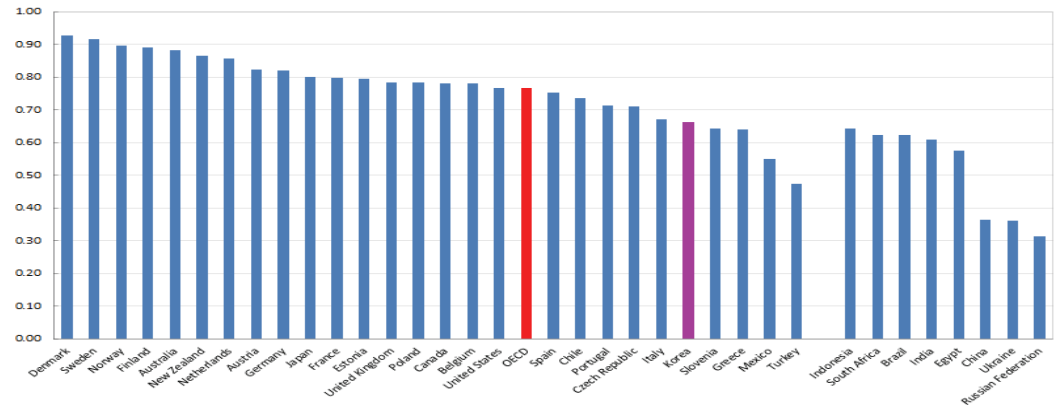

[그림2] 정부권력의 제한(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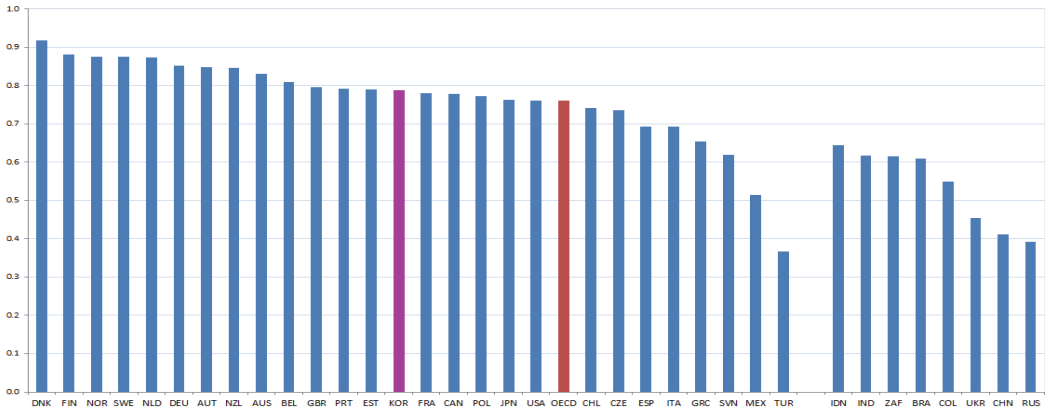

[그림3] 정부권력의 제한(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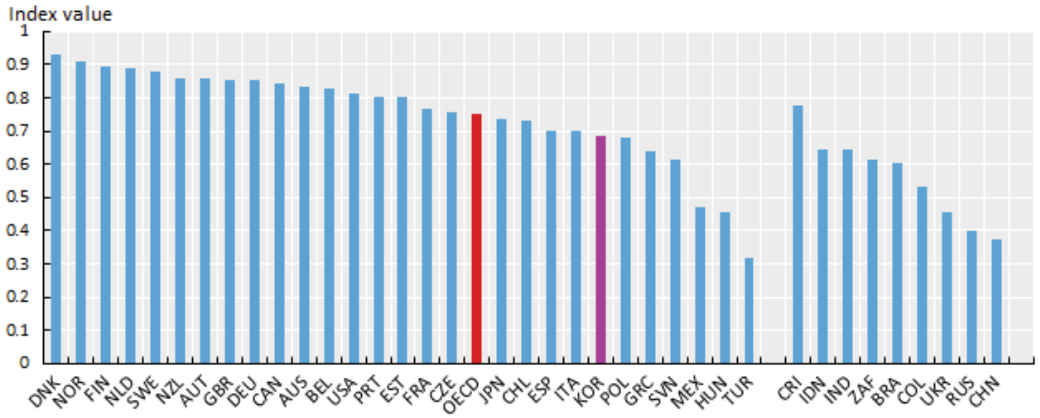

한편, 정부권력 제한의 하위요소 중에는 권력의 이전에 관련된 법률 부분이 가장 발전되어 있고 정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이나 독립적인 감사 및 재검토의 역할 항목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기본권 지표

기본권 지표[149]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대우, 개인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적법 절차,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자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집회와 결사 그리고 기본적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의 8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점은 0.79의 높은 점수이나 국가별 차이는 적지 않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0.9 이상의 높은 지표를 나타냈고, 중국, 이집트, 러시아, 터키가 0.5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표를 나타냈다. 한국은 OECD 평균에 근접한 0.76으로서 조사대상 35개국 중 20위를 나타냈다.[150]

2015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점은 0.78의 높은 점수이나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0.9 이상의 높은 지표를 나타냈고, 중국, 터키, 러시아가 0.5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표를 나타냈다. 한국은 0.73으로서 조사대상 35개국 중 미국과 함께 공동 23위를 나타냈다.[151]

2016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점은 0.77이다. 덴마크, 핀란드가 0.9 이상의 높은 지표를 나타냈고, 중국, 터키, 러시아가 0.5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표를 나타냈다. 한국은 0.70으로서 조사대상 37개국 중 25위를 기록하였다.[152]

한편, 기본권의 하위요소 중 개인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권리의 보장 항목은 가장 발전이 되어 있는 항목으로, 차별이 없는 평등한 대우라는 하위요소는 추가적인 개

149) 이 지표 값 역시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 1에 가까울수록 법치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권력의 제한 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2013년판과 2015년판에서는 34개 OECD 회원국 중 해당 자료가 없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와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헝가리를 제외한 27개국과 8개 파트너 참가국(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집트, 우크라이나), 2017년판에서는 35개 OECD 회원국 중 해당 자료가 없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와 라트비아를 제외한 28개국과 9개 파트너 참가국(위 8개 파트너 참가국에 코스타리카 추가)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150) 2013년판 보고서에 나타난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4]는 다음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2941006 (2018. 12. 2. 확인).

151) 2015년판 보고서에 나타난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5]는 다음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249287 (2108. 12. 2. 확인).

152) 2017년판 보고서에 나타난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6]은 다음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533701 (2108. 12. 2. 확인).

선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그림4] 기본권(20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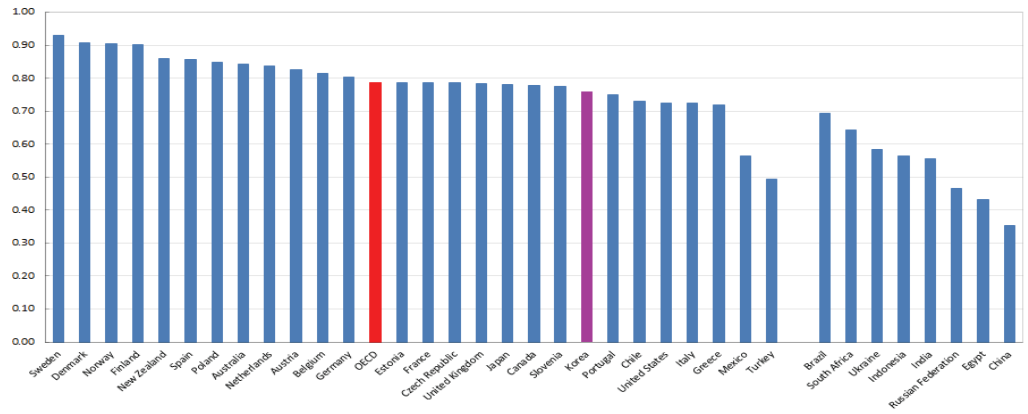

[그림5] 기본권(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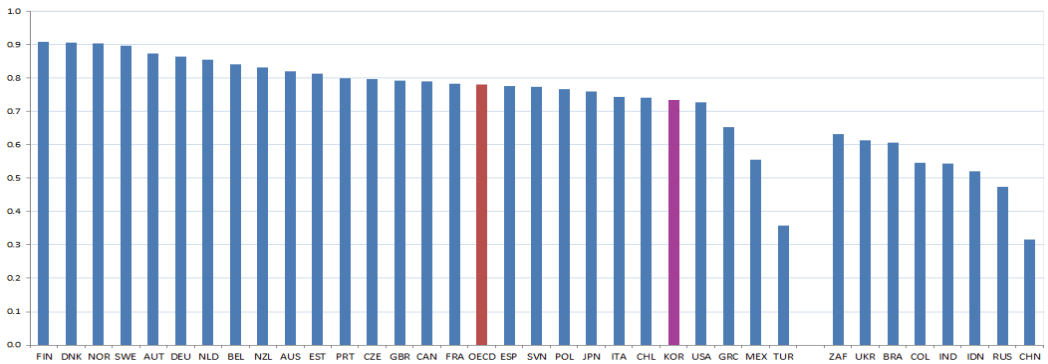

[그림6] 기본권(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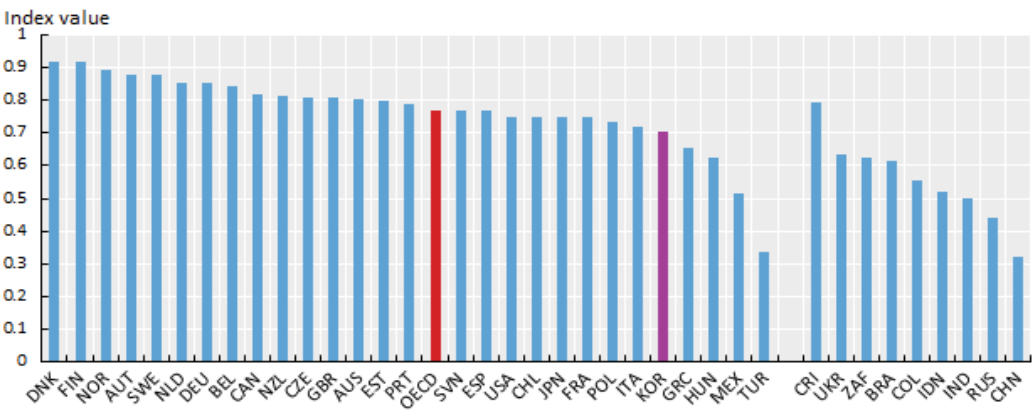

한편, 정부권력의 제한 지표와 기본권 지표 사이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81, 0.8694, 0.8484).[153]

[그림7] 정부권력 제한과 기본권(2016)



(3) 규제집행(regulatory enforcement) 지표[154]

규제의 대상과 방법을 묻지 않고 규제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하위요소로는 정부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정부규제가 부당한 영향력 없이 적용되고 집행되는지, 행정적 절차는 불합리하게 지연되지 않는지, 적법 절차가 적용되는지, 정부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하지 않고는 점·수용(appropriate)을 하지 않는지가 포함된다.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를 대상으로 발표한 규제집행에 관한 지표의 OECD 평균값은 0.71(역시 1점 만점)이나 많은 회원국의 경우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일본, 덴마크 등이 0.85 이상의 높은 지표를 나타냈고, 이집트, 인도, 중국, 우크라이나 등은 0.45 미만의 낮은 지표를 보

153) 상관계수는 차례로 2013, 2015, 2017년 보고서에 기재된 값임. 정부권력 제한 지표와 기본권 지표 사이 각국의 상세한 상관관계는 다음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각 참조, 2013년 http://dx.doi.org/10.1787/888932941025, 2015년 http://dx.doi.org/10.1787/888933249294, 2017년([그림7] 출처 포함) http://dx.doi.org/10.1787/888933533720 (각 2018. 12. 2. 확인).

154)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규제집행 항목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년판 보고서 이후 '법치주의'의 요소가 아닌 규제 거버넌스의 하위항목에 편입되었는데, 이후 2013년판 보고서에서와 같은 독립적인 규제집행 지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였다. 한국은 0.67로서 조사대상 35개국[155] 중 스페인과 함께 공동 18위를 기록하였다.[156]

규제집행의 하위요소 중 정부규제의 집행과 적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력이 가장 발전된 항목으로, 효과적 집행 분야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그림8] 규제집행(20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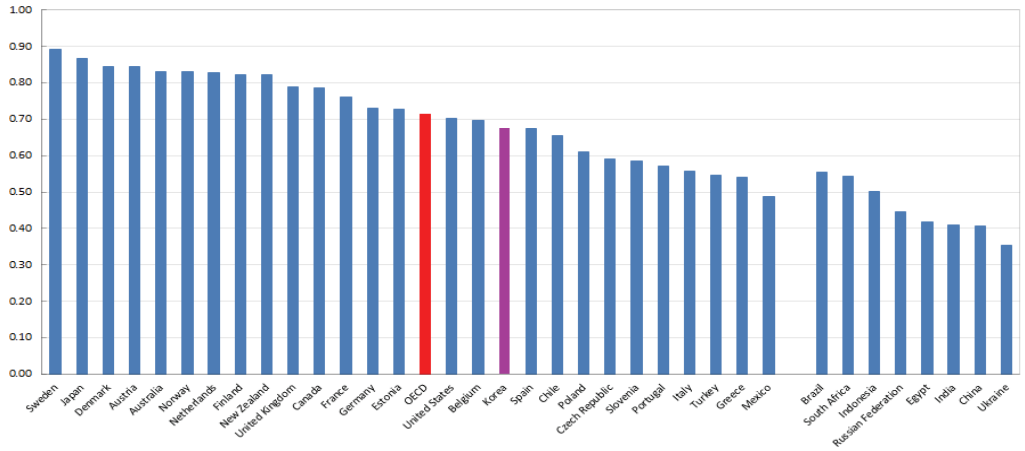

(4) 민사사법정의(civil justice) 지표

(가) 「한눈에 보는 정부(2013)」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는 '법치주의'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서 일반 국민들이 민사 사법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여 '민사사법정의'라는 지표로 발표하였다. 하위요소로는 국민이 민사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민사 사법제도가 차별, 부패, 부당한 정부의 영향, 불합리한 지연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민사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분쟁해결의 다른 대안들이 접근가능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인지가 포함된다.[157]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경우 '법치주의'를

155) 2013년 보고서 발간 당시 34개 OECD 회원국 중 해당 자료가 없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와 해당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형가리를 제외한 27개국과 8개 파트너 참가국(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집트, 우크라이나)을 의미한다.

156)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8]은 2013년 보고서의 아래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2941044 (2018. 12. 2. 확인).

157) 이는 후술하는 것처럼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법치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8가지 분야 중 하나로 '민사사법정의'를 열거하고, 그 세부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는 내용을 차용한 결과로 보인다[제5장 제1절 Ⅱ. 2.의 가.항 참조].

구성하는 4개 핵심요소 중 평균적 성과가 가장 낮은 분야는 민사사법정의 분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1점 만점 중 0.69이다. 노르웨이가 0.82, 네덜란드와 독일이 각 0.8로 높은 지표를 나타냈고, 인도네시아, 이집트, 인도, 중국, 멕시코는 0.5 미만의 낮은 지표를 나타났다. 한국은 OECD 평균을 넘는 0.72로 조사대상 국 36개국 중 13위를 기록하였다.[158]

하위요소 중 불합리한 지연의 방지 항목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고 부패로부터의 자유는 가장 발전된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림9] 민사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성(20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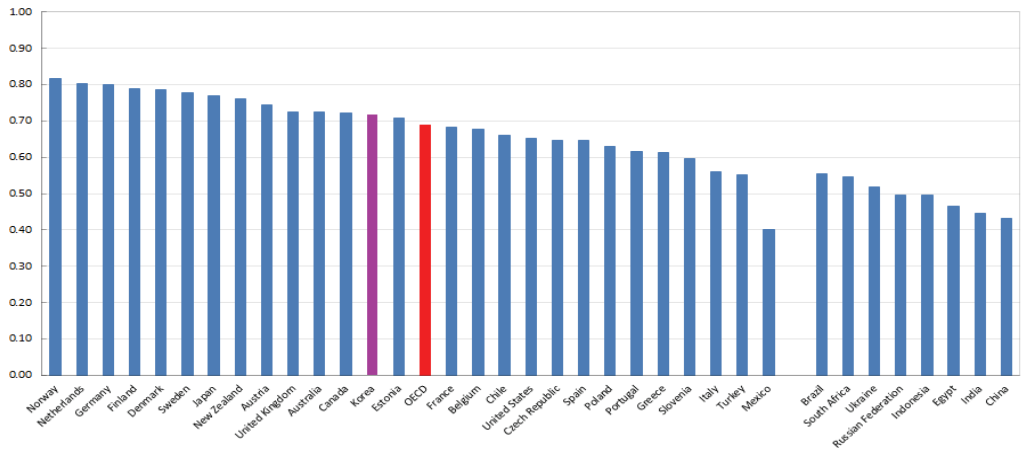

(나) 「한눈에 보는 정부(2015)」 이후[159]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에서 '법치주의'의 4

158)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에 나타난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9]는 다음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2941063 (2018. 12. 2. 확인).

159) 「한눈에 보는 정부(2015)」 이후 '대시민서비스' 하위항목으로 포섭된 '민사사법정의' 지표의 세부 내용을 「한눈에 보는 정부(2013)」의 목차 구성방식에 따라 '민사사법정의' 항목의 변화된 내용으로서 서술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한눈에 보는 정부(2013)」의 '대시민서비스' 항목으로 분해, 포섭하여 서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 세부 내용이 상위 항목의 체계적 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후자의 경우 이전에 발간된 보고서와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록 '민사사법정의'의 세부 내용이 대부분 기존 '대시민서비스' 항목에 포섭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2013년판과 2015년판 보고서의 체제와 구성, 분류 및 서술방식이 정확히 일치되지 않아 완전한 포섭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후자의 방식에 따라 '대시민서비스'의 세부 항목으로 서술하되 2013년판 보고서에서 이미 '대시민서비스'의 하위항목으로 서술된 내용과 병렬적으로(즉, 시계열적 서술이 아니라) 서술하기로 한다.

대 핵심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었던 '민사사법정의' 항목은 2015년판 보고서 이후에는 여러 항목으로 세분되어 '법치주의'의 요소가 아닌 '대시민서비스(serving citizens)'의 하위항목으로 포섭되었다. 이에 따라「한눈에 보는 정부(2015)」보고서에서는 사법제도 관련 지표로서 '사법제도와 법률정보 접근성'이라는 하위항목 하에 법적 절차 비용의 적합성과 법과 법적 절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욕구 대응성'이라는 하위항목 하에 재판과정의 적시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조치 메커니즘을,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이라는 하위항목 하에 민사 사법 결정 집행의 효과성과 독립성, 형사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범죄로부터의 시민보호에 관한 지표를 각각 별도로 발표하였다.[160] 위 내용은 이하에서 '법치주의'의 하위항목이 아닌 '대시민서비스'의 항목에서 따로 살핀다.

다. 구체적인 조사 · 측정방법[161]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의 각 자료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법치주의 지수 개발을 위해 사용한 5개 설문세트를 이용하여 수집된다.

설문은 각국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에게 배포되는데, 전문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국가마다 24명, 일반인들의 경우 각국의 가장 큰 3개 도시에 거주하는 1000명의 확률표본이 선정된다. 일반인들에 대한 조사는 각국의 지역 여론조사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각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모든 변수들은 코드화되고 정규화(normalized) 되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1은 가장 높은 점수를, 0은 가장 낮은 점수를 의미한다.

160) 각 하위항목의 명칭과 내용은「한눈에 보는 정부(2017)」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예컨대, '사법제도와 법률정보 접근성'은 '법률 및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욕구 대응성'은 나머지 세부항목을 삭제하고 명칭을 '재판과정의 적시성'으로 변경하였다.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 항목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일부 명칭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161) 2015년의 경우에는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160-161,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gov_glance-2015-en.pdf?expires=1543733917&id=id&accname=guest&checksum=BFCD581C53D46D0BF12CE5A2B4744E77 (2018. 12. 2. 확인). 2017년의 경우에는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2017), 218-219,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gov_glance-2017-en.pdf?expires=1543734089&id=id&accname=guest&checksum=BA73A238E1D6E7119A018F51C0621831 (2018. 12. 2. 확인).

2. 대시민서비스(serving citizens) 지수[162]

가. 사법부문의 효율성 지표

(1) 개요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Doing Business 등에서 발표한 자료[163]를 원용하여 공공부문 효율성(public sector efficiency)의 하위 핵심요소로 사법부문의 효율성 지표를 측정, 발표하였다.[164]

여기서의 사법부문 효율성은 일반 국민이 정의를 추구하는데 추가적 시간과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반응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한눈에 보는 정부(2013)」에서는 민사 재판의 경우 소송목적 값 중 소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제1심 평균 재판기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

(2) 현황

OECD 회원국에서 평균적으로 소송비용은 소송목적 값의 19%를 차지하고, 제1심 재판기간은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함께 성과 척도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는 제1심 재판기간이 매우 길고 소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165]

소송비용과 제1심 재판기간 사이에는 상관계수 0.31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탈리아와 일본,[166] 슬로바키아를 제외하면 상관계수는 0.56으

---

162) '가~다. 항' 부분은 2013년판 보고서에서 채택한 항목이고, '라. 항' 이하는 2015년판 이후 보고서에서 '대시민서비스' 하위항목으로 채택한 항목이다. 따라서 '가~다. 항'은 2013년판 보고서에 원용된 자료만이 포함되어 있고, '라. 항' 이하에서는 2015년판 이후 보고서에서 원용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63) Doing Business 이외에 원용된 자료는 Giuliana Palumbo, et al., "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 no. 5, OECD Economic Policy Papers, OECD Publishing, Paris (2013), 9,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5k44x00md5g8-en.pdf?expires=1543734221&id=id&accname=guest&checksum=5846FE8EDFFA6062DFF8285CCCA84C16 (2018. 12 2. 확인) 참조.

164) (주 143)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 지표가 측정하는 항목들은 「한눈에 보는 정부(2015)」 이후에서는 '대시민서비스'의 하위항목으로 편입되었다(따라서 2015년 보고서 이후 '효율성' 항목에는 사법제도를 제외한 공공부문의 그것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시민서비스의 하위항목 중 하나로서 서술한다. 한편, 위 지표는 내용상 '대시민서비스'의 하위항목인 '사법제도와 법률정보 접근성'의 세부항목 중 하나로서 '법적 절차 비용의 적합성' 항목과 역시 '대시민서비스'의 하위항목인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욕구 대응성' 중 하나인 '재판과정의 적시성' 항목을 융합한 지표의 성격을 갖는다.

165)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만을 포함한 것이다. 각국의 상세한 사법부문의 효율성 지표와 [그림10]은 2013년 보고서의 다음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2941196 (2018. 12. 2. 확인).

166) 일본의 경우 제1심 재판기간은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짧은 3개월여이나 소송비용은 30.95%로서 가장 소

로서 양자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런 효율성 지표는 서비스의 질, 적법절차 준수 정도, 재판의 질에 대한 평가척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림10] 제1심 재판기간과 소송비용(소송목적 값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서)(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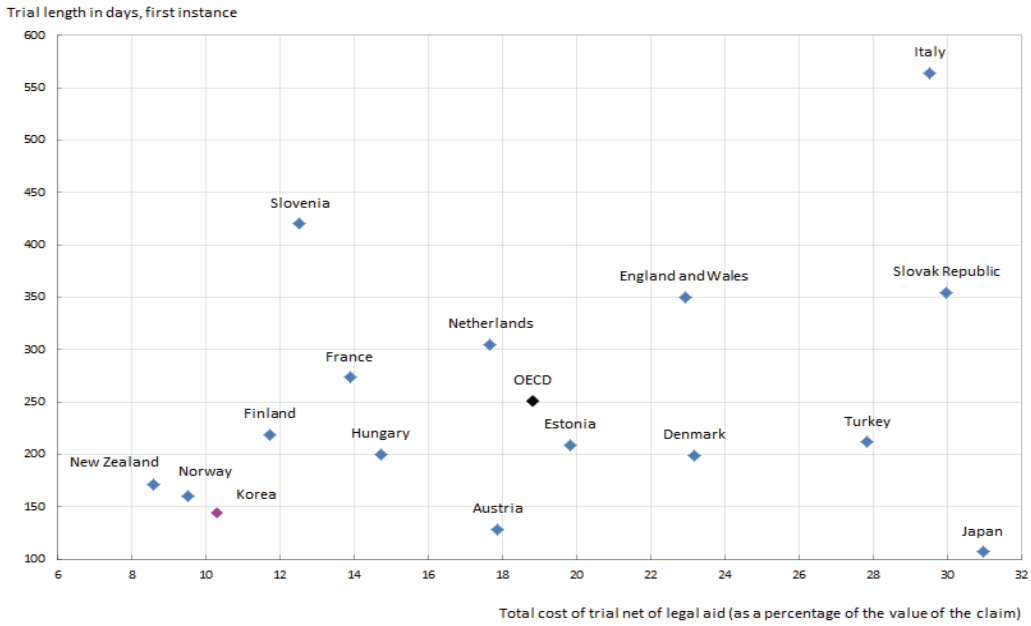

(3) 조사방법

민사재판에 관한 사법 자료들은 OECD의 '사법적 수행과 결정요인: 국가 간 관점'(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에서 인용한 것이다.

제1심 재판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을 통해 추정한 값인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5. 사법서비스의 대응성(적시성)' 부분에서 따로 검토한다. 소송목적 값[167]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 소송비용은 무상 또는 국선변호 등 법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제외하고 소송 전 과정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총비용으로서 세계은행(World Bank)의 Doing Business에 나타난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여

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특이점 현상을 보이고 있다.

167) 위 자료에서는 이를 각국의 1인당 소득(income per capita)의 200%에 상응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에는 통상적인 상사 사건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세 가지 유형의 비용, 즉, 법원 수수료(court fees)와 법 집행비용, 평균적인 변호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비용충당능력) 지표

(1) 개요

무상 또는 국선으로 법정대리인, 법률상담을 받거나 수수료를 면제받는 등 법적 지원(legal aid)을 받은 재판의 비율로써 측정한다.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에서는 이 지표를 '대시민서비스(serving citizens)'의 하위항목 중 하나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public services: affordability)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서 측정, 발표하였다.[168]

(2) 현황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는 2012년 기준으로 법적 지원을 받은 재판 비율에 관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11개국[169]을 대상으로 지표를 발표하였다.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4개국에서는 제1심 재판 중 10%에서 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터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5개국에서는 1% 이하의 제1심 재판에서만 법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70]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관한 자료는 없다.

(3) 조사방법

법적 지원과 제1심 재판에 관한 자료들은 사법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이하 'CEPEJ'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사법시스템 평가, 구체적으로는 2012년에 발간한 유럽사법제도(Europe Judicial Systems)에 있는 자료로부터 추출된 것이다(다만, 브라질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송비용 추정치는 세계은행

168) 「한눈에 보는 정부(2015)」 이후 보고서에서는 '대시민서비스'의 하위항목 중 하나인 '사법제도와 법률정보 접근성'의 세부항목 중 하나로서 '법적 절차 비용의 적합성' 항목으로 편입되었다.

169)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터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OECD 회원국 10개국과 브라질. 다만 이중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형사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170) 이와 관련한 11개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11]은 2013년 보고서의 다음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2942963 (2018. 12. 2. 확인).

(World Bank)의 Doing Business에서 추출한 것으로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비율로 측정되었는데 소송목적 값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인당 소득의 200% 정도인 것으로 가정되었다. 여기에는 재판비용과 집행비용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다.

[그림11] 법적 지원이 이루어진 사건 비율(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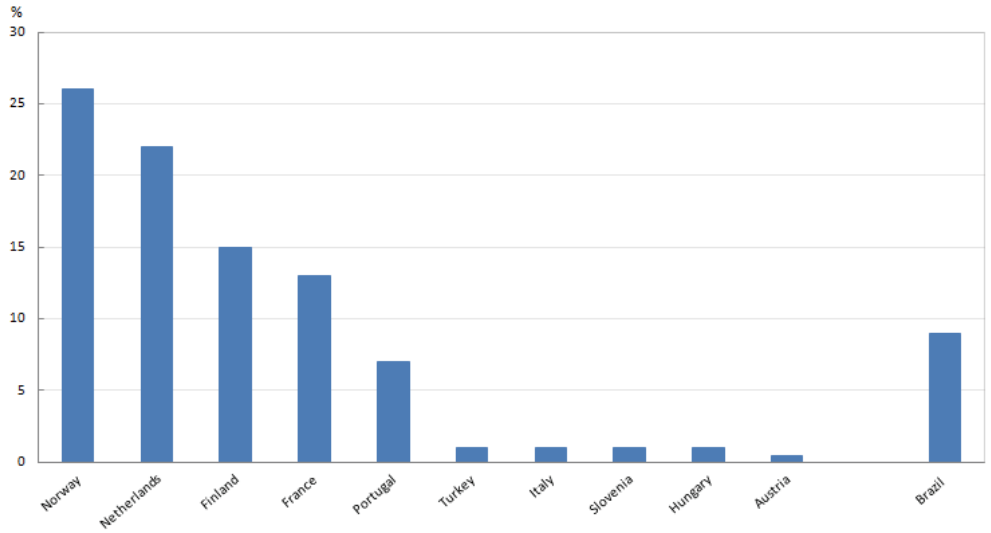

다. 사법서비스의 대응성(적시성) 지표

(1) 개요

사법서비스의 적시성은 사법시스템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사법서비스의 지연은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성을 제공하는 사법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재판의 지연은 사건을 미해결 상태에 남겨두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미래투자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과도하게 짧은 처리시간 역시 적법절차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한눈에 보는 정부(2013)」는 '대시민서비스'의 하위항목 중 하나인 공공서비스의 대응성(적시성) 항목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서 사법서비스의 대응성(적시성) 지표를 측정, 발표하였다.[171]

171) 「한눈에 보는 정부(2015)」 이후 보고서에서는 '대시민서비스'의 하위항목 중 하나인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욕구 대응성'의 세부항목 중 하나로서 '재판과정의 적시성' 항목으로 편입되었다.

(2) 현황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가 이와 관련하여 발표한 지표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31개 OECD 회원국[172]과 남아공, 러시아를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그림12] 제1심 민사사건 소송기간(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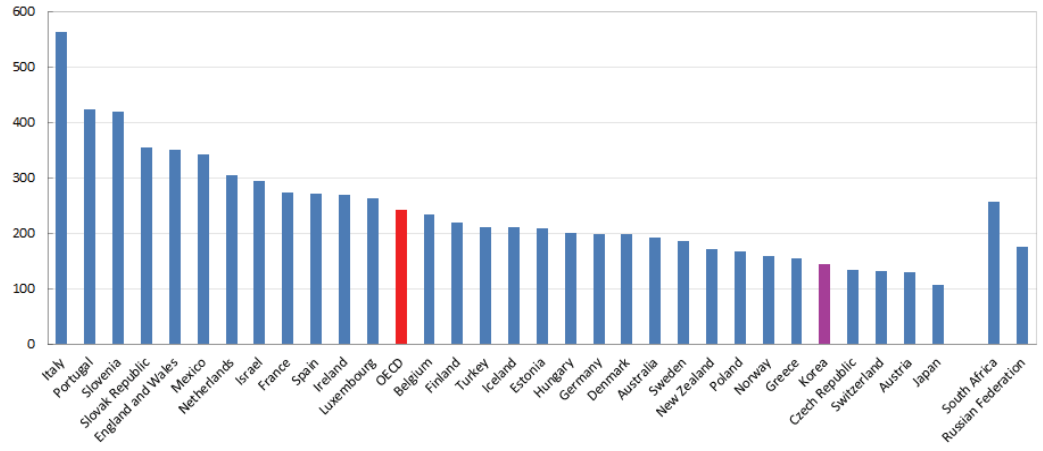

제1심 민사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가장 긴 이탈리아의 550일 이상부터 가장 짧은 일본의 100여일 사이이고, 조사대상국 중 OECD 회원국 31개국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242일로 나타났다. 한국은 평균 처리기간이 144일로 33개 조사대상국 중 최상위권인 5위를 기록하였다.[173]

한편, 프랑스식 법제를 따르는 국가들의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에는 법제 사이의 절차법적 또는 실체법적 차이점 이외에 직원채용, 인적자원관리 정책, IT 사용, 사건담당건수 관리능력 등 사법제도 측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72)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173) OECD 31개 회원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를 포함한 33개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12]는 2013년 보고서의 다음 링크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2943115 (2018. 12. 2. 확인).
한편, (주 165)에 첨부된 엑셀 파일 역시 제1심 민사사건 소송기간에 관한 통계자료이나, 이는 OECD 회원국 중 16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3) 조사방법

제1심 민사사건의 평균기간에 관한 사법자료는 OECD의 '사법적 수행과 결정요인: 국가 간 관점'(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에서 추출되었다. 재판기간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식[174]을 사용하여 추정한 값이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 수에 관한 정보는 획득이 불가능하지만 실제 재판기간에 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175]에는 그 실제 기간을 사용하였다. 추정값과 실제 재판기간 모두를 사용할 수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에 나타난 추정 재판기간의 회귀 예측치로 계산하였다.

라. 사법제도와 법률정보 접근성(access to judicial systems and legal information) 지표[176]

사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자, UN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중 하나의 핵심요소이다.[177] 법률적 문제에 관한 재정지원과 법률 및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포함한 인간 중심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법률과 사법서비스, 법적, 행정적 절차에 관한 이해력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법 앞에서 평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고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하는데 핵심적이다.

이 지표는 모든 시민이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 「한눈에 보는 정부(2015)」 보고서

「한눈에 보는 정부(2015)」 보고서는 사법제도와 법률정보 접근성 지표를 다시 다음과 같은 지표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174) $[(\text{미제사건수}_{t-1} + \text{미제사건수}_{t})/(\text{접수사건수}_{t} + \text{처리사건수}_{t})] * 365$

175) 잉글랜드와 웨일즈, 멕시코, 뉴질랜드, 네덜란드.

176) 비유럽 OECD 국가의 경우에는 가용 자료가 없다.

177)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 (2018. 12. 2. 확인).

(가) 법적 절차 비용의 적합성(affordability of legal procedure) 지표[178]

대부분의 OECD 국가는 특정 소득 이하 사람들과 사법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 계층에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법률서비스의 범위와 보장 범위의 차이 때문에 OECD 국가 간 법률지원 제공 정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사법제도의 기능과 자금조달방식의 차이도 각국의 법률지원 제공 필요성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13] 유럽 내 OECD 14개국의 법률지원이 제공된 1심 재판 비율(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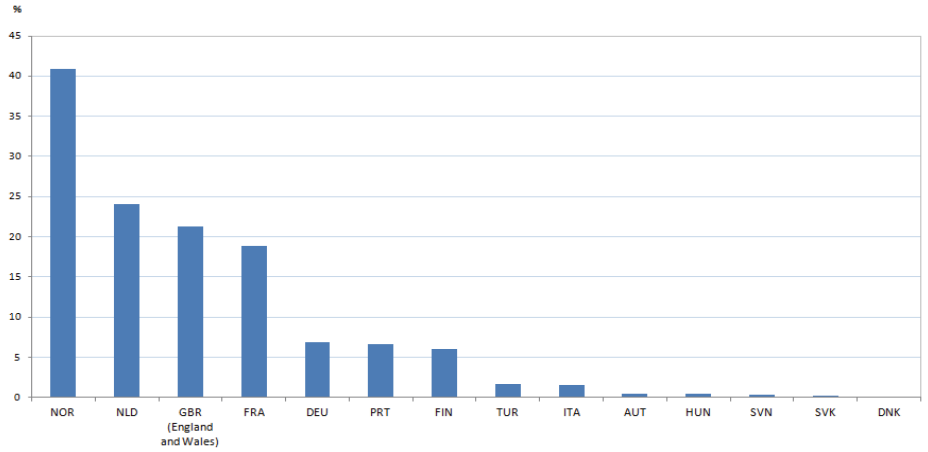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정부(2015)」 보고서가 인용한 사법효율성을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EPEJ)가 수행한 '2014 Evaluation of Judicial Systems'에 의하면 자료 수집이 가능한 14개 유럽 내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모든 1심 재판 중 9%에 법률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에서 법률지원 비율이 높은 반면,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79] 우리나라 자료와 지표는 수집, 발표되지 않았다.

178) 「한눈에 보는 정부(2017)」에서 각 세부항목의 명칭과 내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데, 2015년판 보고서에서 세부항목을 나누어 설명하던 내용을 2017년판에서는 세부항목 구분 없이 설명하거나 새로운 도표와 자료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179) 덴마크와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제외한 사건의 자료이다. 영국의 경우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만을 포함한다. 각국의 상세한 자료와 [그림13]은 「한눈에 보는 정부(2015)」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249431 (2018. 12. 2. 확인).

(나) 법과 법적 절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access and understandability of information on laws and legal procedure) 지표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법적 정보와 절차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법적 권리를 누리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13년 유로 바로미터(Euro Barometer)[180]에 의하면 OECD 회원국과 EU 회원국 국민 중 22%만이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슬로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는 30%, 프랑스는 15%, 헝가리, 스페인, 에스토니아는 16%로 국가 간 차이가 있다.[181] 역시 우리나라 자료와 지표는 수집, 발표되지 않았다.

[그림14] 유럽 내 22개 OECD 회원국의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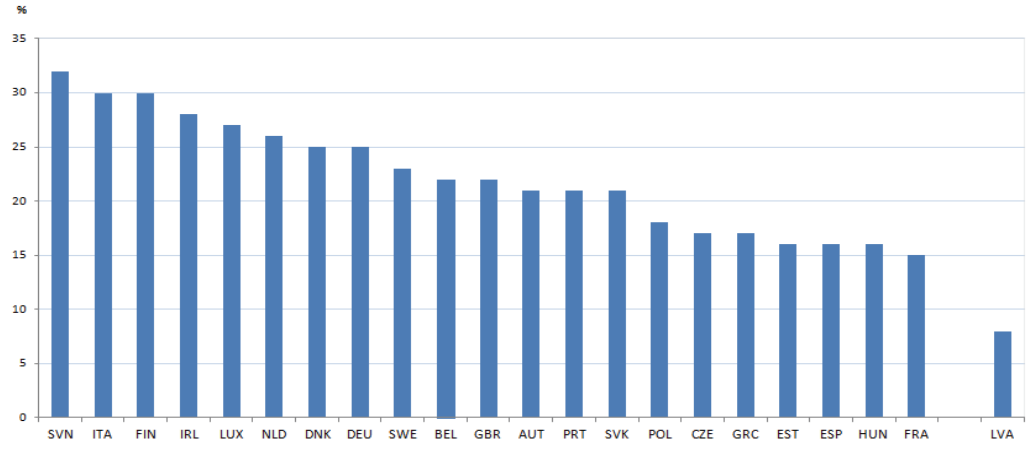

대부분의 응답자가 변호사 선임에 관한 정보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법정에 갈 필요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법적 절차와 법률 지원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고학력의 경우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육체노동자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법적 절차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180) EU 28개국에서 2013. 9. 30.부터 같은 해 10. 2.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이다. 사회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26,581명을 전화 인터뷰 하였는데, 법률지원에 관한 권리,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 법원에 가야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변호사를 어떻게 찾는지 등에 관한 정보 취득 수준 등을 질문하였다.

181) 각국의 상세한 자료와 [그림14]는 역시 「한눈에 보는 정부(2015)」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249447 (2018. 12. 2. 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눈에 보는 정부(2017)」 보고서[182)]

「한눈에 보는 정부(2017)」 보고서에 의하면, 법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2016년에 실시한 일반 인구조사(general population poll)에 의하면 지난 12개월간 평균적으로 약 1/3의 인구가 분쟁[183)]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 38%만이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184)] 이런 비율은 호주,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가장 높고, 한국과 일본, 터키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분쟁해결 조치에는 법정으로 가는 것 이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정부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기타 다른 유형의 조치들이 모두 포함된다.

분쟁해결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응답자들의 든 가장 많은 이유는 신속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였거나 또는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는데,[185)] OECD 회원국[186)]의 약 26% 국민들은 자국의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제한적 신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187)] 재정적 문제와 절차에 대한 정보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접근 장애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OECD 회원국 국민은 약 23%였다.[188)]

같은 일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민 중 약 31%[189)]는 분쟁해결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지원이나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법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분쟁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을 의미하

182) 2016년 각국의 가장 큰 대도시 3곳에서 이루어진 일반 인구조사에서의 응답자 1,000명의 답변을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확률표본으로 선정되었고, 대면조사(남여 동등 비율을 유지하여)와 함께 인터넷 조사방법이 사용되었다.

183) 가족, 개인, 다른 가구원, 또는 국가 등을 상대로 발생한 일체의 분쟁을 포함한다. 토지분쟁, 행정적 분쟁, 이혼/별거, 폭행, 상속, 노동사건 등 모든 유형의 분쟁이 포함된다.

184) 한국은 표준오차 0.025에서 31.1%.

185) OECD 평균은 42%이다. 한국은 39%로서 표준오차 0.03을 고려하면 평균치에 근접한다.

186)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스위스는 가용 자료가 없다.

187) 한국은 표준오차 0.03에서 29%.

188) 한국은 역시 표준오차 0.03에서 27%. 아래 [그림 16]의 국가별 상세 내역은내역과 [그림16]은 2017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534024 (2018. 12. 2. 확인).

189) 한국은 표준오차 0.025에서 29.6%이다.

는 것은 아니다.[190]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법적 지원을 얻으려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법적 조언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이었고,[191] 재정적 문제로 법적 조언을 얻지 못한 비율은 약 16% 정도였다. 독일과 터키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낮았고 한국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법적 조언을 얻지 못하였다는 응답자 비율이 31%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국민의 약 12%는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서 누구를 접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부족을 들었다.[192]

[그림15] 12개월간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법적 지원을 받은 비율(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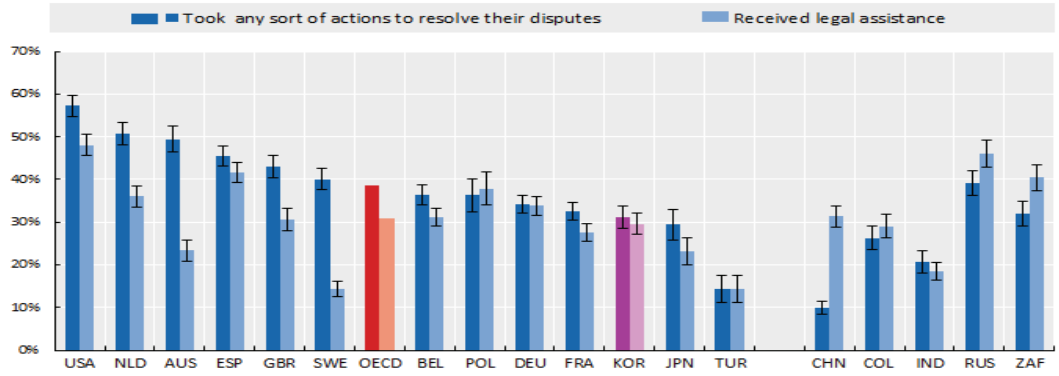

[그림16] 분쟁해결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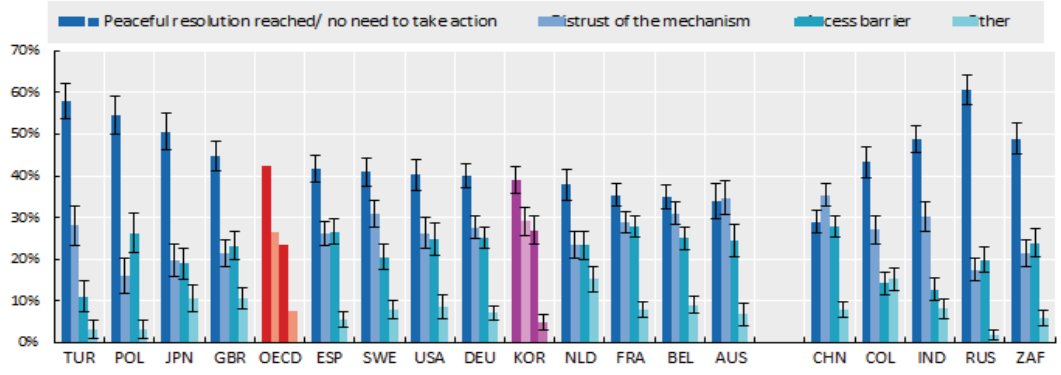

190) 국가별 상세한 자료와 [그림15]는 2017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534005 (2018. 12. 2. 확인). 한편 그림의 'H' 표시는 95% 신뢰구간을 의미하고 이는 이하 [그림 16]과 [그림 17]에서도 같다.

191) OECD 평균은 56%, 한국은 26%(표준오차 0.03)이다.

192) 한국은 24%(표준오차 0.03)이다. 국가별 상세 내역과 [그림17]은 2017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534043 (2018. 12. 2. 확인).

[그림17] 분쟁해결과정에서 법적 지원을 받지 않은 3대 주요 원인(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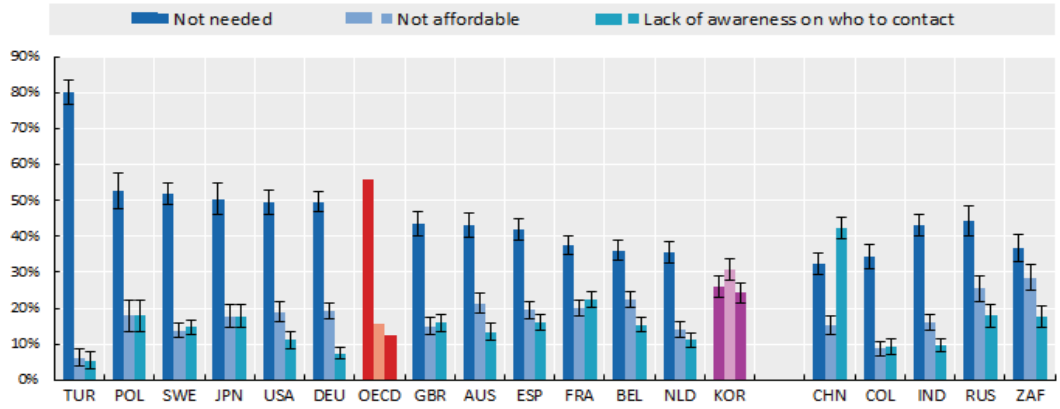

마.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요구 대응성(responsiveness of judicial systems to citizens needs)[193] 지표

법적 문제를 효과적이고 적절한 기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빈곤의 덫을 강화하고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OECD 경제분과에서 2013년에 발간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판기간이 10% 증가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 감소한다는 추정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194] 민사 사법절차 기간을 축소시키는 것은 많은 OECD 국가와 파트너 국가들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 지표는 사법절차가 불합리한 지연 없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1) 재판과정의 적시성(timeliness of judicial proceedings) 지표

어느 국가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법원의 능력이라는 관점(1년간 처리한 사건 수)에서 재판기간(disposition time, DT)은 하나의 사건이 처리되는데 필요한 최대 기간을 측정한 것이다.[195] 재판기간(DT)은 재판절차에서 예상되는 기간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법효율성을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EPEJ)는 격년으로 민사, 상사, 행정, 그리고 기타 형사사건이 아닌 사건의 재판기간(DT) 추정치에 관한 자료를

193) 비유럽 OECD 국가의 경우에는 가용 자료가 없다.
194) Giuliana Palumbo, et al.(주 163), 위의 글, 9 참조.
195) '(연말 미제사건 수) / (해당 기간에 처리된 사건 수) × 365'의 식에 따라 계산된 기간이다.

수집한다.

(가) 2014년 수집된 CEPEJ 자료에 기초한 지표

CEPEJ가 2014년에 수행한 'Evaluation of Judicial Systems'에 의하면, 사용 가능한 자료가 있는 유럽 내 OECD 국가의 2013년 민사 및 상사소송 제1심 사건에 대한 평균 재판기간(DT)은 이탈리아의 590일에서 룩셈부르크 90일로 범위가 다양하다.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프랑스(311일), 핀란드(325일), 포르투갈(369일), 슬로베니아(405일), 슬로바키아(437일), 그리스(469일) 등은 재판기간(DT)이 300일 이상이라고 조사되었다.[196]

[그림18] 유럽 내 22개 OECD 회원국의 민사 및 상사 제1심 사건의 재판기간(D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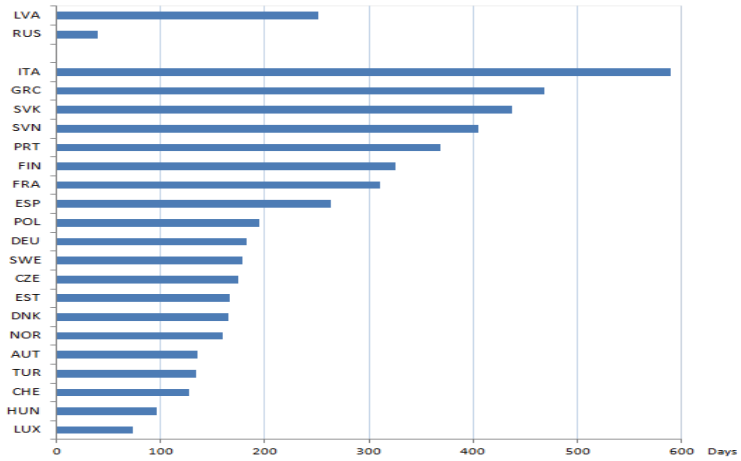

(나) 2016년 수집된 CEPEJ 자료에 기초한 지표

CEPEJ가 2016년에 수집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민사, 상사, 행정 및 기타 형사 사건이 아닌 사건의 재판기간 추정치는 EU 내 OECD 회원국에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일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국가 간 차이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덴마크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추정 재판기간이 40일 미만이었으나 포르투갈에서는 2년 이상으로 나타났고, 2012년 그리스의 경우에도 1년 반 이상으로 추정되었다.[197]

196) 각국의 상세한 자료와 [그림18]은 2015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249522 (2018. 12. 2. 확인).

민사와 상사소송에 국한하는 경우 2014년에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등은 6개월 미만으로 재판기간이 추정되었으나 이탈리아와 슬로바키아에서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에스토니아와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는 추정 재판기간 감소가 관찰된 반면, 네덜란드는 추정 재판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8]

민사와 상사사건에 비하여 행정사건은 추정 재판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베니아와 스웨덴의 경우 4개월 미만이었으나 그리스는 4년 이상,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년 반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라트비아와 영국에서 주목할 만한 추정 재판기간 개선이 관찰된 반면, 슬로바키아의 재판기간 추정치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99]

[그림19] 제1심 민사, 상사, 행정사건의 예상 재판기간(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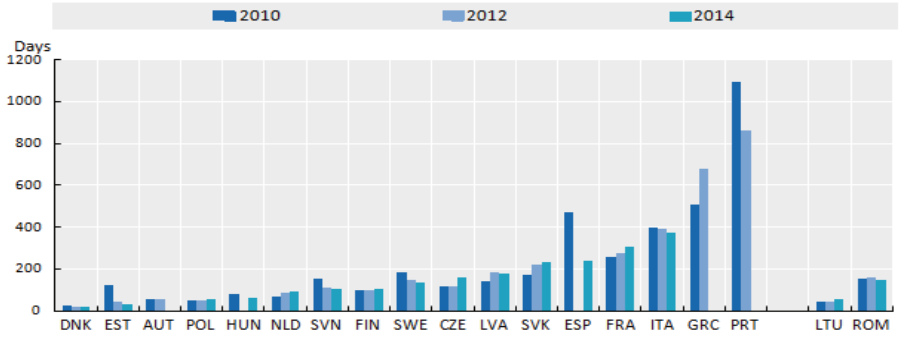

[그림20] 제1심 민사, 상사소송 사건의 예상 재판기간(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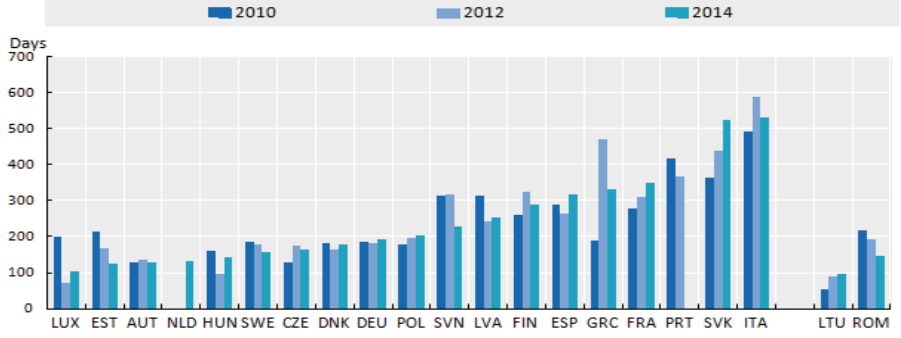

197) 각국의 상세한 내역과 [그림19]는 2017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534195 (2018. 12. 2. 확인).
198) 각국의 상세한 내역과 [그림20]은 2017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534214 (2018. 12. 2. 확인).
199) 각국의 상세한 내역과 [그림21]은 2017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534233 (2018. 12. 2. 확인).

[그림21] 제1심 행정사건의 예상 재판기간(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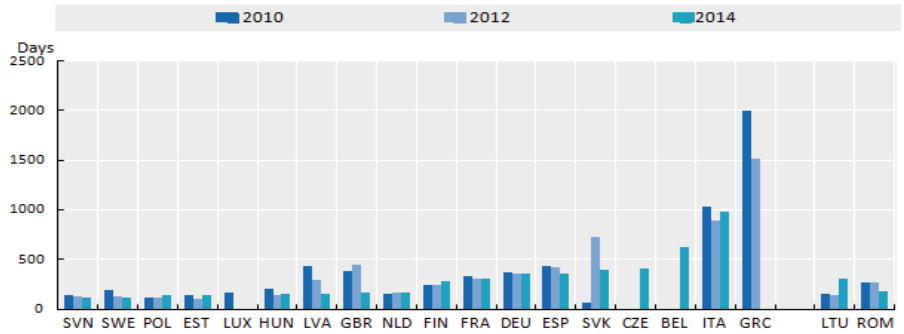

다만, 이런 차이에는 법률시스템의 절차적 차이(사건부담의 차이를 포함하여)와 사법제도의 조직체계(인적자원 관리 정책 포함)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재판진행이 항상 질이 높은 좋은 재판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사건처리 지연을 감소하고 당사자나 일반 시민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기술기반 사법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유럽 OECD 국가는 대부분 법정에서 전자소송과 법정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송서류의 전자적 제출, 온라인 소송이나 소액사건에서의 전자적 처리를 허용하는 법정 비율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법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특히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00]

(2)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조치 메커니즘(use of special arrangement mechanisms for vulnerable persons) 지표

2012년 유럽 내 모든 OECD 국가는 취약계층[201]에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최소한 하나 이상 특별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통전화, 인터넷 포털, 안내문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한 심리방식(화상회의시스템의 사용 등)을 적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202]

---

200) 2012년 유럽 내 OECD 회원국의 당사자 및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컴퓨터 시설을 사용하는 법정 비율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2015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249531 (2018. 12. 2. 확인).

201) CEPEJ의 방법론에 따라 강간피해자, 테러리즘 피해자, 아동 목격자/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수민족, 장애인, 청소년 범죄자 등을 포함한다.

202) 「한눈에 보는 정부(2015)」 보고서에 포함된 2012년 유럽 내 OECD 회원국이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사

바.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effectiveness and fairness of judicial systems) 지표

시민은 법원 결정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는 법이 존중되고, 위반 시에는 적절한 제재가 분명히 가해지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법제도에 기초한다. 효과적인 사법제도는 정부를 포함하여 타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위법행위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사법제도의 성과를 경찰이나 교정당국과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으로 인한 영향과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법제도와 보안 및 범죄의 통제 사이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1) 민사 사법 결정 집행의 효과성과 독립성(effectiveness and independ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civil justice decisions) 지표

편견 없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분쟁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상세한 규칙과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지표이다. 이는 법정에 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그들의 사건이 공정하고 법에 부합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해주는 열쇠이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매년 민사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정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가 발표하는 세계 사법정의 보고서(World Justice Report)의 법치주의 지표에 따르면, 민사 사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사법제도가 부당한 정부의 영향력과 같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0.8).

「한눈에 보는 정부(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35개 조사대상국 중 27개 OECD 회원국[203]은 평균적으로 민사 사법제도에 대한 정부개입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는 77%, 민사 사법의 효과적 집행에 관하여는 69%의 국민이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특히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국민과 사법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사법제도가 법을 집행하는데 효과적이고, 민사 사법제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적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은 민사 사법제도에 대한

법절차 중 특별조치의 상세 내역은 다음 링크에 첨부된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249549 (2018. 12. 2. 확인).
한편, 「한눈에 보는 정부(2017)」 보고서에는 이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이나 자료는 없다.

203) 2015년 당시 34개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의 경우 가용한 자료가 없고, 헝가리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개입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하여 OECD 회원국 평균에 근접한 75%의 국민이,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에 관하여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88%의 국민이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4]

[그림22]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과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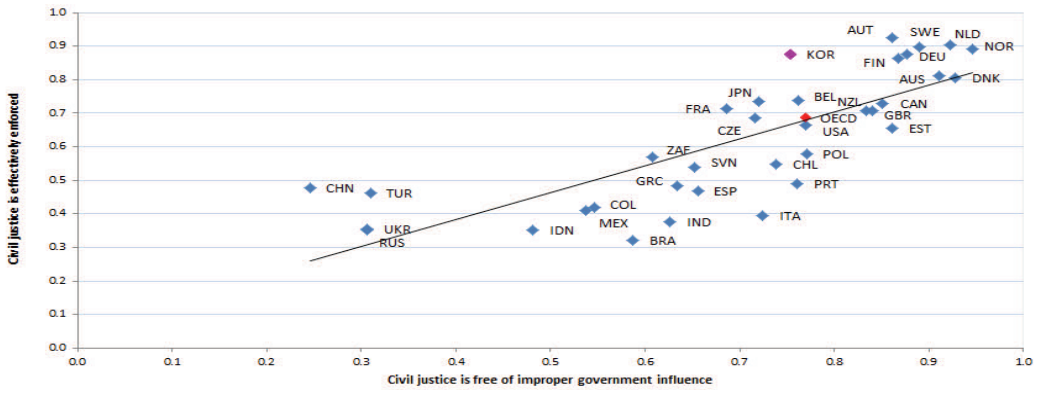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정부(2017)」 보고서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국의 경우 민사 사법제도에 대한 정부개입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하여 OECD 회원국 평균과 같은 77%,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에 관하여는 OECD 평균(70%)을 훨씬 상회하는 86%의 국민이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205]

[그림23]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과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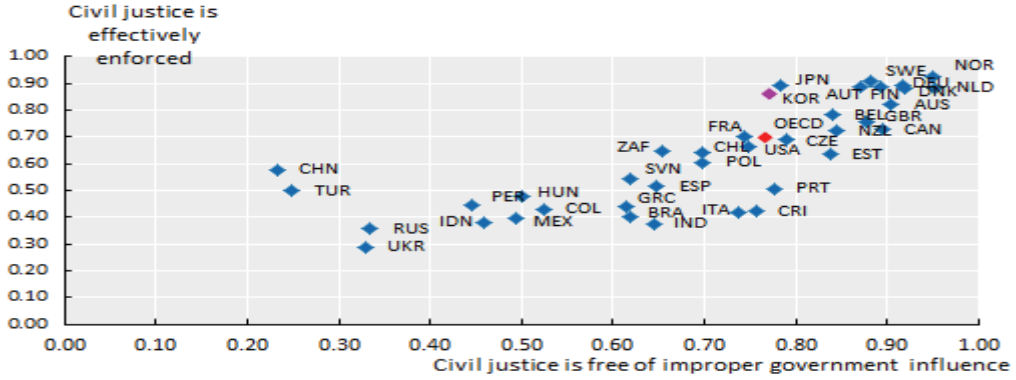

204) 2015년판 보고서 중 이에 관한 각국의 상세한 내역과 [그림22]는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249603 (2018. 12. 2. 확인).

205) 2017년판 보고서 중 이에 관한 각국의 상세한 내역과 [그림23]은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534366 (2018. 12. 2. 확인).

(2) 형사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범죄로부터의 시민보호(effectivenes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and citizens' protection against crime) 지표

효과적인 형사 사법제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형사범죄를 조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흔히 범죄율과 재범율을 형사 사법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찰, 변호사, 검사, 판사, 교도관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206]

(가) 형사 사법제도의 효과성/적시성과 불만해소를 위한 폭력행사 자제 정도

「한눈에 보는 정부(2015)」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판결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즉, 범죄 가해자가 효과적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음)이라고 인식되는 국가에서는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폭력(예컨대, 개인적 협박 그리고/또는 정부에 대한 폭동)에 의존하는 성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WJP의 법치지수를 보면, 이러한 2개의 하위 차원 간의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R^2 = 0.9)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형사 사법제도가 국가의 보안 및 사회적 화합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형사 사법제도의 효과성/적시성 지표(1점 만점)에 대한 OECD 평균은 0.65이고, 오스트리아, 한국, 핀란드가 0.8 이상으로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콜롬비아, 터키, 멕시코, 브라질, 인도는 0.4 미만의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와 관련해서도 1점 만점에 0.8을 기록하는 등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207]

206) Botero, J. and A. Ponce, "Measuring the Rule of Law", no. 2, WJP Working Paper,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2012).

207)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24]는 2015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249613 (2018. 12. 2. 확인).

[그림24] 형사 사법제도의 효과성/적시성과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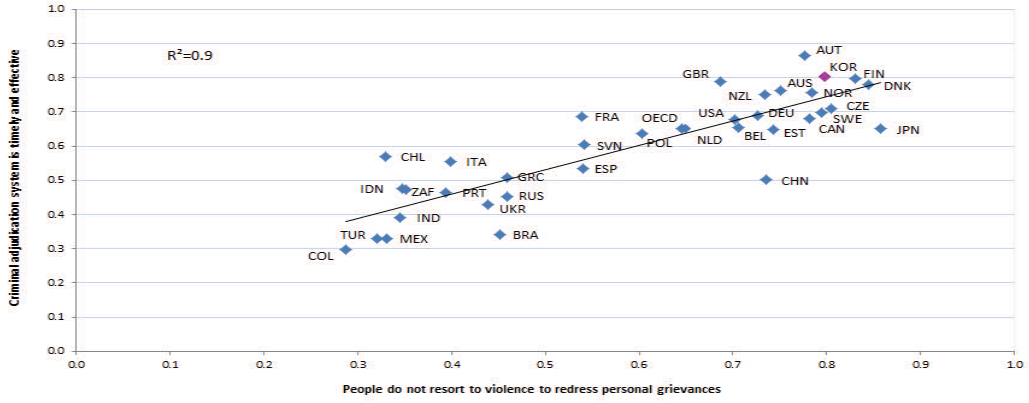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정부(2017)」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도 2015년판 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형사 사법제도의 효과성/적시성 지표(1점 만점)에 대한 OECD 평균은 0.67이고 한국은 0.82이며,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와 관련한 OECD 평균은 0.64이고 한국은 0.61로 조사되었다.[208)]

[그림25] 형사 사법제도의 효과성/적시성과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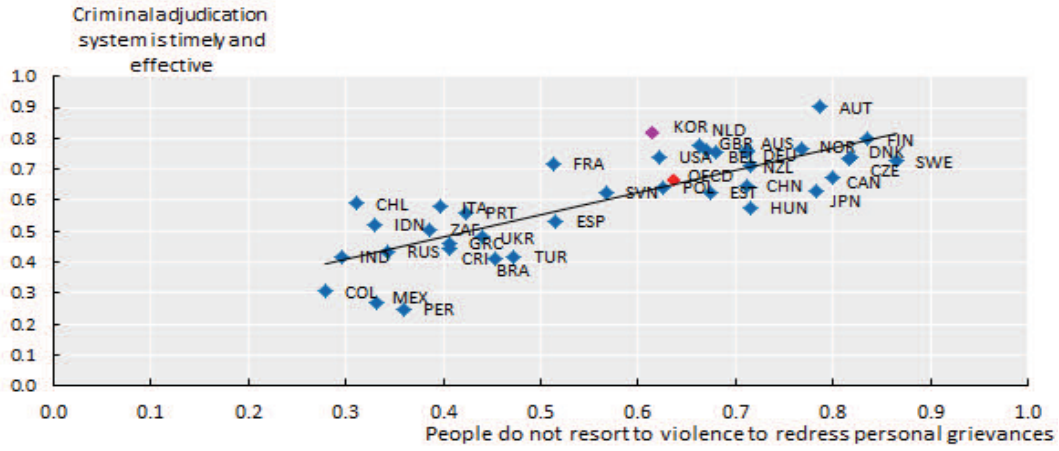

208)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25]는 2017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534385 (2018. 12. 2. 확인).

(나) 범죄에 대한 효과적 통제

「한눈에 보는 정부(2015)」에 의하면 2014년 OECD 국가에서는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범죄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9] 대부분의 국가에서 80% 이상 국민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멕시코(47%), 콜롬비아(50%), 남아공(51%), 브라질(54%) 등이 낮은 지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10]

「한눈에 보는 정부(2017)」 내용도 큰 차이가 없다.[211]

[그림26]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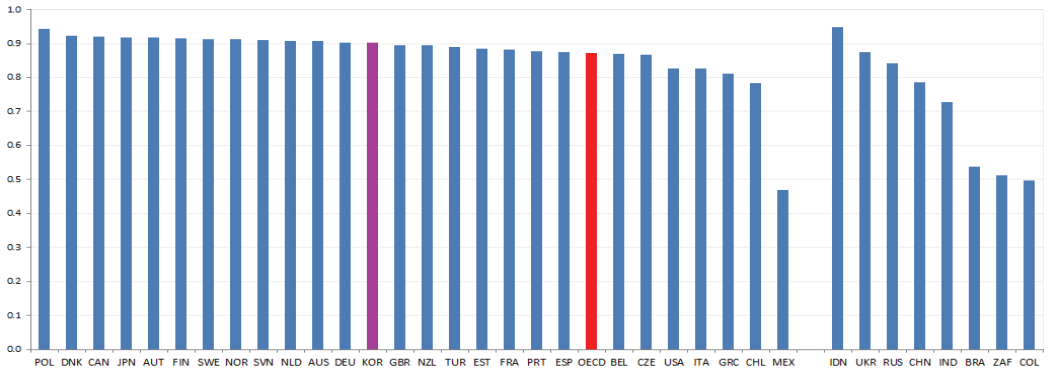

[그림27]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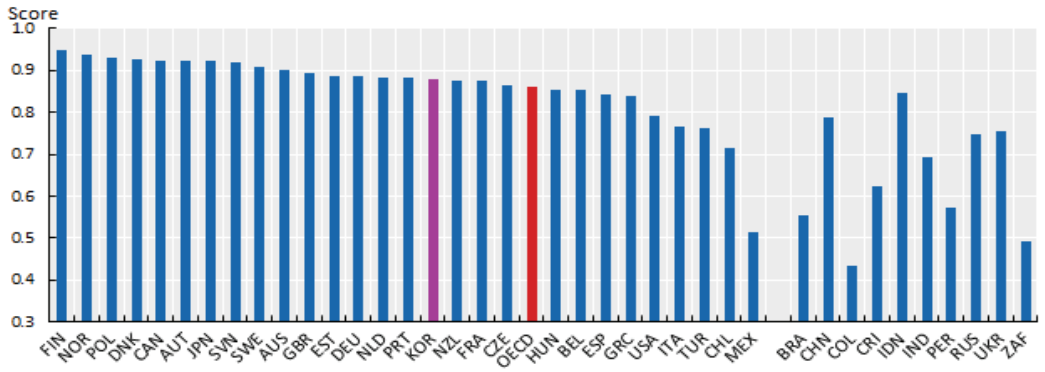

209) 안전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은 물론이고 살인, 유괴, 강도와 절도, 강요 등과 같은 일반적인 범죄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가에 의하여 측정된다.

210) 2015년판 보고서에 소개된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26]은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249625 (2018. 12. 2. 확인).

211) 2017년판 보고서에 소개된 각국의 상세한 지표와 [그림27]은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534404 (2018. 12. 2. 확인).

그러나 이런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각 국가별 3대 도시 자료만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위 자료들이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서 자료수집 당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효과적인 사법제도와 공정성, 보안, 질서에 끼치는 영향력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사. 구체적인 조사 · 측정방법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법치주의 지수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5개 설문 세트를 이용하여 수집한 것 이외에, 사법효율성을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EPEJ)가 수행한 '2014 Evaluation of Judicial System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13년 유로 바로미터(Euro Barometer)[212] 등을 통해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등을 기초로 분석되었다.

3.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 in judicial system) 지수[213]

가. 신뢰도 조사의 목적

OECD는 2013년 발간된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 각국이 2008년 발생한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집행능력은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정부신뢰가 공공 거버넌스 및 각종 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의 의미

21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U 28개국에서 2013. 9. 30.부터 같은 해 10. 2.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이다. 사회·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26,581명을 전화 인터뷰 하였는데, 법률지원에 관한 권리,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 법원에 가야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변호사를 어떻게 찾는지 등에 관한 정보 취득 수준 등을 질문하였다.

213) 구체적 사법신뢰도 지수 중 하나로서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지수이다(제3장 제2절 Ⅱ. 2.의 다.항 참조). 아래 '나. 신뢰도 현황' 항목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2015년판 보고서 이후에는 이전 판과 다르게 '정부신뢰'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이미 위에서 살펴 본 '2. 대시민서비스' 중 한 항목으로 분석, 발표되었다. 그러나 위 지표가 이 글의 중심적 논의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대시민서비스' 항목이 아닌 별도 항목으로 상술한다.
한편, 앞에서는 'confidence'를 신뢰의 유사개념으로서 '확신'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나(제3장 제1절 Ⅱ. 3.의 다.항 참조), 여기서는 OECD의 용법을 따르기로 한다. 참고로 OECD는 'trust'를 신뢰와 구별되는 '믿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아래 제4장 제1절 Ⅱ. 3. 바.의 ⑴항 참조]. 또한 뒤에 설명하는 세계가치관조사(WVS) 역시 'confidence'를 신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아래 (주 300) 참조]. 이하 OECD와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사법신뢰도 지수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관한 측정지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용법을 따른다.

와 측정방법을 살펴보고 이것이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뒤, 궁극적으로는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214]

나. 신뢰도 현황

(1) 「한눈에 보는 정부(2013)」

사법제도 또는 법원에 대한 신뢰는 2013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취급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신뢰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서 조사, 분석되었다. 즉, 「한눈에 보는 정부(2013)」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발표하는 세계여론조사(gallop world poll, GWP)의 자료를 이용하여 34개 OECD 회원국의 2012년(칠레, 독일과 영국은 2011년 자료를 이용)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를 결정하는 거시 수준에서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로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지수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되었고, 스페인, 멕시코, 칠레,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와 한국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15]

한편 위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정부신뢰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0.57).

---

214) 정부신뢰의 정의와 중요성, 측정방법, 신뢰도 현황, 신뢰수준의 결정요인 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위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 21-36 참조.

215) 덴마크는 85%,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각 81%, 핀란드는 72%, 스웨덴은 71%, 룩셈부르크는 70%의 응답자가 자국의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반면, 스페인은 29%, 멕시코는 28%, 칠레는 24%,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는 각 23%, 한국은 22%의 응답자만이 자국의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34개국 OECD 회원국 전부의 2012년(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2011년) 정부신뢰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사이 상관관계 및 정부와 사법제도에 대한 각 신뢰도 지표, [그림28]은 2013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2940835 (2018. 12. 2. 확인).

[그림28] 정부신뢰와 사법신뢰의 상관관계(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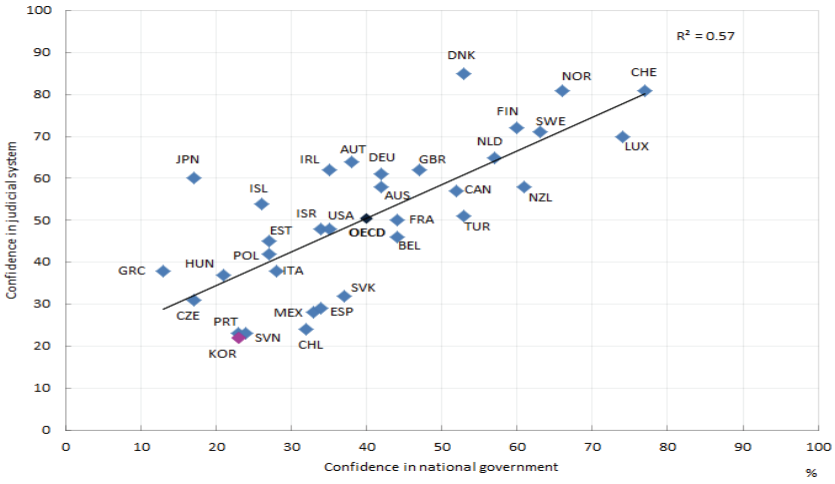

다만 인과관계 등 보다 깊은 관련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계량경제 기법을 동원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한눈에 보는 정부(2015)」

2015년판 보고서에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하위 요인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대시민서비스(serving citizens)'라는 대분류 하에 '정부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공공서비스 중 핵심적 영역[216] 중 하나로서의 사법에 대한 시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로서 측정, 발표하였다.

위 보고서 역시 갤럽의 세계여론조사(GWP) 결과를 원용하였는데, 2007년[217]과 2014년을 선정하여 지수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다른 핵심적 공공서비스 영역인 의료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것보다 낮았는데,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절반보다 약간 높은 비율인 54%의 국민이 자국의 사법제도와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216) 위 보고서에서 사법 이외에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로 분석한 것은 의료와 교육 영역이다.
217) 2007년은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해로서 선정되었다.

[그림29] 사법제도(judicial system)에 대한 신뢰도(2007년과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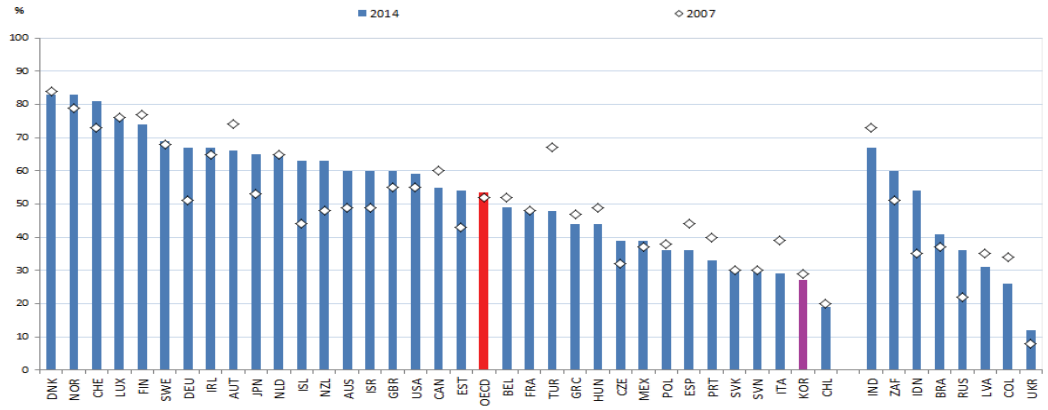

OECD 국가들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위스의 경우에는 국민 중 80% 이상이 사법제도와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칠레의 경우에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만이 신뢰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2007년 이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눈에 띄게 하락한 국가는 터키와 이탈리아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2007년의 경우 29%, 2014년의 경우 27%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218]

다. 구체적인 조사 · 측정방법

2013년과 2015년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발표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갤럽이 세계여론조사(GWP)를 통해 실시한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 즉 "당신은 당신 국가에서 다음 항목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사법제도와 법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219]라는 설문에 대해 "예(yes)"라는 응답을 한 비율[220]을 측정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221]

---

218) 34개국 OECD 회원국 전부와 일부 관련국가의 2007년, 2014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지표와 [그림29]는 2015년 보고서에 첨부된 다음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을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249375 (2018. 12. 2. 확인).

219) 영어로 된 원래의 설문은 "In this country, do you have confidence in each of the following, or not? How about judicial system and courts?"이다.

220) "아니오" 답변은 물론이고 무응답의 경우도 제외된다.

221)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는 2012년(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2011년 자료)에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정부(2015)」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2007년과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2007년 자료의 경우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2006년 자료,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는 2008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2014년 자료의 경우 호주, 캐나다, 칠레,

갤럽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이용된 설문의 개발과 구성,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법과 표본수집 방법, 여론조사의 주기와 규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서술한다.

라. 사법제도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여러 국제조사 비교[222)]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어서 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하나의 국가 수준에서조차 어려운 작업이고 국제적 수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사법제도를 포함한 정부신뢰에 관한 응답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국제적 조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갤럽이 실시하는 세계여론조사(GWP)는 2005년 이후 OECD 회원국과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의 연간 자료를 수집하는 유일한 설문조사이다. 세계적인 재정·경제 위기가 정부(사법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에 충분한 규칙성을 내포하고 있는 OECD 회원국 전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오랫동안 정부신뢰를 측정해오고 있으나 자료 집합이 분절되어 있고 매년 생산되는 것도 아니라는 난점이 있다.

EU의 Euro Barometer는 가장 일관성 있는 자료 집합(연 2회 측정을 실시한다)을 제공하고 있지만 전체 34개 OECD 회원국 중 23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Edelman의 Trust barometer는 제한된 인구표본에 대해서만 시계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과 한국, 라트비아, 남아공은 2013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222) 이 항목에서 소개하는 여러 국제적 조사는 사법제도만이 아닌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trust in government)를 측정하는 것을 1차적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하위 평가항목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측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표4]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국제조사(2013년 기준)[223]

조사기관	포함된 OECD 회원국 숫자	포함된 연도나 주기[224]	측정	응답척도
Gallop World Poll	34	2005–12(매년)	국가정부에 대한 신뢰[225]	2:예/아니오
World Value Survey	25	4년 주기 1989–1993 1994–1998 1999–2004 2005–2008 2009–2012	정부에 대한 신뢰	4:매우/상당히/그다지/전혀
Euro Barometer	23	2003–2013(연2회)	정부신뢰	2:신뢰하는 성향/신뢰하지 않는 성향
Edelman Trust Barometer	15	2001–2013(매년)	정부신뢰	9점 척도:1점은 전혀 신뢰하지 않음. 9점은 아주 많이 신뢰함
Latino Barómetro	3	1995–2012(매년)	정부신뢰	4:꽤 많이/어느 정도/약간/전혀 신뢰 없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ECD가 발표하는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하여 위 각 국제적 조사 중 OECD 회원국 전부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갤럽이 실시한 세계여론조사(GWP) 결과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사 결과는 조사방법론상의 몇몇 특성 때문에 신뢰성 또는 정확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아래에서 위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223) 출처: OECD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 23–24.
224) 「한눈에 보는 정부(2013)」 보고서가 발간된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
225)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당신은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사법제도와 법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each of the following, or not? How about the judicial system and courts?)"이다.

마. 갤럽 세계여론조사(gallop world poll, GWP)[226]

(1) 의의

갤럽이 2005년부터 매년 세계 성인[227] 인구의 99%를 포함하는 160여 개국에서 식량에 대한 접근성, 고용, 리더십 성과, 웰빙(well-being)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관해 실시해 온 여론조사이다. 설문에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100여개의 질문과 함께 각 지역에 특화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228] 모든 국가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같은 방식으로 물어 연간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국가들 사이에 직접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설문의 개발, 번역

설문은 개발과 구축, 자료 수집에 관한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와 정치학자들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된다.[229] 연구진은 세계 여론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수천 개의 설문을 개발한 뒤 시험과 시범실시를 거쳐 최종적인 설문을 구축하였다. 갤럽은 최적의 설문을 핵심적인 세계 여론조사 설문에 포함시킨 뒤 이를 지표들로 조직하였다.

대부분의 항목은 응답 스타일에 관한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순 이분법적인 응답(예 또는 아니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설문[당신은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사법제도와 법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each of the following, or not? How about the judicial system

---

226) 방법론에 대하여는 Gallup 웹페이지에 있는 다음 내용 각 참조(각 2018. 12. 2. 확인).
- "Worldwide Research: Methodology and Codebook", https://data-services.hosting.nyu.edu/wp-content/uploads/2017/10/World_Poll_Methodology_102717.pdf.
- "How dose the Gallup World Poll work?", http://www.gallup.com/178667/gallop-world-poll-work.aspx.
- "Gallup Poll: World poll methodology" (2008. 10.), http://www.oecd.org/sdd/43017172.pdf.
- "World Poll Methodology", https://news.gallup.com/poll/105226/World-Poll-Methodology.aspx.

227) 15세 이상을 의미한다.

228) 공통 설문과 지역특화 설문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연결된 파일 참조.
Gallup, "Gallup Poll: World Poll Questions", https://media.gallup.com/dataviz/www/WP_Questions_WHITE.pdf (2018. 12. 2. 확인).

229) 브루킹스 연구소, 세계은행과 유엔 등 국제기구, Daniel Kahneman, Jeffrey Sachs 등 세계적인 석학 등이 이 작업을 위한 자문에 참여하였다.

and courts?)]에 대한 응답 역시 [표 4]에서 본 것처럼 2단계 응답척도에 따라 "예/아니오"로 답변하게 되어 있다.

전 세계에 공통된 표준적인 설문사항이 있지만, 지역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에서 설문은 각국의 주요 언어로 번역된다. 설문 개념은 각 언어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되는데, 번역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역 번역(back translation)이 독립적으로 실시된다. 2012년과 2013년에는 143개 언어 번역본이 사용되었다. 대면조사 방식이 사용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통적인 설문 이외에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설문이 일부 포함된다.

(3) 여론조사 방법

전화보급률이 80%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방법으로 관례적으로 전화조사를 사용하여 온 국가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갤럽은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random-digit-dial, RDD)[230] 또는 대표적인 전화번호 목록을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전화조사 방법은 주로 미국, 캐나다, 서유럽, 일본과 호주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구 소련연방 국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무작위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face-to-face interviewing)를 실시한다. 대면조사는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전화조사는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전체 기간은 통상 2주에서 4주 사이이다.

(4) 표본 수집

모든 표본은 확률기반 기법으로 선정된 15세 이상 거주자의 대표집단이다. 표본수집은 지방을 비롯한 전국을 포함하고 일반 민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확한 표본을 수집하고 각 가구에서 적당한 응답자가 무작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질적 통제절차가 사용된다.

230) 이 조사방법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는 김지윤·강충구, "여론조사의 대표성 -표집과 조사방식에 대한 연구", 평화연구 제22권 제2호,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2014. 10.), 369-371 참조.

(가) 1단계-일차 추출 단위(primary sampling units, PSUs) 선정

갤럽이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표본 수집의 첫 단계는 가구 집단으로 구성된 일차 추출 단위(PSU)의 특정이다. PSU는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계층화되고, 하나 이상의 표본 수집절차를 통해 집단화된다. 인구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확률적 방법으로 PSU를 선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도시 또는 마을을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인 도시, 10만 명 이상 50만 미만인 도시,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인 도시,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인 도시/마을, 1만 명 미만인 도시/마을의 범주로 나눈 뒤, 각 범주에서 인구 비율에 따라 모두 100개에서 125개의 PSU를 확률적 방법으로 선정하게 된다. 여론조사는 각 PSU마다 평균적으로 8건 또는 10건 씩 이루어진다. 인구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방법이 이용된다.

여론조사 방법으로 전화조사가 이용되는 국가에서는 RDD나 대표적인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표본을 수집하게 된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은 몇몇 국가에서는 이중 표집틀(dual sampling frame)[231]을 이용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PSU 선정을 위해 대면조사에서와 같은 계층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2단계-가구 선정

갤럽은 가구 표본 수집을 위해 무작위 기법을 사용한다. 대면조사의 경우 명시적인 거절이 있지 않는 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와 3차례 이상 접촉을 시도한다. 조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하루 중 다양한 시간대에 접촉을 시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날에 접촉을 시도하기도 한다. 최초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통한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순 치환 방법(simple substitution method)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원래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로부터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곧바로 그 우측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하고, 이 역시 불발된 경우에는 원래 표본의 좌측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에 의할 경우 대면조사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를 위한 접촉시도는 최대 9가구까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231) 표집틀 또는 표본추출 프레임(sampling frame)은 모집단의 구성요소나 표본추출단계별로 표본추출단위가 기록된 목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한다면 학적부나 출석부 등이 표집틀이 될 수 있다. 모집단을 잘 대표하도록 표본추출단위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이중으로 포함되는 단위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김구(주 91), 위의 책, 279-280]. 한편, 여기서의 이중 표집틀은 유무선 전화를 섞는 표집틀을 의미한다.

RDD를 이용한 전화조사의 경우 선정된 각 응답자를 대상으로 적어도 5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게 된다.

(다) 3단계–응답자 선정

선정된 가구 구성원 중에서 응답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생일을 맞은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키시 그리드(Kish Grid) 방법[232]을 이용한다. 몇몇 중동과 아시아 국가에서는 응답자와 동성(同性)인 조사자에 의한(gender–matched)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최종 응답자 선정단계에서 할당에 의한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 with quotas)[233]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갤럽은 정확한 표집과 각 가구로부터 가장 적절한 구성원 선정을 보장하기 위해 질적 통제절차를 실시한다.

(5) 평균적인 여론조사 규모

통상적인 경우 적어도 1,000명 이상을 조사한다. 그러나 주요 도시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큰 국가에서는 적어도 2,000명 이상의 인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반대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500명에서 1,000명 사이 인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232) 통계학자인 Leslie Kish에 의해 1949년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예컨대 특정 주소 거주자를 연령순으로 정렬한 뒤 해당 주소의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순서의 거주자를 대상자로 정하는 것과 같이 응답자를 선정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무작위 숫자 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를 통해 모든 가구 구성원은 같은 확률로 응답자로 선정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웹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다. Encyclopedia.com, "Kish Grid", https://www.encyclopedia.com/social–sciences/dictionaries–thesauruses–pictures–and–press–releases/kish–grid (2018. 12. 2. 확인).

233)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은 모집단의 각 표본추출단위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을 알 수 있는 표본추출방식이다. 각 표본추출단위는 모두 추출 기회가 있고 무작위적으로 추출된다[김구(주 91), 위의 책, 286–294 참조].
할당(quotas)에 의한 확률표집은 Seymour Sudman이 1966년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에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에 소개된 표집 방법이다. 성, 나이, 고용여부에 따라 표집을 할당하는 할당표집은 비확률표집 방법(확률표집의 성질을 갖추지 못한 표집방법)으로서 성질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할당표집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김지윤·강충구(주 230), 위의 논문, 365–368 참조], 전통적인 확률표집의 방법과 그 통계적 가치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런 방법은 통계적 유의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여론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장점이 있다고 한다[Seymour Sudman, "Probability Sampling with Quotas", vol. 61, no. 315,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SCI(E) SCOPUS (1966), 749–771. ISSN 0162–1459 E–ISSN 1537–274X].

(6) 여론조사 주기

국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반기, 연간 또는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7) 통계적 유효성의 확보[234]

선택 확률의 불균형, 무응답, 유무선 전화조사를 병행하는 이중표집의 경우 대상이 중복되는 문제[235] 등을 수정하기 위해 표본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한 각국의 인구 통계와 맞추기 위해 최종 표본에 가중치를 두게 된다.

여론조사 결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이것은 무응답과 같이 일부 응답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밖에 여론조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차 요인으로는 설문에 번역상 오류가 있거나 여론조사 대상지역 선정에 오류가 있는 것[236]과 같이 측정과정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지수의 한계와 유용성

(1) 한계

OECD가「한눈에 보는 정부」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사법제도에 관한 신뢰도 지수는 갤럽이 실시하는 세계여론조사(GWP) 결과를 원용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한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첫째,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설문이 모호한 경향이 있다. 세계여론조사(GWP)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수준 조사를 위해 자국 '사법제도(judicial system)'와 '법원(courts)'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를 묻는 하나의 항목만을 조사한다.

신뢰 대상인 '사법제도'의 구체적인 의미나 해석기준, 범위 또는 구분 등에 관한 아무런 지침이 제공되지 않고, 신뢰 또는 불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절차도 없다. '사법제도'와 '법원'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사법제도'는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예컨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234) 자료에 대한 가중치 부여와 오차의 한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Gallup(주 226), "Worldwide Research; Methodology and Codebook", 10-11 참조.

235) 우리나라에서 이중 표집틀을 이용한 실제 조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지윤·강충구(주 230), 위의 논문, 381-385 참조.

236) 예를 들어 선정된 대상지역 일부에서 15세 이상 성인 인구가 여론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등.

나 변호사 단체,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설문 대상에 성격이 다른 여러 제도, 기관이 섞여 있어 응답자가 그 중 특히 어느 것을 염두에 두고 응답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응답을 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다. 응답의 대상이나 법위가 응답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위 설문조사만으로는 신뢰 또는 불신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응답 스타일에 관한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단순 이분법적인 응답(예 또는 아니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237] 이런 응답척도로는 정확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응답 단계가 있는 척도(예컨대 4단계 또는 5단계의 리커트형 척도)가 필요하다거나 무응답의 처리방식이 조사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보다 정밀한 통계적,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238]

셋째, 표본추출 과정에서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지만, 예컨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confidence)를 묻는 질문과 믿음(trust)을 묻는 질문 사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다양한 응답척도의 문제와 같은 언어적, 설문구성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국회, 금융기관, 정치인, 공무원, 국제기구, 보건이나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 기업,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 등 비교 가능한 다른 대상에 대한 신뢰 척도와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이와 같은 조사 방법상 한계는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가고 무엇이 그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문화적 요소가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국가 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비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2) 유용성

갤럽의 세계여론조사(GWP) 결과를 원용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수준 지수는 문화적, 언어적 요인이 사법제도에 대한 국가별 신뢰수준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신뢰의 절대적인 수

237) Gallup(주 226), "Worldwide Research; Methodology and Codebook", 5 참조.
238) 이런 분석에 관한 예로는 장덕현, 조성겸, "리커트형 척도의 중간점은 필요한가?: 중간점 있는 척도와 없는 척도 간 측정 결과 비교", 조사연구 제18권 제4호 (2017), 1-24 참조.

준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어렵다. 그러나 위 지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정책분석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조사에 비해 국가 조사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의 결정요인을 보다 통찰력 있게 분석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분석결과를 수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국가 조사는 다양한 공공 부문에 걸쳐 신뢰 문제를 보다 깊이 다루고 있다.

셋째, 국가 조사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신뢰의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국가 조사는 통상적으로 훨씬 긴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사. 신뢰도 측정 방법의 개선점

첫째, 설문조사는 보다 많은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의 설문조사 방법은 표본의 크기가 작고 한 국가 안에서도 지리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갖는 다양한 특성들, 즉, 나이, 성별, 인종, 교육수준, 혼인여부, 소득수준, 정부서비스의 이용경험 유무 등은 그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런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설문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핵심적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갤럽의 세계여론조사(GWP)는 응답자에게 정부나 사법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그들이 정부 또는 사법제도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개념을 정치적 리더십 또는 관료제와 동일시 할 수도 있다. 설문과 이에 대한 응답 선택지는 정부가 이로부터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정부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특정 시점에서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외에, 개별 국가는 물론, 여러 국가에 걸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III. OECD의 신뢰측정 가이드라인

1. 목적

OECD 신뢰측정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239](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데이터 생산자에게는 신뢰 척도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을 보조하고, 신뢰 자료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측정방법과 분석을 위한 시사점을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뢰 측정을 위한 최선의 사례를 제시하고, 국가간 비교를 위한 기초 형성을 위해 핵심적인 측정 요소들을 제안하며, 각국의 국가통계기구(national statistics offices, NSOs)가 정기적으로 가계조사(household survey)를 실시할 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척도를 포함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통계기구(NSO)와 그 밖의 데이터 생산자들에게 문항설계에 관한 최선의 사례에 기초한 지침을 제공하여 신뢰 측정의 국제간 비교를 증진한다.

신뢰 측정의 유효성과 신뢰성에 관하여 알려진 사실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결과를 기존 설문의 실증분석에 확대 적용한다.

국가통계기구(NSO)와 연구자들로 하여금 신뢰 측정의 유효성과 신뢰성에 관한 증거기반을 확대하도록 하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는 공식적인 신뢰 측정지수를 발표하는 국가 수를 증가시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240]의 핵심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관찰하는데 기여하게 한다.

2. 측정대상인 신뢰의 의미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interpersonal trust, 대인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institutional trust, 제도신뢰)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한다.

대인신뢰의 경우 가이드라인은 일반적 대인신뢰 또는 일반신뢰(generalised trust)와 제한적 신뢰(limited trust)로 구분한다. 일반신뢰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 또는 신뢰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신뢰를 의미한다. 제한된 신뢰란 가족

239) OECD,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Publishing, Paris (2017).
240) UN(주 177), 위의 내용 참조.

이나 친구, 이웃을 포함하여 응답자가 알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제도신뢰는 모든 종류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정치, 법과 질서, 비정부기구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3. 도입 배경

보다 좋은 신뢰 측정수단을 개발할 정책적 필요성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와 같은 국제적 계획에서 과소평가 되었고, 핵심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의 측정수단 개선연구에 관한 정책적 필요성은 2009년에 발간된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위원회[241] 보고서(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에서 시도되어 OECD의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국제적 연구에서도 주목받지 못하였다.

가구 설문조사에 기반을 둔 신뢰측정은 이미 몇몇 OECD 국가에서 공식적인 통계시스템의 일부로서 수행되었다. 이것은 대체로 그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국민의 삶의 질, 사회자본과 사회적 결합력에 관한 보다 양질의 정보를 필요로 함에 따라 그 결실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 중 정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일관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측정은 흔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비교 가능한 정보들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수집된 것이었다.

4.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측정에 관한 유일한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측정에 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취합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각자 서로 다른 부분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가. 개념과 타당성(제2장)

제2장에서는 개념, 관련성과 타당성[242]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 장은 서

241) 2008. 2. 당시 프랑스 대통령인 Nicholas Sarkozy 요청에 따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Joseph Stiglitz와 Amartya Sen, Jean-Paul Fitoussi 등이 설립한 위원회이다. GDP가 경제성과와 사회발전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이에 대한 대체적인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로 다른 신뢰척도에 어떤 개념이 내포된 것인지, 각기 다른 신뢰척도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신뢰 자료의 사용자는 물론이고, 신뢰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느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할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필요로 하는 신뢰 자료 생산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신뢰 측정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인신뢰, 특히 일반적 대인신뢰의 측정은 사회의 웰빙수준 평가, 사회자본의 측정과 기타 사회적, 경제적 성과의 동인(動因)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제도적 신뢰에 대한 이해는 정부의 효과성과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신뢰 척도들의 정확성은 다소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 대인신뢰에 관한 신뢰 척도의 타당성(validity)은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부 신뢰 척도의 경우에는 타당성에 관한 증거가 상대적으로 적다. 일반신뢰의 척도들은 표면타당도(face validity),[243]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244] 그리고 수렴적 타당도(convergent validity)[245]를 잘 만족시킨다. 이는 척도들이 국가 간 차원에서 측정되든 개별 응답자 사이에서 측정되든 어느 경우나 모두 같다. 개인 차원에서 측정된 일반적 대인신뢰의 일부 척도에서는 검사-재검사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246]에 관하여 다소간의 의문이 있으나, 국가 차원의 측정 결과에서는 상이

242) 타당성, 타당도 개념에 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 (주 111) 내용 참조.

243) 측정문항이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측정문항이 개념의 속성을 정확히 포함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보다, 전문가들이 외견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에 합의 또는 의견일치를 이끌어 낼 때 타당도가 있다고 말하게 된다. 가장 낮은 수준의 타당도이다[김구(주 91), 위의 책, 265].

244)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유형으로서, 연구에 사용된 이론적 구성개념(theoretical construct)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도구 또는 측정수단 사이의 일치 정도를 나타낸다[김구(주 91), 위의 책, 267].

245) 구성개념 타당도의 일종으로서,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방법 또는 여러 가지 측정도구로 측정했을 때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낸다.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측정지표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런 측정지표를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 즉, 이론적 구성개념과 이를 나타내는 복수의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결과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집중 타당도라고도 한다[김구(주 91), 위의 책, 267-268].

246)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집단에게 두 번 실시해 얻은 검사점수간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신뢰도이다. 상관계수는 Karl Pearson의 단순적률상관계수 추정 공식에 의해 산출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문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항구성에 따른 측정오차는 통제되나, 검사 시행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월효과(carry-over effect)의 가능성이 있다. 즉, 첫 번째 검사시행이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검사시행 사이의 시간간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사-재검사신뢰도는 검사도구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이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알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 계수(coefficient of stability)라고도 한다.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검사-재검사신뢰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23785&cid=42125&categoryId=42125 (2018. 12. 2. 확인)에서 재인용].

한 자료 원천과 시간경과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무형적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대인신뢰의 측정 문제는 응답자의 질문에 대한 해석과 주관적 판단에 관한 많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런 이슈들은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이런 이슈에 불구하고, 일반적 대인신뢰에 관한 질문들이 타당한 자료를 생산해 낸다는 여러 증거가 있고, 남아 있는 측정 이슈에 관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통찰력을 찾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적 대인신뢰의 측정은 그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적절한 경우라면 가급적 공식적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도적 신뢰의 측정은 대인신뢰의 측정 경우보다 복잡하다. 제도적 신뢰의 척도가 일반적으로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 측면에서는 만족스럽긴 하지만, 표면타당성(face validity)이나 수렴적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측면에서는 타당성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로 이 척도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정책적 적절성에 불구하고, 제도적 신뢰 척도들이 공식적 통계 시스템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 통계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따라서 이런 척도들은 통계적 타당성이 완전히 검증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실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험적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척도들의 타당성 문제는 향후 학계는 물론이고 국가 통계 당국 모두가 우선적으로 연구할 주제인데, 제도적 신뢰 척도의 정확성과 관련한 많은 핵심적인 방법론상 문제점은 국가 통계 당국만이 처리할 수 있는 표본크기와 응답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있다.

나. 신뢰 측정에서 방법론적 고려사항(제3장)

제3장에서는 측정오차, 설문의 구체적인 문구, 응답형식, 설문의 문맥, 설문 방식, 응답 유형과 문화적 맥락 등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문항설계에 참고하여야 할 핵심적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이 장은 문항설계에 관심이 있는 신뢰 자료 생산자뿐만 아니라 신뢰 자료에 존재하는 다양한 오차의 기술적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편향 원천과 측정오차가 신뢰 문항에 미치는 영향력을 소개한다. 신뢰 척도들은 학업 성취도나 기대여명 등과 같은 객관적 척도들에 비해 응답편

향[247]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런 편향들은 국가통계기구(NSO)에 의해 이미 수집되던 다른 자기 보고형(self-reported) 척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편향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최적의 문항과 설문 설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측정오차의 존재 자체는 신뢰에 관한 자료 수집을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자료 수집자가 어느 접근방법으로 문항을 설계하는지와 관계없이 표준화는 시간의 경과, 단체와 국가 간 의미 있는 비교를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1) 문항 작성(question wording)

적절한 문항의 작성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문항을 작성할 때 신뢰 이외의 개념은 언급을 피하여야 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구체적이고도 정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 대인신뢰의 경우 중립적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수집자는 '다른 사람과 사이의 조심성'을 언급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데, 이런 문구는 보다 연약한 집단으로 하여금 더 낮은 신뢰를 보고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도적 신뢰의 경우 해당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 하는 것이 응답에 차이를 발생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전체적으로, 문항은 국가 간 번역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를 담지 않고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문항들이 포착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너무 근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응답자들은 그 개념들을 구별해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2) 응답 형식(response formats)

응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어떤 것이 제시되는지는 응답의 분포에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 신뢰 항목의 경우, 언어적 척도에 기반을 둔 0-10 척도가 권고된다. 응답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자료의 수준을 높이며, 언어 간 번역/전환을

247) 응답편향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주 252) 내용 참조.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 응답 순서는 일관되게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0-10 척도가 아닌 10-0 척도를 제시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이는 규범적 결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사이의 심리적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 기반이 되는 척도의 언어적 설명은 극단적 응답(예를 들어, 완전히/전혀)을 제시할 때 묵인 편향(acquiescence bias)[248]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응답을 하려는 경향을 최소화하고, 응답의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문조사 문맥(survey context)

설문의 구체적 문구와 응답 형식의 표준화와 함께, 시간의 경과나 설문조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질문의 각 세부단위를 일관된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신뢰 척도의 질과 비교가능성을 보장한다.

- 순서 효과(order effect)[249]는 둘 이상의 질문이 같거나 매우 유사한 주제에 관한 것일 때 가장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에 관한 문항들은 설문조사를

248) 질문에 대해 실질적 내용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동의/부동의' 또는 '예/아니오'처럼 불균형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측정오차의 일종인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Statistics How to, "Acquiescence bias: definition, avoidance" 참조, https://www.statisticshowto.datasciencecentral.com/acquiescence-bias/ (2018. 12. 2. 확인)
묵인 편향의 발생원인과 회피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문헌 참조.
Watson, Dorothy, "Correcting for Acquiescent Response Bias in the Absence of a Balanced Scale: An Application to Class Consciousness", vol. 21, no. 1,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992), 52-88.

249) 피험자 내 설계에서 피험자에게 제시되는 실험처치의 순서가 종속변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대부분 연구의 목적은 실험처치 제시순서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처치 자체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특정 처치를 접한 후 발생하는 연습, 피로, 이월(carryover), 민감화(sensitization) 등 순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순서효과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피험자 간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피험자 내 설계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피험자마다 처치의 순서를 달리하여 순서효과의 작용이 모든 피험자에게 균등하게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상쇄균형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순서효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223&cid=42125&categoryId=42125 (2018. 12. 2. 확인)에서 재인용].
실제 설문조사에서 발생하는 설문문항과 응답의 순서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적 연구로는 심형인, "설문조사에서의 질문문항순서 및 선택지순서 효과: 한국문화 측정 문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51권 제1호 (2017. 봄) 145-169 참조.

구성할 때 가능한 분리하거나 다른 종류의 문항을 사이에 끼어 넣어 완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설문조사는 보다 일반적인 문항에서 특수한 문항의 순서로, 예를 들어 제한적 신뢰에 앞서 일반화된 대인신뢰에 관한 문항을 묻는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신뢰에 관한 질문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시키는 질문 또는 다른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경험에 관한 질문에 이어 곧바로 제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설문조사 문항 설계자는 특히 유사한 맥락에 관한 문항을 배치할 때 앞선 문항 자체가 후속 문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공평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휴가, 계절이나 선거 등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 수집은 일 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수 주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설문조사 방식(survey mode)

신뢰 문항은 민감한 것이어서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응답하기도 하고 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기도 한다. 이것은 특히 제도에 대한 신뢰의 측정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설문조사[250]가 면접자 주도형(interviewer-led) 설문조사의 경우보다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251]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 민감성에 관련된 반응 편파성(response bias)[252]은 응답자의 정보 보호에

250) 응답자가 면접자 없이 스스로 질문지를 완성해 가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이다.

251)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나 설문에 응답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묘사(self-description)를 하는 응답자의 경향성을 말한다.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할 때 응답자가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반응하는 현상을 아래에서 보는 반응경향성 혹은 반응편파성이라 하는데 이러한 반응경향성의 하나가 사회적 바람직성이다.[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사회적 바람직성",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161&cid=42125&categoryId=42125 (2018. 12. 2. 확인)에서 재인용].

252) 실험이나 검사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관계없이 피험자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답하려고 하는 경향성(반응 경향성, response tendency)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제시된 답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이러한 반응을 보여 주게 된다. 반응 편파성에는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과 같은 묵종(默從),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 추측 그리고 속도 때문에 정확성을 잃거나 반대로 정확성 때문에 속도를 무시하는 것 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2000), "반응경향성".

대한 염려를 줄여주거나(예를 들면 비밀보장의 약속) 혹은 설문조사 상황에 대한 통제(예를 들면 조사원들에게 응답자들의 신분이나 직업 등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 대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봉인된 봉투(sealed envelope) 또는 불일치 수치 기법(unmatched count technique)[253] 같은 새로운 면접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5) **응답 유형과 문화적 맥락**(response styles and cultural context)

문화에 따른 응답 유형은 공통적 표준이나 실제 행동에 대응해서 외부적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응답 유형의 존재가 확립된 경우라도 그것이 자료의 질을 반드시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 응답 유형 편향(response style bias)[254]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면 사후적인 통계 조정 기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설문 항목을 가능한 한 단순하고 번역하기 쉬우며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설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체적인 설문의 설계(길이는 물론이고 어떻게 도입을 하는지를 포함하여)는 자료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느끼는 부담, 동기와 피로 정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응답 편향을 초래하기 쉬운 설문 형식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의/부동의'와 같은 경우 또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예/아니오'의 응답 형식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43873&cid=41989&categoryId=41989 (2018. 12. 2. 확인)에서 재인용].
실제 설문조사에서 발생하는 응답편향에 대한 상세한 경험적 연구로는 김승현, "가치의 측정과 사회적 소망성 편향: 사회적 신뢰의 예",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 (2010. 여름); 같은 저자의 "사회적 규범의 측정: 응답편향의 실험적 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6.); "사회조사의 응답편향과 대체문항의 타당성: 사회적 신뢰와 공익추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7권 제4호 (2013. 12.) 각 참조.

253) 심리학이나 사회조사에서 익명성의 방법을 통해 응답하기 난처하거나 혹은 자기부죄(自己負罪, self-incriminating)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 진실한 응답수를 찾아내는 기법을 의미한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기법을 통해서는 조사대상인 특성을 가진 사람 수만을 알 수 있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에 비해 보다 큰 표본오차를 보일 수 있다고 한다[Wikipedia, "Unmatched count", https://en.wikipedia.org/wiki/Unmatched_count#cite_note-1 (2018. 12. 2. 확인)]. 이 기법의 상세한 내용은 Damaraju Raghavarao and W. T. Federer, "Block Total Response as an Alternative to the Randomized Response Method in Surveys", Series B., vol. 41, no. 1,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979), 40-45 참조.

254) 이 연구보고서 (주 252) 내용 참조.

은 묵종(默從, acquiescence)[255]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6) 향후 연구과제

제도적 신뢰와 대인신뢰의 영역 모두에서 향후 연구가 요구되지만, 특히 가용한 방법론적 증거가 거의 없는 제도적 신뢰의 경우에 필요성이 더욱 크다.

- 우선, 제도적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의 문구 작성과 관련하여, 해당 제도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들(예를 들어 국익에 따라 행동한다던가, 나와 같은 누군가의 삶을 개선한다던가, 또는 올바른 것을 실천한다던가 등)을 특정하기 위한 실험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이런 실험들은 하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로, 긍정적, 부정적 서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아니오 답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런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척도가 어느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다가 이어지는 다른 항목에서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응답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 셋째로, 순서 효과[256]와 관련하여, 신뢰 설문에서 어느 경우에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다. 설문 설계에 대한 보다 심화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유형의 질문 혹은 어느 유형의 문맥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발견하기 위한 보다 집중적인 방법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질문 사이의 전환적(transitional) 서술이 순서 효과를 감소시키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몇몇 증거가 있으나, 신뢰 질문에 대한 순서 효과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본문 형태가 테스트되어야 한다.
- 넷째로, 현재의 신뢰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신뢰적 행동이나 실험적 게임과 같은 외부적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문화가 보여주는 응답 유형을 확인하려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55) 이 연구보고서 (주 248) 내용 참조.
256) 이 연구보고서 (주 249) 내용 참조.

다. 신뢰의 측정(제4장)

제4장은 신뢰측정의 모범적인 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장은 연구의 여러 단계, 즉, 계획, 설문조사와 포본 설계, 문항설계, 그리고 실행에 이르는 각 단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과 측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고, 자료 생산자들이 설문조사 설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보다 규범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1) 신뢰 측정을 위한 계획

-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정책적 논제가 무엇인가? 제시된 신뢰의 내용은 정책적 논제에 응답하기에 적합한가? 제시된 척도가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고 인구 집단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가? 어느 인구 집단이 사용자에게 가장 큰 관심 대상인가? 사용자의 관심이 다양한 인구 집단에 대한 측정 결과의 비교에 있는가 아니면 신뢰의 다양한 측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는가? 사용자의 주된 관심이 일반적 대인신뢰나 제한적 신뢰, 또는 제도적 신뢰 중 어디에 있는가? 만약 중점이 후자에 있다면 어느 제도에 가장 주된 관심이 있는가? 사용자가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려면 어느 정도의 관찰 주기가 필요한가? 국내 비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지리적 수준(geographic level)이 요구되는가?
- 분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 자체의 측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뿐만 아니라, 신뢰의 척도와 함께 다른 어떤 측정치들이 수집되어야 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나이, 성, 결혼여부, 가구형태, 자녀유무, 가구크기, 지리적 정보, 이민 신분(migration status)/출생국가/입국연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에 열거된 인구 통계학적 자료 이외에도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추가적 변수들 역시 유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도시에 거주하는지/지방에 거주하는지 여부, 소득, 고용상태, 학력, 건강상태, 사회적 접촉과 네트워크, 시민적 관여와 거버넌스, 생명, 신체의 안전과 범죄피해여부, 주관적 웰빙, 민족적 정체성, 종교 등이 그것이다.

(2) 설문과 표본 설계

(가) 표집 또는 표본추출(sampling)

- 신뢰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므로, 측정의 단위는 개인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는 마치 모든 개인을 직접 면접한 것처럼 표집 틀이 개인이나 가구의 대표적인 표본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신뢰의 측정치는 15세 이상의 모든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수집된다.

(나) 자료수집 주기

- 신뢰의 측정치가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어떤 주기로 수집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특별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자료가 필요한 빈도는 의도된 용도와 질문에 사용된 측정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웰빙 수준을 관찰하고 사회 자본의 추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산 빈도 측면에서 최소한 연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 측정기간

- 측정기간(즉, 정보가 수집되는 기간)은 신뢰 측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중 자료를 언제 수집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학력이나 기혼 여부에 대한 측정치와 달리 정확한 수집기간이 언제인지는 신뢰 측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상적으로는, 신뢰 자료의 측정은 일 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고 휴일을 비롯하여 모든 요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신뢰 측정치가 일 년 전체의 정확한 현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수집이 일 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요일에 걸쳐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라) 표본 크기

- 어느 설문조사이든 표본은 클수록 바람직하다. 측정치의 표본오차를 줄일 뿐

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신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체군 하위집단(population subgroup)을 대상으로 한 교차표(cross-tabulation)[257]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할 때 보다 큰 자유도(degree of freedom, df)[258]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신뢰 측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신뢰의 변화들이라도 분석적으로 흥미로운 많은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특히 중요하다.

(마) 설문 방식

- 자료의 질 측면에서 컴퓨터보조 자기면접/컴퓨터보조 개인면접(Computer-Assisted Self-Interviewing/Computer-Assisted Personal-Interviewing, CASI/ CAPI)[259]은 신뢰 자료 수집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반면 조사자의 존재는 응답자에게 강한 친밀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 CASI는 면접의 비밀을 보장하므로, 응답자가 민감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기 꺼려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 다른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료 생산자가 설문 방식 차이에 따른 효과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 통계기관은 신뢰에 대한 핵심적 측정치에 대한 응답에 설문조사 방식이 미치는

257) 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자료에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유형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표를 말한다. 기본적 개념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이 있는가를 보고, 만일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 다른 변수를 도입하여 이들 변수가 최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서, 만일 사회계급과 정당선호도가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가 성별, 교육, 종교, 부모의 정당선호도 등과 같은 다른 변수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보는 것이다.[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교차표",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226&cid=42121&categoryId=42121 (2018. 12. 2. 확인)에서 재인용].

258)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점수, 변인의 수 또는 한 변인의 범주의 수를 말한다. 예컨대, 어떠한 제한 없이 임의로 세 개의 숫자를 써보라고 한 경우에는 세 개의 숫자를 완전히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유도 df=3이다. 통계적 분석의 경우 자유도는 사례수(표본의 수) 및 통계적 제한조건의 수와 관계가 있다.
[두산백과, "자유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755&cid=40942&categoryId=32215 (2018. 12. 2. 확인)].
자유도는 모수 추정을 위해 고안된 개념인데, 자유롭게 변화하는 변인의 수는 곧 모집단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모수 추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259) CASI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의 일종이다.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설문이 저장된 컴퓨터 스크린을 보여주고 응답자 스스로 응답을 기입하게 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CAPI에 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 (주 102) 내용 참조.

영향력을 실험적으로 테스트하여야 하고, 컴퓨터보조 전화면접(Computer-Assisted Telephone-Interviewing, CATI)[260]이나 CASI 설문조사로부터 얻은 결과와 함께 다른 방식의 테스트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바) 설문 수단

- 신뢰,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이 주요 관심대상인 영역에서는 신뢰에 특별히 초점이 맞추어진 특수한 모듈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신뢰 자료가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거나 거버넌스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경우 그러하다.
- 신뢰 척도는 다양한 많은 영역에서 관심을 받는 분석대상이므로, 다양한 설문조사에 일정 범위의 신뢰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사) 질문의 제시

- 중요한 신뢰 문항은 설문조사의 핵심적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뢰 문항을 모든 설문조사의 첫 부분에 두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신뢰 문항이 설문조사 문항의 고정된 영역에 배치된다면 맥락효과(context effect)[261]에 의한 편향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될 수 있다. 이것이 편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개체군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수준 차이의 분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신뢰 문항은 응답자가 신뢰에 관한 정보를 얻어 대비할 수 있는 문항, 또는 신뢰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휴리스틱(heuristic)[262]으로 사용될 수 있

260) CAPI(주 102)와 유사하게 컴퓨터에 의해 자동화된 자료수집 과정을 이용하나, 조사자가 응답자를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정되어 전화가 연결된 응답자에게 질문을 하고 컴퓨터가 응답을 표기하는 조사방식을 의미한다.

261)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처리하는 기본지침이 되어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것. 처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한 대상이라면 이후에 관련된 정보가 입력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도 맥락효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0. 5. 24.), "맥락효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6183&cid=50305&categoryId=50305 (2018. 12. 2. 확인)에서 재인용].

262)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을 의미한다.[한국심리학회, 심리학용어사전 (2014), "휴리스틱",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217&cid=41991&categoryId=41991 (2018. 12. 2. 확인)에서 재인용].

는 문항에 곧바로 이어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사회적 접촉, 범죄 피해경험, 정치적 신념, 위험 또는 불안감 등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된다. 신뢰 문항 앞에 배치할 최선의 문항은 인구 통계학적 질문들이다.

- 전환 질문(transition question)이 응답자의 초점을 되돌리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환 질문 자체가 초래할 맥락효과의 위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개인적 삶에 관심을 갖도록 이끄는 질문 뒤에 대인신뢰에 관한 질문이 제시되는 경우 응답자는 낯선 사람보다는 개인적 관계들에 집중하여 응답을 할 수도 있다. 효과적인 전환 질문의 개발은 향후의 우선적 연구대상이다.
- 질문 주제가 바뀌는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해 도입 문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각 질문이나 주제에 앞서 잘 만들어진 도입 문단은 신뢰 측정치과 민감한 질문 사이에 완충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도입 문단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깊은 인지적(cognitive) 테스트나 실험적 분석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아) 질문 순서

- 질문 모듈의 순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여러 증거가 있다. 대인신뢰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에 관한 질문은 제한적 신뢰에 관계된 보다 특수한 질문에 앞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대인신뢰에 관한 질문들은 보다 특수할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점화효과(priming effect)[263]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신뢰에 관한 질문에 앞서 제시되어야 한다.
- 제도에 관한 신뢰를 묻는 질문은 보다 잘 알려진 제도로부터 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묻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러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 비교

263) 먼저 제시된 점화 단어(Priming word)에 의해 나중에 제시된 표적 단어(Target word)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받는 현상이다. 이는 암묵적 기억(Implicit memory) 혹은 내현기억이 작용하여 의식적으로 회상할 수는 없으나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점화 효과는 단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이나 감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즉,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경험했던 어떠한 것이 다음에 할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동귀,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심리편, 주식회사 북이십일 21세기북스, “점화효과”, 네이버 지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795&cid=58345&categoryId=58345 (2018. 12. 2. 확인)에서 재인용].

가 중요한 경우에는, 질문이 주어지는 순서가 각 응답자들에게 무작위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모든 표본에서 불가능하다면, 측정된 신뢰에 존재하는 편향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예비 검사에 질문 순서 무작위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번역

- 초벌 번역은 원문 언어에 유창하고 번역이 될 언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갖고 있는 적어도 두 명의 독립된 번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번역가는 연구 목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물론이고 원천이 되는 문항의 배경과 유래, 기술적 상세에 관해 익숙하여야 한다.
- 어느 설문조사 설계이든, 전체 설문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인지적 면담(cognitive interviewing)[264]과 현장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검토되어야 한다.

(차) 설문사항 설계

- 이 가이드라인은 신뢰 측정을 위한 다섯 개의 원형 질문 모듈을 제시한다. 모듈A는 국제 비교를 위한 기초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신뢰를 측정하는 모든 연구에서 최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화된 대인신뢰 척도를 포함한 핵심 척도(core measures)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 모듈A는 타당성과 정책 관련성에 관한 증거가 가장 강력하고 일정 정도의 국제적 일치를 볼 가능성이 있는 질문들을 포함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다른 모든 질문 모듈과 달리 핵심 모듈은 유의미한 변경 없이 최대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모듈B부터 E는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듈들은 완전체로서 아무런 변경 없이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체적인 설문사항을 개발하려는 국가 통계 기구들에게 하나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264) 기억의 재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 이론에 기초한 기법을 활용하는 면담방법이다.[곽호완 외 공저, 실험심리학용어사전 (2008), “인지적 면담”, 네이버 지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3789&cid=50294&categoryId=50294 (2018. 12. 2. 확인)에서 재인용].

(카) 설문조사 실시

- 면담자 교육은 모든 설문조사에서 응답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신뢰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 반응을 둘러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면담자는 질문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수집된 정보가 사용될 방법에 관하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여러 증거에 의하면 신뢰의 측정은 응답자가 응답하기에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대인신뢰 측정치에서 항목 고유의 무응답 비율은 기혼상태, 교육과 고용시장에서 지위에 관한 측정치에서의 그것과 유사하고, 가계 소득에 관한 측정치의 그것보다는 훨씬 낮다. 제도적 신뢰에 관한 측정치에서의 무응답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소득에 관한 측정치의 경우보다는 여전히 낮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뢰에 관한 질문이 응답자에게 난감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상적인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265] 절차는 뒤바뀐 숫자, 중복 기록, 결측치, 불완전한 응답, 범위를 벗어나거나 올바른 생략 패턴(skip pattern)을 따르지 않은 응답들과 같은 명백한 오차를 찾아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일부 문제는 신뢰 자료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같은 척도를 이용하는 여러 질문으로 이루어진 모듈에서 데이터 클리닝은 응답 세트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신뢰 자료의 결과와 분석(제5장)

제5장은 신뢰측정의 결과와 분석을 다룬다. 이 장의 주된 목적은 신뢰측정의 기본적 결과를 설명하고, 신뢰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작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와 같은 신뢰 자료의 해석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이 장은 신뢰 자료의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보다 복잡한 분석이 요구되는 연구 주제를 갖고 그 자료에 접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265)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후, 분석에 앞서 조사 과정이나 입력 과정의 실수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데이터클리닝", 사전·국어지식: 다듬은 말(순화어) http://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View.do?refine_seq=26684&mn_id=34 (2018. 12. 2. 확인)].

(1) 신뢰 자료의 보고

신뢰 자료를 보고할 임무가 있는 분석자는 중요한 소통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고대상인 독자층과 그들의 수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뢰 자료를 생산해내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각각에는 특유의 장, 단점이 있다.

- 신뢰 수준은 각 범주에서 주어진 한계치 또는 경향 측정치의 중심값(즉,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넘어서거나 미달하는 비율의 빈도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최선의 보고를 위해서는 한계치를 설정하기 위해 임의의 기준(예를 들어, 높다, 낮다)을 만들거나 표준편차와 같은 자료의 분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보정하는 것 등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는 시계열을 통한 평균적 신뢰의 변화를 추적하거나 또는 여러 시점에 걸친 평균값의 변화를 계산하여 관찰할 수 있다.
- 집단별 차이는 주어진 한계치와 비교하여 시간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나 특수한 응답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의 절대적이거나 비율적인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관찰할 수 있다.
- 표본크기와 표준오차는 집단 평균과 함께 보고되어야 한다.

(2) 신뢰 자료의 해석

신뢰 자료의 해석을 위한 필수적 질문들은 실제 생활에서 관찰되는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작고 어느 것이 큰 변화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와 관찰된 차이들이 측정을 위한 인위적 장치와 오차들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자료로부터 현재까지 얻을 수 있는 개체 집단별, 국가별, 시간별 차이의 크기를 기록하는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될 점이 많고, 신뢰의 전체적인 자료에 관한 지식은 보다 높은 질의 자료를 더욱 자주 획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관측치 사이의 차이 크기는 모든 해석 작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응답척도에 의해 부과되는 한계
-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266] 문제
- 신뢰 측정치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 가능성

(3) 신뢰 자료의 분석

신뢰 자료에 대한 건실한 분석은 인과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고, 인구 통계학적 표준을 포함한 적절한 공변인(covariates)[267]과 통제 변수가 같은 설문조사에서 수집될 것이 요구된다. 분석 단위의 선택–즉, 변수들을 개인 수준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 수준으로 둘 것인지–은 중요하다. 더욱이 지역사회의 특성은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집합적 신뢰수준은 개별 수준의 웰빙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신뢰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할 때 일반적인 경제통계학 과제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누락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268] 과다식별(over–identification),[269]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와 공유방법 편향(shared method variance)[270] 등의 문제가 있다.

---

266) 두 개의 변수 x와 y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흔히 예상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x가 y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y가 x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267) 실험을 시작할 때 모든 집단이 동일 조건에서 출발하도록 통제하지 않으면 집단자료들을 비교할 수 없는데, 이때 통제 못한 변인의 효과를 실험적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통제 조정하여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방법을 공변량 분석법(共變量 分析法, analysis of covariance)이라 한다. 변량분석은 k개 표본들이 같은 모집단(母集團)에서 나온 것으로 평균치들이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변량분할을 통한 변량분석법에서는 실험에서 어떤 처치를 가하기 이전에는 집단들이 동일조건이며 같은 것을 요구하는데, 이럴 때만 종속변인상의 결과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오로지 독립변인만의 효과라고 하여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는 독립변인 이외에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이 있어 집단들이 이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데도 실험자는 이 변인을 통제 못할 때가 있다. 통제 못하였기 때문에 조정대상이 되는 이 변인을 공변인(covariate)이라고 하며, 공변량 분석법은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차이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험결과는 어떨 것인가의 형태로 집단들을 비교하게 해준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공변량 분석법”,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09945&cid=42126&categoryId=42126 (2018. 12. 2. 확인)에서 재인용].

268) 보통의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least square regression)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이 편향은 종속변수와 이미 회귀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어느 변수가 회귀 방정식에서 제외된 경우에 존재한다. 이는 제외된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그 변수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유로 선형 회귀 모형이 잘못 설계된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변수가 누락된 경우 다른 설명변수(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다.
[The Albert.io Team, “Omitted variables bias: A comprehensive econometrics review”, https://www.albert.io/blog/omitted-variable-bias-econometrics-review/ (2018. 12. 2. 확인)].

269) 추정 대상인 모수의 수보다 정보의 수가 더 많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 경우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는 양의 값을 갖게 된다. 반대로 모수의 수보다 정보의 수가 적은 과소식별(under-identification)의 경우 자유도는 음의 값을 갖게 되는데, 모수를 추정할 충분한 단서(정보)가 없어 모형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모수의 수와 정보의 수가 같아 자유도가 0인 경우 모형이 적정식별(just-identification) 되었다고 하는데, 모형에 대한 분석은 적정식별 또는 과다식별의 경우에 가능하게 된다.
[jahyone20,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식별문제“,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jahyone20/220930721388 (2018. 12. 2. 5:30 PM GMT+9 확인)].

270)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같은 측정도구와 응답원을 공유하여 실시하였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일

마. 부록(annexes)

가이드라인에는 두 개의 부록이 있다.

부록A는 공식적, 비공식적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상이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신뢰 문항을 소재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서로 다른 원천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척도들이 얻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부록B는 자료 생산자들이 문항 개발을 할 때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문항의 다섯 가지 원형 구성요소(prototype modules)를 소개한다. 첫 번째 핵심적인 문항 구성요소는 널리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둔 소수의 척도들 집합이다. 하나의 '주된 척도'는 적절한 설문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며, 나머지 네 개의 문항들은 대인신뢰와 제도적 신뢰의 가장 중요한 유형에 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 밖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은 응답자들이 신뢰에 관해 갖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평가, 타인 행동에 대한 기대, 과거의 경험, 그리고 신뢰적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적 기술에 중점을 두고 신뢰에 관한 정보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에 관한 것이다.

5. 향후 과제

신뢰에 관한 증거기반(evidence base)이 발전함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의 정보는 새롭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어느 적절한 시점에 증거기반이 어느 정도 발전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공식적인 통계시스템에서 보다 표준화된 신뢰 측정을 가능하도록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를 특정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신뢰 측정의 최종적인 지침을 제공하거나 신뢰 측정을 위한 공식적인 국제적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통계 표준이 공적인 통계를 위한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문제가 되는 측정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쌓이고 국가 통계 당국에 의해 주도되는 통계적

반적으로는 동일방법 편향(common method variance 또는 common method bias)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편향은 측정의 타당도(validity)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연구모형 내 변수 사이 관계 정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편향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변수의 측정방법과 응답원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박원우 등,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원인과 해결방안", 인사 · 조직연구, 제15권 1호 (2007), 89-133]. 이런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설계, 설문지 작성, 통계처리 각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기법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박원우 등, 위의 책 참조.

작업의 실체가 충분히 성숙된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신뢰 측정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적 통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측정 상황을 한 편에 두고, 보다 널리 보급된(그러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일관되지 못한 측정이 남아있다) 공식적 표준을 다른 한 편에 두어, 둘 사이에 가교를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통계 당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신뢰 자료를 수집하는 것, 즉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핵심적인 질문사항들을 각국의 설문조사에 포함하도록 독려하여, 장래에 신뢰 측정을 위한 국제적인 통계 표준 개발에 관한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기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계가치관조사의 wave 시리즈

I. 세계가치관조사의 설립 목적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271]는 여러 국가의 학자들이 팀을 이루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를 둔 세계가치관조사 협회(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 WVSA) 및 사무국과 함께 가치관(values) 변화와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의 국제 네트워크이다.

세계가치관조사 협회(WVSA)는 국제적인 비상업적, 비정부 사회조사 기구로서, 전 세계에 걸친 비교가능하고 대표적인 국가 차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인간의 가치관, 규범과 신념의 국제적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사회조사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즉, 국제적 연구 협력을 증진하고, 여러 사회에 걸친 협력을 심화하며,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사회과학 연구센터와 설문조사센터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과학자들 사이의 국제적 모임과 지역적 모임, 네트워크를 조직하

271) World Value Survey, “Welcome to the World Value Survey site”,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 (2018. 12. 2. 확인).

여 사회조사의 발전에 관한 정보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며, 책과 저널, 사회적 매체 등을 발간하는 것 등의 수단을 통해 전 세계적인 사회조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II. wave 시리즈의 탄생과 연혁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원래 산업화된 사회에서 경제적, 기술적 변화가 일반대중의 기본적 가치관과 동기를 변형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설계된 것이었다. 첫 번째 설문조사(wave 1)[272]는 1981년 유럽 가치관 조사(European Values Study, EVS)로서 시작되었다. 1981년의 첫 연구는 대부분 선진사회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폭넓게 퍼져나갔고 이후 6개 대륙에 있는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네트워크에는 100개가 넘는 국가로부터 수백 명의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wave 1 설문조사에서는 정치, 경제적 생활, 종교, 성 역할, 가족 규범과 성 규범과 관련된 기본적 가치관에서 세대 사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은 기성세대들에게 지배적인 그것들과 일관되게 달랐는데, 특히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사회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가치관 변화가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저변에 놓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wave 2 설문조사가 1990-1991 사이에 실시되었다. 이런 변화는 경제적, 기술적 발전과 연결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저소득 사회로부터 부유한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발전단계에 걸쳐 있는 사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wave 3 설문조사는 1995-1997 사이에 55개 사회에서 실시되었는데, 민주주의의 문화적 조건을 분석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wave 4 설문조사는 1999-2001 사이에 65개 사회에서 실시되었는데, 이전 조사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아프리카와 이슬람 사회를 보다 많이 다루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wave 5 설문조사는 2005-2007 사이에 이루어졌고, wave 6 설문조사는

272)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여러 해에 걸친 설문조사 자료를 모아 비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wave'라는 명칭 뒤에 발표순서에 따라 숫자를 부여하여 각 보고서를 특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wave 1은 첫 번째로 발표된 보고서로서 1981년부터 1984년 사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자료를 제공하는 wave 6이고, 현재는 wave 7에 포함될 설문조사가 2017년부터 진행 중이다.

2010-2014 사이에 완료되었다. wave 7 설문조사는 2017년 1월에 시작되어 첫해에 15개 국가에서 설문조사 작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2019년 12월 말까지 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최종적으로는 70-80개 국가가 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속 wave는 매 5년마다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III. wave 시리즈의 특징

1. 개관

1981년부터 시작된 세계가치관조사(WVS)는 각국의 가장 엄밀하고 수준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 중 거의 90%를 차지하는 100여개 국가에서 공통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각국의 대표적 설문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인간의 신념과 가치관(beliefs and values)에 대하여 가장 큰 규모로 시계열적 조사를 실시하는 비상업적, 다국적 연구로서, 현재는 거의 40만 명에 이르는 응답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 조사는 모든 세계 주요 문화권의 아주 가난한 국가로부터 부유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제적 변형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학문적 연구이기도 하다.

세계가치관조사(WVS)는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걸친 인간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동기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수천 명의 정치학자, 사회학자, 사회 심리학자, 인류학자와 경제학자들이 경제개발, 민주화, 종교, 성평등, 사회적 자본, 그리고 주관적 웰빙 등과 같은 주제들을 분석하는데 이 자료를 사용해오고 있다. 또한 이 자료들은 정부 관료들, 언론인들과 학생들에 의해서도 폭넓게 사용되어 왔고, 세계은행의 연구팀은 이를 이용하여 문화적 요소와 경제개발 사이 연결고리에 관하여 분석해왔다.

2. 구체적인 조사방법

가. 설문 개발과 번역

각 wave 설문조사에 사용되는 질문들은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로부터 제안을 받는데, 최종적인 원판 설문사항은 영어로 개발된다. 1981년의 wave 1 이래 각 후속

wave는 이전의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회 범주를 다루었다. 각 wave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어느 질문은 흥미롭고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반면, 어느 것들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다 유용한 질문이나 주제는 향후 wave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덜 유용한 것은 새로운 질문을 위해 삭제되어 왔다.

설문사항은 다양한 국가 언어로 번역이 되고, 많은 경우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독립적으로 영어로 번역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번역된 설문사항은 번역이 문제되는 질문을 특정하기 위해 사전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일부 질문은 그 국가의 설문사항에서 제외된다.

나. 설문 항목의 구성[273]

가장 최근의 wave 7 설문사항은 2016년 11월 세계가치관조사 협회(WVSA)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와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이 설문사항에는 여러 해에 걸친 분석을 위해 이전의 wave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주제에 관한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 정치학자들로부터 제안된 항목들과 wave 7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wave 7의 설문사항은 29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광범한 연구 도구로서, 문화적 가치관, 성(gender), 가족, 종교에 대한 태도와 신념, 빈곤, 교육, 건강, 안전과 사회적 관용과 신뢰에 대한 태도와 경험, 다국적 제도와 지역과 사회들 간의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태도들을 측정한다. 또한 wave 7 설문사항은 정의, 도덕적 원칙, 부패, 책무성과 위험, 이민, 국가안보와 국제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같은 새로운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wave 7 설문조사는 UN의 'post-2015 agenda'에서[274] 제시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그 밖의 목표를 감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wave 7의 설문사항은 인구통계학적 항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14개 주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적 가치, 태도와 고정관념(45문항)

273) 현재 세계가치관조사(WVS) 웹사이트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설문사항은 wave 6에 사용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wave 7의 설문사항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274) UN Habitat, "Post 2015 Agenda", https://unhabitat.org/post-2015-agenda/ (2018. 12. 2. 확인).

- 사회적 웰빙(11항목)
- 사회적 자본, 신뢰와 조직적 멤버쉽(49문항)
- 경제적 가치관(6문항)
- 부패(9문항)
- 이민(10문항)
- 탈 물질주의(post-materialist) 지표(6문항)
- 과학과 기술(6문항)
- 종교적 가치관(12문항)
- 안전(21문항)
- 윤리적 가치관과 규범(23문항)
- 정치적 관심과 정치 참여(36문항)
- 정치문화와 정치체제(25문항)
- 인구통계학(31문항)

다. 현장조사와 표본수집 절차[275]

wave 7을 위해 최근 고안된 조사방법의 규칙과 절차는 표집절차, 표본크기, 설문조사 실시 시점, 설문사항의 현지화, 세계가치관조사(WVS)에의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사항(survey questionnaire)

하나의 wave에 포함된 모든 국가에서는 공통의 설문이 완전하고도 충실하게 실시될 것이 요구된다. 원래의 설문에 대한 변경은 어느 경우이든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 국가에서 최대 12개까지 설문의 생략이 허용된다.

설문사항은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와 러시아어로 제공되고 그 밖의 언어로의 모든 번역은 국가별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국가이든 설문사항은 전제 인구의 15% 이상이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275) 세계가치관조사 협회(WVSA) 과학자문위원회가 wave 7을 위해 새롭게 고안한 최근의 조사방법 규칙과 절차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2) 표집(sampling)

최소 표본의 크기, 즉 국가별 자료(data set)에 포함될 완료된 면접의 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200개이다. 표본은 국적, 시민권이나 언어에 관계없이 각 국의 개별 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집 방법을 완전히 확률적인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확률적 방법과 계층화 방법을 혼합하거나, 표본으로부터 일차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s, PSU)[276](무작위 표집의 경우에는 시작점)를 가능한 한 많이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일차추출단위(PSU) 당 응답자 수(무작위 표집의 경우에는 표집 시도 횟수 당 응답자 수)는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거주지역마다 여러 개의 일차추출단위(PSU)가 얻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일차추출단위(PSU)는 서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가치관조사 협회(WVSA)는 설문조사가 현장에서 실시되기 전에 제안된 표집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3) 설문조사 방법(survey method)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응답자 집이나 거주지에서 대면면접을 하는 것이다. 응답자의 답변은 종이로 된 설문지에 기록될 수도 있고(전통적 방식) CAPI[277]에 의해 기록될 수도 있다(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방식). 대면면접이 아닌 다른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문위원회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4) 자료 수집(현장작업)[data collection(field work)]

표집절차에 따라 각국을 대표하는 표본이 선정되면, 이 표본을 대상으로 통일적으로 구성된 설문사항을 이용하여 세계가치관조사(WVS)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제한된 기간 동안 면접이 실시된다.

설문조사는 전문 기관에 의해 대면 면접이나 원격지의 경우에는 전화 면접을 이용하여 실시된다. 각국에는 설문조사가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 연구책임자(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회과학자)가 있다. 연구책임자는 현장

276) 일차추출단위(PSU)를 이용한 표집 절차의 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갤럽 세계여론조사(GWP)의 표본수집 절차[제4장 제1절 Ⅱ. 3. 마.의 (4)]를 참조.
277) 이 연구보고서 (주 102) 내용 참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 보관소에서는 표집 설계와 결과 사이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엄격한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278]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필요한 서류작업, 즉 완료된 방법론적 설문과 국가에 특수한 정보(예를 들면 현장 작업 중 발생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해당 국가에 특유한 문제점 등)에 관한 보고가 포함된 모든 자료가 전달되기 전에는 어느 국가도 wave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설문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연구책임자는 모든 설문조사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5) 무응답(non response)

무응답의 문제는 표본 설문조사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사자는 무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완전한 확률적 방법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무응답을 이유로 한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연구책임자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 일종의 할당 표집(quota sampling)[279]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첫 번째 접촉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무응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완전한 보고가 필요하다.

(6) 적용범위(coverage)

세계가치관조사(WVS)는 18세에서 85세 사이에 있는 모든 거주자(시민권자일 필요는 없다)를 대상으로 할 것이 요구된다. 연구책임자는 18세 이상 인구의 최소 필요 표본 크기(1,200명)가 충족되는 이상 연령 하한 기준을 낮출 수 있다.

3. 자료의 제공

가. 다양한 차원의 온라인 자료 제공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세 가지 차원으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78) 이 연구보고서 (주 265) 내용 참조.
279) 이 연구보고서 (주 233) 내용 참조.

- 국가 차원: 개별 국가에 대한 여러 wave의 설문조사 자료와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설문조사에 실제로 사용된 설문, 상세한 조사방법과 통계적 특징, 모든 질문에 대한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응답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wave 차원: 각 wave에서의 여러 참가국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합친 집계파일과 관련 문서로서 여러 국가 사이 비교를 원하는 연구를 위한 자료이다. 공식적 설문과 몇 가지 추가 문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종적(longitudinal) 차원: 모든 wave를 합쳐 통합된 자료를 보여주는 문서로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한다. 추세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를 위한 자료이다. 현재는 1981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에 대한 통합자료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280]

나. 각 wave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각 wave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연도는 다음과 같다.

wave 7 (2017-2019), wave 6 (2010-2014), wave 5 (2005-2009), wave 4 (1999-2004), wave 3 (1995-1998), wave 2 (1990-1994), wave 1 (1981-1984)

4. 한계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시리즈는 자료수집 기초가 되는 설문조사 실행이 국가별로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조사의 질과 실제 조사과정에 대한 집권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의 질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281]

또한 각 wave 시리즈가 매년 또는 적어도 격년마다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고 3년에서 5년 단위로 부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특정 국가의 특정 시점의 지수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각 wave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의 질문문항의 범주(category), 내용이나 용어, 질문순서가 자주 바뀌어 시계열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82]

또한 세계가치관조사(WVS)가 신뢰조사에서 사용하는 질문문항은 신뢰대상에

280) World Value Survey, "WVS Longitudinal files",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L.jsp (2018. 12. 2. 확인).
281) 김석호 외 공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 구축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6.), 43 참조.
282) 이근형 외 공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20년의 추이 및 전망 연구』, 주식회사 윈지코리아컨설팅 (2017. 12.), 156-158.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축적된 포괄적 신뢰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고, 이와 반대로 단기적, 지역적, 일시적인 신뢰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는 충분치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83]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세계가치관조사(WVS)가 측정하는 신뢰가 설문조사가 실시된 사회전반의 신뢰에 대한 태도에 관한 통찰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적 타당성을 갖춘 척도이거나[284] 일반신뢰행동(general trust behavior)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는 비판이 있다.[285] 나아가 비록 세계가치관조사(WVS)가 사용하는 신뢰에 관한 질문이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뢰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결과와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뢰적 태도나 행동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86]

Ⅳ. 사법신뢰도 조사

1.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신뢰도 조사[287]

앞에서 설명한 '설문 항목의 구성'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가치관조사(WVS)가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사용되는 설문 항목에는 각종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 여부와 정도를 묻는 항목이 있다.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결과가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최근의 것인 wave 6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사용된 한글 번역본[288] 설문 중 신뢰에 관

283) Ritwik Banerjee, "On the Interpretation of World Values Survey Trust Question: Global Expectation vs. Local Beliefs", Discussion Paper no. 9872, IZA (2016), 12-17.
284) 제4장 제1절 Ⅲ. 4.의 가.항 참조.
285) 사람의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는 실제 이루어지는 행동을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하기에는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Icek Ajzen and Martin Fishbein,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vol. 84, Psychological Bulletin (1977), 888-918 참조, Noel D. Johnson and Alexander Mislin, "How Much Should We Trust the World Value Survey Trust Question?", Paper no. 11-44, George Mason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2011)에서 재인용].
286) Noel D. Johnson and Alexander Mislin, 위의 논문 참조.
287) wave 4 설문조사에서는 법원 또는 사법부(The courts 또는 The legal system, Justice system)를 특정한 신뢰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wave만을 대상으로 한다.
288) wave 2의 한글 번역본 설문지는 세계가치관조사(WVS) 웹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한 질문은 "다음 신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이다.

신뢰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나 단체로는 종교단체(The churches),[289] 군대(The armed forces), 신문(The press), 텔레비전(Television),[290] 노동조합(Labor unions), 경찰(The police), 법원(The courts),[291] 중앙정부[The government(in your nation's capital)],[292] 정당(Political parties), 의회(Parliament), 공무원(The Civil service),[293] 대학(Universities),[294] 대기업(Major Companies), 은행(Banks),[295] 환경운동단체(Environmental organizations),[296] 여성운동단체(Women's organizations),[297] 인권/자선단체(Charitable of humanitarian organizations), 동북아공동체 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298] 유엔(The United Nations)[299]의 19개[300] 조직 또는 단체가 열거되어 있다.

위 질문에 대한 응답은 "완전히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4단계 척도가 제시되어 있다.[301]

---

289) wave 3, 5에서는 '교회'로 번역되어 있다.

290) wave 1에서 사용된 영어 원판 설문은 'The press'의 한 가지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묻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신문과 언론기관'으로 번역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291) wave 1의 한글 번역본 설문에는 '법률 제도'로, wave 3, 5에서는 각 '사법부'로 번역되어 있다. 다만, 영어로 된 원판 설문은 wave 1, 2의 경우 각 'Justice system', wave 3의 경우 'The legal system'이고, wave 5에서는 wave 6와 같이 'The courts'이다.

292) wave 3, 5의 각 한글 번역본에는 '행정부'로 번역되어 있다. 다만, 영어로 되어 있는 원판 설문은 wave 3의 경우 'The national government'이고, wave 5의 경우는 wave 6과 같다. wave 1, 2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

293) wave 3, 5의 각 한글 번역본서는 각 '시민단체'로 번역되어 있는데 명백한 오역으로 보인다. wave 1의 한글 번역본에는 '시민봉사기관(우편, 전화, 소방서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294) wave 3의 영어 원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한글 번역본에는 포함되어 있다. wave 5에는 한글 번역본과 영어 원판 모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wave 1, 2에는 대신 'The education system'이 포함되어 있다.

295) wave 1, 2, 5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96) wave 3의 영어 원판 명칭은 'The Green/Ecology movement'로 되어 있다. wave 1, 2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97) wave 3의 영어 원판 명칭은 'The women's movement'로 되어 있다. 역시 wave 1, 2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98) 영어로 된 원판 설문에는 '유럽공동체(he European Union)'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적절한 지역 기구(예컨대, 북미의 경우에는 NAFTA)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대신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wave 1, 2, 3, 5에는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wave 5의 한글 번역본에는 대신 '전교조'가 포함되어 있다.

299) wave 1, 2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00)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wave 1의 한글 번역본은 10개(신문과 언론기관을 하나의 조직 또는 단체로 취급하는 경우이다. 한편 영어로 된 원판 설문은 교육제도를 제외한 9개 조직,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wave 2는 'The Social security system'을 포함하여 15개, wave 3은 16개, wave 5는 17개 조직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01) 이 설문사항에 대하여 wave 6에서 영어로 작성된 원판 설문(master questionnaire)(2012. 6. revised

2. 사법신뢰도 조사결과

wave 1부터 wave 6(사법신뢰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wave 4는 제외)까지 설문조사에 나타난 주요 국가[302]의 사법신뢰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303]

가. wave 1(1981-1984, 8개국)[304]

[표5] 1981-1984 사이 사법신뢰도(WVS, wave 1)

	A great deal	Quite a lot	positive[305]	Not very much	None at all	negative[306]	No answer[307]	(N)[308]	rank[309]
Total	22.6	43	**65.6**	27.5	4.8	**32.3**	2.1	10.985	–
Australia	11.4	48.7	**60.1**	34.7	4.6	**39.3**	0.6	1.228	**6**
Finland	26.3	56.9	**83.2**	15.2	1	**16.2**	0.6	1.003	**2**
Hungary	39.7	44.4	**84.1**	9	1.8	**10.8**	5	1.464	**1**
Japan	16	51.7	**67.7**	25.4	2.9	**28.3**	4	1.204	**5**
South Korea	36.5	42.5	**79**	16.3	2.5	**18.8**	2.3	970	**3**
Mexico	24.1	28.4	**52.5**	35.6	11.9	**47.5**	0	1.837	**7**
Sweden	13	56.6	**69.6**	22.1	3.4	**25.5**	4.8	954	**4**
United States	16.7	34.7	**51.4**	42.3	5.3	**47.6**	1	2.325	**8**

master)과 응답은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Read out and Code one answer for each)*"이다. [World Value Survey, "WV6_Official_Questionnaire_v4_June2012.pdf", 8-9,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2018. 12. 2. 확인)].

302) OECD가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사법신뢰도 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VS)가 위 기간 중 사법신뢰도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국가 중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료 조사기간 중 가입국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시계열 분석의 대상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가입국 지위를 취득한 경우가 아닌 이상 OECD 가입국에 포함시켜 분석한다. 다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각 wave마다 포함된 OECD 국가가 달라 OECD 국가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시계열 분석에는 난점이 있다.

303) N열의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열의 수치 단위는 %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신뢰'가 10.9%, '상당히 신뢰'가 55.8%,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25.9%,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6.8%, '무응답'이 0.7%이다.

304) 분석 대상인 자료는 호주, 핀란드, 일본, 멕시코, 스웨덴, 미국은 각 1981년, 우리나라, 헝가리는 각 1982년의 것이다.

305) 사법 신뢰도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비율로서 'A great deal'과 'Quite a lot'의 수치를 합한 값이다.

306) 사법신뢰도에 대해 부정적 답변을 한 비율로서 'Not very much'와 'None at all'의 수치를 합한 값이다.

307) 설문에 제시된 응답척도에는 '무응답(No answer)'나 '모른다(Don't Know, DK)'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설문조사가 대면 면접(face-to-face interview)이 원칙이고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조사자가 종이에 기입하거나 CAPI 방식[이 연구보고서 (주 102) 내용 참조]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 응답척도에서 예정하지 않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가급적 응답척도에 제시된 범위의 답변을 하도록 다시 질문하여 설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응답은

wave 1에서 사법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된 OECD 국가는 8개국이다. 평균적으로 1,300여 명의 응답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와 스웨덴 등의 경우에는 권장 최소 표본 크기인 1,200명에 미달하는 표본이 수집되었다.

위 국가들의 국민은 'Justice system'[310]에 대하여 평균적으로[311] 22.6%가 완전히(a great deal) 신뢰하고, 43%가 약간(quite a lot) 신뢰하며, 27.5%가 별로 신뢰하지 않고(not very much), 4.8%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none at all)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이 65.6%, 부정적인 응답은 32.3% 정도이고,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2.1%로 나타났다.

위 기간 중의 설문조사에서 'Justice system'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조사되었고(84.1%), 미국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1.4%).

우리나라는 79%의 국민이 '법률 제도'[312]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여 8개국 평균(65.6%)보다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개국 중 3위). 무응답을 한 경우는 2.3%로서 8개국 평균(2.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나. wave 2(1990-1994, 8개국)[313]

[표6] 1990–1994 사이 사법신뢰도(WVS, wave 2)

	A lot	Quite	positive	Not very	Not at all	negative	No answer	Don't know	other	(N)	rank
Total	15.5	37.6	**53.1**	34.2	11.2	**45.4**	1	0.6	1.6	9.695	–
Chile	22.1	22.6	**44.7**	42.5	12.8	**55.3**	0	0	0	1.5	**7**

제거할 수 있겠으나(물론, 이 경우에도 설문에 관련이 없는 응답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결과 분석 단계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 거듭 이어지는 질문에 불구하고 '무응답'이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08) N=(응답자 수/1,000명)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응답자 수는 1.2×1,000=1,200명이다.

309) 사법신뢰도에 대해 긍정적 응답 (positive)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순서이다.

310) 이 연구보고서 (주 291) 내용 참조.

311) 각 국의 응답 비율 자체를 산술 평균한 값이 아니라 8개국 응답자 전체 중 특정한 응답 유형을 선택한 전체 응답자 비율이다. 예를 들어 8개국 국민 중 법원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응답을 한 응답자 수의 합계가 8개국 응답자 전체인 10,985명 중 22.6%라는 의미이다. 이 값은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국가(예를 들어 미국, 멕시코 등)의 응답 패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 '평균' 개념은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312) 이 연구보고서 (주 291) 내용 참조.

313) 분석 대상인 자료는 폴란드는 1989년, 우리나라, 칠레, 일본, 멕시코, 스페인, 터키는 각 1990년, 체코는 1991년의 것이다.

Czech Rep.	4.9	40.7	**45.6**	43.6	10.7	**54.3**	0	0.1	0.1	924	**6**
Japan	12	49.4	**61.4**	33.4	3.6	**37**	0	1.7	1.7	1.011	**3**
South Korea	14	52.1	**66.1**	28	5.2	**33.2**	0.6	0.1	0.7	**1.251**	**1**
Mexico	15.9	37.3	**53.2**	30.8	15.5	**46.3**	0.5	0	0.5	1.531	**4**
Poland	11.9	32.4	**44.3**	35.2	12	**47.2**	8.2	0.2	8.4	938	**8**
Spain	12.4	36.1	**48.5**	35.2	15.2	**50.4**	0	1.1	1.1	1.51	**5**
Turkey	27.5	34.8	**62.3**	25	10.6	**35.6**	0	2.2	2.2	1.03	**2**

wave 2에서 사법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된 OECD 국가 역시 8개국이다.[314] 평균적으로 1,200여 명의 응답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체코와 폴란드 등의 경우에는 권장 최소 표본 크기인 1,200명에 미달하는 표본이 수집되었다.

위 국가들의 국민은 'Justice system'[315]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15.5%가 매우(a lot) 신뢰하고, 37.6%가 약간(quite) 신뢰하며, 34.2%가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not very), 11.2%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not at all)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이 53.1%, 부정적인 응답은 45.4% 정도이고, 무응답이거나 모르겠다고 응답을 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1.6%로 나타났다.

위 기간 중의 설문조사에서 'Justice system'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조사되었고(66.1%), 폴란드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4.3%).

우리나라는 66.1%의 국민이 'Justice system'[316]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여 8개국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14%로서 8개국 평균(15.5%)보다 낮고,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1%로 8개국 평균(37.6%)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이나 모르겠다고 응답을 한 경우는 0.7%로서 8개국 평균(1.6%)보다 낮게 나타났다.

314) 다만, wave 1에 포함되었던 국가 중 호주, 핀란드, 헝가리, 스웨덴, 미국이 빠지고 대신 칠레, 체코, 폴란드, 스페인, 터키가 포함되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세계가치관조사(WVS) 설문조사의 이런 특성은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시계열 분석이나 국가 간 비교분석에 장애 요인이 된다.

315) 이 연구보고서 (주 291) 내용 참조.

316) wave 2의 한글 번역본 설문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연구보고서 (주 288) 내용 참조.

다. wave 3(1995-1998, 17개국)[317]

[표7] 1995–1998 사이 사법신뢰도(WVS, wave 3)

	Great deal	Quite a lot	positive	Not very much	None at all	negative	No Answer	Don't Know	other	(N)	rank
Total	10.5	41	**51.5**	35.4	10.4	**45.8**	0.4	2.2	2.6	21.025	–
Australia	5.1	29.3	**34.4**	52.5	11.4	**63.9**	0	1.8	1.8	2.048	**16**
Chile	7.9	36.4	**44.3**	36.2	17.9	**54.1**	0	1.6	1.6	1	**13**
Czech Rep.	1.3	27.1	**28.4**	48.4	20.9	**69.3**	2.3	0	2.3	1.147	**17**
Finland	13.7	54.1	**67.8**	25.5	5.4	**30.9**	0	1.3	1.3	987	**4**
Germany	7.6	46.1	**53.7**	39.5	5.4	**44.9**	0	1.4	1.4	1.017	**8**
Hungary	10	40.6	**50.6**	36	10.8	**46.8**	0	2.6	2.6	650	**9**
Japan	15.4	58.7	**74.1**	17.5	1.6	**19.1**	0	6.8	6.8	1.054	**1**
South Korea	8.8	49.6	**58.4**	35.3	5.9	**41.2**	0.2	0.2	0.4	1.249	**7**
Mexico	10.1	30.9	**41**	33	25.3	**58.3**	0	0.7	0.7	1.51	**14**
New Zealand	5.4	39.2	**44.6**	44.2	6.9	**51.1**	2.6	1.7	4.3	1.201	**11**
Norway	9.6	59.6	**69.2**	27.2	3	**30.2**	0	0.5	0.5	1.127	**3**
Poland	10.9	37.4	**48.3**	33.7	9.8	**43.5**	0	8.2	8.2	1.153	**10**
Spain	7.6	37	**44.6**	39.8	11.1	**50.9**	0	4.5	4.5	1.211	**12**
Sweden	6.9	54.4	**61.3**	32.4	4.4	**36.8**	0	1.9	1.9	1.009	**6**
Switzerland	9.2	55.3	**64.5**	27.2	6	**33.2**	0	2.3	2.3	1.212	**5**
Turkey	34	35.7	**69.7**	17.1	10.9	**28**	1	1.3	2.3	1.907	**2**
United States	6	29.4	**35.4**	48.9	13.2	**62.1**	0	2.5	2.5	1.542	**15**

wave 3에서 사법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된 OECD 국가는 17개국이다. 평균적으로 1,200여 명의 응답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헝가리, 폴란드 등의 경우에는 권장 최소 표본 크기인 1,200명에 미달하는 표본이 수집되었다.

위 국가들의 국민은 'The legal system'[318]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10.5%가 상당히(great deal) 신뢰하고, 41%가 어느 정도(quite a lot) 신뢰하며, 35.42%가 별로 신뢰하지 않고(not very much), 10.4%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none at all)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이 51.5%, 부정적인 응답은 45.8% 정도이고,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2.6%로 나

317) 분석 대상인 자료는 호주, 체코, 일본, 스페인, 미국은 각 1995년, 우리나라, 칠레,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는 각 1996년, 독일(서독 지역), 폴란드는 각 1997년, 헝가리, 뉴질랜드는 각 1998년의 것이다.

318) 이 연구보고서 (주 291) 내용 참조.

타났다.

위 기간 중의 설문조사에서 'The legal system'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조사되었고(74.1%), 체코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8.4%).

우리나라는 58.4%의 국민이 '사법부'[319]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여 17개국 평균(51.5%)을 상회하는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17개국 중 7위), '상당히' 신뢰한다는 응답은 8.8%로서 17개국 평균(10.5%)보다 낮고,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응답은 49.6%로 17개국 평균(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이나 모르겠다고 응답을 한 경우는 0.4%로서 17개국 평균(2.6%)보다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라. wave 5(2005-2009, 21개국)[320]

[표8] 2005-2009 사이 사법신뢰도(WVS, wave 5)

	A great deal	Quite a lot	positive	Not very much	None at all	negative	No answer	Don't know	other	(N)	rank
Total	11.7	44.8	**56.5**	30.6	10.1	**40.7**	0.9	1.7	2.6	25.648	–
Australia	10.4	40.6	**51**	38.9	8.5	**47.4**	1.6	0	1.6	1.421	**13**
	A great deal	Quite a lot	positive	Not very much	None at all	negative	No answer	Don't know	other	(N)	rank
Canada	15.5	48.8	**64.3**	26.6	7.1	**33.7**	0.4	1.6	2	2.164	**7**
Chile	4.5	23.8	**28.3**	41.7	28.2	**69.9**	0.8	1.1	1.9	1	**21**
Finland	21.8	60	**81.8**	15.7	2	**17.7**	0.1	0.5	0.6	1.014	**2**
France	4	35.9	**39.9**	36.6	22.9	**59.5**	0.2	0.4	0.6	1.001	**18**
Germany	10	45.6	**55.6**	32.2	8.9	**41.1**	0.5	2.7	3.2	2.064	**9**
Hungary	10.2	42	**52.2**	28.5	15	**43.5**	0.3	4	4.3	1.007	**12**
Italy	6.8	43.3	**50.1**	37.5	9.4	**46.9**	0.7	2.3	3	1.012	**15**
Japan	16.1	60.9	**77**	14.6	2.4	**17**	5.9	0	5.9	1.096	**3**
South Korea	2.7	48.1	**50.8**	40.1	9	**49.1**	0.1	0	0.1	1.2	**14**
Mexico	6.7	30.2	**36.9**	35.6	25.2	**60.8**	0.6	1.7	2.3	1.56	**19**
Netherlands	2.8	40.6	**43.4**	43.1	10.5	**53.6**	0.8	2.1	2.9	1.05	**17**

319) 이 연구보고서 (주 291) 내용 참조.

New Zealand	5	39.3	**44.3**	42.5	7.7	**50.2**	3.5	2.1	5.6	954	**16**
Norway	22.1	63.2	**85.3**	12.1	1.9	**14**	0.4	0.3	0.7	1.025	**1**
Poland	4.9	26	**30.9**	45.1	16.7	**61.8**	0.1	7.3	7.4	1	**20**
Spain	8.2	45.6	**53.8**	35.1	8.2	**43.3**	0.1	2.6	2.7	1.2	**11**
Sweden	14.8	58.2	**73**	21.3	4	**25.3**	1.6	0	1.6	1.003	**6**
Switzerland	14.8	60.1	**74.9**	18.7	3.8	**22.5**	0.3	2.4	2.7	1.241	**4**
Turkey	35.9	37.9	**73.8**	15.9	7.8	**23.7**	0.1	2.2	2.3	1.346	**5**
United Kingdom	13.3	44.3	**57.6**	28.6	9.4	**38**	0.9	3.1	4	1.041	**8**
United States	8.4	46.6	**55**	35.6	5.3	**40.9**	1.8	0	1.8	1.249	**10**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사법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OECD 국가는 21개국이고, 평균적으로 1,200여명의 응답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1개국의 평균적인 'The courts'[321]에 대한 신뢰도는 56.5%로서 wave 3의 기간에서의 그것(51.5%)보다 소폭 개선되었고, 무응답 등 기타 답변의 비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노르웨이가 'The courts'에 가장 높은 사법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85.3%), 칠레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28.3%). 뉴질랜드 등에서는 권장되는 최소 표본 크기인 1,200명에 미달하는 응답만이 수집되었다.[322]

우리나라는 21개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50.8% 국민만이 사법부[323]를 신뢰하는 것으로, 49.1%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1개국 중 14위). 무응답 등 기타 응답 비율은 0.1%로 21개국 평균(2.6%)에 비해 매우 낮은 측정치를 보였다.

320) 분석 대상인 자료는 뉴질랜드는 2004년, 우리나라, 호주,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영국은 각 2005년,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은 각 2006년,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각 2007년, 헝가리는 2009년의 것이다.

321) 이 연구보고서 (주 291) 내용 참조.

322) 뉴질랜드의 경우는 전체 인구 규모가 45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3) (주 291)에서 설명한 것처럼 wave 5는 우리나라에서 'The courts'를 '사법부'로 번역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마. wave 6(2010-2014, 15개국)[324]

세계가치관조사(WVS)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사법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OECD 국가는 모두 15개국이다. 각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1,500여명의 응답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뉴질랜드, 폴란드 등에서는 권장되는 최소 표본 크기인 1,200명에 미달하는 응답이 이루어졌다.

위 국가들의 국민은 'The courts'[325]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12.1%가 완전히(a great deal) 신뢰하고, 44.1%가 약간(quite a lot) 신뢰하며, 29.5%가 별로 신뢰하지 않고(not very much), 10.5%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none at all)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이 56.2%, 부정적인 응답은 40% 정도이고,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응답을 한 경우도 평균적으로 3.8%로 나타났다.

[표9] 2010-2014 사이 사법신뢰도(WVS, wave 6)

	A great deal	Quite a lot	positive	Not very much	None at all	negative	No answer	Don't know	other [326]	(N)	rank
Total	12.1	44.1	**56.2**	29.5	10.5	**40**	0.8	3	3.8	22,709	–
Australia	14.1	44	**58.1**	33.2	6.5	**39.7**	2.1	0	2.1	1,477	**9**
Chile	2.8	23.4	**26.2**	48.1	24.2	**72.3**	0.3	1.2	1.5	1	**14**
Estonia	13.9	50.5	**64.4**	23.1	9	**32.1**	0.1	3.4	3.5	1,533	**6**
Germany	17	54.3	**71.3**	21.6	4.8	**26.4**	0.2	2.1	2.3	2,046	**3**
Japan	15.8	57.9	**73.7**	14.4	1.5	**15.9**	0	10.4	10.4	2,443	**2**
South Korea	10.9	55.8	**66.7**	25.9	6.8	**32.7**	0.7	0	0.7	1,2	**5**
Mexico	7	23.8	**30.8**	34.8	33.4	**68.2**	0.2	0.9	1.1	2	**13**
Nether-lands	9.5	52.4	**61.9**	29	5	**34**	0.5	3.6	4.1	1,902	**7**
New Zealand	13.3	47.2	**60.5**	29.3	3.7	**33**	3.7	2.9	6.6	841	**8**
Poland	3.4	35.3	**38.7**	39.6	12.9	**52.5**	0.2	8.6	8.8	966	**12**
Slovenia	2.4	22.3	**24.7**	49.2	21.4	**70.6**	0.4	4.3	4.7	1,069	**15**
Spain	6.6	33.1	**39.7**	44	14.3	**58.3**	1	1	2	1,189	**11**
Sweden	18.6	56.9	**75.5**	17.1	4.3	**21.4**	0.3	2.7	3	1,206	**1**
Turkey	28	39.4	**67.4**	19	10.5	**29.5**	0.9	2.2	3.1	1,605	**4**
United States	8.9	44.9	**53.8**	37.6	6.5	**44.1**	2.1	0	2.1	2,232	**10**

324) 분석 대상 자료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 2010년,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은 각 2011년, 호주, 칠레,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터키는 각 2012년, 독일은 2013년 것이다.

325) 이 연구보고서 (주 291) 내용 참조.

위 기간 중의 설문조사에서 'The courts'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조사되었고(75.5%) 슬로베니아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4.7%).

우리나라는 66.7%의 국민이 '법원'[327]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여 15개국 평균(56.2%)보다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5개국 중 5위), 완전히 신뢰한다는 응답은 10.9%로서 15개국 평균(12.1%)에 미치지 못하고 대신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이 55.8%로서 15개국 평균(44.1%)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응답이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0.7%로서 15개국 평균(3.8%)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3. 우리나라 사법 신뢰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가. 개관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 사법부 또는 법원(이하 이 항에서는 '사법'이라고 통칭한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wave 1 설문조사 때부터 실시하여 wave 1을 제외하고는 권장 최소 표본 크기인 1,200명 이상의 응답자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다.[328]

wave 1은 1982년, wave 2는 1990년, wave 3은 1996년, wave 5는 2005년, wave 6은 2010년[329]에 각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된 결과이다.

326) 'No answer'와 'Don't know'의 수치를 합한 값이다.
327) 이 연구보고서 (주 291) 내용 참조.
328)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wave 4(1999-2004)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법률 제도, 사법부 또는 법원을 독립적 대상으로 삼은 공식적 신뢰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연구보고서 (주 287) 내용 참조].
329) 2010. 2. 27.~2010. 3. 8. 사이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나. 통계적 특성[330]

[표10]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WVS wave 시리즈의 통계적 특성(1981–2014)

	wave 1 (1981–1984)	wave 2 (1990–1994)	wave 3 (1995–1998)	wave 5 (2005–2009)	wave 6 (2010–2014)
자료 수집 기관			이화여대, 서울대	한국 사회과학 자료센터(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KSDC)	KSDC
설문 조사 기간	1982.03.01. ~1982.05.31.		1996년 봄	2005.12.01. ~2005.12.15.	2010.02.27. ~2010.03.08.
표본 크기	970명	1,251명	20세 이상 성인 1,249명	20세 이상 성인 1,200명	20세 이상 성인 1,200명
추정 오차	3.2	2.8	2.8	2. 9	2.9
설문				핵심 WVS 질문(core question)은 한국과 관련이 없어 불포함	
표집 방식	계층화 무작위 표집(stratified random sample)[331]			유의 할당 표집(purposive quota sampling)[332], 도서지역 불포함	유의 할당 표집(purposive quota sampling), 도서지역은 불포함
설문 조사 방식	개인적 대면면접(personal face–to–face interview)	n/a[333]	개인적 대면면접	개인적 대면면접	개인적 대면면접
응답률					55.4%
가중치 부여					연령, 성별, 학력에 따른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관측치에 가중치 부여
비고				‘무응답’과 ‘모르겠다’는 반응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무응답’으로 처리	

330) 세계가치관조사(WV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각 wave의 문건(documentation) 중 Codebook 첫머리의 ‘기술적 내용 보고(Technical Report)’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wave에 따라 위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하였다.

331) 표본이 우연히 한쪽에 치우친 모집단에서 추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집단을 여러 층(strata)로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는 표집방법을 의미한다. 이 조사에서 사용된 계층(strata)은 지방자치 지역과 인구 규모에 따라 구분된 자치 도시들이다. 지방자치 지역과 자치 도시의 임의적 추출은 각 지방자치

다. 설문의 문구(wording)

(1) 신뢰 조사대상의 특정

이에 대한 신뢰 조사대상은 영어로 작성된 원판 설문에서도 'Justice system'(wave 1, 2), 'The legal system'(wave 3), 'The courts'(wave 5, 6)로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는 한글 번역본 설문[334]에서도 '법률 제도'(wave 1), '사법부'(wave 3, 5), '법원'(wave 6)으로 미묘하게나마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2) 질문

질문의 한글 번역본은 모두 "…를 얼마 정도(또는 얼마나,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로 되어 있다.

(3) 응답

응답의 척도는 가장 낮은 신뢰를 모두 '전혀'로 번역한 이외에 가장 높은 신뢰는 '매우'(wave 1), '상당히'(wave 3) 또는 '완전히'(wave5, 6)로, 다소 높은 신뢰는 '약간'(wave 1, 5, 6) 또는 '어느 정도'(wave 3)로, 다소 낮은 신뢰를 '그다지'(wave 1) 또는 '별로'(wave 3, 5, 6)로 각각 다소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라. 조사결과

1981년부터 2014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14%는 사법에 대해 매우 높은 신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50%는 약간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30%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6%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계층(예컨대, 도 단위, 시나 군 단위 등) 내에서 선거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개별 가구의 무작위 선정은 그와 같이 추출된 각 선거구 내에서 이루어졌다, 각 개별 가구에서 최종적인 응답자는 성이나 연령 또는 키 시 표(Kish's table)에 기초하여 선정되었다. 키시 그리드(Kish Grid)에 의한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 (주 232) 내용 참조.

332) 유의(有意) 표본 추출(purposive selection)은 표본을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추출하는 방법으로 표본 조사의 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통계 조사 담당자가 모집단을 대표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표본을 주관적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관찰도 달라져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검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일진사 (2011), "유의 표본 추출법",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34269&cid=50376&categoryId=50376 (2018. 12. 2. 확인)에서 재인용]. 한편, 할당표집(quota sample)에 대해서는 (주 232) 참조.

333) wave 2의 Codebook '기술적 내용 보고' 부분에는 'missing'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34) 앞서 설명한 것처럼 wave 2의 한글 번역본 설문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이 연구보고서 (주 288) 내용 참조].

조사되었다. 요컨대 위 기간 중 평균적으로 64%의 우리나라 국민은 사법은 신뢰할만하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36%의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11] 1981-2014 우리나라 사법신뢰도(WVS, wave1-wave6)

응답척도	전체	wave 1 (1981-1984)	wave 2 (1990-1994)	waave 3 (1995-1998)	wave 5 (2005-2009)	wave 6 (2010-2014)
매우, 상당히 또는 완전히	14	36	14	9	3	11
약간 또는 어느 정도	50	42	52	50	48	56
긍정적	**64**	**78**	**66**	**59**	**51**	**67**
긍정 강도[335]	0.218	0.461	0.212	0.152	0.058	0.164
그다지 또는 별로	30	16	28	35	40	26
전혀	6	2	5	6	9	7
부정적	**36**	**18**	**33**	**41**	**49**	**33**
부정 강도[336]	0.166	0.111	0.151	0.146	0.183	0.212
무응답	1	2	1	0	0	1
모름	0	0	0	0	0	0
기타 답변 합계	1	2	1	0	0	1
응답자 수	5.87	970	1.251	1.249	1.2	1.2

사법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던 기간은 wave 1(1981-1984)이었고, 가장 낮은 기간은 wave 5(2005-2009)이었다. wave 1부터 wave 5 사이 기간인 1981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27% 포인트 가까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는데, 이후 wave 6 기간인 2010-2014 사이에는 다시 전기 대비 16% 포인트 정도 신뢰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법신뢰에 대한 긍정강도(intensity of positiveness)가 가장 큰 시기는 wave 1(1981-1984)이고[337] 가장 강도가 약한 시기는 wave 5(2005-2009)로서[338] 가

335) 가장 높은 신뢰(a great deal)를 보인 응답자 비율 ÷ 긍정적 반응(positive)을 보인 전체 응답자 비율.
336) 가장 낮은 신뢰(none at all)를 보인 응답자 비율 ÷ 부정적 반응(negative)을 보인 전체 응답자 비율.
337) 46.1%(=36% ÷ 78%).

장 강한 시기의 강도가 가장 약한 시기의 7.8배로 편차가 매우 큰 반면, 사법신뢰의 부정 강도(intensity of negativeness)는 11.1%에서 21.2%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상의 사법신뢰도의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30]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 추이(198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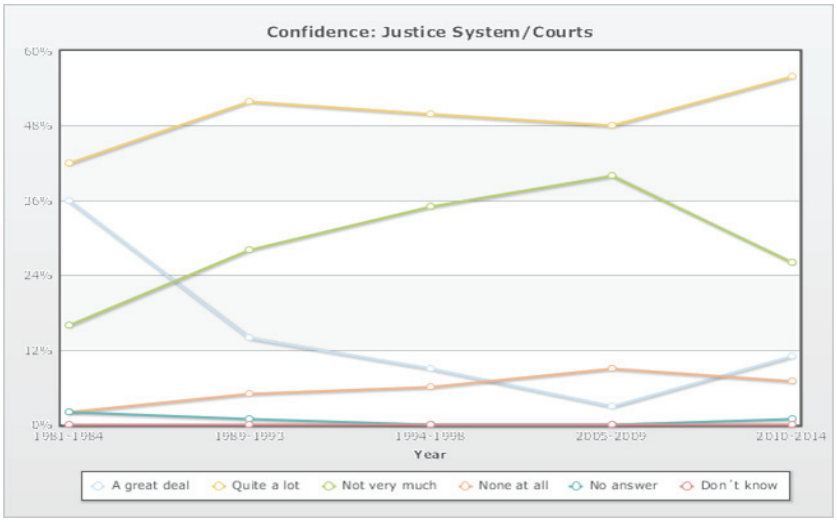

제3절 OECD와 세계가치관조사의 사법신뢰도 지수 비교

법원, 사법부 또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를 조사한 국제적인 연구결과로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OECD가 발표하는「한눈에 보는 정부」시리즈와 세계가치관조사(WVS)가 발표하는 wave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두 보고서에서 발표되는 사법신뢰도 지수의 특징을 정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339]

338) 5.8%(=3% ÷ 51%).

339) 한편, (주 140)에서 설명한 것처럼 OECD의「한눈에 보는 정부」보고서는 사법신뢰도 지수만이 아니라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관련 지표의 측정지수도 함께 발표하고 있는데, OECD의 이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측정지수 특성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후술하는 다른 기구들이 발표하는 지수들과 함께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제5장 제5절 참조).

I. 신뢰도 지수 또는 측정치 산출절차의 주체

wave 시리즈는 세계가치관조사(WVS),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는 OECD가 각 발간주체이기는 하지만, 두 보고서 모두 발간의 기초가 되는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자료 수집 등 구체적인 현장조사는 별도의 전문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다만,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소속기구인 집행위원회와 과학자문위원회가 설문의 개발과 번역, 설문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의 시기와 기간, 대상의 선정,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있다.

wave 시리즈는 각국의 대표적인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wave 1은 한국갤럽이, 나머지 wave 시리즈는 여러 국내 대학의 사회조사 전공 교수 또는 대학 부설 사회조사 기관이 설문조사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340]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면 이를 취합해서 분석을 하고 이로부터 최종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작업은 세계가치관조사(WVS)가 주관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갤럽 세계여론조사(GWP)의 조사 결과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각 개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는 다시 해당 국가의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OECD는 갤럽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설문의 개발과 번역, 현장조사의 시기와 기간, 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조사절차와 자료 수집은 물론, 자료의 분석과 결과 산출까지 갤럽이 전담하고 있다.[341]

다만, OECD는 앞서 제3장 제2절 Ⅲ항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17년 각국의 국가통계기구(NSO)가 정기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각국 국가통계기구(NSO)에 의해 널리 채택되어 신뢰측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신뢰도 지표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와 자료 분석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340) wave 시리즈별 현장조사가 비정기적으로, 시기별로 각기 다른 조사,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조사결과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3년 상반기 보고서, '제5장 사회조사 항목개발' (2013), 179 참조.

341) 매년 같은 기관이 설문조사를 실시, 주관한다는 점은 wave 시리즈와 비교하여 조사결과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의 확보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II. 조사 목적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시리즈는 경제적, 기술적 변화가 일반대중의 기본적 가치관과 동기를 변형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후 이런 가치관 변화가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변화의 저변에 놓인 원인을 분석하여 인간의 가치관, 규범과 신념의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는 각국 정부에게 정부의 활동을 측정, 평가, 계획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과거의 성과지표로부터 얻은 시계열 자료와 정보를 통해 개혁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정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국제 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의 성과를 응용하거나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의 목적만을 비교한다면, 사법에 대한 신뢰 자체의 형성, 변화 추세와 원인의 파악은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시리즈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신뢰도 증진을 위한 개혁 의제의 달성 여부 등 법원 또는 사법부 활동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확인하고 나아가 높은 사법 신뢰도를 보이는 나라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OECD의 사법 신뢰도 조사 결과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III. 발표 주기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시리즈는 1981년 일부 국가에 대해 첫 설문조사가 시작되어 1984년까지[342] 조사가 이루어진 후 첫 보고서인 wave 1이 발표되었다. wave 2가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자료를 기초로 발표된 것을 제외하면 후속 시리즈는 대략 4, 5년 간격을 두고 발표되었으나 정기적인 것은 아니었다. wave 7은 2020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후 wave 시리즈는 5년 주기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342) 아르헨티나에 대한 설문조사가 1984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는 2009년부터 격년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사법 제도 관련 신뢰도 지표는 앞에서 본 것처럼 2013년판 보고서부터 발표되고 있다. 한편 사법 신뢰도와 관련한 자료를 생산하는 갤럽은 그 이전인 2005년부터 매년 관련 자료를 수집, 조사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기간이 세계가치관조사(WVS)에 비해 짧긴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시계열 정보를 포착하기 위한 자료의 규칙성 측면에서도 OECD 보고서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조사대상인 국가 범위

1. 세계가치관조사(WVS) wave 시리즈

첫 시리즈인 wave 1에서 10개국[343]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 발표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에서 핀란드, 헝가리와 스웨덴, 미주 대륙에서 미국,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 주에서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공이 포함되어 있다.

wave 2는 18개국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아시아 4개국, 유럽 8개국, 미주 대륙 4개국, 아프리카 대륙 2개국이 포함되었다. wave 3은 56개국으로 대상이 대폭 증가하였고, wave 4는 41개국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344] wave 5는 58개국, wave 6에는 60개국이 각 포함되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wave 7에는 70~80개 국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가치관조사(WVS)는 다양한 지역 또는 대륙별,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국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343)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시리즈를 위한 설문조사는 국가 차원이 아닌 대표적인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수행되었고, 같은 국가 안에서도 15% 이상 거주자가 사용하는 주된 언어가 다른 경우에는 각 해당 언어로 번역된 설문을 사용하는 등 별도의 현장조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사회(societies) 단위로 실시되었다. wave 시리즈의 조사대상 범위를 언급할 때 숫자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에 원용된 신뢰도 자료 역시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조사기관인 갤럽이 수행한 조사를 기초로 생산된 것이지만 설문조사 자체는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다.

344)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wave 4에서는 사법 관련 신뢰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이 연구보고서 (주 287) 내용 참조].

2.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

2009년 첫 보고서는 당시 OECD 정식 회원국인 30개국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이후에는 정식회원국 이외에 회원국 가입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 OECD 공공행정위원회 참관지위에 있는 국가들도 자료수집 가능성과 분석필요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OECD 정식회원국 절대 다수가 유럽 국가이고 종교적으로 기독교 계열이 다수이며 대부분이 경제적 부국 또는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점에 비추어 조사대상의 지역적, 사회·문화·종교·민족적, 경제적 다양성은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시리즈에 비해 부족하다.

V. 설문조사 방법과 규모

1.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시리즈

별도로 소속 과학자문위원회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응답자의 거주지에서 대면(face-to-face) 면접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원격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 면접이 허용된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전통적 방식에 따라 종이로 된 설문지에 기록될 수도 있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일련의 자료수집 절차에 따라 기록될 수도 있다(CAPI).[345] 대면조사 원칙의 특성상 설문에 대하여 무응답 또는 관련성이 없는 응답이 기록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설문조사의 규모는 18세 이상 거주자 1,200명을 최소 표본의 크기로 권장하고 있다.

2.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포함하여 이 시리즈를 통해 발표될 신뢰도 지표 산출을 위한 일체의 절차를 주관하는 갤럽은 전화보급률이 80% 이상이거나 여론

345) 이 연구보고서 (주 102) 내용 참조.

조사 방법으로 관례적으로 전화조사를 사용하여 온 국가[346]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을 사용한다. 그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시리즈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OECD 정식회원국으로서 주로 경제적 부국이므로 대부분 전화조사가 실시된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15세 이상 거주자 1,000명을 최소 크기로 권장하고 있다.

한편, 2017년 발표된 신뢰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특정한 유형의 설문조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면접자 주도형보다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권장하고, 반응 편파성(response bias)[347]을 감소시키기 위해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대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봉인된 설문 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348] 나아가 측정된 자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CASI, CAPI 또는 CATI 방식[349]을 최선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능한 한 큰 규모의 설문조사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통계적 오류를 방지하여 정확한 신뢰 측정을 하는데 중요하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최소 표본 크기에 관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VI. 설문의 구성과 내용

1. 관련 신뢰 조사대상의 특정

[표12] 사법 관련 신뢰 조사대상의 표시(WVS, wave1-wave6)

	영어 원판(master) 설문	한글 번역본 설문
wave 1 (1981-1984)	Justice system	법률제도
wave 2 (1990-1994)		n/a[350]
wave 3 (1995-1998)	The legal system	사법부
wave 5 (2005-2009)	The courts	
wave 6 (2010-2014)		법원

346) 일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서유럽과 호주 등 선진국이 이에 해당한다.
347) 이 연구보고서 (주 252) 내용 참조.
348) 제4장 제1절 Ⅲ. 4. 나.의 (4)항 부분 참조.
349) 이 연구보고서 (주 102), (주 259), (주 260) 내용 각 참조.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사법에 대한 신뢰 조사를 위한 설문에서 wave 별로 미묘하게나마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였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에서 사법 제도 관련 신뢰도 지표를 발표한 2013년 이래 조사대상은 'judicial system and courts'로 특정되었고, 이에 대한 한글 번역본 설문은 '사법제도와 법원'으로 표시도어 있다.

일관되고 믿을만한 신뢰 조사를 위해 대상이 정확하고도 적절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OECD의 조사대상 특정이 정확하고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세계가치관조사(WVS)에서 조사대상 자체를 일관되지 못하게 표시한 것은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 설문의 문구

세계가치관조사(WVS)에서 최근 발표한 wave 6의 영어로 작성된 원판 설문(master questionnaire)은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 The courts"이다.[351] 이것에 대한 한글 번역본 설문은 "당신은 법원[352](또는 법률 제도,[353] 사법부[354])을 얼마나 [355](또는 얼마 정도[356]) 신뢰하고 계십니까?"로 되어 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의 영어 원판 설문은 "In this country, do you have confidence in each of the following, or not? How about judicial system and courts?"이다. 이에 대한 한글 번역본 설문은 "당신은 당신 국가에서 다음 항목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사법제도와 법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로 되어 있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조사대상의 표시 문제를 제외한다면, 두 조사 모두 측정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신뢰(confidence)'로 같고, 질문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신뢰의 '양

350) wave 2의 한글 번역본 설문은 확인되지 않는다[이 연구보고서 (주 288) 내용 참조].
351) 그 이전 wave 시리즈와는 바로 위에서 살펴본 조사대상의 표시만 차이가 있다.
352) wave 6
353) wave 1
354) wave 3, 5
355) wave 3, 5, 6
356) wave 1

(how much)'을 묻는 형식을 이고 OECD는 신뢰의 '여부(have or not)'를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제시하려는 응답척도의 차이와 호응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응답척도

가. 제시된 응답척도

세계가치관조사(WVS)는 다음과 같이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4단계의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357] confidence or none at all?*(Read out and Code one answer for each)*"

한글 번역본 설문에 제시된 응답척도 내용[358]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3] 신뢰수준 설문에 대한 응답척도(WVS, wave1-wave6)

	가장 높은 신뢰 수준	다소 높은 신뢰 수준	다소 낮은 신뢰 수준	가장 낮은 신뢰 수준
wave 1 (1981-1984)	매우	약간	그다지	전혀
wave 2 (1990-1994)	n/a			
wave 3 (1995-1998)	상당히	어느 정도	별로	전혀
wave 5 (2005-2009)	완전히	약간		
wave 6 (2010-2014)	완전히			

반면, OECD는 '예(yes)/아니오(no)'의 2단계 척도만을 제시한다.

357) wave 2에서는 'a great deal'은 'a lot'으로, 'quite a lot'은 'quite'로, 'not very much'는 'not very'로 제시되었다.

358) 제4장 제2절 Ⅳ. 3. 다.의 (3)항 부분 참조.

나. 기타 응답의 처리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되는 척도는 설문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고안되고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제시된 응답척도 중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문의 설계는 물론이고 설문조사의 실제 실시단계, 즉, 현장조사 단계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의 현장조사 단계에서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접촉하여 제시된 응답척도 중 하나를 고르게 하도록 질문을 반복하거나 합리적 범위의 추가적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에조차 응답을 하지 않거나(No answer), 모르겠다는 답변(Don' know, DK), 그밖에 설문과 관련이 없거나 범위를 넘는 반응(missing, inapplicable, inappropriate response)(이하 '기타 유형의 응답'이라 한다)이 나오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359]

이와 같은 기타 유형의 답변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응답의 기록이나 이후의 통계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문제는 조사결과의 전체적인 정확성이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응답이나 모르겠다는 반응을 전체 모수에 포함하되 이를 별도의 응답유형으로 취급하기 않고 '조사대상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으로 취급하여 신뢰도 측정에서는 전체 모수 중 '신뢰한다'는 응답만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360]와, 기타 유형의 응답을 모수에 포함하되 이를 신뢰도 측정치와 함께 별도로 기타 응답 비율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경우[361] 또는 무응답 등을 애초에 전체 모수에서 제외하고 신뢰도를 측정하는 경우의 측정치는 각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362]

세계가치관조사(WVS)는 wave 시리즈에서 무응답, 모르겠다는 답변 등 기타 유형의 응답은 별도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wave 시리즈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측정

359) [표11]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가치관조사(WVS)가 대면조사를 통해 실시한 우리나라에 대한 사법 신뢰조사에서 무응답 등 기타 유형의 답변 비율은 1981-2014 사이 기간 중 평균적으로 1% 정도이다.
한편, 무응답과 같은 기타 유형의 응답이 응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통계치와 지수의 내용과,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문지의 구성방법(특히, 설문지의 길이)에 관한 논의로는 김권현 외 공저, "설문지의 길이가 응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6권 1호, 한국조사연구학회 (2015. 2.) 참조.

360) 아래 설명하듯이 이는 OECD의 방식이다.

361) 세계가치관조사(WVS)의 방식이다.

362) 기타 유형의 응답이 있는 경우 OECD나 세계가치관조사(WVS) 방식 모두 '사법을 신뢰한다'는 응답을 한 비율의 측정치 자체에는 차이가 없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비율의 측정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면서도 '신뢰도'라는 측정치 또는 척도(measure) 자체를 고안하여 이를 별도로 발표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별 순위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OECD의 사법 신뢰도 지표와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OECD가 무응답 등 기타 유형의 답변을 전체 모수에 포함하면서도 '신뢰한다'는 응답에서는 제외하고 사법 신뢰도 지표를 산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기관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국가를 대상으로 사법 신뢰 수준을 측정할 때 그 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그런 차이 중 일정 부분은 이런 기타 유형의 응답에 대한 취급상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5 장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지수

I.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1. 설립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미국 변호사인 윌리엄 뉴콤(William Neukom)[363]이 2006년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협회장 발의로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로 설립하여, 2009년 21개의 전략적 파트너들[364]과 함께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 되었다. 사무소는 미국 워싱턴 D.C.(본부), 시애틀, 멕시코,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다.

2. 활동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2010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일반 대중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수집하여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법치주의 지수는 세계 125국 이상의 국가 원수, 대법관, 경영인, 공무원, 언론 등이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 33만 가구 및 전문가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 목표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부패, 빈곤, 질병을 방지하고 불평등을 지양하며, 책임 있는 정부 및 기본권을 존중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 평등, 기회, 평화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치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들이 자국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363) 2007. 8.부터 1년간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Wikipedia, "Bill Neukom", https://en.wikipedia.org/wiki/Bill_Neukom (2018. 12. 2. 확인)].

364) 잘 알려진 몇 가지 단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BA, Human Right Watch,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U.S. Chamber of Commerce 등.

II. 법치주의 지수

1. 소개

가. 개념[365]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는 일반인의 관점과 경험을 토대로 각 나라별로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7-2018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법치주의 지수는 전 세계 113국에서 일반인 11만여 명, 전문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법치주의 지수는 2가지 설문(일반대중 여론조사, 관련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야별 지표를 측정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366]

2017년 한국 종합순위는 20위(113개국), 종합 점수는 0.72(1점 만점)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하였다. 동아시아·태평양 15개국 중에서는 6위를 기록하였다.

---

365)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7-2018 (2018), 2-4,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ROLI_2017-18_Online-Edition_0.pdf (2018. 12. 2. 확인).

366)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현재와 과거 자료는 World Justice Project, "Current & Historical Data: Current and Historical Data Download (.XLSX)", https://worldjusticeproject.org/our-work/wjp-rule-law-index/wjp-rule-law-index-2017%E2%80%932018/current-historical-data 참조.
한편, 2017-2018년 보고서의 우리나라 상세 자료는 World Justice Project(주 365), Rule of Law Index 2017-2018, 128,
2016년 보고서의 우리나라 상세 자료는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2016), 128,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oLI_Final-Digital_0.pdf,
2015년 보고서의 우리나라 상세 자료는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2015), 131,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oli_2015_0.pdf,
2014년 보고서의 우리나라 상세 자료는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2014), 134,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uleofLawIndex2014.pdf
각 참조(각 2018. 12. 2. 확인).
한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의 종합순위는 2014년 보고서부터 산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표14] 우리나라의 연도별 WJP 법치주의 지수 점수 및 순위

연도	종합 점수 (1점 만점)	지역 순위[367]	임금 순위[368]	세계 순위
2014	0.77	5/15	14/30	14/99
2015	0.79	4/15	11/31	11/102
2016	0.73	6/15	19/36	19/113
2017	0.72	6/15	20/35	20/113

2. 세부 평가분야

가. 8가지 분야(factors)[369]

(1) 내용

법치주의 지수는 다음과 같은 8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① 정부권력 제한 (constraints on government powers)

② 청렴도 (absence of corruption)

---

367)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East Asia & Pacific) 지역에 속해 있다.

368) 한국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고임금(high income) 집단에 속해 있다. 이 순위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해당 연도에 고임금 국가로 분류한 국가 중 순위이다. 2017-2018 보고서의 고임금 35개 국가 명단은 World Justice Project(주 364), Rule of Law Index 2017-2018, 25 참조.

369)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2008년과 2009년 보고서에서는 '책임 있는 정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공표되고 안정적인 법률, 접근가능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절차, 사법접근성'의 4가지 하위지표로 법치주의 지수를 측정하였었다. 또한 2010년 보고서는 위의 8개 항목 이외에 '(분명하고, 공표된 안정적인 법률(clear, publicized and stable laws)'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
2008년 보고서는 World Justice Project, The Rule of Law Index, World Justice Forum, Vienna, Austria (2008. 6.),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Rule_of_Law_Index_2008_Report_.pdf,
2009년 보고서는 World Justice Project, The Rule of Law Index, World Justice Forum Ⅱ, Vienna, Austria (2009. 11.),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Rule_of_Law_Index_2009_Report.pdf
2010년 보고서는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0 (2010),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Rule_of_Law_Index_2010_Report.pdf
(각 2018. 12. 2. 확인).
이후 2011년 보고서부터는 체계를 다시 정비하여 9가지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중 '분야 9. 비공식적 사법정의(Informal Justice)'는 법치주의 지수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공식적인 사법제도의 이용이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등의 이유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비공식적 사법정의제도(informal justice system)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 하에 10여 개 국가에서 비공식적 사법정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공식적 사법정의제도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 간 비교가 매우 어려워 법치주의 지수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비공식적 사법정의의 세부 평가항목은 비공식적 사법제도의 적시성과 효율성, 형평성과 부당한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지 여부 및 기본권의 존중과 보호 여부 등 3개 항목이다. 비공식적 사법정의 분야를 제외하고 법치주의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8가지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은 총 44개이다[World Justice Project(주 364), Rule of Law Index 2017-2018, 12-17 참조].

③ 정부의 개방성 (open government)
④ 기본권 (fundamental rights)
⑤ 질서·안보 (order and security)
⑥ 규제집행 (regulatory enforcement)
⑦ 민사사법정의 (civil justice)
⑧ 형사사법정의 (criminal justice)

아래에서는 이중 사법제도의 고유 기능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민사사법정의와 형사사법정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민사사법정의

(가) 개념

일반인이 겪고 있는 고충을 민사 사법제도를 통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나) 세부 평가항목

① 접근성 및 적당한 비용

민사법원의 접근성 및 비용의 적정성을 측정한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법률 상담/소송대리인 접근성 및 적당한 비용인지의 여부, 지나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불합리한 절차적 난관에 부딪히지 않으며 신체적 또는 언어적 장벽을 경험하지 않고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설문 대상으로 한다.

② 차별 부존재

민사사법정의는 차별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이 실제로 없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③ 부패 부존재

민사사법정의는 부패가 없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뇌물 및 사익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이 없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④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 부존재

민사 사법제도에 부당한 정부의 또는 정치적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⑤ 부당한 지체 부존재

민사사법정의는 부당한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민사 사법절차가 부당한 지체 없이 시기적절하게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⑥ 효율적인 집행

민사사법정의는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 사법판결의 집행이 실제로 효율적인지와 시기적절한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⑦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DRs)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접근 가능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비용이 적당하며 효율적인 집행과 부패가 없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3) 형사사법정의

(가) 개념

효과적인 형사 사법제도는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사법정의의 평가에는 판사 이외에 검찰, 변호사, 경찰, 교도관을 포함한 형사체제 전체가 고려된다.[370]

(나) 세부 평가항목

① 효과적인 수사

범죄자가 효과적으로 체포되고 기소되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검찰, 수사관, 경찰이 충분한 자원이 있는지, 부패가 없는지, 능숙하게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370) 이처럼 '형사사법정의'는 법원 이외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교도행정기관을 포함한 형사체제 전체를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법부 또는 법원에 대한 신뢰수준을 결정하는 하위 구성요인으로 보기에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측면이 있다.

있는지 여부가 측정 대상이다.

②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판결

범죄자가 효과적으로 기소되고 처벌받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형사재판 판사와 다른 법관이 유능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리는지의 여부가 측정 대상이다.

③ 효과적인 교정 제도

교도소가 안전하고 수감자의 권리가 존중되며, 재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④ 차별 부존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경찰이 공정한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법관, 검찰과 경찰이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실제 차별이 없는지 여부가 측정 대상이다.

⑤ 부패 부존재

판사, 검사, 경찰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뇌물 및 부당한 영향력이 없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⑥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 부존재

수사와 기소,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반이 정부 또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⑦ 정당한 법적 절차

다음과 같은 피의자의 기본 권리가 존중되는지를 측정한다. 무죄추정 원칙의 준수 여부, 자의적 체포 및 부당한 미결구금이 없는지의 여부,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접근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피의자에게 법률 지원이 충분하게 제공되었는지의 여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

나. 우리나라 세부 평가분야별 순위[371)]

우리나라의 2017년 분야별 순위 중 4가지 분야는 2016년도보다 높아졌으나 민사사법정의와 규제집행은 하락하였다. 다만 하락을 고려하여도 민사·형사사법정의 순위는 세계 15위, 17위로 다른 분야보다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72)]

[표15] 2016–2017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지수 분야별 점수 및 순위변동

분야		2017년 점수	2017년 순위	2016년 순위	순위변동
1	정부권력 제한	0.70	26	27	Δ1
2	청렴도	0.67	30	35	Δ5
3	정부의 개방성	0.69	22	22	–
4	기본권	0.71	29	32	Δ3
5	질서·안보	0.84	22	23	Δ1
6	규제집행	0.72	18	17	▽1
7	민사사법정의	0.74	15	8	▽7
8	형사사법정의	0.70	17	17	–

[표16] 2010–2017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지수 분야별 점수

분야		2010	2011	2012–2013	2014	2015	2016	2017
1	정부권력 제한	0.60	0.59	0.66	0.76	0.79	0.68	0.70
2	청렴도	0.80	0.74	0.74	0.79	0.82	0.65	0.67
3	정부의 개방성	0.65	0.71	0.82	0.74	0.73	0.68	0.69
4	기본권	0.78	0.76	0.76	0.73	0.73	0.70	0.71
5	질서·안보	0.80	0.83	0.74	0.89	0.90	0.83	0.84
6	규제집행	0.65	0.69	0.67	0.74	0.78	0.75	0.72
7	민사사법정의	0.75	0.66	0.72	0.74	0.80	0.81	0.74
8	형사사법정의	0.73	0.68	0.76	0.76	0.76	0.71	0.70

371) 각 연도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 (주 366), (주 369) 내용과 아래 링크 각 참조.
2012–2013 보고서의 우리나라 자료는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2–2013 (2012), 130,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Index_Report_2012.pdf
2011 보고서의 우리나라 자료는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1 (2011), 94,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Rule_of_Law_Index_2011_Report.pdf (각 2018. 12. 2. 확인).

372) 2016년과 2017년 순위는 모두 113개국 중 순위이다.

[표17] 2010–2017 민사사법정의 점수 및 순위

연도	분야 점수	지역 순위	임금 순위	세계 순위
2010	0.75	2/7	5/11	5/35
2011	0.66	6/13	17/23	17/66
2012–2013	0.72	5/14	14/29	14/97
2014	0.74	3/15	10/30	10/99
2015	0.80	2/15	7/31	7/102
2016	0.81	3/15	8/36	8/113
2017	0.74	6/15	15/35	15/113

[표18] 2010–2017 형사사법정의 점수 및 순위

연도	분야 점수	지역 순위	임금 순위	세계 순위
2010	0.73	4/7	11/11	11/35
2011	0.68	6/13	21/23	21/66
2013	0.76	4/14	10/29	10/97
2014	0.76	2/15	8/30	8/99
2015	0.76	5/15	13/31	13/102
2016	0.71	5/15	17/36	17/113
2017	0.70	6/15	17/35	17/113

3. 설문사항[373)]

법치주의 지수는 2가지 설문(일반대중 여론조사, 관련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373) 2017–2018년 보고서에 사용된 설문항목의 구성과 설문조사 실시시기와 규모, 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World Justice Project(주 365), Rule of Law Index 2017–2018 중 “Part Five: Behind the Numbers – Methodology”, 156–186 참조.
이에 따르면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2016년부터 남미와 카리브 해 인접 국가 11개국을 법치주의 지수 산출에 추가하면서 적은 인구와 응답자 표본의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 때문에 설문조사에 더 많은 지역을 포함하는 대신 일부 국가의 경우 응답자 표본 수를 500명으로 줄이고, 기존에 지역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행하던 설문조사를 해당 국가 전역을 아우르는 국가적 여론조사 형태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법론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전 연도 발행 보고서와의 일관성 유지와 시계열분석의 편의, 관련전문가 설문(QRQ)결과의 정확성 증진과 응답자의 부담의 경감, 기타 일부 지표와 설문의 추가 등 방법론상 개선의 상세는 위 자료, 158–159 부분 참조.

가. 일반대중 여론조사(general population poll, GPP)

(1) 조사방법

정부와의 교섭관계, 관료집단과의 상호작용 정도, 뇌물과 부패 정도, 분쟁해결 제도의 이용가능성, 일반범죄에의 노출정도 등을 포함하여 법치주의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인식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실시된다. 일반대중 여론조사(GPP) 설문은 153개의 인식 기반 질문과 191개의 경험 기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밖에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인 정보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374] 설문은 각국의 통상적인 표현에 따른 언어로 번역되고, 각 국의 가장 규모가 큰 3개 도시에 거주하는 1000명의 확률표본(probability sample)[375]을 대상으로 각국의 대표적인 전국 규모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조사가 실시된다.

각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대면조사(face-to-face), 유선조사(telephone) 또는 온라인조사(online)의 세 가지 여론조사 방법이 사용된다. 2017-2018년 보고서에 사용된 여론조사 자료는 52개국의 경우 2017년 가을, 57개국의 경우 2016년 가을, 3개국[376]의 경우 2014년 가을, 1개국[377]의 경우 2011년 가을에 수집된 것이다.[378]

(2)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일반대중 여론조사(GPP)의 사례

2016 보고서와 2017-2018 보고서에서 한국 법치주의 지수에 활용된 일반대중 여론조사(GPP)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379]

○ 도시: 서울, 부산, 인천

374) 2017-2018년 보고서에 사용된 설문지(영문판)는 World Justice Project, "The World Justice Project: General Population 2017 – Opinion Poll",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Formatted_GPP_Questionnaire_2017.pdf (2018. 12. 2. 확인).

375) 이 연구보고서 (주 233) 내용 참조.

376) 벨라루스(Belarus), 캄보디아(Cambodia),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의 3개국이다.

377) 아랍 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이다.

378) (주 373)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방법론 자료에는 4개국에 대해 2011년과 2014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자료수집상 어려움 때문에 2017년의 일반대중 여론조사(GPP)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되어 있다.

379) World Justice Project(주 365), Rule of Law Index 2017-2018, 169 참조.

380) 2015 보고서에는 2013년에 실시된 일반대중 여론조사가 활용되었는데, 3개 대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으

○ 여론조사 업체: 국제 시장조사 기관(Survey Sampling International)
○ 방법: 온라인조사
○ 표본: 1,025명
○ 조사연도: 2016[380]

나. 관련전문가 설문(qualified respondents' questionnaires, QRQ)

(1) 조사방법

관련전문가 설문은 매년 해당 국가 내 민사, 상사, 형사, 노동법,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응답자들은 로펌, 대학, 연구원, 비정부 기구 명부 중에서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직원이 심사하여 선발하는데, 나라별 평균 응답자는 26명이다. 설문사항은 법원의 능률, 규제집행 능력, 책임체계(accountability mechanism)에 대한 신뢰성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을 묻는 폐쇄형 질문과 각 나라별 비교를 위해 여러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4개 언어로 실시된다.

2017-2018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 5월에서 11월 초 사이에 수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관련전문가 설문(QRQ)에는 대학(법학과 또는 로스쿨) 교수 9명, 로펌 변호사 4명, 기업인 1명과 기타 비공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381]

(2)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관련전문가 설문(QRQ) 분석 결과(2015년도)[382]

(가) 민사사법정의 관련전문가 설문(QRQ)

①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중요도

각국 법학 교수 및 법률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비용이 법원의 이용 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률구조 및 절차 분야는 보통의 평가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사법정의 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같으나, 표본 수는 1,004명이고, 대면조사(face-to-face) 방식이 사용되었다[World Justice Project (주 366), Rule of Law Index 2015, 167 참조].

381) World Justice Project(주 365), Rule of Law Index 2017-2018, 186 참조.

382) World Justice Project(주 366), Rule of Law Index 2015, 45-48 참조.

[표19] 2015년도 한국의 법원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중요도

요인	중요도
법원 수수료	약간 중요하지 않음
변호사 비용	많이 중요함
법률구조(legal aid)의 부족	보통
법원의 위치	약간 중요하지 않음
소송의 지속기간	다소 중요하지 않음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	약간 중요하지 않음
복잡한 절차	보통
부패	많이 중요하지 않음
구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약간 중요하지 않음

② 민사법원 및 상사법원 문제에 대한 요인별 심각성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법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송 기간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모든 요인에서 좋은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0] 2015년도 한국의 민사·상사법원의 문제에 대한 요인별 심각성

요인	심각성
소송 기간	다소 심각하지 않음
비효율적인 집행 체계	많이 심각하지 않음
법원 직원의 부족	다소 심각하지 않음
불충분한 자원	많이 심각하지 않음
부적당한 판사 선발/교육	매우 심각하지 않음
비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다소 심각하지 않음
부패	매우 심각하지 않음
사법부의 독립성	매우 심각하지 않음

(나) 형사사법정의 관련전문가 설문(QRQ)

[표21] 2015년도 한국의 형사법원의 문제에 대한 요인별 심각성

요인	심각성
과도한 미결구금	매우 심각하지 않음
소송의 지체	많이 심각하지 않음
형편없는 법원 판결	많이 심각하지 않음
불충분한 자원	다소 심각하지 않음
불충분한 형사 변호	다소 심각하지 않음
부채	매우 심각하지 않음
사법부의 독립성	많이 심각하지 않음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	많이 심각하지 않음
부적절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다소 심각하지 않음

우리나라는 형사법원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독일, 홍콩, 영국,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모든 요인에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소송 지체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구체적인 법치주의 지수 산출과정[383]

가. 산출단계

① 1단계

전 세계의 학계, 실무가, 사회 지도층으로부터의 자문을 거쳐 9개 분야, 47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정리, 요약된 개념적 분석틀을 개발한다.

② 2단계

지수의 개념적 분석틀에 기초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5개 설문 세트[384]를 개발한다. 설문세트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일상적인 용어와 표현에

383) World Justice Project(주 373), "Part Five: Behind the Numbers – Methodology" 부분을 해석, 정리한 것이다.

384) 1개는 일반대중 여론조사(GPP)용 설문, 나머지 4개는 관련전문가 설문(QRQ)용 설문(민사와 상사법 분야, 헌법, 기본권과 형사법 분야, 노동법 분야, 공중보건 분야)이다.

맞게 수정을 거친다.

③ 3단계

관련전문가 설문(QRQ)에 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국가마다 평균적으로 300명 이상 확보하고, 국가별로 명망 있는 설문조사 기관을 물색하여 일반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을 의뢰한다.

④ 4단계

설문조사 기관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지수 개발팀과 상의하여 일반 대중 여론조사(GPP)의 시범 조사(pilot test)를 실시한 뒤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⑤ 5단계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지수 개발팀은 지역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발송하고 이후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⑥ 6단계

지수 개발팀은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44개 하위 평가항목으로 분류한다.

⑦ 7단계

지수 개발팀은 최종적인 지수 산출을 위해 다음의 5단계를 거친다.

㉠ 설문사항에 대한 개별 응답을 숫자 값으로 변환

㉡ 숫자 값으로 변환된 개별 응답을 전문가 또는 일반인 집단별로 합산하여 국가별 원 지수 값(raw scores)을 산출

㉢ 원 지수 값의 정규화(normalize)

㉣ 단순평균법을 이용하여 정규화된 지수 값을 8개 평가 분야와 그 세부 평가항목으로 분류

World Justice Project, “2016 Rule of Law Index Questionnaires”, https://worldjusticeproject.org/our-work/wjp-rule-law-index/wjp-rule-law-index-2016/2016-rule-law-index-questionnaires (2018. 12. 2. 확인) 참조.

㉤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규화된 지수와 국가별 최종 순위를 산출

⑧ 8단계

자료의 편향과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에 대한 일련의 검사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지수 개발팀은 각종 지역 및 국제기구들로부터의 양적, 질적 평가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70여개 외부 기구로부터 모든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상호검증 작업을 실시한다.

⑨ 9단계

지수 개발팀은 분석결과의 통계적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동연구개발센터(Joint Research Center) 소속 계량경제 및 응용통계 분과(Econometrics and Applied Statistics Unit)와 합동으로 민감도 분석(sensitive analysis)을 실시한다.

⑩ 10단계

어느 국가의 법치주의 지수가 과거에 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각 요소별 지수의 연간 변동 값과 1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bootstrap samples)[385]으로부터 추정된 표준편차, 그리고 t-검정 결과에 기초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한다.

385) 부트스트랩 표본(bootstrap sample)은 원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작은 표본을 의미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하나의 원 표본에서 같은 크기의 작은 표본들을 중복을 허용하여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통계 기법을 의미한다.[Statistics How to, “Bootstrap Sample: Definition, Example”, http://www.statisticshowto.com/bootstrap-sample/ (2018. 12. 2. 확인) 참조].
이런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원 표본에서 어느 통계 값, 예를 들면 평균을 측정한 뒤 그 평균의 신뢰구간을 확인하려면 원 표본을 수집한 모집단의 정확한 확률분포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측정한 통계 값, 위 예의 경우엔 평균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부트스트래핑은 측정된 n개의 표본(원 표본)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m개(n>m)를 뽑고 그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평균의 분포를 구한 뒤 이로부터 평균의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Learning Carrot, “부트스트랩에 대하여(Bootstrapping)”, https://learningcarrot.wordpress.com/2015/11/12/%EB%B6%80%ED%8A%B8%EC%8A%A4%ED%8A%B8%EB%9E%A9%EC%97%90-%EB%8C%80%ED%95%98%EC%97%AC-bootstrapping/ (2018. 12. 2. 확인) 참조].

⑪ 11단계

자료들을 각 국가별 보고서와 표, 수치로 요약, 정리한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세계은행의 소득 분류 방법에 따라 소득 그룹을 나누어 표를 정리한다.

나. 방법론상의 장점과 한계[386]

(1) 장점

첫째, 법치주의 지수는 일반 대중과 전문가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할 수 있고, 특정집단이 갖고 있는 편견을 반영할 가능성을 낮춰준다.

둘째, 법치주의 지수는 통계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하여 전년도와 항목별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2) 한계

첫째, 설문사항을 통해 얻은 정보는 법치주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함 또는 약함만을 나타내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주의 수준에 관한 전체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석 도구를 함께 이용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대중 여론조사는 대도시 3곳에서만 실시되기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여론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지방 거주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셋째,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의 격변을 경험하는데 이 특정 기간 동안 정보가 수집되면 정확한 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이례적인 단기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평균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중에 있다.

넷째, 일부 국가들은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 측정오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계속해 법치주의 지수와 관련된 각국 내 학자 및 실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386) World Justice Project(주 373), “Part Five: Behind the Numbers – Methodology”, 159–160 참조.

마지막으로, 일반대중 여론조사는 2년에 한 번 실시되고 일부 국가는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지수가 국가 내 작은 변화를 파악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대중 여론조사가 격년으로 실시된다는 것은 일부 국가의 몇 개 변수는 전년도와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문제가 있고 전문가의 수가 한정된다는 것은 표준오차의 증가 가능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5. 법치주의 지수의 특성[387]

법치주의 지수는 한 국가에서 평균적인 일반인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합 정도를 평가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치주의 지수는 앞서 본 것과 같은 다른 지수들이 갖추지 못하는 여러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 더 많은 국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지수가 갖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법치주의 지수는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특정하거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들의 상이한 법치주의 형태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법치주의 지수의 순위와 점수는 엄밀한 자료 수집과 통합 방법론을 통해 얻은 결과이지만, 모든 측정법과 마찬가지로 측정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특정한 응답자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표준오차는 세부 평가항목의 연간 변화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methods)[388]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넷째, 지수와 지표는 남용과 오용의 위험이 있다. 일반에 공개되면 그들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개발자의 의도와 달리 사용될 수 있다. 부적절한 해석은 의도치 않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섯째, 법치주의 지수에 의해 측정된 법치주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수를 해석할 때에는 지수 개발에 사용된 변수들의 구체적인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387) World Justice Project(주 373), "Part Five: Behind the Numbers – Methodology", 160 참조.
388) 이 연구보고서 (주 385) 내용 참조.

여섯째, 법치주의 지수는 일반적으로 다른 도구들, 양적 도구는 물론이고 질적 도구와 함께 사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보건이나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 보듯이 하나의 지수만으로 한 국가의 상태를 완전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 법치주의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은 모든 관련된 측면들(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과 원천, 도구와 방법론의 결합에 관한 주의 깊은 고찰이 요구된다.

일곱째, 모든 수치에 대한 신뢰구간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개발센터 소속 계량경제학 및 응용통계학 분과와의 합동연구로 수행된 지수 자료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 의하여 계산되었고 그 결과는 2017-2018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제2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와 국정관리지수

I. 기업환경평가

1. 개관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2003년부터 기업환경에 대하여 매년 발간해오고 있는 보고서이다.[389] 2018. 10. 31. 발표된 2019년 보고서의 경우,[390] 세계은행 소속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가 전 세계 190개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국가별 기업환경을 11개 지표[391]로 나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한 뒤 종합、부문별로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결과를 발표하였다. 각국 법률, 회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도 유무와 실제소요비용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위주로 진행한다.

389) 2019년판 보고서는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9 (2018), http://www.worldbank.org/content/dam/doingBusiness/media/Annual-Reports/English/DB2019-report_web-version.pdf (2018. 12. 2. 확인) 참조.

390) 이전 연도 보고서와 자료 측면에서 방법론상 차이는 없다. 2019년 보고서의 자료 기준점은 2018. 5. 1.이다.

391)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해결, 퇴출(도산절차)과 노동시장 규제 등이다. 다만 노동시장 규제 부분은 기업환경평가 지표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사법제도와 관련한 지수는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지표이다. 이 지표는 상업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법절차의 질을 측정 대상으로 한다.

사법절차의 질은, ① 특별 상사 법정이나 재판부의 여부, 소액사건법정 또는 소액사건을 위한 단순화된 소송절차의 여부, 재판 전 가압류의 가능 여부, 사건배당기준 등 법원 구조와 소송절차에 관한 지표(이상 합계 5점 만점), 여성 증언의 차별적 취급 여부(−1 또는 0점)[392], ② 주요한 사건에 대한 시간 표준 설정에 관한 규제 여부, 심리의 연기와 속행에 대한 규제 여부, 성과측정 보고서의 여부, 재판 전 협의절차의 여부, 전자적 사건관리 제도의 여부 등 사건관리에 관한 지표(6점 만점), ③ 전자적 소장접수 가능성, 전자적 소송비용의 납부 가능성, 하급심 판결의 공개 등 법정 자동화 지표(4점 만점), ④ 중재와 임의적 조정 대체적 분쟁해결 지표(3점 만점)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가 발표하는 법적분쟁해결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2010년 이래 전 세계 190개 경제단위 중 5위 이내의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위를 기록한 뒤 2015년에 4위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2위를 기록한 후 2017년(2018년 연례보고서)에는 1위를 기록하였다. 2018년(2019년 연례보고서)에는 각 영역별 점수가 모두 전년도 수준과 같았고 2018. 5. 1. 기준으로 1위가 없는 2위로 평가되었다.[393]

II. 국정관리지수

1. 개관

국정관리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는 세계은행(The World

392) 여성 증언의 증거로서 가치를 남성의 그것과 차별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한다.

393)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9, “Ease of Doing Business Score and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128, http://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media/Annual-Reports/English/DB19-Chapters/DB19-Score-and-DBRankings.pdf (2018. 12. 2. 확인) 참조.

Bank)의 전문가들이 1996년부터 200여개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 대해 매년 발표하는 지수이다.[394] 지수를 개발한 경제학자 Daniel Kaufmann과 Aart Kraay의 이름을 따서 'KK지수'라고도 한다.[395]

국가 · 기업의 지배 및 관리구조 등의 의미를 갖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당시 위기를 맞은 국가 · 기업의 지배 및 관리구조에 문제가 많아서 위기상황이 발생했고,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거버넌스(governance)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문제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한다면 사전적 개선노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 지수가 개발되었다.

2. 특징

국정관리지수(WGI)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상 특징을 가진다.[396]

첫째, 지수 산출의 기초자료로서 2차 자료를 사용한다.[397] 다만, 지수 산출에 투입되는 원천 자료(underlying source data)가 광범위하다. 31개의 국제적인 민 · 관기관이 생산해 내는 33개의 방대한 자료가 모집단이 된다. 각 분야별 지수는 이 원천 자료 중 해당 지수에 적합한 원천 자료를 선택하여 합산이 가능하도록 원천 자료 자체의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다. 이들 민 · 관 기관들은 대상국의 다양한 개인, 기업,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둘째, 국가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6개 분야로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① 국민의 정치적 권리, 민의 반영 정도 및 언론의 자유를 측정하는 민의 반영도(voice and accountability), ② 평화적 정권교체 가능성의 척도가 되는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③ 정부 및 공무원의 자질 · 서비스 ·

394) The World Bank Group,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home (2018. 12. 2. 확인) 참조.
395) 현재는 2017년 자료까지 발표되어 있다.
396) 상세한 지수 산출 방법론에 대하여는 The World Bank Group,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Aggregation Methodology",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doc-methodology (2018. 12. 2. 확인)과 Daniel Kaufman, Aart Kraay, Massimo Mastruzzi,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Methodology and Analytical Issu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430 (2010. 9.) 각 참조.
397) 2차 자료에 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 (주 98) 내용 참조.

정치적 중립성 등이 측정되는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④ 규제가 민간부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다루는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⑤ 계약 이행 · 치안 · 사법 등의 분야에서 법의 준수정도를 측정하는 법치주의(rule of law) 그리고 ⑥ 다양한 종류의 공공부문의 부정행위 내지 비리 방지 척도 등을 보여주는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등이다.

3.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6개 평가 분야 중 사법제도와 관련된 지표는 법치주의(rule of law) 지수이다. 이 지수는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와 준수 정도, 특히 범죄와 폭력의 피해 가능성은 물론이고 계약의 집행, 재산권, 경찰, 그리고 법원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지수는 적게는 8개부터 많게는 15개 원천 자료(source data)로부터 얻은 자료에 기초한 것인데, 원천 자료에는 갤럽 세계여론조사(GWP),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 Report), 세계사법정의(WJP)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백분위 순위[398]로 71.36을 기록한 후 상당기간 70점 후반 대에서 80점 초반 대 수치를 기록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80점 대 중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정관리지수(WGI) 중 법치주의 지수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22] 2014–2017 WGI 법치주의 지수 추이

연도	원천 자료 수	백분위 순위	WJP 고임금 국가 중 순위[399]
2014	13	80.77	24/30
2015	12	80.29	24/31
2016	11	86.07	19/36
2017	11	85.58	19/35

[표 14]에 의하면 2014년과 2015년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법치주의

398) 이 지표에 관한 전 세계 국가 중 백분위 순위를 의미한다.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순위이다.
399)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와 비교를 위해 [표 14]에 따른 고임금 국가 중 순위를 기재하였다.

지수는 고임금 국가 중 10위권 초중반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연도의 국정관리지수(WGI)의 법치주의 지수는 위 표에서 보듯이 같은 국가군 중 20위권 중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에는 두 지수의 순위 사이에 차이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400]

제3절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지수



I.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수

1. 개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민간 국제기관으로서 1979년부터 소속기구인 세계 경쟁력 네트워크(Global Competitiveness Network)를 통해 매년 130여개 국가[401]의 경쟁력을 평가해 국가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간해 오고 있다.[402] 세계경제포럼은 국가경쟁력을 한 경제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그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번영의

400)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두 지수의 산출방법상 차이점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은 첫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국정관리지수(WGI)는 30여 개 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한 원천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자체로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일반대중 여론조사(GPP) 방법을 2016년 보고서부터 대면조사에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01) 2018. 10. 17. 발간된 2018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2018),
http://www3.weforum.org/docs/GCR2018/05FullReport/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8.pdf (2018. 12. 2. 확인) 참조.
한편, 2018 국가경쟁력 지수(GCI 4.0)의 상세한 방법론은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Chapter 3: Benchmarking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roduc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http://reports.weforum.org/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8/chapter-3-benchmarking-competitiveness-in-the-fourth-industrial-revolution-introducing-the-global-competitiveness-index-4-0/ (2018. 12. 2. 확인) 참조.

402) 2018년 보고서에는 140개 경제단위가 포함되었다.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정책과 요인들의 집합체로 정의한다.[403]

1995년까지는 아래에서 살펴 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를 발표해 왔지만 1996년부터는 독자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 측정대상과 방법

GCI는 세계 최초의 국가경쟁력 지수로서, 2018년 보고서부터 12개 부문의 범주와 내용을 새로 설정하여 기본 요인(enabling environment, 제도 및 인프라,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 시장 요인(markets,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금융제도, 시장규모), 인적자본 요인(human capital, 보건, 기술), 혁신적 생태시스템 요인(innovation ecosystem, 기업 역동성, 혁신 역량)의 12개 부문을 평가한다.

새로운 국가경쟁력 지수인 GCI 4.0을 도입한 2018 보고서의 경우[404] 평가지표는 98개로서 이 중 34개는 기존 방법론에서 사용하던 것을 유지한 것이고, 나머지 64개는 새로운 지표이다. 또한 98개 지표 중 54개는 정량(quantitative, 통계)자료,[405] 44개는 정성(qualitative, 설문)자료로 구성되어 있다.[406]

설문조사는 각국의 파트너기관[407]을 통해 매년 해당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경영자 의견 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방식으로 이루어진다.[408]

3.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와의 차이점

앞에서 살펴 본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와 차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은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분야,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국가경제 전반에 대

403)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2017), 317, http://www3.weforum.org/docs/GCR2017-2018/05FullReport/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7%E2%80%932018.pdf (2018. 12. 2. 확인) 참조.

404) 세계경제포럼(WEF)은 2018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2008년 발생한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대불황의 여파에 맞서 경쟁력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GCI 4.0'라 명명한 새로운 국가경쟁력 지수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방법론상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연구보고서 (주 401)의 보고서와 방법론 내용 참조.

405) IMF, 세계은행(The World Bank), UN, WHO, OECD 등 국제기구 및 국가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406) 이전 보고서에 비해 정량 자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약 30%에서 55%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407)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408) 2017-2018년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응답자 100명을 상대로 2017. 3.부터 같은 해 4.까지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한 평가를 진행하는데 비해 세계은행은 창업、건축、세금、통관관행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비용에 대해 주로 평가를 한다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포럼(WEF)은 2018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부터 새로운 지수 개념을 도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상시적인 국제적 금융위기 상황에 적합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표방하고 있다.

평가방식 면에서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설문방식(45%), 통계방식(55%)을 혼용해 운용하고 있는데, 설문방식은 설문대상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반면, 세계은행은 제도의 존재 유무, 실제소요 비용、시간、절차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위주의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4.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2018년 보고서의 국가경쟁력지수 GCI 4.0 중 사법제도와 관련이 있는 지표는 기본 요인(enabling environment) 중 제도(institutions) 부문에 속하는 평가지표인 사법독립성(judicial independence) 지표,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분쟁해결 측면에서의 법체계의 효율성(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지표 등이다.

2018년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법 독립성 지표를 100점 만점에 49.9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140개 경제단위 중 63위에 해당하고,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구조의 효율성 지표에 100점 만점 중 41.3점을 부여하여 140개 경제단위 중 57위를 기록한 것,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의 효율성 지표에 100점 만점 중 50.7점을 부여하여 140개 경제단위 중 50위를 기록한 것으로 각 평가하였다.

2017-2018년 보고서에서는 비록 2018 보고서와 범주와 척도가 다르긴 하지만, 사법 독립성 지표는 7점 만점에 3.8점으로 평가하여 137개 경제단위 중 72위에,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구조의 효율성 지표에 7점 만점 중 3.5점을 부여하여 137개 경제단위 중 56위에,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의 효율성 지표에 7점 만점 중 3.8점을 부여하여 137개 경제단위 중 54위를 기록한 것으로 각 평가하였었다.

즉, 2018년에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구조의 효율성 지표의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의 효율성 지표, 특히 사법 독립성 지표는 다소간의 순위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지수

1. 개관

스위스 로잔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은 198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을 통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순위(world competitiveness ranking)를 발표하고 있다.[409]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국가경쟁력을 기업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한 국가의 경쟁력은 GDP나 생산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의 문제들에 대응하여, 기업이 창조하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장려하기 위한 효율적 인프라, 제도, 정책을 제공하는데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 연감을 통해 다른 국가의 참고사례와 추세뿐만 아니라, 광범한 조사연구에 기초한 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410]

2. 측정대상과 방법

2018년판 국가경쟁력 연감(WCY)은 세계 63개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성과(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정부의 효율성(재정 및 세제, 제도여건, 기업 관련 법규, 사회여건), 경영 효율성(생산성과 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태도와 가치관), 인프라(기초, 과학기술, 보건과 환경, 교육) 부문에서 341개 항목이 평가된다. 이 중 115개 문항이 설문항목이고, 경성자료인 통계자료는 143개이며, 나머지는 순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배경자료들이다. 통계자료와 설문자료는 전체 평가항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받는다.[411]

---

409) IMD, “History of the Center”, https://www.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mission/center-history-bris-garelli/ (2018. 12. 2. 확인).

410) IMD, “Our mission”, https://www.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mission/Overview/ (2018. 12. 2. 확인).

411) 구체적인 지수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IMD, “Methodology and Principles of Analysis”, https://www.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mission/methodology/ (2018. 12. 2. 확인) 참조.

3.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국가경쟁력 연감(WCY)에서 발표되는 지표 중 사법제도와 관련된 항목은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의 하위항목인 제도여건(institutional framework) 부문 중 법치주의(rule of law) 지표와 사회여건(societal framework) 중 공평한 정의구현(Justice) 지표 등이 있다. 2017년과 2018년 보고서의 경우, 법치주의 지표가 포함된 우리나라의 제도여건 지표에 대하여 각 63개 경제단위 중 29위, 공정한 정의구현 지표가 포함된 사회여건 지표에 대하여 42위와 38위로 평가하였다.[412]

제4절 대륙별·지역별 사법제도 관련 지수



I. 종류

국가 간 가치와 태도조사를 위해 각 대륙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로미터 조사(barometer surveys) 중 대표적인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실시하는 유로 바로미터(Euro Barometer)이다.[413] EU 국가들의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한 유럽인의 여론을 파악할 목적으로 1973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유로 바로미터 자료는 주로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 EU 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문화적, 사회정치적 지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로 바로미터를 기본모형으로 삼아 다른 대륙과 지역에서도 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남미 지역에서 18개국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라티노 바로미터(Latino Barómetro),[414]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행되는 아프로 바로미터(Afro-Barometer),[415]

412) IMD, "Countries profiles", https://www.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countries-profiles/(2018. 12. 2. 확인) 참조.
413) European Commission, "Public Opinion", https://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index.cfm/Archive/index (2018. 12. 2. 확인).
414) Corporación Latinobarómetro, "Latino Barómetro", http://www.latinobarometro.org/lat.jsp (2018. 12. 2. 확인).
415) Afrobarometer, "About Afrobarometer", http://www.afrobarometer.org/ (2018. 12. 2. 확인).

아시아 지역에서 수행되는 아시안 바로미터(Asian Barometer)[416] 등이 있다.

II. 특징과 한계

바로미터 조사들은 해당 대륙이나 지역의 국제기구나 연구단체가 소속 대륙과 지역 각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나 법치주의 인식수준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측정치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역시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바로미터 조사는 각 대륙이나 지역에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역사, 종교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질문문항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신뢰수준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각 바로미터 조사가 해당 대륙이나 지역에 속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각 바로미터 조사 사이의 측정방법이나 절차, 측정척도 등이 상이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사를 주관하는 기구나 단체의 조사 또는 관리역량이 앞에서 살펴본 전 세계적 국제기구나 연구단체만큼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 조사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닌 대륙이나 지역에 속한 국가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기 어렵고, 각 바로미터 지수 간에도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자체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 때문에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417]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런 바로미터 지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한다.

---

416) Asianbarometer, “Introduction”, http://www.asianbarometer.org/ (2018. 12. 2. 확인).

417) 실제로 아시안 바로미터(Asian Barometer) 조사는 2001년부터 3, 4년 주기로 4차례에 걸쳐 부정기적 보고서[세계가치관조사(WVS)처럼 각 보고서를 wave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번의 보고서에 모두 대상국가로 포함되어 있고,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는 설문사항이 있다. 예컨대 wave 4 설문지는
Asianbarometer, “Asian Barometer Survey of Democracy, Governance and Development”, 2, http://www.asianbarometer.org/pdf/core_questionnaire_wave4.pdf (2018. 12. 2. 확인) 참조.
그러나 위 보고서의 조사결과는 앞에서 살펴 본 OECD나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사법신뢰도 지수와 유사한 조사절차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지거나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5절 각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수의 비교

사법신뢰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는 지수로서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OECD가 발표하는 법치주의 지수[418]와 대시민서비스 지수,[419]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발표하는 법치주의 지수,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와 국정관리지수(WGI),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지수 중 각 사법제도 관련 지수들이 있다. 이런 각 지수들의 특징을 요약,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Ⅰ. 조사목적

1.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각국 정부의 활동과 개혁 의제(reform agenda)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공공 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결정요소와 공공분야에서 정부 활동의 영향력 확장에 관한 논점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각국으로 하여금 정부의 활동 현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 수준을 가늠하게 하며, 국제적 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의 성과를 비교응용(benchmarking)할 수 있게 하고,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420]

2.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법치주의(rule of law)가 지배하는 세상이 평등, 기회와 평화를 가져온다는 기치 아래, 법치주의와 그의 근원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에 의한 법치주의 준수를 강화하며, 종합적으로도 지역적인 법치주의 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421] 법치주의 지수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418) 제4장 제1절 Ⅱ.의 1.항 참조.
419) 제4장 제1절 Ⅱ.의 2.항 참조.
420) 제4장 제1절 Ⅰ. 2.의 가.항 참조.

3.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와 국정관리지수(WGI)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여러 경제단위와 시간에 걸친 기업규제환경을 비교하기 위한 종합적인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경제단위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 규제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개혁을 위한 측정 가능한 기준점을 제시하며, 기업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계와 언론, 민간영역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22]

국정관리지수(WGI)는 예컨대,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등이 저소득 국가에 대한 무상지원과 같은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들의 국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받는 빈곤감소 차원에서의 무상지원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나 준칙으로서 국정관리지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특정 국가의 국정관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423]

4.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GCI)

국가경쟁력을 한 경제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그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번영의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정책과 요인들의 집합체로 정의한다.[424]

세계경제포럼(WEF)은 경쟁력이 있는 경제체제가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에서, 국민에게 보다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경쟁력지수(GCI)를 발표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425]

---

421) World Justice Project, "Vision", https://worldjusticeproject.org/about-us/overview/vision (2018. 12. 2. 확인) 참조.

422)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About us", http://www.doingbusiness.org/en/about-us (2018. 12. 2. 확인) 참조.

423) The World Bank Group,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Governance Indicators: Where Are We, and Where Should we Be Going? - Comments by Shantayanan Devarajan & Simon Johnson", 31-34,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doc (2018. 12. 2. 확인) 참조.

424) 이 연구보고서 (주 403) 내용 참조.

425) 최영출, "국가경쟁력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3호 (2009), 42-43. 다만,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발표된 국가경쟁력 지수(GCI 4.0)는 단순한 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요소들을 경쟁력 개념에 포섭하고 있다(제5장 제3절 Ⅰ.의 2항 참조).

5.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연감(WCY)

국가경쟁력을 기업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한 국가의 경쟁력은 GDP나 생산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의 문제들에 대응하여, 기업이 창조하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장려하기 위한 효율적 인프라, 제도, 정책을 제공하는데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가경쟁력 연감(WCY)을 통해 다른 국가의 참고사례와 추세뿐만 아니라, 광범한 조사연구에 기초한 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426]

6. 검토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를 제외한 나머지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들은, 비록 사법제도와 관련된 항목을 측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차적 목적이 정부의 국정관리(governance)나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반의 활동 수준의 측정에 있거나, 또는 기업과 국가의 경제활동, 생산성과 경제적 번영수준의 측정에 있다.

따라서 측정대상인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관련 지표의 구성은 물론이고, 측정의 심도와 구체성, 조사방법과 규모 등에서도 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거나 비슷한 개념 또는 가치, 항목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지수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나 구체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조사항목 이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발표주기

OECD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측정지수들은 2013년 이후 격년으로 발표되고 있고,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는 2010년부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2003년부터, 국정관리지수(WGI)는 1996년

426) 이 연구보고서 (주 410) 내용 참조.

부터,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GCI)는 1979년부터,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지수(순위)는 1989년부터 각 매년 발표되고 있다.

III. 조사대상 국가 범위와 규모

1. OECD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09년 첫 보고서는 당시 OECD 정식 회원국인 30개국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이후에는 정식회원국 이외에 회원국 가입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 OECD 공공행정위원회 참관지위에 있는 국가들도 자료수집 가능성과 분석필요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OECD 보고서에 사법제도 관련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보고서 이후인데 그 무렵 정식 회원국은 35개국이었고, 2018. 6. 1. 기준으로는 정식 회원국이 37개국으로 증가하였다.

OECD 정식회원국 절대 다수가 유럽 국가이고 종교적으로 기독교 계열이 다수이며 대부분이 경제적 부국 또는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사대상의 지역적, 사회·문화·종교·민족적, 경제적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

각 국가에서는 1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권장 최소표본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2.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2017-2018 지수에서 전 세계 113개국에서 일반인 11만여 명, 전문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427]

각 국가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3개 도시에 거주하는 1,000여 명[428]의 일반 시민과 수십여 명의 전문가로 나누어 2개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

---

427) 2016 지수도 전 세계 113개국에서 일반 시민 11만여 명, 전문가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5년 지수는 전 세계 102개국에서 일반 시민 10만여 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4년 지수는 전 세계 99개국에서 일반 시민 10만여 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조사가 이루어졌다. 위 자료는 이 연구보고서 (주 366) 내용에 첨부된 각 연도별 보고서 첫머리의 'Executive Summary' 부분 참조.

428) 일부 국가에서의 응답자표본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최소권장 표본수의 조정 등 세부적 방법론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 (주 373) 내용 참조.

3. 세계은행

2019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는 전 세계 190개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정관리지수(WGI)는 1996년 이래 200여 개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429]

4. 세계경제포럼(WEF)

전 세계 13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2018 보고서에서는 140개국이 조사 대상이었다.[430]

5.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18년 국가경쟁력 연감(WCY)에서는 전 세계 63개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431]

Ⅳ. 조사항목

위 각 지수가 조사하는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를 항목별로 정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432] 항목이 가장 세분되어 있는 OECD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관련된 조사항목을 같은 행에 배열하였다.

429) 세계은행이 실시하는 위 두 가지 조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조사 규모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었다.
430) 위 조사 역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
431) 위 조사 역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
432) 각 지수가 평가대상으로 삼는 조사항목의 구체적 내용과 범주, 체제에는 보고서의 발간연도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예를 들어 OECD 지수의 경우에는 이 연구보고서 (주 143) 내용 참조]. 논의의 편의상 최근 보고서를 중심으로 비교하기로 한다.

[표23]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의 조사항목 비교

OECD		WJP 법치주의 지수	세계은행 (Doing Business) 분쟁해결 지수[433]	WEF GCI지수	IMD WCY	관련 TCPS 세부기준[434]	관련 사법신뢰 구성요인[435]
부문	하위 지표						
법치 주의	정부 권력 제한	정부권력 제한			법치 주의		
	기본권	기본권					
규제 거버넌스	규제 집행	규제집행					
대시민 서비스	법적 정보 접근성	정부 개방성	하급심 판결공개			절차공개/ 절차 참여권	개방성
	효율성	효율적 집행, ADR	단순화된 소송절차/ 신속한 절차/전자적 사건관리/ADR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구조/ 분쟁해결		신속성/ 계획성	능력
	접근성	접근성· 비용				접근 가능성· 편의성/ 접근비용	개방성
	적시성 · 대응성	부당한 지체 부존재/ 효과적 판결				신속성· 적시성/ 적응성	능력
	효과성 · 공정성	질서·안보/ 차별·부패 부존재	사건배당 기준 등 일관된 법원구조와 소송절차/ 여성증언 차별금지		공평한 정의 구현	평등·공정· 정합성	능력/ 성실성/ 일관성
	독립성	청렴도/ 정부 영향력 배제/ 정당한 법적 절차		사법 독립성		독립성·책임	성실성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측정과 관련해서 외형상으로도 같거나 거의 비슷한 내용을 측정, 평가하고 있다.[436] 나머지 지수들도 OECD 또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433) 세계은행의 국정관리지수(WGI)는 이미 표에 포함되어 있는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한 2차 자료만을 사용하고 별도로 1차 자료를 수집, 조사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34) 제3장 제2절 Ⅰ. 3.의 나.항 참조.

435) 제3장 제1절 Ⅲ. 3.항 참조.

위 각 지수가 측정하는 지표의 일부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37]

그러나 외형상 비슷해 보이는 항목이 실질적으로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438] 실제 조사에 사용된 설문문항 등 기초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만일 실제 사용되는 설문문항이 포섭하는 의미나 그 범위가 서로 다르거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사항목상의 외견상 유사성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조사결과에 의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439] 이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위 각 지수의 조사목적상 차이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절차상 차이에 의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V. 조사방법과 자료수집방법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대한 조사방법과 자료수집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440]

436) 실제로 OECD가 2015년 보고서 이후 '대시민서비스' 부문의 하위지표로 조사, 측정하는 항목들은 2013년 보고서에서는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요소 중 하나인 '민사사법정의(Civil Justice)'의 하위지표들이었다. 결국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하위지표들은 실질적으로도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437) 척도의 표면타당도(face validity)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이 연구보고서 (주 243) 내용 참조].

438)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 특히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의 문제이다[이 연구보고서 (주 244), (주 245) 내용 각 참조].

439) 예컨대, A와 B라는 두 개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가 모두 조사항목에 '사법의 독립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A 측정지수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으로 "귀하는 법원이 정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반면, B 측정지수는 "귀하는 법원이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한다면, 두 질문은 모두 OECD의 '대시민서비스' 중 '사법의 독립성'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 하위지표로서의 '정부 영향력 배제'를 측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응답자에 따라서는 B 측정지수의 질문을 '정부권력의 제한'이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응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B 측정지수는 조사자가 의도한 측정대상인 '사법의 독립성'과 별개의 '정부권력의 제한'을 측정한 결과가 된다.

440)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사용된 방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한편, OECD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의 경우에는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만이 아닌 전체 지표에 대한 조사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실시된다.

[표24]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의 조사방법·자료수집방법 비교

		조사방법과 자료수집방법
OECD[441]		○ 법치주의와 규제 거버넌스 지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법치주의 지수 개발을 위해 사용한 5개 설문세트를 이용하여 수집. 국가마다 전문가의 경우 평균 24명, 일반인의 경우 3대 도시 거주자 1,000명의 확률표본을 대상으로 지역 여론조사 기관이 설문조사 수행 ○ 대시민서비스 지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법치주의 지수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5개 설문세트, CEPEJ가 수행한 '2014 사법제도 평가'의 통계자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로 바로미터를 통해 수집한 설문조사결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등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이용
WJP 법치주의 지수[442]		○ 일반대중 여론조사(GPP): 153개 인식기반 설문, 191개 경험기반 질문, 기타 사회·인구학적 질문으로 구성, 전국 규모 여론조사 기관이 3개 대도시 거주 1,000명의 확률표본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조사 ○ 관련전문가 설문(QRQ): 평균 26명 정도의 해당 국가 내 민사와 상사, 형사, 노동법, 공중 보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능률, 규제집행 능력, 책임체계에 대한 신뢰성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을 묻는 폐쇄형 질문과 각 나라별 비교를 위해 여러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문항을 조사
세계 은행	Doing Business[443]	○ 대상국의 법령 · 제도 등 10개 지표를 분석하여 국가별 · 연도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준 하에 체크리스트를 작성. – 이에 따른 조사는 세부지표를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대상국 법률, 회계기관의 전문가에게 송부 · 검증한 후, 지표별 수치를 계산하여 국가별 순위를 산정[444]
	WGI[445]	○ 6개 분야에 대해 2차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 31개 국제적 민·관기관이 생산하는 33개 원천자료에 가중치를 적용한 2차 자료를 사용
WEF 국가경쟁력지수 (GCI)[446]		○ 4개 범주, 12개 부문을 98개의 평가지표로 평가 – 정량자료: 54개 지표(IMF, 세계은행, UN, OECD 등 국제기구와 국가통계자료를 이용) – 정성자료: 44개 지표(설문조사인 경영자 의견조사를 실시)
IMD 국가경쟁력 연감(WCY)[447]		○ 정량자료(경성자료): 143개 항목(국제, 국가, 지역 기구, 민간 및 파트너 연구기관 자료를 이용), 순위산정에서 2/3 가중치 적용 ○ 정성자료: 115개 항목 설문조사(63개국에서 6,300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순위산정에서 1/3 가중치 적용

441) 2017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대한 조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법신뢰도 자체에 대한 조사는 앞에서 본 것처럼 갤럽이 실시하는 세계여론조사(GWP) 결과를 원용한다(제4장 제1절 Ⅱ. 3.의 다.항 참조).

442) 2017-2018 보고서 기준.

443) 2019년 보고서 기준.

444) 오윤정 · 임정현 · 고태호, "「Doing Business」 평가방법을 이용한 기업환경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3권 제2호 (2009. 12.), 116 참조.

445) 2017년 보고서 기준.

446) 2018년 보고서 기준.

447) 2018년 보고서 기준.

이에 의하면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는 설문조사 기법으로 수집한 1차 또는 2차 자료[448]를 기초로 하고 있고, 특히 OECD의 '법치주의'와 '규제 거버넌스' 부문에 속하는 하위지표의 측정을 위해서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법치주의 지수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설문세트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일반대중 여론조사(GPP)와 관련전문가 설문(QRQ)과 같은 정성자료(qualitative data)만을 사용하는데 반해, OECD는 CEPEJ가 수행한 '2014 사법제도 평가'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의 통계자료 등 정량자료(quantitative data)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전형적인 통계자료나 설문조사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국정관리지수(WGI)는 다른 지수들과 달리 오로지 2차 자료에만 의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각 국가경쟁력지수(GCI, WCY)는 정성자료와 정량자료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나 가중치는 지수마다 다소 다르다. 통계자료인 정량자료(quantitative data)는 국제기구나 국가통계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이 생산한 자료를 원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수집방법과 조사방법의 차이는 조사목적과 이를 반영한 조사항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449] 자료수집과 조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런 차이는 같은 항목에 대한 조사라고 하더라도 조사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48) OECD 지수의 경우이다. 예컨대,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 지표의 측정을 위해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설문조사결과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제4장 제1절 Ⅱ. 2.의 바.항 참조).

449) 즉, 어느 특정 조사목적을 위해서는 특정한 조사항목의 조사가 요구되거나 적절할 수 있고, 또 그런 조사항목의 조사에 필요하거나 적합한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측정지수의 경우, 이를 위해 저렴한 분쟁해결절차의 존재가 조사항목으로 필요할 수 있고, 이런 '사법제도의 비용접근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보다는 소송비용과 소득수준에 관한 객관적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더욱 적합할 수 있는 것이다.

제 6 장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수준과 시사점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수준

I. 각종 지수에 나타난 사법신뢰 수준

1. 사법신뢰도 지수

가. 현황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시리즈는 각국의 사법신뢰 수준을 하나의 측정치 또는 척도를 이용하여 산출하거나 순위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더욱이 세계가치관조사(WVS)가 발표한 사법신뢰도는 1982년, 1990년, 1996년, 2005년, 2010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OECD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OECD 국가 전체를 망라한 것도 아니다.

반면, OECD가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시리즈를 통해 발표하는 사법신뢰도 지표는 2007년, 2012년, 2014년 설문조사를 기초로 OECD 정식가입국 전부와 일부 관련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두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대략적인 수준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VS)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OECD 방식으로 신뢰도 수준을 계산하고, 그 내용을 OECD 신뢰도 지수와 함께 연도순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5] 우리나라에 대한 WVS 사법신뢰도와 OECD 사법신뢰도의 비교

자료수집 연도 (발표된 보고서)	WVS 신뢰도	순위[450]	OECD 신뢰도	순위[451]
1982 (wave 1)	78%	3/8	–	–
1990 (wave 2)	66%	1/8	–	–
1996 (wave 3)	59%	7/17	–	–
2005 (wave 5)	51%	14/21	–	–
2007 (OECD 2015년판)	–	–	29%	33/34

2010 (wave 6)	67%	5/15	–	–
2012 (OECD 2013년판)	–	–	22%	34/34
2014 (OECD 2015년판)	–	–	27%	33/34

나. 검토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시리즈는 이미 살펴 본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와 같이 사법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두 기관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수준에는 언뜻 보기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두 지수에 관하여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원인 또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법신뢰의 조사 대상을 어떻게 특정 하는가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다. 신뢰의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것인데, 두 지수가 조사하고자 한 신뢰의 대상은 이를 특정 하는 문구나 용어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문구나 용어는 그 범위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 서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452]

둘째, 설문의 구성이나 제시된 응답척도의 차이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다.[453] 응답척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같은 질문에 대해 '예/아니오'의 2단계 척도가 제시되는 경우와 그 중간 단계의 응답척도가 제시되는 경우, 예컨대 '상당히/다소/별로/전혀'와 같은 4단계 척도가 제시되는 경우와 같이 척도의 크기가 응답의 타당도, 신뢰도, 응답의 편이성 등 조사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454]가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450) 해당 wave에서 사법 신뢰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국가 중 OECD 국가만을 선별하여 그 중 순위를 측정한 것이다. 분모는 해당 wave의 전체 OECD 국가의 수이고 분자는 그중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 순위를 의미한다.

451) 해당 연도에 발간된 「한눈에 보는 정부」에서 사법신뢰도 지표가 발표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순위를 의미한다.

452) 제4장 제3절 Ⅳ.의 1, 2.항 부분 참조

453) 제4장 제3절 Ⅳ.의 3.항 부분 참조

454) 장윤재 외 공저, "웹기반 조사에서 척도의 크기가 응답의 타당도, 신뢰도, 응답 편이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2권 3호, 한국조사연구학회(2011), 1-23; 장덕현·조성겸(주 234), 위의 논문, 1-24 등.
여기서 더 나아가 대인신뢰 중 일반신뢰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신뢰할만하다'와 '신뢰할만하지 못하다'의 2단계 응답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와 신뢰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경우를 '5점', 가장 낮은 경우를 '1점'으로 하고 '보통이다'에 해당하는 응답척도를 허용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 분석하면서, 2단계의 응답척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적, 성격적 특성상 '예/아니오'가 분명치 않다거나,[455] 문화적 · 언어적 특성 때문에 단도직입적인 답변을 꺼려한다거나,[456] 일반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자기표현에 소극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457] 설문조사에서 무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458] 실제 무응답이 많다면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조사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459] 설문조사 자체의 적절성과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에 관한 증거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460]

도를 사용한 경우의 신뢰수준이 5점 척도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신뢰와 같은 태도에 관한 측정에서 5점 척도가 방법론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응답항목의 차이, 즉, 응답척도의 차이에서 그와 같은 신뢰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한 연구가 있다.[조기숙·박혜윤(주 39), 위의 논문, 111-113 참조].

또한, 우리나라의 일반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사회적 변수 중 교육 연수기간의 효과가 대부분의 논의와 다르게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경험적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이런 결과가 응답척도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의 대표성 문제 때문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각기 상이한 척도로 신뢰수준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신뢰수준만이 아니라 독립변수가 미치는 효과의 방향조차 종종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분석으로는 박병진,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제41집 3호, 한국사회학회 (2007), 93-95 참조.

이런 분석들은 비록 대인신뢰가 아닌 제도신뢰의 한 형태로서 사법신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2단계 응답척도를 사용하는 OECD의 설문조사와 4단계 응답척도를 사용하는 WVS의 설문조사 결과인 사법신뢰도에 관한 지수 차이를 설명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55) 이부영(주 88), 위의 논문, 75-86 참조.

456) 김영기(주 88), 위의 논문, 179-193 참조.

457) 김장이(주 88), 위의 논문, 106-109 참조.

458) 이런 특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응답척도의 세분화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예'와 '아니오'의 응답 결과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기제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2단계 응답척도에서는 극단적 입장표명을 꺼려하여 무응답으로 반응하던 경우가 중단 단계의 응답척도를 허용하는 설문조사에서는 무응답이 아닌 중단 정도의 응답척도를 선택하는 경우로 변경될 할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59)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에서 무응답에 대한 분류 또는 취급방식 상 차이가 조사결과의 정확성 또는 오차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박무익, "한국여론조사 실태와 조사방법", 연세경영연구 제26권 제1호 (1989. 6.), 718 참조.

또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대상으로 무응답이 발생하는 이유와 무응답의 처리방식이 분석결과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른 연구로는 이화정 · 강석복, "설문조사에서의 무응답처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권 6호,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2. 11.) 참조.

한편, 김지범 외 공저, "한국에서의 무응답과 조사하기 어려운 응답자", 조사연구 15권 3호, 한국조사연구학회 (2014. 8.)와 김지범 · 김솔이, "무응답이 높은 설문 문항: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0", 조사연구 16권 4호, 한국조사연구학회 (2015. 11.)는 우리나라에서 무응답이 발생하는 응답자 유형과 설문문항 유형을 기존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460) 앞에서 살펴 본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11] 참조). 앞서 본 우리나라의 심리적, 성격적, 문화적, 언어적 특성은 '예/아니오'의 2단계 응답척도(예컨대 OECD 사법 신뢰도 조사)보다 중간 단계의 응답척도를 허용하는 설문조사(WVS 사법 신뢰도 조사)의 경우에 무응답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런 국가별 응답성향의 차이가 무응답이 아닌 중간성향의 응답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로는 한신갑 · 이윤석 · 구혜란, "국가별 응답성향과 기관신뢰문항에 대한 효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 152-154 참조.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나 사회주의를 경험

셋째,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두 기관이 발표하는 신뢰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사법신뢰 수준의 평가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사방법론 상의 문제해결 노력과 별도로 조사결과 사법에 대한 신뢰 수준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국가 간의 절대적 수준 차이나 그에 따른 순위 자체는 참고의 의미를 넘어 확대해석 하는 것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

가. 현황

조사항목이 가장 세분되고 조사방법과 조사항목이 유사하여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한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대한 측정지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461]

[표26] OECD와 WJP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와 순위 비교

		보고서 연도	OECD		WJP		
			지수[462]	순위[463]	지수	순위	
						고임금군[464]	전체
법치주의	정부권력 제한	2013	0.66	24/35	0.66	24/29	28/97
		2015	0.79	12/35	0.79	14/31	14/102
		2017	0.68	24/37	0.70	24/35	26/113
	기본권	2013	0.76	20/35	0.76	20/29	20/97
		2015	0.73	23/35	0.73	24/31	25/102
		2017	0.70	25/37	0.71	26/35	29/113
	규제집행[465]	2013	0.67	18/35	0.67	19/29	21/97

한 국가에서 중간응답성향이 강한 반면, 극단응답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결국 중간응답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중간응답을 허용하지 않는 응답척도를 이용하는 경우(예컨대, OECD 지수), 그 결과는 무응답 반응을 초래하거나[이는 OECD 지수 산정에서 사법신뢰 질문에 대한 부정의 응답과 같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 연구보고서 (주 220) 내용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결과의 왜곡과 같은 응답의 질[김권현 외 공저(주 359), 위의 논문에 의하면 이는 응답의 정확성, 일관성, 성실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61) 비교대상인 항목은 OECD 지수의 분류방식을 기준으로 하고(제4장 제1절 Ⅱ.의 1, 2.항 참조), 각 측정치는 OECD가 사법제도 관련 지수를 생산, 발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발간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가 없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462) '효율성' 관련 지수를 제외하고 1점 만점 중 점수를 의미한다.

463) 조사대상에 포함된 OECD 회원국과 참관 지위국[이 연구보고서 (주 138) 내용 참조] 중 순위이다(분모가 전체 국가 수, 분자가 우리나라 순위임).

대시민 서비스 466)	효율성 467)	1심 기간	2013	144.41일	3/16	*468)		
		소송비용		10.3% 469)	3/16	0.61470)	25/29	36/97
	대응성·적시성 471)		2013	144일	5/33	0.6472)	9/29	14/97
	독립성		2013	n/a		0.65	27/29	38/97
			2015	0.75	17/35	0.75473)	19/31	20/102
			2017	0.77	17/38474)	0.71	26/35	32/113
	효과적 민사분쟁절차		2013	n/a		0.75	11/29	11/97
			2015	0.88	6/35	0.88475)	7/31	7/102
			2017	0.86	9/38	0.8	10/35	10/113

464)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고소득(high income) 국가로 분류한 국가 중 순위이다. OECD 지수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회원국 등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어 비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465) 2013년 이후에는 독립된 지표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 (주 154) 내용 참조.

466) 이중 '효율성'과 '대응성·적시성'은 2013년 보고서에서 채택된 하위지표이다. 2015년 보고서 이후 '효율성'의 하위지표 중 사법제도와 관련된 항목은 독립적인 측정치가 발표되지 않았고[이 연구보고서 (주 143), (주 164) 내용 각 참조], '대응성·적시성'은 최종적으로 '재판의 적시성'으로 항목이 변경되었으나[이 연구보고서 (주 160) 내용 참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이 연구보고서 (주 193) 내용 참조]. OECD의 나머지 '대시민서비스' 하위지표에서 내용상 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 중 우리나라의 통계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법서비스의 효과성과 공정성' 중 '효과적 민사분쟁절차'에 관한 지표이므로, '대응성·적시성'에 상응하는 통계자료로서 이를 활용하기로 한다.

467) 2013년 보고서에 발표된 하위지표로서, 측정치는 1심 소송기간과 소송비용 자료가 모두 확보 가능한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2년 기준 통계이다[이 연구보고서 (주 165) 내용 참조].

468) 아래 (주 471) 내용과 같은 통계자료의 중복 문제를 고려하여 아래 칸의 '대응성·적시성'의 측정값으로 대체한다.

469) 소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의 총 소송비용을 의미한다.

470) 지수는 아래 링크에 연결된 엑셀 파일 내용 중 2013년의 'People can access and afford civil justice' 항목의 값이다. 순위는 위 파일 내용을 재정렬해서 얻은 값이다. OECD의 지수와 달리 1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 World Justice Project, "Current & Historical Data Download (.XLSX)" https://worldjusticeproject.org/our-work/wjp-rule-law-index/wjp-rule-law-index-2017%E2%80%932018/current-historical-data (2018. 12. 2. 확인).

471) 2013년 보고서에 발표된 하위지표로서, 31개 OECD 회원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2년 기준 통계이다[이 연구보고서 (주 173) 내용 참조].

472) 지수는 위 (주 470)의 엑셀 파일 내용 중 2013년의 'Civil justice is not subject to unreasonable delays' 항목의 값이다. 순위는 위 파일 내용을 재 정렬해서 얻은 값이다. OECD의 지수와 달리 1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

473) 지수는 위 (주 470)의 엑셀 파일 내용 중 2015년의 'Civil justice is free of improper government influence' 항목의 값이다. 순위는 위 파일 내용을 재 정렬해서 얻은 값이다. 아래 칸의 내용은 같은 파일의 2017년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다.

474) 위 조사에는 OECD 정식회원국이 아닌 페루가 추가되어 전체 조사대상국이 38개국이다. 효과적 민사집행 부분 지표도 마찬가지이다.

475) 지수는 위 (주 470)의 엑셀 파일 내용 중 2015년의 'Civil justice is effectively enforced' 항목의 값이다. 순위는 역시 위 파일 내용을 재 정렬해서 얻었다. 아래 칸의 내용은 같은 파일의 2017년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다.

나. 검토

위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법신뢰에 관한 OECD와 세계가치관조사(WVS) 지수 사이의 현저한 차이와 달리,[476]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관한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측정지수는 상호 비교가 가능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매우 비슷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사방법론상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두 측정지수는 OECD의 분류방법에 따른 '법치주의'와 '규제 거버넌스' 부문에서 하위지표가 외형상으로도 완전히 같다. 즉, 이 부문은 두 측정지수 모두 정부권력 제한, 기본권, 규제집행의 세 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477] 나아가 이 부문의 조사방법과 자료수집방법도 두 측정지수 모두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개발한 5개 설문세트를 이용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478]

둘째, OECD의 분류방법에 따른 '대시민서비스' 부문 역시 두 측정지수의 하위지표는 조사항목의 명칭 자체가 다소 다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같다.[479] 또한 조사방법과 자료수집방법 역시 두 측정지수 모두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개발한 5개 설문세트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OECD는 여기에 EU 집행위원회가 유로 바로미터(Euro Barometer)를 통해 수행하는 설문조사결과와 CEPEJ가 수행한 '2014 사법제도 평가'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의 통계자료 등 정량자료(quantitative data)를 추가로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한편, 거의 유일하게 두 지수 사이에 눈에 띄는 순위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OECD '대시민서비스'의 '효율성' 중 '소송비용' 항목인데, 이는 OECD는 순수 총 소송비용이 소가(訴價)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수와 순위를 산정한 반면,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소송비용 관련 지수는 16개의 관련전문가 설문(QRQ)[480]과 1개의 일반대중 여론조사(GPP)[481]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조사방법과 사용한 자료의 내용과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482] 이런 차이점에

476) 제6장 제1절 Ⅰ.의 1.의 가.항 참조.
477) [표 23] 참조.
478) [표 24] 참조.
479) 이 연구보고서 (주 436) 내용 참조.
480) 제5장 제1절 Ⅱ. 3.의 나.항 참조.
481) 제5장 제1절 Ⅱ. 3.의 가.항 참조.
482) World Justice Project, "Variables Used to Construct the Rule of Law Index 2017-2018",

주목한다면 소송비용 지표의 정량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OECD 지수를 기준으로, 정성적 측면의 성과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483]

요컨대, 우리나라에 대한 대부분의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하위지표 측정지수가 비슷한 수준인 것은 이에 관한 조사항목이 실질적으로 같고, 조사방법과 자료수집방법도 같거나 매우 유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I. 사법신뢰 형성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각종 지수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관한 신뢰 현황을 기초로, 사법신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중 좋은 성과를 보인 지표와 낮은 성과를 보인 지표를 구분하고, 이런 하위지표의 성과가 사법신뢰도 자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관한 연도별 분석

[표 26]에 정리된 내용을 기초로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우리나라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성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보고서

(1)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기준

전 세계 국가 97개국을 비교대상으로 평가할 때는, 효과적 민사분쟁절차[484](11.3%)[485] 또는 대응성·적시성[486](14.4%) 〉 기본권 보장(20.6%) 〉 규제집행(21.6%) 〉 정부

---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OLIndex2017-2018_Variables_FINAL.pdf (2018. 12. 2. 확인) 참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위 내용, 27-28에 있는 '7.1 People can access and afford civil justice' 항목에 있다.

483) 즉, 객관적 통계자료상으로 우리나라 소송비용은 소가(訴價)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쪽으로(비용 측면에서의 사법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하는 소송비용의 부담 정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84) 민사사법정의(Civil justice)의 하위지표로서 '재판절차의 부당한 지연 부존재(Civil justice is not subject to unreasonable delays)'를 의미한다.

권력 제한(28.9%) 〉 소송비용(37.1%) 〉 사법 독립성(39.2%)'의 순서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 국가군 29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대응성·적시성(31%) 또는 효과적 민사분쟁절차(37.9%)〉 규제집행(65.5%) 〉 기본권 보장(69%) 〉 정부권력 제한(79.3%) 〉 소송비용(86.2%) 〉 사법 독립성(93.1%)'의 순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 OECD 지수 기준

35개국 중 '대응성·적시성(15.2%) 〉 소송비용(18.8%) 〉 규제집행(51.4%) 〉 기본권 보장(57.1%) 〉 정부권력 제한(68.6%)'의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487]

(3) 정리

① 전체적으로 '대응성·적시성' 또는 '효과적 민사분쟁절차' 지표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나타냈다. 특히, 다른 지표에 비해 두드러지게 좋은 순위를 나타냈다.

② '소송비용' 지표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와 OECD의 조사방법상 차이 때문에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 통계자료 측면에서는 '대응성·적시성' 지표에 못지않은 좋은 순위를 나타냈으나(OECD 지수), 실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수준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WJP 지수).[488] 이런 차이는 TCPS 5개 분야와 22개 세부기준에 관한 [표 2]의 '국민의 신뢰'가 같은 표에 있는 나머지 수행 영역(performance area) 중 하나인 '접근가능성'에 속하는 '소송비용'에 대한 인식을 한 가지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성과 지표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낮게 이루어진 현상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런 인식은 결국 사법에 대한 신뢰수준을 낮추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③ 법치주의 하위지표인 '정부권력 제한, 기본권, 규제집행' 부분과 '사법 독립성' 부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우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지만, 고임금 국가

485) 괄호 안은 상위 백분위 수치이다. 대상 국가 중 상위 몇 %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치가 낮을수록 상위 순위를 나타낸다. 이하 같다.

486) 민사사법정의(Civil justice)의 하위지표로서 '효과적 민사분쟁절차(Civil justice is effectively enforced)'를 의미한다.

487) OECD 2013년 보고서에는 '사법 독립성'에 관련된 독립된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다.

488) 이 연구보고서 (주 483) 내용 참조.

군이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중간 이하의 좋지 않은 순위를 나타냈다.

나. 2015년 보고서

(1)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기준

전 세계 국가 102개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임금 국가 31개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모두 '효과적 민사분쟁절차(6.9%, 22.6%)[489] 〉 정부권력 제한(13.7%, 45.2%) 〉 사법 독립성(19.6%, 61.3%) 〉 기본권(24.5%, 77.4%)'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 OECD 지수 기준

35개국 중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와 같은 순서를 나타냈다.[490]

(3) 정리

① 2015년 보고서에서도 2013년의 '대응성·적시성' 지표에 상응하는 '효과적 민사분쟁절차'에서 여전히 가장 좋은 순위를 나타냈다. 나머지 하위지표의 순위와 비교하더라도 이 요인이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는 기본권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부권력의 제한' 영역에서의 개선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와 OECD 지수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상으로는 '사법 독립성' 지표의 현저한 개선도 주목할 만하다.

다. 2017년 보고서

(1)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기준

전 세계 국가 113개국을 대상으로 할 때 '효과적 민사분쟁절차(8.8%) 〉 정부권력 제한(23%) 〉 기본권(25.7%) 〉 사법 독립성(28.3%)'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고임금 국가 35개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효과적 민사분쟁절차(28.6%) 〉 정부권력 제한(68.6%) 〉 기본권 = 사법 독립성(각 74.3%)'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489) 앞의 것은 전 세계 중, 뒤의 것은 고임금 국가 중 수치이다.

490) 상위 백분위 수치는 순서대로 17.1%, 34.3%, 48.6%, 65.7%이다. 다만, OECD의 2015년 보고서부터는 '대응성·적시성' 지표 대신 '효과적 민사분쟁절차' 지표를 이용하였다[이 연구보고서 (주 466) 내용 참조].

(2) OECD 지수 기준

37개국 또는 38개국[491] 중 '효과적 민사분쟁절차(23.7%) 〉 사법 독립성(44.7%)〉 기본권(67.6%) 〉 정부권력 제한(68.9%)'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3) 정리

① 2017년에도 '효과적 민사분쟁절차' 지표가 가장 좋은 순위를 유지하였다. 이 지표는 다른 하위지표보다 여전히 월등히 우월한 순위를 보였다.

② '정부권력의 제한' 지표의 경우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와 OECD 지수 모두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③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상 '사법 독립성' 지표도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OECD 지표상으로는 사법 독립성 지표가 미세하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것이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미한 변화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라. 시계열 정리

이상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내용을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수 값 기준[492]

지수 값 자체를 기준으로 한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의 하위지표별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효과적 민사분쟁절차'의 우월적 성과와 함께 '정부권력 제한'의 상승 추세에 이은 하락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기본권 보호' 지표의 완만한 하락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법 독립성' 지표에 대한 두 지표의 상반된 평가는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

491) 사법 독립성과 효과적 분쟁해결절차 지표는 페루가 포함되어 38개국이 대상이었다[이 연구보고서 (주 474) 내용 참조].

492) 1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31] OECD 지수 추세(지수 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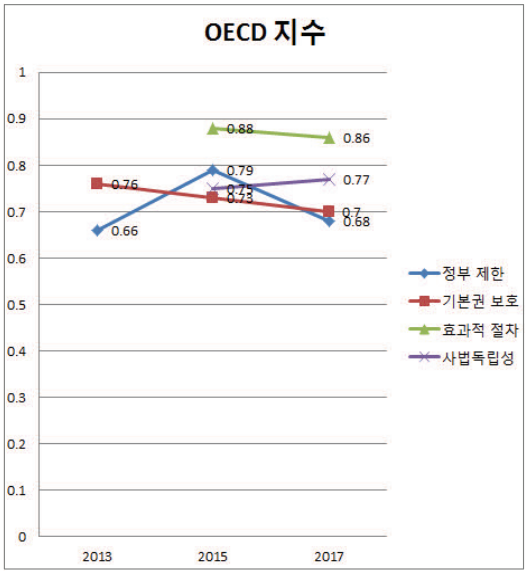

[그림32] WJP 지수 추세(지수 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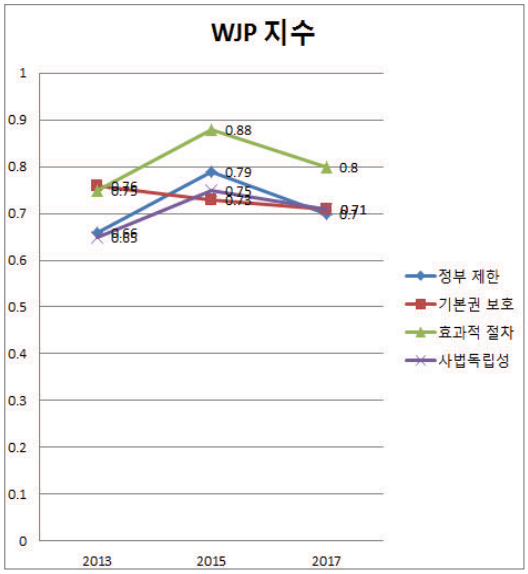

(2) 상위 백분위 순위 기준[493]

[그림33] OECD 지수 추세(상위 백분위 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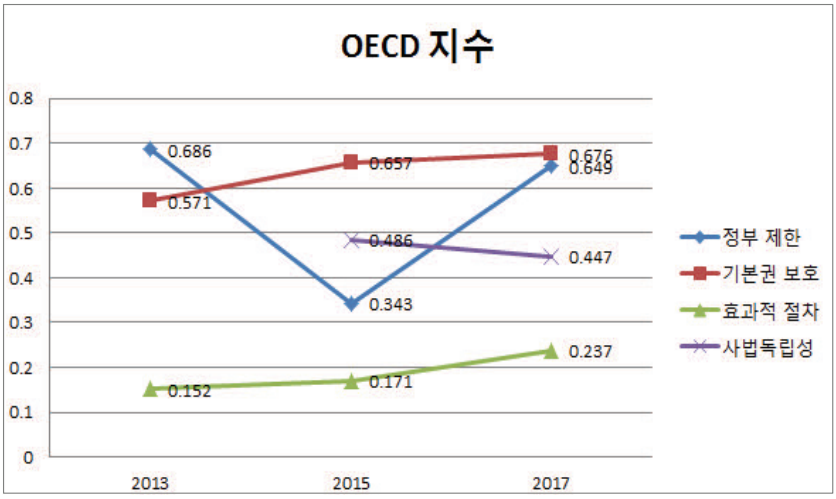

493) 대상국가 중 백분위 순위로 상위 몇 %에 속하는가는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34] WJP 지수 추세(고임금 국가 / 상위 백분위 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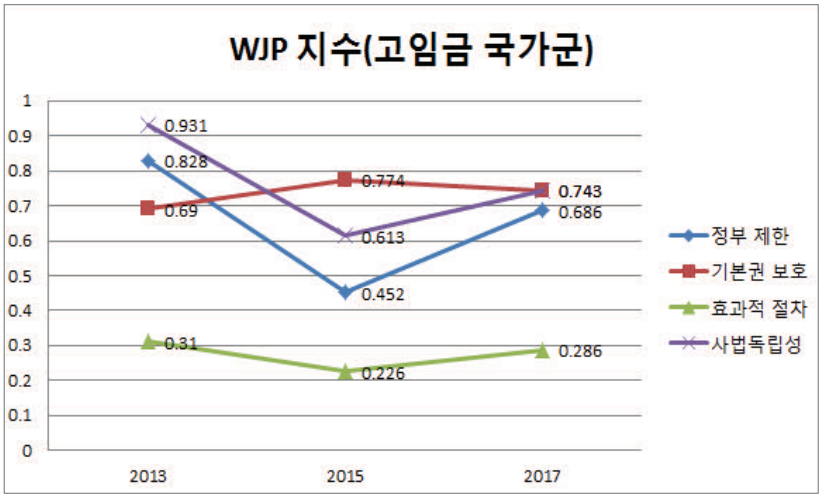

[그림35] WJP 지수 추세(전 세계 / 상위 백분위 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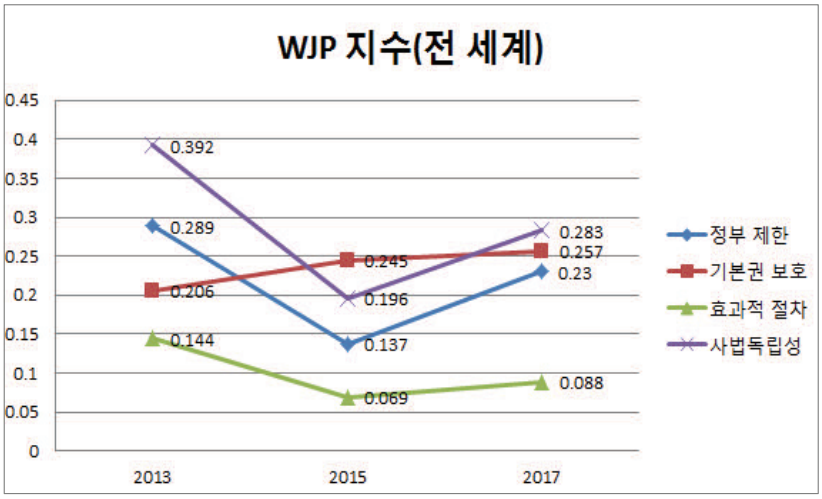

마. 종합검토

① 우리나라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중에서는 '대응성 · 적시성' 또는 '효과적 민사분쟁절차'와 같은 신뢰의 '능력(ability)'[494] 차원과 관련 있는 요인이 지수 종류나 측정 연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좋은 지수 값과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494) [표 23] 참조.

② ‘호의’와 관련된 TCPS 세부기준은 ‘친절, 응답성과 존경’인데,[495] OECD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모두 사법부나 법원의 이런 측면과 직접 관련된 하위 지표 또는 측정지수를 찾기 어렵다.

③ ‘개방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2013년 보고서에 나타난 ‘소송비용(비용 접근성)’ 정도이다.[496]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객관적 통계자료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OECD 지수), 실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수준은 좋지 않았다(WJP 지수).[497]

④ ‘성실성과 일관성’과 관련된 하위지표로는 ‘사법 독립성’ 항목이 있다.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상으로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눈에 띄는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임금 국가군에서는 개선 후에도 여전히 상위 50%에는 들지 못하는 상태이다. 한편 이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는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OECD 지수의 미세한 개선을 감안할 때 어느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지는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⑤ ‘법치주의’와 관련된 하위지표는 전 세계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는 상위 30% 이내의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지만, 고임금 국가군이나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대체로 하위 50%에 속하는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⑥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보고서 내용 중 ‘법치주의’ 항목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순위 변화는 ‘정부권력 제한’의 지표에서 발견된다. 2013년에서 2015년에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와 OECD 지수 모두 이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나,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두 지수 모두 두드러지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⑦ ‘법치주의’ 항목 중 ‘기본권 보호’ 지표의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495) [표 3] 참조.

496)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지표 중 하나인 ‘정부 개방성’은 사법부나 법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497) 이는 앞서 본 것처럼 비용접근성 측면에서의 사법신뢰가 낮은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제6장 제1절 Ⅱ. 1. 가.의 (3)항 참조].

2.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변화와 사법신뢰도 지수와의 관계

가. 우리나라 사법제도 관련 자료에 의한 추론

사법신뢰가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구성요인에 대한 지표의 변화는 결국 사법신뢰도 수준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각종 지수는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여러 하위요인 중 극히 일부 항목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498] 더욱이 가장 세분되고 망라적인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하위지표를 조사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조차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요인[499]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500] 통계자료를 통해 이를 엄밀히 검증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다만, 사법신뢰 구성요인과 TCPS 세부기준 분류에 관한 [표 3], 위 각 지수를 포함한 여러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의 조사항목 비교에 관한 [표 23]의 내용과 위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사법신뢰 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전제로 몇 가지 추론을 시도할 수 있다.

(1) 유의사항

첫째, 무엇보다도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가 측정하는 것이 사법신뢰도 자체인지, 아니면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인지 여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일부 지표에 대한 지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사법신뢰도 자체의 지수가 낮을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모두 양립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로 들고 있는 항목들은 [표 23]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법신뢰의 구성요인 관련 지표로 볼 수 있는 TCPS 세부기준[501] 일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의 해당 항목이 [표 3]의 TCPS 세부기준 모두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위 지수들이 이를 타당하고 신뢰성

498) [표 23] 참조.
499) [표 3] 참조.
500) [표 26] 참조.
501) 제3장 제2절 Ⅰ. 3.의 나.항 참조.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다.[502]

셋째, [표 23]에 의하면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는 [표 3]의 항목 중 주로 신뢰의 '능력'이나 '개방성'과 관련 있는 TCPS 세부기준 측정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법신뢰의 '호의' 또는 '윤리성·헌신'이나 '성실성'과 관련된 TCPS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하위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503] 더욱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능력'과 '개방성'에 관련된 하위지표와 '사법 독립성'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지표에 대해서는 수준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 검증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생산, 발표되지도 않고 있다.[504]

결국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대하여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에 나타난 수치는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 '능력'과 '개방성' 요인을 주로 반영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요인들은 충분히 반영·측정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사법신뢰 증진정책 설계와 관련하여,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중 정책적 목표로 삼기 쉬운 지표와 어려운 지표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표 3]에 나타난 TCPS 세부기준 중 '능력'이나 '일관성', '개방성' 등에 관계되는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투하와 실제 달성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비교적 쉬운 반면, '호의'나 '성실성'에 관련된 항목은 그렇지 않다. 다만, 이런 구분은 각국의 사법제도 현실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

502)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대상으로 TCPS 세부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OECD 지수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들을 모두 추출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사법신뢰도 지수(OECD 등이 발표하는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지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여 회귀식의 설명력(수정된 R^2 값 등)을 확인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TCPS 세부기준을 반영하는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들만으로는 우리나라 사법신뢰도 수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이는 OECD 등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들이 TCPS 세부기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TCPS 세부기준 자체가 사법신뢰도 수준을 측정하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심층 분석과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준다.

503) '능력'이나 '개방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윤리성·헌신'이나 '성실성' 등과 관련된 것보다 정량적 측정과 분석이 상대적으로 쉽고,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경험이나 사실 등 객관적 정보에 기반을 둔 답변이 아닌,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기반을 둔 답변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배제하기 쉽다는 점에 한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504) 다만,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발표하는 법치주의 지수의 8개 하위항목 중 '정부권력의 제한'과 '청렴성', '질서·안보' 항목은 사법부나 법원만을 고려대상으로 한 지표가 아니어서 사법부나 법원의 '호의'나 '윤리성·책임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몇 가지 추론

첫째, [표 25]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2015년 보고서의 OECD 사법신뢰도 지수가 2013년 보고서의 그것보다 다소나마 상승한 것은(5% point 증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효과적 민사분쟁절차', '사법 독립성'과 '정부권력의 제한'에 관한 하위지표들이 개선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505]

둘째, '효과적 민사분쟁절차'는 사법제도의 '능력', '사법 독립성'은 사법제도의 '성실성'과 관련 있는 사법신뢰 구성요인의 하위지표들이다.

셋째, '정부권력의 제한'은 TCPS 세부기준 중 하나에 속하거나 사법신뢰의 전형적인 구성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06] 그러나 TCPS 5개 분야와 22개 세부기준에 관한 [표 2]의 '국민의 신뢰'는 같은 표에 있는 나머지 수행 영역(performance area)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특히 '정부권력의 제한'에 속하는 '사법에 의한 정부권력의 제한'의 성공적 수행은 그런 '인식'의 과정에서 보다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507] 즉, 사법에 의한 정부권력 제한 기능이 잘 작동할수록, 사법제도에 관한 같은 내용과 수준의 '수행 영역'에서의 성과라도 국민들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가능성, 나아가 사법신뢰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친 변화의 방향과 달리, [표 26]에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일어난 지수의 변화는 2017년의 사법신뢰도가 이전보다 하락하였을 개연성을 시사한다.[508] 즉, '정부권력의 제한'에서의 현저한 지표 악화와 함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록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에 나타난 '사법 독립성' 수준의 그에 못지않은 악화는 물론이고, 종래 가장 우월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던 '효과적 민사분쟁절차'의 지표마저 이전보다 지수값 자체와 순위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505) [표 26]와 [그림 31]에서 [그림 35] 각 참조.
506) [표 23] 참조.
507) 이는 신뢰의 다차원성 중 '감정적 차원'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제3장 제1절 Ⅲ. 2.의 나.항 참조).
508) 2017년 OECD 보고서에는 신뢰도 문제(reliability issue)로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 지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OECD, Governance at a Glance 2017 (2017), "14.3 Citizen confidence with the judicial system and the courts, 2007 and 2016", 233과 이에 첨부된 엑셀 파일의 주석(note) 각 참조.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gov_glance-2017-en.pdf?expires=1543761407&id=id&accname=guest&checksum=146A87124B8AC23A837DA728B53CCD6F
http://dx.doi.org/10.1787/888933533872
(각 2018. 12. 2. 확인).

나. 대안적 분석: 시계열 자료 비교를 통한 추세 또는 경향성의 파악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와 사법신뢰도 지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상과 같은 추론을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요인에 대한 충분한 통계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사법신뢰도 지수에 대한 현저한 변화를 보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변화 여부를 시계열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대략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추세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OECD가 발표하는 사법신뢰도 지수가 가장 크게 변동한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시계열 자료의 비교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1) 대상국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OECD가 2017년 보고서에서 발표한 2007년과 2016년 사법신뢰도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OECD 회원국 3개국과 가장 많이 하락한 3개국을 주된 비교대상으로 삼되,[509] 우리나라와의 비교와 참고를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로 포함하여 8개국을 대상으로 한다.[510]

[표27] 2007-2016 OECD 사법신뢰도 최대 상승 3개국과 최대 하락 3개국

국가	사법신뢰도		신뢰도 변화
	2007	2016	
뉴질랜드	48	69	△21
체코	32	53	△21
독일	51	70	△19
미국	55	43	▼12
이탈리아	39	24	▼15
터키	67	45	▼22

(2) 분석대상인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관한 통계자료의 출처

통계자료 수집이 가능한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2010년부터 2017년까

509)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다면 2017년 보고서에서 사법신뢰도 상승이 가장 큰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다(2007년의 35에서 2016년 68로 상승). 뉴질랜드와 체코, 독일이 그 뒤를 잇는다.

510) OECD 2017년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설명하였다[이 연구보고서 (주 508) 내용 참조]. 참고로 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사법신뢰도는 2007년에 53, 2016년에 68로 15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신뢰도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 보고서에 나타난 법치주의 지수의 8개 항목에 대한 지수를 사용한다.[511]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자료는 발행연도에 따라 조사항목의 범주와 내용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일관된 시계열 분석이 곤란하고, 국가에 따라 특정 하위지표에 대한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등 체계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OECD의 사법신뢰도 지수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의 하위지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측정과 관련하여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측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512] 이 글은 엄밀한 방식에 의한 통계적 검증이 아닌 추세와 경향성 파악을 위한 간략한 분석을 시도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그런 한계를 안고 분석한다.

한편, 각국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함께 이용한다. 다만,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 전부를 도표에 표시하는 경우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 사법신뢰 구성요인을 대표하는 몇 가지 항목만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즉, 사법신뢰의 '능력'을 대표하는 항목으로 '민사사법정의',[513] '호의'와 '성실성·일관성'을 간접적으로 대표하는 요소로 '정부권력의 제한', '청렴성'과 '질서·안보',[514] '개방성'을 간접적으로 대표하는 요소로 '정부 개방성'[515] 등 5개 항목만을 도표에 표시하기로 한다.

---

511) 2008년과 2009년 보고서에서는 '책임 있는 정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공표되고 안정적인 법률, 접근가능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절차, 사법접근성'의 4가지 하위지표로 법치주의 지수가 측정되었는데, 이후 지표와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2010년 보고서는 위의 8개 항목 이외에 'clear, publicized and stable laws'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이후 지수와 비교를 위해 이 지표 역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이 연구보고서 (주 369) 내용 참조].
한편, 2010년 보고서에는 뉴질랜드, 독일, 체코, 이탈리아에 대한 통계자료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통계자료 중 이미 살펴 본 우리나라 사법신뢰에 관한 분석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법치주의의 8개 하위지표 중 [표 26]에 기재된 항목만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보다 일반적인 분석과 비교를 위해 8개 항목 전부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한다.

512) 이 연구보고서 (주 436), (주 479) 내용 각 참조.

513) '형사사법정의' 항목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 (주 370) 내용 참조.

514) 다만, 항목의 구체적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 (주 504) 내용 참조.

515) 역시 항목의 구체적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 (주 496) 내용 참조.

다. 시계열 자료의 비교

(1) 사법신뢰도 최대 상승 3개국의 경우

(가) 뉴질랜드

2011년에서 2017년까지 뉴질랜드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에 대한 평가 지수는 다음과 같다.

[표28] 2011–2017 뉴질랜드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2011	2012–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권력 제한	0.91	0.87	0.88	0.85	0.86	0.85
청렴도	0.95	0.92	0.91	0.90	0.90	0.88
정부 개방성	0.83	0.87	0.83	0.81	0.84	0.81
기본권	0.86	0.86	0.84	0.83	0.82	0.81
질서안보	0.87	0.84	0.87	0.88	0.86	0.89
규제집행	0.82	0.82	0.81	0.82	0.82	0.85
민사사법정의	0.78	0.76	0.74	0.78	0.78	0.79
형사사법정의	0.84	0.79	0.72	0.77	0.75	0.74

이중 5개 주요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36] 2011–2017 뉴질랜드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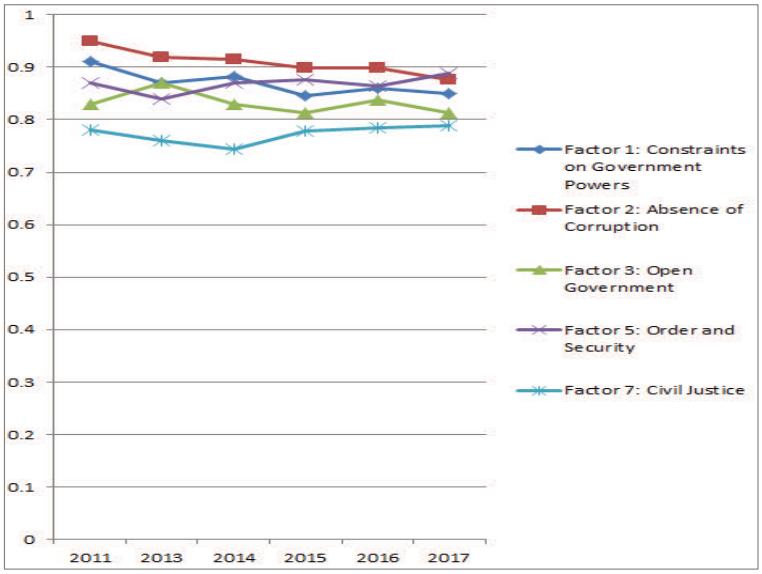

(나) 체코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체코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에 대한 평가 지수는 다음과 같다.

[표29] 2011–2017 체코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2011	2012–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권력 제한	0.67	0.71	0.72	0.74	0.76	0.74
청렴도	0.69	0.62	0.60	0.66	0.68	0.65
정부 개방성	0.53	0.81	0.52	0.64	0.69	0.66
기본권	0.81	0.79	0.80	0.80	0.81	0.80
질서·안보	0.81	0.49	0.82	0.89	0.89	0.90
규제집행	0.57	0.59	0.63	0.63	0.68	0.67
민사사법정의	0.64	0.65	0.65	0.69	0.73	0.72
형사사법정의	0.76	0.7	0.67	0.69	0.73	0.74

5개 주요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를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37] 2011–2017 체코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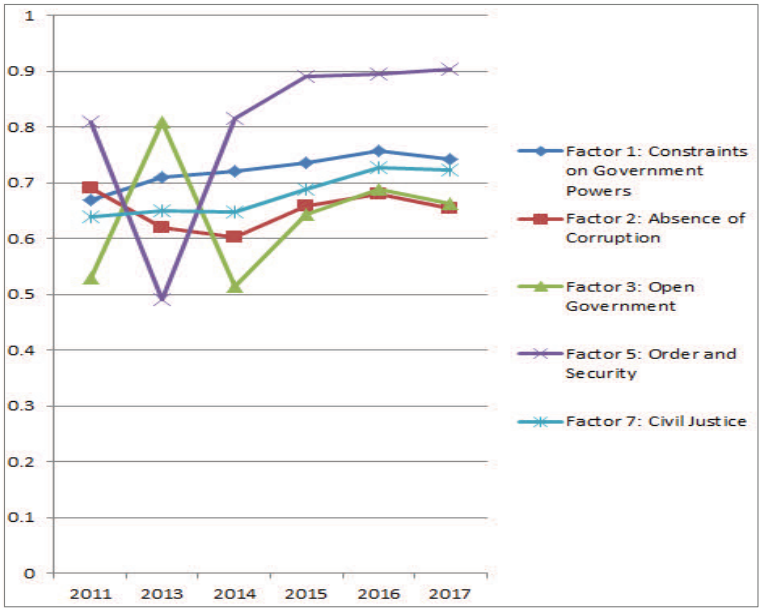

(다) 독일

2011년에서 2017년까지 독일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에 대한 평가 지수는 다음과 같다.

[표30] 2011–2017 독일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2011	2012–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권력 제한	0.81	0.82	0.83	0.85	0.85	0.86
청렴도	0.83	0.82	0.83	0.83	0.84	0.83
정부 개방성	0.73	0.86	0.73	0.72	0.79	0.79
기본권	0.84	0.8	0.84	0.87	0.85	0.85
질서·안보	0.88	0.73	0.87	0.88	0.87	0.88
규제집행	0.77	0.73	0.74	0.77	0.85	0.85
민사사법정의	0.79	0.8	0.82	0.82	0.86	0.85
형사사법정의	0.78	0.76	0.71	0.76	0.77	0.77

또한 5개 주요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38] 2011–2017 독일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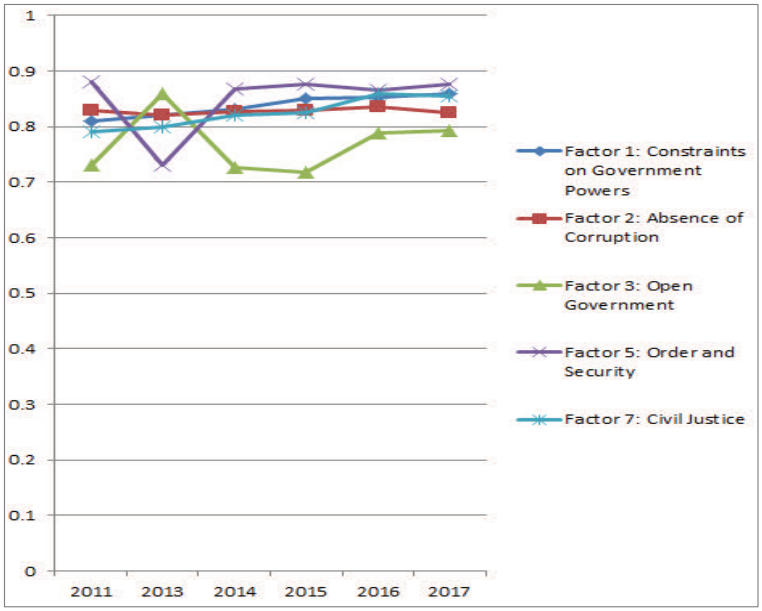

(라) 종합검토

[그림 36]에서 [그림 3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체코와 독일의 경우 2013년 이후 '질서·안보' 지표의 현저한 개선과 유지가 가장 눈에 띈다. 또한 2014년 경 '정부 개방성'의 일시적 하락 후 상승 국면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둘째, 체코와 독일은 기타 나머지 하위지표들 대부분도 위 기간 중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

셋째, 가장 높은 사법신뢰도 상승을 보인 뉴질랜드의 경우, 지수나 도표 상으로는 뚜렷이 하위지표의 개선 경향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민사와 형사사법정의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0.8을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민사사법정의 부문마저 완만한 상승세가 관찰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넷째,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흐름에 따른 변동 폭이 큰 항목은 '질서·안보'와 '정부 개방성' 지표이다. 나머지 항목은 시간변화에 따른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사법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질서·안보'와 '정부 개방성'과 관련된 지표를 정책목표로 삼는 것이 보다 쉽거나 효과적인 반면, 나머지 지표들은 정책수단을 통한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사법신뢰도의 가장 큰 개선을 이룬 3개국의 경우, 원래부터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 감정적·행태적 태도나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사법신뢰[516]가 언제든 상승할 수 있는 기본토대가 마련되어 있었거나,[517] 또는 일부 하위지표의 눈에 띄는 개선이 전체적인 사법신뢰의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16) 이런 신뢰의 다차원적 구조, 특히 신뢰주체 측면에서의 다차원성에 대해서는 제3장 제1절 Ⅲ.의 2.항 참조.

517) 다만, 이런 기본토대가 어떤 원인과 계기로 사법신뢰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는 위 시계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의 하위지표가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를 망라하여, 그리고 충분히 측정하고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와 OECD 지수의 이런 구조적 한계에 대하여는 앞의 제6장 제1절 Ⅱ. 2. 가.의 (1)항 논의 참조.

(2) 사법신뢰도 최대 하락 3개국의 경우

(가) 미국

2010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의 8개 하위항목에 대한 평가 지수는 다음과 같다.

[표31] 2010–2017 미국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2010	2011	2012–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권력 제한	0.71	0.73	0.77	0.74	0.76	0.81	0.77
청렴도	0.81	0.78	0.78	0.75	0.75	0.73	0.75
정부 개방성	0.75	0.72	0.83	0.70	0.73	0.78	0.77
기본권	0.74	0.73	0.73	0.71	0.73	0.75	0.72
질서·안보	0.83	0.86	0.77	0.85	0.82	0.80	0.79
규제집행	0.71	0.70	0.7	0.67	0.73	0.71	0.72
민사사법정의	0.66	0.63	0.65	0.61	0.67	0.65	0.67
형사사법정의	0.78	0.69	0.65	0.65	0.64	0.68	0.65

5개 주요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를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39] 2010–2017 미국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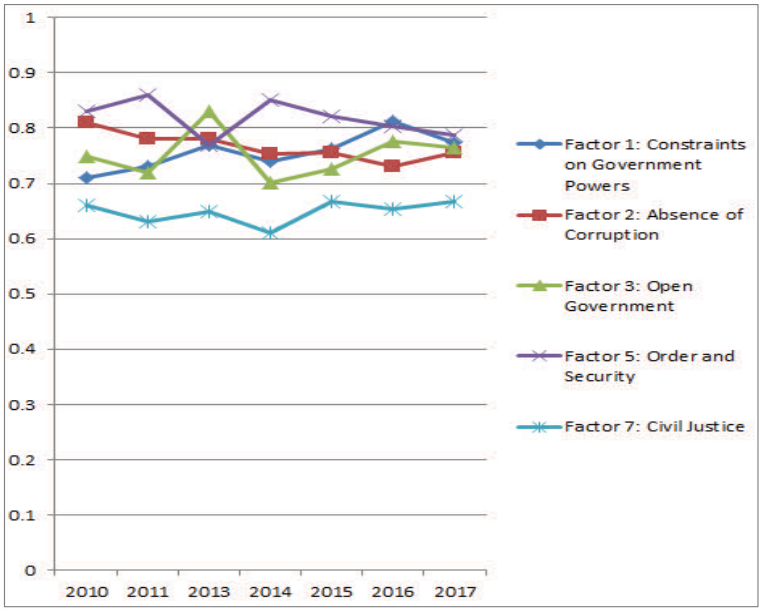

(나) 이탈리아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이탈리아의 8개 하위항목에 대한 평가 지수는 다음과 같다.

[표32] 2011–2017 이탈리아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2011	2012–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권력 제한	0.59	0.67	0.69	0.69	0.70	0.71
청렴도	0.70	0.62	0.60	0.59	0.60	0.62
정부 개방성	0.47	0.76	0.49	0.61	0.63	0.64
기본권	0.73	0.72	0.73	0.74	0.72	0.71
질서안보	0.75	0.49	0.74	0.74	0.72	0.74
규제집행	0.55	0.56	0.59	0.56	0.57	0.57
민사사법정의	0.57	0.56	0.58	0.58	0.57	0.56
형사사법정의	0.73	0.67	0.63	0.63	0.64	0.64

또한 5개 주요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40] 2011–2017 이탈리아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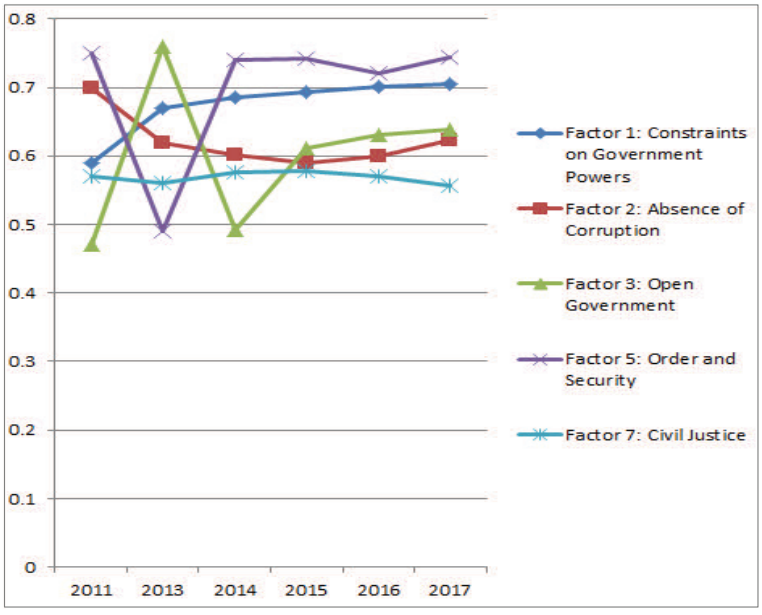

(다) 터키

2010년에서 2017년까지 터키의 8개 하위항목에 대한 평가 지수는 다음과 같다.

[표33] 2010–2017 터키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세

	2010	2011	2012–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권력 제한	0.37	0.44	0.47	0.46	0.37	0.32	0.30
청렴도	0.55	0.49	0.55	0.55	0.49	0.48	0.50
정부 개방성	0.34	0.42	0.63	0.42	0.45	0.42	0.42
기본권	0.42	0.46	0.49	0.47	0.36	0.34	0.32
질서·안보	0.66	0.68	0.46	0.67	0.69	0.59	0.52
규제집행	0.43	0.52	0.55	0.54	0.51	0.44	0.44
민사사법정의	0.61	0.59	0.55	0.52	0.49	0.46	0.44
형사사법정의	0.68	0.43	0.42	0.39	0.35	0.40	0.40

5개 주요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를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41] 2010–2017 터키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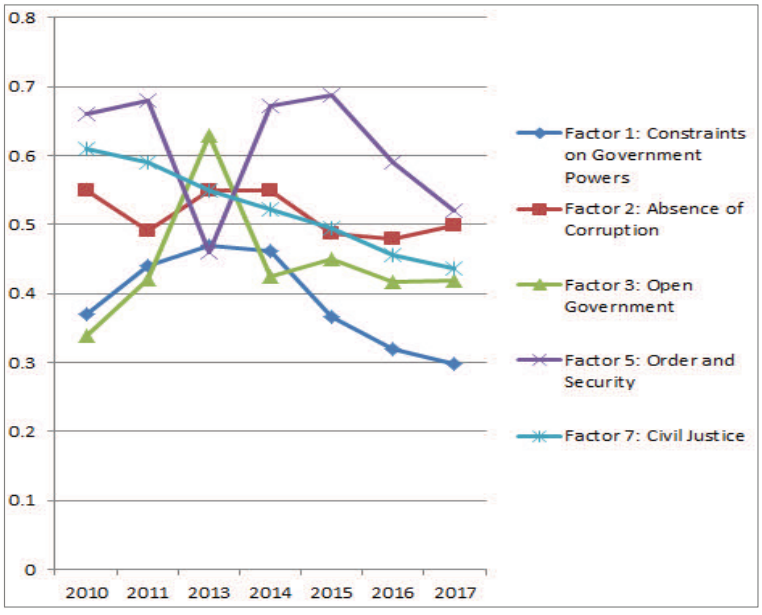

(라) 종합검토

[그림 39]에서 [그림 4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3개국 모두 2013년 '질서·안보' 지표의 급격한 하락 후 반등이 눈에 띈다. 다만, 미국과 터키의 경우에는 2014년 또는 2015년 이후 다시 이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데, 터키의 경우 하락폭이 매우 급격한 것이 관측된다.

둘째, 3개국 모두 2013년 경 '정부 개방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종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셋째, 3개국 모두 '청렴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

넷째, 사법신뢰도의 가장 극심한 하락을 경험한 터키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하위지표인 '정부권력의 제한'과 '민사사법정의' 지표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볼 때 사법신뢰도의 큰 상승을 보인 3개국에 대한 시계열 자료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흐름에 따른 변동 폭이 큰 항목은 역시 '질서·안보'와 '정부 개방성' 지표로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은 시간변화에 따른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런 사실은 사법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질서·안보'와 '정부 개방성'과 관련된 지표를 정책목표로 삼는 것이 보다 쉽거나 효과적인 반면, 나머지 지표들은 정책수단을 통한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다만, 사법신뢰도의 가장 큰 하락을 경험한 터키의 경우에는 비록 상대적 변화폭은 '질서·안보'와 '정부 개방성' 지표이긴 하지만, 나머지 항목에서의 변화폭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법신뢰도의 가장 큰 악화를 보인 3개국의 경우, 원래부터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법신뢰도 상승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미약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일부 또는 대부분의 하위지표의 지속적이거나 눈에 띄는 악화가 전체적인 사법신뢰의 감소를 촉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가) 우리나라

[표34] 2010–2017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2010	2011	2012–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권력 제한	0.60	0.59	0.66	0.76	0.79	0.68	0.70
청렴도	0.80	0.74	0.74	0.79	0.82	0.65	0.67
정부 개방성	0.65	0.71	0.82	0.74	0.73	0.68	0.69
기본권	0.78	0.76	0.76	0.73	0.73	0.70	0.71
질서안보	0.80	0.83	0.74	0.89	0.90	0.83	0.84
규제집행	0.65	0.69	0.67	0.74	0.78	0.75	0.72
민사사법정의	0.75	0.66	0.72	0.74	0.80	0.81	0.74
형사사법정의	0.73	0.68	0.76	0.76	0.76	0.71	0.70

5개 주요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42] 2010–2017 우리나라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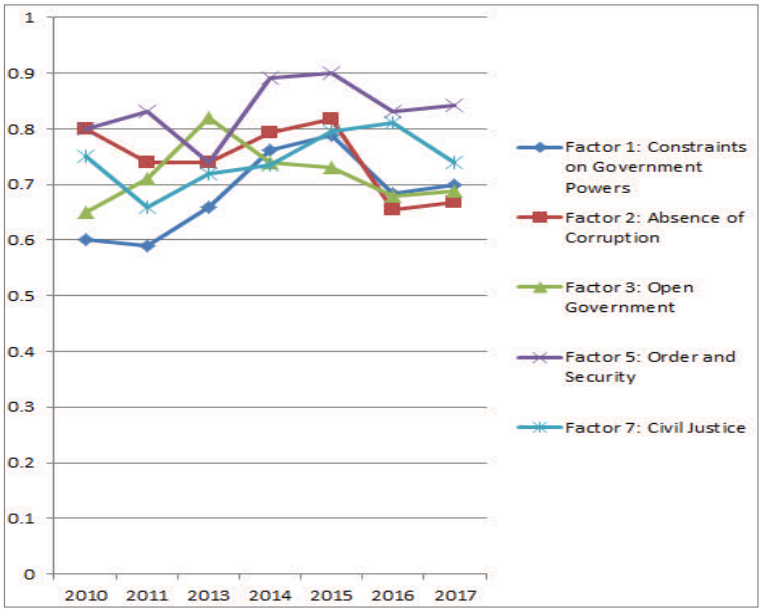

(나) 일본

[표35] 2010–2017 일본의 법치주의 지수 8개 하위항목의 지수

	2010	2011	2012–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권력 제한	0.81	0.78	0.8	0.76	0.76	0.74	0.74
청렴도	0.87	0.90	0.84	0.84	0.86	0.83	0.85
정부 개방성	0.63	0.76	0.89	0.77	0.72	0.68	0.70
기본권	0.78	0.78	0.78	0.75	0.76	0.75	0.76
질서·안보	0.95	0.92	0.82	0.92	0.93	0.90	0.91
규제집행	0.81	0.80	0.87	0.78	0.76	0.82	0.80
민사사법정의	0.68	0.73	0.77	0.73	0.74	0.82	0.79
형사사법정의	0.86	0.76	0.68	0.69	0.74	0.68	0.74

5개 주요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를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43] 2010–2017 일본의 주요 5개 하위항목의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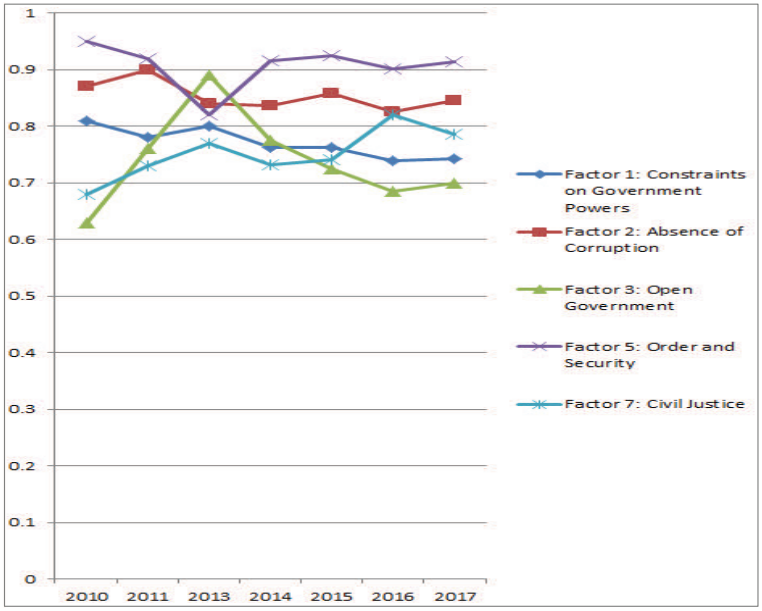

(다) 종합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성이 관찰된다.

첫째, 2013년 '질서·안전' 지표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된 뒤 다시 최근에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청렴성' 지표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 개방성' 지표도 2013년경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민사사법정의' 지표는 2011년 무렵 하락하였다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6년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정부권력의 제한' 지표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5개 주요지표 중 특히 '청렴성'과 '정부 개방성', '정부권력의 제한'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사법신뢰도의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 비교대상 국가들에서 상대적 변화폭이 컸던 '정부 개방성'이나 '질서·안보' 이외에 나머지 주요 하위항목에서도 시간에 따른 변화의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하위항목이 적절한 정책수단을 통한 변화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으나, '청렴도' 개선이나 '정부권력 제한' 등과 같은 사법신뢰의 윤리적·헌신적 요인의 개선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인위적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에서,[518] 그보다는 사법제도와 관련된 내·외부 조건과 환경이 신뢰형성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 방향으로 불안정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였을 개연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법신뢰의 상당한 개선을 보인 일본의 경우를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관찰된다.

첫째,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3년경 '정부 개방성'이 급격히 개선되었다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518) 즉, 이와 관련된 사법신뢰는 사법부의 청렴도 개선이나 정부권력 제한을 위한 노력 자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그런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청렴성’ 지표는 다소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정부권력의 제한’ 지표는 완만한 악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사사법정의’ 지표는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향후 전체적으로 사법신뢰 개선을 이끌만한 눈에 띄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질서·안보’와 ‘청렴성’ 지표는 사법신뢰 수준을 유지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부 개방성’과 ‘질서·안보’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하위항목의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4) 소결

2017년 OECD 보고서에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사법신뢰도의 가장 눈에 띄는 상승과 하락을 경험한 국가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앞에서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하위지표들과 사법신뢰도 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한 추론이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에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많은 경우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개선은 사법신뢰도 상승과, 관련 지표의 하락은 신뢰도 하락과 같은 방향의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표와 신뢰 지수 사이에 일반적으로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법신뢰도 지수 변화와 관련하여 그 구성요인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각 하위 구성요인들 사이의 변화 방향에는 특별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일부 구성요인의 상승 국면이 다른 구성요인의 하강 국면과 양립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이다. 사법신뢰도의 종국적인 지수는 각 하위요인들 사이의 상승요인과 하강요인 중 어느 요인이 더욱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사법신뢰의 증진을 위해서는 사법신뢰 구성요인 중 좋은 성과를 보이는 지표와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이는 지표를 분류한 뒤, 각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 파악하여 이에 따라 특화된 개별적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시사점

I. 사법신뢰도 지수의 해석과 활용상 유의사항

사법신뢰와 관련한 지수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사법제도와 관련한 나름대로의 대상을 측정한다. 사법신뢰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대상을 측정, 평가한 뒤 결과를 하나의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유용한 도구인 반면, 숫자 뒤에 가려져 있는 지수의 특성이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계를 간과하는 경우, 측정대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각종 지수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수의 내용과 특성을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였지만,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1. 측정대상과 범위의 확인

첫째, 무엇보다 해당 지수가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그 구성요인 관련 지표를 측정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사법신뢰는 신뢰의 다차원적 구조에 따라 사법제도의 '능력', '호의', '성실성·일관성'과 '개방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수에 따라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대상으로 삼는 것이 있는 반면,[519] 어떤 지수는 그 구성요인과 관련된 지표를 측정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520]

사법신뢰의 구성요인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 지표로 구현한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국립 주법원센터와 법무부 사법지원국 주관 하에 마련된 사실심법원 업무기준(TCPS)이 있는데,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들은 TCPS 세부기준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조사항목에 이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

519) OECD가 2013년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이후 발표하고 있는 사법제도에 관한 신뢰도 지수와 세계가치관조사(WVS)가 wave 시리즈를 통해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사법신뢰도 지수가 대표적이다.

520)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와 OECD가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서 발표하는 사법제도에 관한 신뢰도 지수 이외에 '법치주의'와 '대시민서비스' 항목에 속하는 각종 하위지표에 대한 지수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와 국정관리지수(WGI),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각 국가경쟁력지수 중 사법제도와 관련된 지수들이 대표적이다.

럼 사법신뢰도 자체가 아니라 구성요인 관련 지표를 측정하는 지수는 개별적으로 사법신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뿐이고, 그 전체적인 수준을 반영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정 구성요인의 좋은 성과 지표에 불구하고, 나머지 구성요인의 저조한 성과 지표로 인해 전체적인 사법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앞에서 살펴 본 몇몇 국가의 사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둘째, 어느 지수가 사법신뢰의 구성요인을 측정대상으로 삼는 경우 구성요인의 전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와, 만일 일부 구성요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법신뢰의 여러 구성요인 중 어느 것과 관련된 지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한 전제가 된다.

사법신뢰 구성요인과 관련된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하위지표는 다른 지수들에 비해 더 많고 세분된 사법신뢰 구성요인을 측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모든 사법신뢰 구성요인을 충분히 측정하는 도구인지는 보다 면밀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521] 현재로서는 위 지수들은 주로 사법제도의 '능력'이나 '개방성' 측면에 중점이 있는 지수로 보이고, '호의'나 '성실성·일관성'과 관련된 하위지표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구성요인 관련 하위지표의 변화만으로는 사법신뢰 자체의 변화를 정확히,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후술하는 사법신뢰 증진정책과 관련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데,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하위지표가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구성요인을 망라하여 포섭하지 못한다면, 위 하위지표들을 개선하려는 정책만으로는 결국 사법신뢰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법신뢰 구성요인에 관한 하위지표는 객관적인 수행 영역에서의 성과가 아닌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평가를 중심으로 측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수행영역에서의 우수한 객관적 성과는 일반적으로 높은 평가나 우호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는 신뢰가 신뢰주체 측면에서 인지적 차원 이외에 이와 구분되는 감정적 차원이나 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뢰대상에 대한 인식을 감정적,

521) 예상할 수 있는 추가분석 방법에 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 (주 502) 내용 참조.

행동적 차원에서 우호적 정서와 태도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522] 이에 관해서는 아래 사법신뢰 증진정책에 대한 시사점 중 신뢰주체 측면에서의 신뢰 다차원성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통계적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사법신뢰 관련 지수가 조사하려는 항목을 타당하고도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법신뢰 관련 지수들은 초기에 조사방법론이나 통계상 적지 않은 문제제기와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지수 산정과 발표가 거듭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은 대부분 극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OECD 사법신뢰도 지수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사용되는 설문의 문구와 응답척도 등의 통계적 적절성과 관련하여 지수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OECD는 오랜 기간의 연구를 거쳐 최근 신뢰 측정에 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른 국가통계기관에 의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앞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한 지수의 신뢰성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지역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이고 부정기적, 일회성 사법신뢰도 조사의 경우에는 지수의 신뢰성이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조사방법론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대표성 있는 적절한 표본의 확보,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문항과 응답척도의 명료성과 적절성, 설문조사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의 적절성 등이 모두 담보되지 않는다면, 조사결과 발표된 지수가 실제의 사법신뢰도 수준을 반영하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522)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신뢰는 객관적 성과 자체가 아닌 국민이 인지한 성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의가 있는데, 객관적 성과에 대한 인지가 국민의 선호체계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경우 비로소 정부신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후술하는 제6장 제2절 Ⅱ.의 3.항 참조). 인지된 정부성과가 국민의 선호체계나 기대수준에 부응한다는 것은 신뢰주체 입장에서의 다차원성 측면(제3장 제1절 Ⅲ. 2.항 참조)에서 표현한다면, 인지적 차원의 신뢰가 감정적 차원의 신뢰로 전이, 확산되는 국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비록 보다 엄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인지적 차원의 신뢰를 감정적, 행동적 차원의 신뢰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잠정적으로나마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의 특성에 대해 가지는 선호체계 또는 기대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방법론상 특성의 고려

사법신뢰 관련 지수는 지수를 측정하는 각각의 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측정 대상의 개념화와 조작화[523]를 비롯한 조사의 설계, 구체적인 조사방법, 자료수집 방법과 조사항목 등 조사방법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과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앞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다.[524] 나아가 비슷한 조사방법과 자료수집방법, 조사항목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컨대 사법제도 또는 법원 등에 대한 신뢰 여부를 질문하는 설문조사를 조사방법으로 채택하는 OECD와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사법신뢰도 지수의 경우에도, 조사대상 국가의 범위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설문 문항의 설계와 문구, 응답척도,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 사법신뢰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525]

이런 지수의 조사방법론상 차이와 특성,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지수의 뒷면에 놓인 실질적인 의미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II. 사법신뢰 증진정책에 대한 시사점

1. 신뢰의 다차원적 구조로부터의 시사점

가. 신뢰대상 측면의 다차원성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법신뢰 증진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하나의 하위 구성요인에 대한 개선정책만으로는 전체적인 사법신뢰 수준의 증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법신뢰 증진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하위 구성요인에 대한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각 지표에 특화된 증진정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 정책수단으로 쉽게 변화를 가

523) 제3장 제2절 Ⅱ. 1.의 다.항 참조.
524) 제3장 제2절 Ⅱ. 2.의 마.항, 제4장 제3절, 제5장 제5절 각 참조.
525) 제6장 제1절 Ⅰ. 1.항 참조.

져올 수 있는 구성요인과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거나 적절한 요인을 분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쉽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성요인에 집중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사법신뢰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법신뢰 수준을 전반적이고도 종국적, 장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구성요인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개선방안 없이는 사법신뢰 증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단기적 정책수단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개별 지표에 특화된 개선정책들은 전체적인 사법신뢰 수준의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하나의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개선정책이 다른 지표의 개선에 방해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를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법제도의 '능력'에 관련된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 재판의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재판의 적절성, 공정성과 절차참여권 등 사법제도의 '호의' 또는 '성실성', '개방성'과 관련된 지표를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기존 사법제도 개선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던 사법제도의 '호의성', '성실성과 일관성'과 관련된 지표들, 즉,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공정성과 염결성,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개방성 증대 등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사법신뢰 구성요인 중 주로 '능력' 측면에 관련된 지표에서 전통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 온 반면, 나머지 분야의 지표에서 이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사법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후자의 개선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사법신뢰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법의 존중과 준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미국 법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Tom R. Tyler가 수행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증진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Tom R. Tyler는 사법기관이 내린 결정의 유·불리, 그 결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와 의견개진, 사법기관의 동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사법기관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사법기관의 중립성 등 5가지 요인이 법의 존중과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526]

526) Tom R. Tyler, "Public Mistrust of the Law: A Political Perspective", 66 University of Cincinnati

첫째, 사법기관의 공정성 판단에는 결정과정에의 참여와 의견개진,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전문적 능력(competence)과 신의성실(benevolence; good faith)을 비교한 결과, 후자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법기관의 동기(motive)에 대한 판단도 사법기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법기관과 그 구성원이 당사자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전문적 역량보다 사법신뢰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우리 법원이 재판과정 등에서 냉정한 중립성과 전문성,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절차에 대한 참여와 의견개진 기회를 실질적이고도 충분히 보장하고, 법원이나 그 구성원의 내부적 이익이나 편의가 아닌,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존중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목적과 동기의 윤리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527]

나. 신뢰주체 측면의 다차원성

(1) 세 가지 차원의 일반적 상호관계

신뢰주체가 신뢰를 형성하는 차원에 인지적 차원, 감정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점과, 이런 세 가지 구성차원은 일정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관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528]

Law Review (1998), 848; Tom R. Tyler, Why People Obey the Law, 2nd Edition, Priceton and Oxford (2006), 45 각 참조, 각 김도균(주 44), 위의 논문, 592-593에서 재인용.

527) 사법제도가 아닌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도 많은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장률 등 양적인 정부성과보다는 정부나 제도의 질적인 측면, 즉, 법치주의나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 부패 수준 등이 정부신뢰와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논의에 대하여는 김우철(주 5), 위의 논문, 7-14 참조.
나아가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으로 위와 같은 양적, 질적인 정부성과를 의미하는 '정책결과' 이외에,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관한 '정책과정', 시민의 정책선호와 정부의 정책 사이의 일치 여부에 관한 '정책산출'의 측면을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이에 기반한 상세한 경험적 연구로는 박종민·배정현(주 5), 위의 논문 참조. 이 논문에 의하면, 정부신뢰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책 자체의 선호(정책산출 측면)나 그로부터 받는 정책수혜의 크기(정책결과 측면)보다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등 '정책과정'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신뢰 증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런 신뢰의 다차원성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 온 '능력' 측면을 보면, 이에 대한 객관적 성과와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인지적 차원의 신뢰를 형성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감정적 차원과 나아가 행동적 차원의 신뢰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제도의 객관적 성과와 이에 대한 인식이 감정적, 행동적 차원의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따라서 사법제도의 업무수행능력은 인정받지만 우호적인 감정이나 취약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적극적 신뢰 부여행위가 없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사법신뢰 증진정책은 인지적 차원의 신뢰가 감정적, 행동적 차원의 신뢰와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529]

반면,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질서로부터[530] 법 · 제도와 같은 제도적 안전판의 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는 체제적 신뢰(system trust)에 의거한 사회로 변화한다는 사실[531]은, 체제적 신뢰가 최종적으로는 법치주의나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법질서와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사법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나 기관, 예를 들어 정부신뢰의 감소나 훼손이 있는 경우 이를 극복하고 신뢰를 개선하는 단초를 법치주의나 공정한 사법제도 운영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체제적 신뢰로부터 찾을 수 있지만,[532] 사법제도 자체의 신뢰가 훼손된 경우에는 신뢰회복의 기초나 근거

528) 제3장 제1절 Ⅲ.의 2.항 참조.

529) 인지적 차원의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신뢰대상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제3장 제1절 Ⅲ. 2.의 가.항 참조), 사법제도의 '홍보'는 사법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의미하므로, 사법제도의 성과 등에 대한 적절한 '홍보'는 인지적 차원의 신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곧바로 감정적, 행동적 차원의 신뢰까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홍보'를 통해 사법신뢰를 전반적으로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가 정책수단과 정책산출, 정부역량 등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다른 결정요인에 비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경험적 연구가 있는데[황창호·김태형·문명재(주 5), 위의 논문], 이는 홍보를 통한 인지적 차원의 신뢰 형성이 나머지 감정적, 행동적 차원의 신뢰증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신뢰 결정요인들에 비해 신뢰증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위의 논의를 정부신뢰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30) 사회적 관계의 중점이 1차 집단(gemeinschaft)에서 2차 집단(gesellschaft)으로 이동하게 되어 관계와 정보의 다양화와 복잡화가 발생한다. 이런 사회질서에서는 신뢰대상인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피상적이고 부족한 것이 보편적이 된다.

531) 이런 사회질서에서는 인지적 차원의 신뢰 고양을 통한 감정적, 행동적 차원의 신뢰 증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열려 있다.

가 될 체제적 신뢰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2) 객관적 성과와 인지된 성과 사이의 불일치 문제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나머지 하위요인에 관련된 지표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 사법제도의 효과성, 효율성과 신속성 등 '능력'에 관한 객관적 성과의 개선이 사법신뢰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사법신뢰의 대상 측면에서의 다차원적 구조 문제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정책적 과제와 시사점을 제공한다.[533]

즉, 다른 사법신뢰 구성요인에 관한 조건이 동일할 때, 사법제도의 '능력'에 관한 객관적 성과가 개선되었는데도 사법신뢰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제도의 '능력'에 관한 객관적 성과를 개선하려는 정책은 무용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534] 정부신뢰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정부의 효율성이나 성장률 등과 같은 양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535] 정부신뢰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제 성과(actual performance)보다는 국민에 의해 인지된 정부의 성과(perceived performance)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정부신뢰는 정부가 실제로 수행한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옳고 그름에 대해 국민들이 형성한 선호체계에 부합할 때 형성된다는 것이다.[536] 극단적으로는 정부의 일반적인 성과는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 제대로 인식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정부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 정부가 행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정부역할에 포함되는 성과의 인지는 신뢰형

532) 김우철(주 5), 위의 논문, 7-13은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정부신뢰 수준 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경제적 성과와 같은 양적 요소보다 법치나 독립적인 사법부, 부패 수준과 같은 질적 요소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법치와 독립적 사법부, 낮은 부패수준 등은 체제적 신뢰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533) 이런 논의는 사법제도의 '능력'만이 아닌 다른 구성요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나, 경험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강점 또는 장점은 사법신뢰의 여러 구성요인 중 '능력'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견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534) 김우철(주 5), 위의 논문, 15-17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535) 이 연구보고서 (주 527) 내용 참조.

536) 신뢰의 주체 측면에서의 다차원성(제3장 제1절 Ⅲ. 2.항 참조)으로 표현한다면, 인지적 신뢰가 신뢰주체의 선호체계와 기대수준을 연결고리로 하여 감정적, 행동적 신뢰로 전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 연구보고서 (주 522) 내용 참조].
한편, 앞서 정부신뢰 형성에서 정책결과와 정책과정 이외에 정책산출 측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박종민·배정현(주 5), 위의 논문], 정책산출이 국민의 정책선호나 이념에 부합하는 경우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연구보고서 (주 527) 내용 참조].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견해에 따르더라도 개인 또는 국민이 정부 기능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은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를 띠기 때문에 정부 역할 중 어느 것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지를 사전에 추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국민들의 선호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급격히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정부신뢰에 관한 이런 논의로부터, 사법신뢰 증진을 위해 사법제도의 '능력'과 관련된 측면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법제도의 '능력'에 관한 객관적 성과 자체는 사법신뢰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사법신뢰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추어, 사법제도의 '능력'은 사법신뢰의 중요한 구성요인이자 기본 토대 중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역시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사법신뢰의 형성에는 사법제도의 객관적 성과 자체보다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사전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선호체계 또는 기대수준에 그 성과가 얼마나 부합하는가가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선호체계와 기대수준이 무엇일지를 열린 자세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에 부응하는 사법제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찾아낸 뒤, 이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루어내려는 인내심 있고 일관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사법제도의 능력에 관한 국민의 선호체계나 기대수준은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될 수 있고,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필요에 따라 쉽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결국 가능한 한 다수의 국민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법제도의 수행영역을 우선적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된 국민들의 선호체계나 기대수준 역시, 설령 실질적이고 충분한 구현에는 못 미치더라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이에 부응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신뢰에서 중요한 것은 사법기관이 현실적으로 내린 결정의 유·불리에 대한 판단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목적과 동기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더욱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537]

537) 제6장 제2절 Ⅱ. 1.의 나.항 논의 참조.

또한, 하나의 정책이 사법제도의 능력을 개선하여 현재까지 사법신뢰 증진에 효과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새로운 분쟁유형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사법절차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사용자 편의성이 보다 극대화된 재판절차와 같은 새로운 사법적 요구나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래 정책이 여전히 사법신뢰 증진에 효과적인 사법제도의 '능력'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사법제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둔감하지 않고, 이에 반응하는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선호체계와 기대수준의 변화에 선제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너무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2. 신뢰의 유형으로부터의 시사점

신뢰는 신뢰생성의 경로에 따라 과정 기반 신뢰, 귀속성 기반 신뢰와 제도 기반 신뢰로, 신뢰생성의 조건과 방안에 따라 제재 기반 신뢰, 지식 기반 신뢰와 일체감 기반 신뢰로 유형화 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538]

사법신뢰의 경우 위 신뢰 유형 중 의미 있는 유형으로는 우선 지식 기반 신뢰와 과정 기반 신뢰를 생각할 수 있는데,[539] 이 유형의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① 정보수집비용의 감소, 즉, 사법제도와 사법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고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사법제도 또는 사법적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③ 사법적 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 기회의 충분한 부여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재 기반 신뢰는 신뢰 위반, 침해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사법신뢰에서 신뢰 침해 또는 훼손의 원인이 특정한 사법부 구성원 또는 조직에 있는 경우 신뢰주체인 일반 국민이 그 구성원 또는 조직에 대한 제재를 직 ·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 제재 기반 신뢰의 존립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일반 국민이 그런 제재를 보다 직접적이고도 실효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수록 이에 기반을 둔 신뢰 수준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제재 방법에 불과하지만 법관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 비위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에 대한 엄정하고도 투명한 징계, 처벌절차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

538) 제3장 제1절 Ⅳ.의 1.항 참조.
539) 제3장 제2절 Ⅰ.의 2.항 참조.

을 알 수 있고, 입법론적으로는 사법신뢰를 침해하는 비위를 저지른 법관 등에 대한 징계나 처벌절차에 일반 국민이나 적어도 그 대리인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나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신뢰의 유형은 신뢰의 대상에 따라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원칙 또는 질서신뢰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540] 제도신뢰의 경우 신뢰의 대상은 해당 제도의 공동체에 대한 것일 수 있고, 제도의 권위나 역할구조와 정당화 원리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제도의 당국이나 권위와 역할의 현직자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앞에서 설명하였다.[541]

제도신뢰의 일종으로서 사법신뢰의 이런 특성은 사법신뢰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뢰 증진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만일 낮게 나타난 사법신뢰 수준이 사법제도 당국이나 현직자에 대한 신뢰 저하 또는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쇄신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신뢰증진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사법공동체나 사법의 권위와 역할구조, 정당화 원리와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소에 대한 낮은 신뢰나 불신에 기인한 것이라면 사법 당국이나 현직자에 대한 쇄신만으로는 사법신뢰의 증진을 이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542]

다만, 사법신뢰 수준에는 그 중요도의 차이나 주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사법공동체, 사법의 권위와 역할구조 또는 정당화 원리, 사법 당국이나 현직자에 대한 신뢰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이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사법신뢰 증진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여러 요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 상호관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

540) 제3장 제1절 Ⅳ.의 2.항 참조

541) 이 연구보고서 (주 44) 내용 참조.

542) 역시 제도신뢰 중 하나인 정부신뢰의 경우, 신뢰대상이나 범위의 이런 모호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의 해석과 함의에 관한 다양한 논의로는 박종민·배정현(주 5), 위의 논문, 119-121 참조.

3. 신뢰와 불신의 순기능·역기능과 병존 가능성 문제[543]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신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인 경우, 신뢰와 불신을 같은 차원의 반대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면, 사법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는 곧 불신을 감소시키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불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불신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불신의 억압(즉, 신뢰의 증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즉, 신뢰의 역기능)을 고려한다면, 신뢰의 역기능을 막으면서 불신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은 사법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최적조합을 찾는 노력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544]

반면, 신뢰와 불신이 상이한 독립적 개념으로 공존이 가능하다면, 사법신뢰가 증진되면서도 동시에 사법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불신, 더욱 정확히는 불신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의 역기능을 줄이면서 불신의 순기능을 살리는 신뢰와 불신의 기능적 공존을 위한 대안의 폭은 신뢰와 불신을 같은 차원의 반대개념으로 보는 경우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신뢰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통제가 필연적으로 불신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 요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뢰와 불신이 서로 다른 독립적 개념으로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의 다중성과 신뢰의 다차원성에 비추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동태적인 관계 역시 사법신뢰 증진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사법제도 외부요인으로 인한 한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TCPS 세부기준[545] 역시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543) 제3장 제1절 Ⅵ.항에서 이미 논의한 내용이나, 사법신뢰 증진정책을 위한 시사점의 종합정리를 위해 해당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544) 이론적으로는 사법신뢰의 순수한 순기능(순기능-역기능)과 불신의 순수한 역기능(역기능-순기능)의 차이가 극대화 되는 지점이 최적조합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신뢰 증진정책을 마련할 때 신뢰의 역기능과 불신의 순기능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결과 사법신뢰의 무한정한 극대화 정책이 항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45) 제3장 제2절 Ⅰ. 3.의 나.항 참조.

모든 구성요인에 관한 지표들을 망라하여 전체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더욱이 한 사회의 사법신뢰 수준은 대인신뢰는 물론이고, 정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 조직, 정치제도나 사회제도 등 다른 제도에 대한 신뢰, 나아가 사회전체의 체제나 질서에 대한 신뢰수준, 그 밖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역사적 요소들로부터도 일정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 국가의 사법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설령 모든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정책대상으로 삼을 수 없거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546] 나아가 모든 요인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결국 가용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법신뢰 증진 범위에는 구조적 또는 제도적,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구조적, 현실적 한계 뒤에 놓여 있는 요인들이 사법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증진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제3절 향후 연구과제

사법신뢰는 물론이고, 신뢰 자체에 대한 본격적 의미에서의 연구 역시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도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고, 경험적 연구는 가용한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사법신뢰에 대한 이해와 증진정책의 마련과 관련하여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과제를 몇 가지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546) 예를 들어 법원이 사법신뢰 증진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나 입법부신뢰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는 명백하다.

사법신뢰의 수준을 다양한 신뢰 차원, 구성요인별로 측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신뢰 차원이나 구성요인이 실제 전체적인 사법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547]과 정도 또는 강도에 관한, 단순히 이론상 논의만이 아닌 경험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법제도의 '능력'과 관련된 사법효율성이나 재판의 신속성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가 사법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물론이고, 사법제도의 개방성, 절차적 공정성, 윤리성이나 책임성, 일관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 사법신뢰의 다양한 구성요인이 실제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폭넓게 시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국민들의 응답결과에 기초한 이런 연구들이 축적되면 우리나라 사법제도 현실에 맞는 사법신뢰의 구성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548] 나아가 이를 기초로 신뢰의 각 차원 또는 구성요인 간 상호관계를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검증하는 작업은 신뢰의 구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신뢰 증진정책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법신뢰와 같은 제도신뢰의 경우 신뢰대상이 사법제도 자체인지 아니면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나 특정 조직에 대한 것인지, 특정한 사법작용이나 활동에 대한 것인지, 나아가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549]

신뢰를 측정하는 도구와 방법론의 계속적, 일관성 있는 사용을 통한 국가 간 비교, 시계열적 비교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고, 동일원천 오류(common source bias) 또는 동일방법 편향(common method bias)[550] 가능성 등과 같은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통계적 오차를 배제하거나 줄일 수 있는 조사방법론상의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법신뢰도의 측정지수 측면에서는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각 하위요인에 관한 지표를 빠짐없이 추출하여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551]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고 보다 일관되고 객관성이 있는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사법제도를 신뢰하는가?'하는 하나의 단순한 질문을 통해 사법신뢰도 수준을 측정하는 것 이외에, 보완적으

547) 즉,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548) 정부신뢰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참고자료 중 'Ⅰ. 문헌'의 '나. 정부신뢰, 제도신뢰' 부분에 있는 상당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549) 이 연구보고서 (주 44), (주 75) 내용 각 참조.
550) 이 연구보고서 (주 270) 내용 참조.
551) 이 연구보고서 (주 502) 내용 참조.

로나마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나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와 국정관리지수(WGI), 국가경쟁력 지수(GCI) 등을 산출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각 구성요인에 관한 지표의 측정치를 종합, 융합하여 사법신뢰도라는 하나의 종합지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측정방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552]

각 국가의 문화적, 역사적 경험과 특성이 신뢰의 구성요인 또는 차원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파괴와 회복 과정, 신뢰와 불신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신뢰의 동태적 측면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상호작용 가능성, 정치신뢰와 대인신뢰 등 사법제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신뢰가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신뢰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역시 후속 연구과제로 예상할 수 있다.

552) 현재로서는 이런 새로운 방법이 종래의 사법신뢰 측정방법과 지수의 장점과 고유한 기능을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보완적 방법으로 고려한다.

제 7 장

결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이상에서 살펴본 각 사법제도 관련 지수들은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의 여러 가지 특성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법신뢰도 지수가 가치판단 또는 인식 영역에 속하는 사법 또는 사법제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대상 자체에 대한 신뢰수준을 직접 측정하려 시도하는 것과 달리,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대한 측정지수는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세부 구성요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뢰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더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사법신뢰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에는 효과성과 효율성, 신속성 등으로 대표되는 신뢰대상의 '능력(ability or competence)' 이외에 사법제도의 공정성, 청렴성, 평등성, 접근가능성과 독립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호의', '성실성'이나 '일관성', '개방성' 등의 가치가 존재하고, 이런 가치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사법제도의 신뢰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지수들에 포함된 일부 측정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만으로 한 국가의 사법제도의 전체적인 신뢰수준을 판단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 구성요인 관련 측정지수에 나타난 사법제도의 효과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수준의 사법신뢰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신뢰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요인인 '호의' 또는 '성실성'이나 '일관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공정성이나 청렴성, 사법제도 운영과 관련한 정보나 절차의 투명한 공개와 절차 참여권 보장을 통한 '개방성' 등에 관한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역시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같은 '능력'의 측면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인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객관적인 양적 평가가 비교적 쉬운 반면, 나머지 '호의' 또는 '성실성'이나 '일관성'을 반영하는 공정성이나 청렴성, 절차의 투명한 운영이나 '개방성' 등은 그 자체로 계량화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설문의 구성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설문조사 응답자의 경험이나 사실 등 객관적 정보에 기반을 둔 답변이 아닌,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기반을 둔 답변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런 경우 공정성, 청렴성, 개방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왜곡되거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사법에 관한 신뢰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단순히 사법신뢰 수준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법신뢰 증진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심각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즉,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신속성 등과 같은 '능력'의 측면이 갖는 객관적, 양적 특성은, 사법신뢰 증진을 위한 가장 손쉬운 대상임과 동시에 효과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능력' 지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적시의 적정한 사건처리나 소송절차의 신속성 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정책과정이 비교적 분명하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용이하다. 반면,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청렴성이나 성실성 등과 같은 질적 또는 정성적(qualitative) 측면은 구체적 정책수단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사이의 인과관계도 모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비로소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구성요인들의 이런 특성차이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최적 활용과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사법신뢰 증진정책의 중점이 사법제도의 '능력' 요인 개선에 모아지는 대신, 다른 구성요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과 노력, 자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관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측정과 이를 종합한 사법신뢰 수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각 지표에 대해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론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종 사법신뢰 관련 지수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과정 및 사법신뢰 증진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사법신뢰의 다차원 구조와 다양한 유형의 존재 가능성, 신뢰와 불신의 상호관계 등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이해를 기초로,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 각 지수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사법신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뒤,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구성요인의 특성을 반영한 구성요인별 개별적·미시적 정책과 종합적·거시적 정책, 단기정책과 장기정책, 양적 정책과 질적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다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사법신뢰에 관한 경험적 분석과 자료의 부족은 물론이고 그 구조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조차 많지 않은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경우에 따라 일부 논의는 이론적 근거나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추론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시론적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사법신뢰 수준의 측정과 해석, 사법신뢰 증진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의 가능성이, 장차 사법신뢰를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문헌

가. 사법신뢰

김도균, “집합행동, 신뢰, 법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2013. 9.).

노영보,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한국법학원 (2013. 2. 특집호 I).

변진석, “소송제도와 사법부의 신뢰도-미국의 당사자주도주의 소송제도가 가지는 의미–”, 서울법학 제23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

유동균, “사법에 대한 신뢰-독일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조 Vol. 724 (2017).

유성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신뢰: 대중매체의 재판 관련 보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4호 통권 71호 (2010 겨울).

이상원,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2012. 9.).

하태훈,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한국법학원 (2013. 2. 특집호 I).

한상규, “사법 불신과 법원 개혁-1987년 민주화 이후 법원개혁의 성찰–”, 강원법학 제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2.).

함영주, “대리인비용과 변호사직역에 대한 신뢰-정보의 비대칭성과 전관예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협상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협상학회 (2015).

Sun Choi, “Diagnosis of and Finding Alternatives to the ‘Crisis of Judicial Trust’ for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동서연구 제28권 제3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31-64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사법 신뢰의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Botero, J. and A. Ponce, “Measuring the Rule of Law”, No. 2, WJP Working Paper,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2012).

나. 정부신뢰, 제도신뢰

김우철, “우리나라 정부신뢰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2017. 4.).

김현구·이승종·최도림, “정부신뢰의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분석”,

행정논총 제47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류태건, “한국,일본,미국,독일의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수준과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3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10.).

박병진,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 근대적 요인과 탈근대적 요인”, 시민사회와 NGO 제2권 제2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4).

박종민·배정현,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제17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박푸름, “정부신뢰 개념의 범위와 요인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제2015년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5. 12.).

박희봉·이희창·조연상,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2003. 9.).

박희봉·김동현, “스칸디나비아 3개국 및 동아시아 3개국의 정부신뢰 영향요인 비교”, 한국행정연구 제23권 제2호 (2014).

신상준·이숙종,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50권 제2호 (2016. 여름).

심재승, “정부·행정에 대한 시민신뢰를 둘러싼 논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5권 제4호 (2011. 12.).

오경민·박흥식,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3호 (2002).

이정철, “정부투명성이 정부신뢰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이종수,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집 제32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이지호·이현우, “정부신뢰의 한국적 의미와 측정: 반응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5. 10.).

이창원·조문석, “정부성과, 정치이념, 사회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제12권 제4호, (2016. 1.).

이헌수, “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2호 (1999. 여름).

이희창, “정부신뢰에 대한 제도성과와 사회자본의 영향 비교: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장용진,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

소 (2013).

최흥규, “정부신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1권 제2호 (2007).

한준, 한국사회의 제도에 대한 신뢰, 한림대학교출판부 (2008).

황창호·김태형·문명재, “정책홍보·정책수단·정책산출 그리고 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3권 제1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Geert Bouckaert and Steven Van de Walle, “Comparing measures of citizen trust and user satisfaction as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difficulties in linking trust and satisfaction indicators”, Vol. 69, No. 3,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329 (2003)

다. 신뢰 일반, 사회적 자본

강내원,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에 관한 개념적·방법론적 고찰”,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2권 제1호,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상반기).

권혁상·주효진·도운섭, “사회자본과 신뢰의 개념 및 유형화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3권 1호 (2003).

김상돈·전계영, “한국인의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 분석”, 한국사회 제8집 2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07).

김승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2006).

김우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형성: 개인자료에 의한 미시적 접근”, 응용경제 제16권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4. 6.).

김우택·김지희,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소화 (2002)

김인영,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거시적 접근, 소화 (2002)

김인영, “한국사회와 신뢰: 후쿠야마와 퍼트남 논의의 재검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4.).

김지희,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 (김우택·김지희 편집),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소화 (2002).

문형구·최병권·내은영, “국내 신뢰 연구의 동향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 경영학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경영학회 (2011. 2.).

박병진,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제41집 3호, 한국사회학회 (2007).

박통희, “신뢰와 불신의 역학: 불신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5.).

박통희,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2호 (1999. 여름호).

박찬웅,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사회학대회 발표요약집 1998권 2호, 한국사회학회 (1998).

박희봉 외 공저,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 요인 –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제3호 (2003).

박희봉·이희창.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4호 (2009. 12.).

박희봉 외 공저, “신뢰 유형별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정부학회 (2012. 3.).

배일섭,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비합리적 결정을 중심으로”, 2010 한국정책학회 하계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2010).

유시용,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원숙연, “신뢰의 개념적·경험적 다차원성: 신뢰연구에 갖는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3호 (2001).

이숙종, “한국인과 일본인의 기관신뢰와 민주주의 인식”, 일본공간 22권,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이재열,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 통권 제37호 (1998. 여름호).

장수찬, “사회자본과 행정;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 –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8권 1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2002).

조규창, “법과 신뢰”, (김인영 편집),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거시적 접근, 소화 (2002).

조기숙·박혜윤, “신뢰의 측정: 실험과 설문조사의 차이”, 한국정치학회보 38권 2호 (2004. 6.).

최상진 외 공저,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11권 특집호 (2005. 2.).

Daniel M. Rousseau, Sim B. Sitkin, Ronald S. Burt & Colin Camerer,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Vol.23. No. 3,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93 (1998).

Diego Gambetta, “Can we trust?” [Diego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Basil Blackwell (1988), 213-237.

Fukuyama, Francis(구승회 번역),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 (1996)

[Trust: The Social Virtue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Gareth R. Jones & Jennifer M. Geroge,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Vol. 23, No. 3,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31 (1998).

Herbert A.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4th Edition, New York: Free Press (1997).

Karen Jones, "Trust as an Affective Attitude", Vol. 107, No. 1 Ethics, 4 (1996)

Mark Granovetter,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Vol. 91, Issue 3,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81 (1985).

Niklas Luhmann, Trust and Power,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Inc. (1979).

Niklas Luhmann,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Diego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Basil Blackwell (1988), 94-107.

Pierre Bourdieu and Loic J. D. Wacquant,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Roger C. Mayer, James H. Davis, and F. David Schoorman,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Vol. 20, No. 3,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709-734 (1995).

Roy J. Lewicki, Daniel J. McAllister & Robert J. Bies, "Trust and Distrust: New Relationships and Realities", Vol. 23, No. 3,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38 (1998).

Stephen M. R. Covey(김경섭·정병창 번역), 신뢰의 속도, 김영사 (2006) [The SPEED of Trust, Free Press (2006)]

Susan P. Shapiro, "The Social Control of Impersonal Trust", Vol. 93, No. 3,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3 (1987).

山岸俊男(김의철·박영신·이상미 번역),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교육과학사 (2001) [信頼の構造: こ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1998].

라. 조사방법론, 신뢰측정

김구,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비앤엠북스 (2006).

김권현 외 공저, "설문지의 길이가 응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6권 1호, 한국조사연구학회 (2015. 2.).

김기환·이해용,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조사연구학회 2002권 (2002).

김석호 외 공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 구축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6.).

김승현, “가치의 측정과 사회적 소망성 편향: 사회적 신뢰의 예”,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 (2010. 여름).

김승현, “사회적 규범의 측정: 응답편향의 실험적 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6.).

김승현, “사회조사의 응답편향과 대체문항의 타당성: 사회적 신뢰와 공익추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7권 제4호 (2013. 12.).

김지범 외 공저, “한국에서의 무응답과 조사하기 어려운 응답자”, 조사연구 15권 3호, 한국조사연구학회 (2014. 8.).

김지범·김솔이, “무응답이 높은 설문 문항: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0”, 조사연구 16권 4호, 한국조사연구학회 (2015. 11.).

김지윤·강충구, “여론조사의 대표성 -표집과 조사방식에 대한 연구”, 평화연구 제22권 제2호,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2014. 10.).

박무익, “한국여론조사 실태와 조사방법”, 연세경영연구 제26권 제1호 (1989. 6.).

박원우 등,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원인과 해결방안”, 인사·조직연구, 제15권 1호 (2007).

심형인, “설문조사에서의 질문문항순서 및 선택지순서 효과: 한국문화 측정 문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51권 제1호 (2017. 봄).

오인환, 사회조사방법론:오차요인 집중연구, 나남출판 (1999).

이근형 외 공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20년의 추이 및 전망 연구』, 주식회사 윈지코리아컨설팅 (2017. 12.).

이화정·강석복, “설문조사에서의 무응답처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권 6호,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2. 11.).

장덕현·조성겸, “리커트형 척도의 중간점은 필요한가?: 중간점 있는 척도와 없는 척도 간 측정결과 비교”, 조사연구 18권 4호, 한국조사연구학회(2017. 11.).

장윤재 외 공저, “웹기반 조사에서 척도의 크기가 응답의 타당도, 신뢰도, 응답 편이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2권 3호, 한국조사연구학회(2011. 11.).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2013).

한신갑·이윤석·구혜란, “국가별 응답성향과 기관신뢰문항에 대한 효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

회 논문집 (2014).

Damaraju Raghavarao and W. T. Federer, “Block Total Response as an Alternative to the Randomized Response Method in Surveys”, Series B., Vol. 41, No. 1,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979).

Noel D. Johnson and Alexander Mislin, “How Much Should We Trust the World Value Survey Trust Question?”, Paper No. 11-44, George Mason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2011).

OECD,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Publishing, Paris (2017).

Ritwik Banerjee, “On the Interpretation of World Values Survey Trust Question: Global Expectation vs. Local Beliefs”, Discussion Paper No. 9872, IZA (2016).

Seymour Sudman, “Probability Sampling with Quotas”, Vol. 61, No. 315,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966).

Watson, Dorothy, “Correcting for Acquiescent Response Bias in the Absence of a Balanced Scale: An Application to Class Consciousness”, Vol. 21, No. 1,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992).

마. 기타

곽한영,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법의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법교육학회 (2011).

김영기, “한국어의 몇 가지 언어문화적 특성과 그 교육”, 새국어생활 제7권 제1호, 국립국어원 (1997. 봄).

김장이, “한국인의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 (2006. 6.).

나은영·민경환,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1998).

박철, “경제발전을 위한 법치주의-사회적 신뢰와 협조의 기초인 법과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9.).

오윤정·임정현·고태호, “「Doing Business」 평가방법을 이용한 기업환경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3권 제2호 (2009. 12.).

이부영, “현대 한국인의 성격”, 정신문화연구 15, 한국학중앙연구회 (1982. 12.).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정소영, “한국의 법의식 조사와 미국의 rule of law index의 비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3.).

차용진, “2009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대한 고찰: GCI 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토”, 국가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2009).

최영출, “국가경쟁력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3호 (2009. 11.).

한국행정연구원, 2013~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2017).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Daniel Kaufman, Aart Kraay, Massimo Mastruzzi,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Methodology and Analytical Issu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430 (2010. 9.).

2. 웹페이지 자료

가. OECD

OECD, “List of OECD Member countries -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OECD”, http://www.oecd.org/about/membersandpartners/list-oecd-member-countries.htm

OECD, “Signing ceremony of the OECD Accession Agreement with Colombia and Lithuania”, http://www.oecd.org/about/secretary-general/signing-ceremony-of-oecd-accession-agreement-with-colombia-and-lithuania-france-30-may-2018.htm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09 (2009), 10,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789264075061-en.pdf?expires=1543733010&id=id&accname=guest&checksum=C15510E2F7E11BFF0464D3142C81D167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3 (2013), 44-47,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gov_glance-2013-en.pdf?expires=1543733200&id=id&accname=guest&checksum=7C2971ABE9EEDDF42841858B8638D9F0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160-161,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gov_glance-2015-en.pdf?expires=1543733917&id=id&accname=guest&checksum=BFCD581C53D46D0BF12CE5A2B4744E77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2017), 218-219,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gov_glance-2017-en.pdf?expires=1543734089&id=id&accname=guest&checksum=BA73A238E1D6E7119A018F51C0621831

Giuliana Palumbo, et al., “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 no. 5, OECD Economic Policy Papers, OECD Publishing, Paris (2013), 9,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5k44x00md5g8-en.pdf?expires=1543734221&id=id&accname=guest&checksum=5846FE8EDFFA6062DFF8285CCCA84C16

OECD, Governance at a Glance 2017 (2017), "14.3 Citizen confidence with the judicial system and the courts, 2007 and 2016", 233,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gov_glance-2017-en.pdf?expires=1543761407&id=id&accname=guest&checksum=146A87124B8AC23A837DA728B53CCD6F

나. 갤럽(Gallup)

Gallup, "Worldwide Research: Methodology and Codebook", https://data-services.hosting.nyu.edu/wp-content/uploads/2017/10/World_Poll_Methodology_102717.pdf.

Gallup, "How dose the Gallup World Poll work?", http://www.gallup.com/178667/gallop-world-poll-work.aspx.

Gallup, "Gallup Poll: World poll methodology" (2008. 10.), http://www.oecd.org/sdd/43017172.pdf.

Gallup, "World Poll Methodology", https://news.gallup.com/poll/105226/World-Poll-Methodology.aspx.

Gallup, "Gallup Poll: World Poll Questions", https://media.gallup.com/dataviz/www/WP_Questions_WHITE.pdf

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orld Value Survey, "Welcome to the World Value Survey site",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

World Value Survey, "WVS Longitudinal files",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L.jsp

World Value Survey, "WV6_Official_Questionnaire_v4_June2012.pdf", 8-9,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라.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7-2018 (2018), 2-4,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ROLI_2017-18_Online-Edition_0.pdf

World Justice Project, "Current & Historical Data: Current and Historical Data Download (.XLSX)",

https://worldjusticeproject.org/our-work/wjp-rule-law-index/wjp-rule-law-index-2017%E2%80%932018/current-historical-data .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2016), 128,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oLI_Final-Digital_0.pdf,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2015), 131,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oli_2015_0.pdf,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2014), 134,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uleofLawIndex2014.pdf

World Justice Project, The Rule of Law Index, World Justice Forum, Vienna, Austria (2008. 6.),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Rule_of_Law_Index_2008_Report_.pdf,

World Justice Project, The Rule of Law Index, World Justice Forum Ⅱ, Vienna, Austria (2009. 11.),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Rule_of_Law_Index_2009_Report.pdf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0 (2010),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Rule_of_Law_Index_2010_Report.pdf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2-2013 (2012), 130,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Index_Report_2012.pdf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1 (2011), 94,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Rule_of_Law_Index_2011_Report.pdf

World Justice Project, "The World Justice Project: General Population 2017 - Opinion Poll",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Formatted_GPP_Questionnaire_2017.pdf

World Justice Project, "2016 Rule of Law Index Questionnaires", https://worldjusticeproject.org/our-work/wjp-rule-law-index/wjp-rule-law-index-2016/2016-rule-law-index-questionnaires

World Justice Project, "Vision", https://worldjusticeproject.org/about-us/overview/vision

World Justice Project, "Current & Historical Data Download (.XLSX)" https://worldjusticeproject.org/our-work/wjp-rule-law-index/wjp-rule-law-in-

dex-2017%E2%80%932018/current-historical-data

World Justice Project, "Variables Used to Construct the Rule of Law Index 2017-2018",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OLIndex2017-2018_Variables_FINAL.pdf

마. 세계은행(The World Bank)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9 (2018), http://www.worldbank.org/content/dam/doingBusiness/media/Annual-Reports/English/DB2019-report_web-version.pdf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9, "Ease of Doing Business Score and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128, http://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media/Annual-Reports/English/DB19-Chapters/DB19-Score-and-DBRankings.pdf

The World Bank Group,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home

The World Bank Group,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Aggregation Methodology",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doc-methodology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About us", http://www.doingbusiness.org/en/about-us

The World Bank Group,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Governance Indicators: Where Are We, and Where Should we Be Going? - Comments by Shantayanan Devarajan & Simon Johnson", 31-34,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doc

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2018), http://www3.weforum.org/docs/GCR2018/05FullReport/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8.pdf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Chapter 3: Benchmarking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roduc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http://reports.weforum.org/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8/chapter-3-benchmarking-competitiveness-in-the-fourth-industrial-revolution-introducing-the-global-competitiveness-index-4-0/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2017), 317, http://www3.weforum.org/docs/GCR2017-2018/05FullReport/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7%E2%80%932018.pdf

사.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MD, "History of the Center", https://www.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mission/center-history-bris-garelli/

IMD, "Our mission", https://www.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mission/Overview/

IMD, "Methodology and Principles of Analysis", https://www.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mission/methodology/

IMD, "Countries profiles", https://www.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countries-profiles/

아. 기타 해외기구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

UN Habitat, "Post 2015 Agenda", https://unhabitat.org/post-2015-agenda/

European Commission, "Public Opinion", https://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index.cfm/Archive/index

Corporación Latinobarómetro, "Latino Barómetro", http://www.latinobarometro.org/lat.jsp

Afrobarometer, "About Afrobarometer", http://www.afrobarometer.org/

Asianbarometer, "Introduction", http://www.asianbarometer.org/

Asianbarometer, "Asian Barometer Survey of Democracy, Governance and Development", 2, http://www.asianbarometer.org/pdf/core_questionnaire_wave4.pdf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Court Performance Standards with Commentary", https://www.ncjrs.gov/pdffiles1/161570.pdf (2018. 12. 2. 확인)

자. 검색포털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검사-재검사신뢰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23785&cid=42125&categoryId=42125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순서효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223&cid=42125&categoryId=42125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사회적 바람직성”,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161&cid=42125&categoryId=42125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2000), “반응경향성”.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43873&cid=41989&categoryId=41989

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교차표”,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226&cid=42121&categoryId=42121

두산백과, “자유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755&cid=40942&categoryId=32215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0. 5. 24.), “맥락효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6183&cid=50305&categoryId=50305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용어사전 (2014), “휴리스틱”,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217&cid=41991&categoryId=41991

이동귀,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심리편, 주식회사 북이십일 21세기북스, “점화효과”, 네이버 지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795&cid=58345&categoryId=58345

곽호완 외 공저, 실험심리학용어사전 (2008), “인지적 면담”, 네이버 지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3789&cid=50294&categoryId=50294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공변량 분석법”,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09945&cid=42126&categoryId=42126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검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일진사 (2011), “유의 표본 추출법”,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34269&cid=50376&categoryId=50376

Wikipedia, “Unmatched count”, https://en.wikipedia.org/wiki/Unmatched_count#cite_note-1

Wikipedia, “Bill Neukom”, https://en.wikipedia.org/wiki/Bill_Neukom

Encyclopedia.com, “Kish Grid”,

https://www.encyclopedia.com/social-sciences/dictionaries-thesauruses-pictures-and-press-releases/kish-grid

차. 기타

국립국어원, "데이터클리닝", 사전·국어지식: 다듬은 말(순화어)
http://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View.do?refine_seq=26684&mn_id=34

jahyone20,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식별문제",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jahyone20/220930721388

Statistics How to, "Acquiescence bias: definition, avoidance" 참조,
https://www.statisticshowto.datasciencecentral.com/acquiescence-bias/

Statistics How to, "Bootstrap Sample: Definition, Example",
http://www.statisticshowto.com/bootstrap-sample/

The Albert.io Team, "Omitted variables bias: A comprehensive econometrics review",
https://www.albert.io/blog/omitted-variable-bias-econometrics-review/

Learning Carrot, "부트스트랩에 대하여(Bootstrapping)",
https://learningcarrot.wordpress.com/2015/11/12/%EB%B6%80%ED%8A%B8%EC%8A%A4%ED%8A%B8%EB%9E%A9%EC%97%90-%EB%8C%80%ED%95%98%EC%97%AC-bootstrapping/

3. 엑셀파일

가. OECD「한눈에 보는 정부」(괄호 안은 발간연도)

정부권력의 제한(2013) http://dx.doi.org/10.1787/888932940987

정부권력의 제한(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9272

정부권력의 제한(2017) http://dx.doi.org/10.1787/888933533682

기본권(2013) http://dx.doi.org/10.1787/888932941006

기본권(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9287

기본권(2017) http://dx.doi.org/10.1787/888933533701

정부권력 제한과 기본권 상관관계(2013) http://dx.doi.org/10.1787/888932941025,

정부권력 제한과 기본권 상관관계(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9294

정부권력 제한과 기본권 상관관계(2017) http://dx.doi.org/10.1787/888933533720

규제집행(2013) http://dx.doi.org/10.1787/888932941044

민사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성(2013) http://dx.doi.org/10.1787/888932941063

제1심 재판과 소송비용(2013) http://dx.doi.org/10.1787/888932941196

법적 지원이 이루어진 사건 비율(2013) http://dx.doi.org/10.1787/888932942963

제1심 민사사건 소송기간(2013) http://dx.doi.org/10.1787/888932943115

유럽 내 OECD 14개국의 법률지원이 제공된 1심 재판 비율(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9431

유럽 내 22개 OECD 회원국의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2013)
http://dx.doi.org/10.1787/888933249447

분쟁해결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2017)
http://dx.doi.org/10.1787/888933534024

12개월간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법적 지원을 받은 비율(2017)
http://dx.doi.org/10.1787/888933534005

분쟁해결과정에서 법적 지원을 받지 않은 3대 주요 원인(2017)
http://dx.doi.org/10.1787/888933534043

당사자 및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컴퓨터 시설을 사용하는 법정 비율(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9531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사법절차 중 특별조치의 상세 내역(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9549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과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9603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과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2017)
http://dx.doi.org/10.1787/888933534366

형사 사법제도의 효과성/적시성과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9613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9625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2017) http://dx.doi.org/10.1787/888933534404

정부신뢰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사이 상관관계 및 정부와 사법제도에 대한 각 신뢰도 지표(2013)
http://dx.doi.org/10.1787/888932940835

2007년, 2014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지표 (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9375

2007년, 2016년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 지표 (2017)
http://dx.doi.org/10.1787/888933533872

나. 사법효율성을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uncil of Europ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 (괄호 안은 조사연도)

유럽 내 22개 OECD 회원국의 민사 및 상사 제1심 사건의 재판기간(2012)
http://dx.doi.org/10.1787/888933249522

제1심 민사, 상가, 행정사건의 예상 재판기간(2010-2014)
http://dx.doi.org/10.1787/888933534195

제1심 민사, 상사소송 사건의 예상 재판기간(2010-2014)
http://dx.doi.org/10.1787/888933534214

제1심 행정사건의 예상 재판기간(2010-2014) http://dx.doi.org/10.1787/888933534233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 201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1	2014. 12. 30.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2	2014. 12. 30.
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3	2014. 12. 30.
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4	2014. 12. 30.

▣ 201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5	2015. 2. 27.
2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2014-06	2015. 2. 27.
3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2014-07	2015. 2. 27.
4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2015-01	2015. 5. 22.
5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4	2015. 5. 29.
6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2	2015. 5. 30.
7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2015-03	2015. 6. 10.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8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2015-06	2015. 6. 26.
9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5	2015. 6. 30.
1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2015-08	2015. 6. 30.
1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2015-07	2015. 7. 13.
12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5-10	2015. 7. 17.
13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 · 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2015-11	2015. 7. 24.
14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9	2015. 7. 31.
15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2015-12	2015. 9. 14.
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5-16	2015. 11. 9.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5-14	2015. 11. 13.
18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2015-13	2015. 11. 25.
19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2015-15	2015. 11. 27.
20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2015-17	2015. 12. 23.

▣ 201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2	2016. 1. 13.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2016-03	2016. 1. 14.
3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2016-05	2016. 1. 15.
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2016-01	2016. 2. 16.
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6	2016. 2. 25.
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16-04	2016. 2. 26.
7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07	2016. 3. 28.
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8	2016. 3. 28.
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2016-09	2016. 4. 4.
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2016-10	2016. 8. 26.
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2016-11	2016. 9. 8.
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2016-12	2016. 9. 30.
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6-13	2016. 10. 17.
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5	2016. 10. 21.
1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2016-14	2016. 10. 25.
16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2016-18	2016. 11. 18.

▣ 2017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9	2017. 1. 24.
2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2016-16	2017. 2. 23.
3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2016-22	2017. 2. 28.
4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7	2017. 3. 13.
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6-20	2017. 3. 30.
6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2016-21	2017. 4. 28.
7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2017-02	2017. 5. 17.
8	북한의 신분 · 공민 ·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017-03	2017. 6. 20.
9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2017-04	2017. 8. 11.
10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2017-01	2017. 8. 30.
11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2017-05	2017. 9. 11.
12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2017-08	2017. 9. 15.
13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2017-06	2017. 9. 19.
14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2017-07	2017. 9. 27.
15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2017-09	2017. 11. 20.
16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2017-10	2017. 12. 1.
17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2017-11	2017. 12. 27.
18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2017-12	2017. 12. 28.

▣ 2018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8-02	2018. 2. 22.
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2017-14	2018. 3. 30.
3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2017-15	2018. 4. 30.
4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8-03	2018. 4. 30.
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2018-04	2018. 6. 15.
6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2018-07	2018. 6. 15.
7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2018-05	2018. 8. 31.
8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2017-13	2018. 9. 20.
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2018-06	2018. 10. 10.
1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2018-08	2018. 10. 11.
1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2018-01	2018. 11. 2.
12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2018-09	2018. 11. 20.
13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2018-10	2018. 12. 26.
1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2018-12	2018. 12. 27.
15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2018-13	2018. 12. 28.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2018년 12월 21일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발 행 처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83
인 쇄 처 한국학술정보(주)
TEL 031-939-3300

〈비매품〉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6168-063-7 95360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9층, 10층
대표전화 : 031)920-3583 E-mail : jpriga100@scourt.go.kr

비매품
95360
9 791161 680637
ISBN 979-11-6168-063-7